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년 7 월 25일

○ 주관연구기관명: 유미특허법인
○ 연 구 기 간 : 2006년 4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 주관연구책임자 : 김동균 변리사
○ 참여연구원
· 연 구 원 : 오원석 변리사
· 연 구 원 : 최금화 변리사
· 연 구 원 : 전소정 변리사
· 연 구 원 : 와치미유키
· 연 구 원 : 김선정
· 연 구 원 : 박지영

목 차

Ⅰ. **연구목적** ····· 1

1. 연구 목적 ····· 3
2. 조사방법 ····· 4

Ⅱ. **침해실태조사 실시** ····· 7

1. 1차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9
2. 2차 설문조사 ····· 19
3. 3차 심층조사 ····· 80

Ⅲ. **결론(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전략)** ····· 129

1.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 131
2. 외국의 사례(일본 JETRO와 QBPC의 활동을 중심으로) ···· 147
3. 정부 건의사항 ····· 156

붙임 1 : 국내 신문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피침해 업체 조사결과 ···· 160

붙임 2 : 2차 설문조사지 ····· 162

붙임 3 : 3차 설문조사지 ····· 167

붙임 4 : 개별기업의 침해 및 상담사례 ····· 172

붙임 5 : 2005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및 중국일본상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200

요 약 문

중국은 이미 전세계 모조품의 생산기지화하여 중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심지어 미국, 유럽 시장에까지 모조품을 수출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업상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중국지재권침해실태조사(Survey Report on Overseas IP Infringement(China))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겪는 지재권 침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장차 중국 지재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1차 자료조사, 2차 설문조사, 3차 심층조사의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2차 설문조사를 위해 국내 소재 중국수출기업 3,351개사,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1,373개사에 대하여 설문이 발송되었고, 약 10.3%의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여 모두 486개의 설문응답 샘플이 확보되었다. 3차 심층조사는 2차 설문조사의 응답샘플 분석에 기초하여 실제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 106개 기업에 대하여 실시되었는데, 추가설문조사 및 전화상담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18.8%가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를 적어도 1차례 이상 경험하였으며, 2001년 이후 침해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는 상표권(36.4%)이었고, 이어 디자인권(26.4%), 특허・실용신안(17.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단 32.4%만이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하였다고 응답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 91%의 기업만이 침해에 대응할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침해 문제에 부닥쳤던 기업들 가운데 약 66.7%의 기업이 민사, 형사, 행정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정 처벌 수준 이상의 실질적 효과를 거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모조품 문제가 심화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한국의 관련 당국에 대해서는, 중국 모조품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정보의 제공, 중국 당국과의 협상 등의 외교적 노력, 중국 모조품 문제에 대처할 전담조직의 설치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China has become a breeding ground for global counterfeiting products and exports, and distributes counterfeit products not only to the Chinese market, but to markets throughout Asia, the Middle East, North America and Europe.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are faced with an increasing difficulty in conducting business not only in China, but internationally as well.

This Survey Report on Overseas IP Infringement (China) seek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typical infringement of IP Rights suffered by Korean companies in China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assist in the establishment of an overall strategy aimed at dealing with this problem as a nation.

The investigation was divided into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was a data search, the second phase was a survey of companies, and the third phase was a detailed investigation. In the second phase, the survey is of 3,351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located in Korea that export to China, and it was also sent to 1,373 Korean owned companies located in China. Of these, we have obtained 486 completed surveys, meaning that about 10% of the companies responded. In the third phase, we selected 106 companies from the surveys which have experienced infringement of their IP rights and undertook detailed interviews via telephone and written correspondence.

From our interviews and the investigation, we found about 19% of all the companies that responded experienced infringement of their IP rights in one way or another. The frequency of infringement was found to have

increased steadily from 2001, and the areas in which most infringement occurred are:1)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36%) 2)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26%) and, Infringement of Patent & Utility Model Rights (17%). In addition, out of all the responding companies, only 32% said that they have obtained the registration of IP rights. Hence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se companies still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IP protection. As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located in Korea but exporting to China, only 9% said that they have any IP registrations that enable them to respond to the infringement of their IP rights in China.

About 67% of the companies faced with the infringement of their IP rights tried pursuing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infringer, though very few of them have received remedies beyond the administrative penalty. Overall, Korean companies feel that the counterfeiting problem in China is neither improving nor worsening.

From the investigation we also found that most Korean companies desire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n active role in resolving the problem of counterfeiting in China by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and information, as well as providing assistance, such as negotiation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ties and the establishing of an organization or entity in China to handle counterfeiting matters on behalfof Korean companies either located in China or exporting to China.

Ⅰ. 연구목적

Ⅰ. 연구목적

1. 연구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o 중국은 이미 전세계 모조품의 생산기지화하여 중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심지어는 미국, 유럽 시장에까지 모조품을 수출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업상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음.

o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국 모조품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누적이 없었음

o 따라서, 이번 해외지재권침해의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중국 지재권보호센터의 구심점을 건설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표

o 우선,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규모를 파악하고, 모조품 유통 경로 및 양태·유형 등을 파악하여 분류하고자 함.

o 둘째, 모조품을 발견한 이후 그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여 왔는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o 셋째, 기업들의 모조품에 대한 대처 방식과 함께 모조품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코자 함.

o 위와 같은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의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모조품 대응 플랜을 제안코자 함.

2. 조사방법

가. 1차 조사 :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소개한 기발간 자료조사

o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지재권 침해에 관한 통계 조사

o 중국 모조품 피해와 관련된 외국의 실태조사 보고서

o 중국 모조품과 관련하여 피침해실태를 조사한 국내보고서

o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침해 사례 조사

o 기타 중국 및 일본의 관련 서적 및 정간물에 소개된 사례 조사

나. 2차 조사 : 설문조사

o 조사대상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o 조사목적

- 2차 설문조사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의 확보 현황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 현황 등의 기초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o 조사항목

- 2차 설문조사는 설문 회수량이 관건이므로, 문항수를 8개로 적게 하고 간략한 단답형의 설문으로 구성하였음.

<중국에서 외국기관들의 설문조사 사례>

① 2005년 3월 일본 특허청이 JETRO 북경센터와 중국일본상회에 의뢰해 실시한 중국모조품피해실태조사는 중국진출 일본기업 1,89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67개사가 설문에 응한 바 있음.

② 유명상표보호위원회(이하 "QBPC")가 2002-2003년에 실시한 중국모조품

실태조사는 중국진출 미국 및 유럽계 회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213개사에서 설문에 응한 바 있음.

다. 3차 조사 : 설문조사

o 조사대상

- 2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에서 지재권 피해를 경험한 기업
- 1차 자료조사시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에서의 모조품 피해사례가 보도된 기업들 가운데 2005년 특허청의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중국편)” 작성 당시 조사했던 기업 및 기타 국내 보고서에 인용된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

o 조사목적

- 중국에서의 모조품 실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내용, 피해 규모, 현지의 법률서비스 현황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해 실시

o 조사방법

- 외국의 경우는 모든 조사를 1차의 설문으로 진행하나, 기초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고 침해 경험이 있는 기업들만이 응답할 수 있는 설문들은 해당 기업들에만 질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실시
- 아울러, 지재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침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3차 설문조사 대상 전체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실시

Ⅱ. 침해실태조사 실시

Ⅱ. 침해실태조사 실시

1. 1차 문헌 및 인터넷 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기간

o 2006년 4월 15일 - 2006년 4월 30일

(2) 조사대상

o 언론보도, 관련 논문 등을 활용한 침해사례 등에 관한 자료 조사

(3) 조사방법

o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한 조사

나. 조사내용

(1) 중국 당국의 통계

o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 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 및 통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국무원 :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보호 내용을 담은 총괄 보고서인 [중국지식재산권보호상황백서]를 매년 발표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 중국에서 전리출원, 등록 등에 관한 통계 및 전리권침해에 관한 행정 단속 통계를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연보]를 통해 발표
-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등록 등에 관한 통계 및 상표권 관련 모조품 행정 단속 통계를 [중국상표공작연도보고]를 통해 발표
- 최고인민법원 : 중국에서 매해 일어나는 지재권 관련 소송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함.
- 성급 공상국 : 매해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행정단속의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함

o 위 기관에서 발표한 모조품 관련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리출원동향>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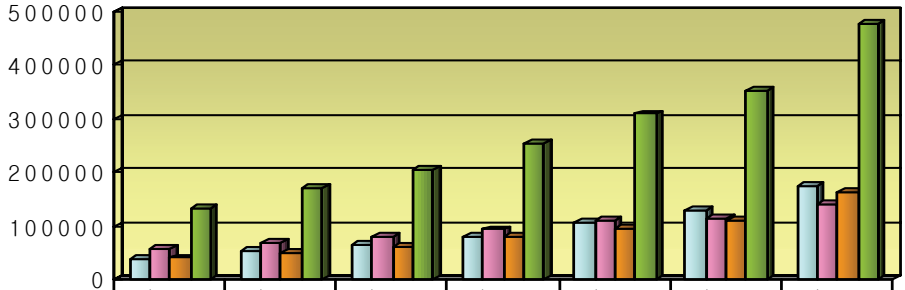

	'99	'00	'01	'02	'03	'04	'05
특 허	36694	51747	63204	80232	105318	130133	173327
실 용 신 안	57492	68815	79722	93139	109115	112825	139566
디 자 인	40053	50120	60647	79260	94054	110849	163371
합 계	134239	170682	203573	252631	308487	353807	476264

특 허　실 용 신 안　디 자 인　합 계

<상표출원동향>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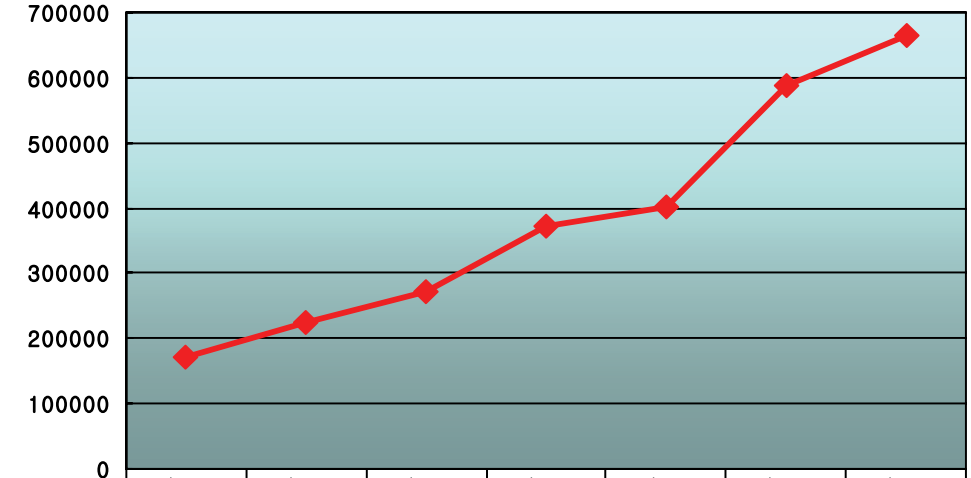

	'99	'00	'01	'02	'03	'04	'05
출원	170715	223177	270417	371936	402095	588000	664017

<국가별 중국 전리출원 현황>

(단위 : 건)

순위	국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	일본	13,736	18,275	24,241	30,444	36,221
2	미국	8,994	10,012	12,221	16,187	20,395
3	한국	2,498	3,626	5,015	6,660	9,300
4	독일	3,454	4,015	4,522	5.917	7,502
5	네덜란드	1,397	2,147	1,376	2,960	3,988
6	프랑스	1,521	1,932	1,941	2,465	3,190
7	스위스	1,020	1,110	1,374	1,744	2,106
8	이탈리아	495	627	765	1,167	1,632
9	영국	913	1,025	1,314	1,401	1,613
10	스웨덴	967	952	694	899	1,101

<국가별 중국 상표출원 현황>

(단위 : 건)

국가	2002년			2003년			2004년		
	출원건수	마드리드등록건수	합계	출원건수	마드리드등록건수	합계	출원건수	마드리드등록건수	합계
미국	13257		13257	10183		10183	12675	668	13343
일본	7883	272	8155	9256	317	9573	11355	590	11945
독일	1874	3603	5477	1576	3168	4744	2170	3791	5961
프랑스	665	1824	2489	1053	2166	3219	1597	2218	3815
이탈리아	830	1542	2372	890	1530	2420	1794	1959	3753
한국	2000		2000	1662	6	1668	2784	72	2856
영국	1569	582	2151	1632	457	2089	1981	582	2563
스위스	643	2321	2964	767	1877	2644	680	1283	1963
버진아일랜드	2066		2066	958		958	1425		1425

<2005년 중국특허출원 상위 10개사>

(단위 : 건)

순위	출 원 인	국 가	건 수
1	Samsung Electronics	한국	3,159
2	Philips	네덜란드	2,602
3	松下(MATSUSHITA)電器	일본	2,530
4	Sony	일본	1,456
5	IBM	미국	1,213
6	LG Electronics	한국	1,126
7	東芝(Toshiba Co.)	일본	1,075
8	Samsung SDI	한국	1,052
9	精工 (SEIKO)	일본	1,045
10	佳能(Canon Co.)	일본	915

<상표침해도용행위 단속 통계>

(단위 : 건, 위안)

구분	상표침해			벌금금액
	국내상표	외국상표	합계	
2001	20283	2530	22813	131,898,780
2002	21415	2124	23539	135,612,506
2003	24395	2093	26488	196,394,094
2004	34770	5401	40171	

<지역별 외국 상표 침해사건>

(단위 : 건)

순위	2002년	2003년	2004년
	전국(2,124)	전국(2,093)	전국(5401)
1위	광둥(476)	광둥(621)	저장(1248)
2위	저장(460)	저장(469)	푸젠(754)
3위	푸젠(325)	베이징(356)	산시16)
4위	상하이(317)	상하이(333)	광둥(682)
5위	베이징(282)	장수(83)	베이징(633)

<전리침해사건 다발 지역>

(단위 : 건)

순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1,399)	전체(1,448)	전체(1,455)
1위	광둥(415)	광둥(350)	광둥(376)
2위	저장(249)	저장(229)	저장(213)
3위	산둥(96)	산둥(113)	허난(104)
4위	스촨(75)	허난(101)	장수(97)
5위	허난(53)	스촨(100)	산둥(96)

<상표권 침해행위 다발지역>

순위	2002년	2003년	2004년
1위	저장	저장	저장
2위	장수	장수	장수
3위	안후이	안후이	푸젠
4위	푸젠	푸젠	안후이
5위	랴오닝	광둥	산둥

o 모조품 생산 및 판매지에 관한 중국내 지역별 통계는 있으나 권리자의 국가별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2) 국내보고서

o 중국 모조품과 관련하여 피침해실태를 조사한 국내보고서

-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중국편), 특허청, 2005
-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와 대응전략, 중소기업청, 2004
- 특허분쟁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특허청, 2004
- 한류 국가의 한국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KOTRA, 2005

(3) 외국보고서

o 중국 모조품 피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 및 침해 실태를 볼 수 있는 외국 자료

- 모방대책매뉴얼(중국편), 일본 JETRO, 2003년, 2004년
- 지재권침해판례사례집(중국편), 일본 JETRO,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 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중국편), 일본 JETRO,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 중국일본상회IPG회원설문조사, 일본 IPG, 2003년, 2004년
- 중국모조품실태조사, Quality Brands Protection Committee(QBPC), 2000-2001, 2002-2003

o 일본 JETRO의 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 결과 개요.

- 일본 특허청은 일본 JETRO와 중국일본상회에 의뢰하여 2005년 중국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중국진출 일본계 기업 1,8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167개사였음.

- 모조품 피해에 대해서는, 전체 설문응답기업(167개사)의 63.6%가 중국 모조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체의 26.5%가 "피해가 심각하다", 25.2%가 "피해는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 16.1%가 "모조품이 있기는 하지만 실태는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침해된 지재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상표권(75%)>디자인권(62.5%)>특허권(25%)>저작권(12.5%)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피해가 가장 큰 지재권의 순서에서도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음.
- 중국 모조품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10억앤 이상"이 16.3%, "5억앤-10억앤"이 3.8%, "2억앤-5억앤"이 10.0%를 차지하였음.
- 모조품 경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악화" 쪽에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61.3%, "변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22.5%"로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재권의 최대 피해지역은 제조분야에서 광둥성(48.8%)> 저장성(23.8%)> 장수성(22.5%)> 상하이(18.8%)의 순으로 조사되어, 광둥성이 단연 톱을 차지하였음. 유통분야에서는 광둥성(63.8)> 상하이(31.3%)> 베이징(26.3%)로 조사되었음.
- 중국 모조품 문제 담당자를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타 업무와 겸임하는 겸임자가 있다" 라고 응답한 기업이 43.8%, "전임 담당자를 두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3.8%를 점하였음.
- 기업의 자체조사에 의한 년간 모조품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10건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8%에 이르러, 전회 조사에 비하여 13.1%가 증가하였음.

o QBPC의 중국모조품실태조사(2002-2003) 결과 개요

- QBPC가 2001년에 조사한 중국모조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3개 응답기업 가운데 54.9%가 중국의 모조품 문제가 "약간 완화되었다"고 응답

하여, 1999년 조사 당시의 9%에 비해 전체적으로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였음.

- 전체 모조품 유통량 대비 적발 모조품량의 가치대비에 대하여, 응답기업들은 평균 전체 유통량의 약 9%가 적발되고 있을 뿐이라고 응답하였음.
- 전체 모조품 유통량을 정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인민폐 2,027억위안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모조품의 주요 제조처는 무허가기업(79.06%), 개인소유기업(75.39%), 개인(74.87%) 순으로 조사되었음.
- 모조행위의 동기에 대해서는 94.79%가 “높은 이윤의 추구”라 응답하였고, 51.6%가 “세금 회피”라고 응답하였다.
- 모조품의 시장 유통 가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의 70% 가 정품의 75% 이하라고 응답하였음.

(4) 신문기사 및 인터넷 검색

o 신문기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국 모조품 피해 기업 조사

※ 붙임 1. “국내 신문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피침해업체 조사 결과” 참조

o 조사 개요

- 국내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례로서 중국에서 지재권침해를 입었다고 보도된 기업 가운데 2005년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특허청) 작성시 조사했던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1개 기업에 대하여 3차 설문지 발송 후 전화상담을 진행함.
- 3차 설문지를 발송한 21개 기업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4개 기업으로 대기업 2개사, 중소기업 2개사임.
- 또한 전화상담에 응한 기업은 모두 5개 기업으로 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2개사임.
- 전화상담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담당자와 통화가 이루어진 기업이 3개사

더 있었으나 1개 기업은 “크게 피해를 입은 바 없다”고 응답하였고, 1개 기업은 “중국 짝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애플사와의 관계 문제”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1개 기업 역시 “중국 짝퉁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음.

- 전화상담에 응하였거나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의 조사 내용은 모두 3차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하였음.

※ 붙임 2. “개별기업의 침해 및 상담사례” 참조

다. 1차 문헌 및 인터넷 조사에 관한 소결

o 한국은 중국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전리 3위, 상표 8위의 주요 출원국가의 지위에 있으며, 기업별 통계에서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2005년도 특허출원 분야에서 일본의 마쯔시다덴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LG전자 및 삼성SDI가 특허출원 순위 3위에 오름으로써 일본과 나란히 특허출원 순위 10위 기업에 3개 기업이 포함되었음.

o 2004년 통계에 기초할 때,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는 1년에 4만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국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은 5,401건으로, 중국 단속 당국이 침해 기업에 부과한 벌금만 약 인민폐 1억 9천만위안임.

o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외국 상표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저장성으로 전체 5,401건 가운데 1,248건으로 2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푸젠성(754건), 산시성(716건), 광둥(682건), 베이징(633건)의 순으로 나타났음. 중국의 저장성은 중국 경공업 제품의 최대 모조품 생산지로 알려져 있음.

o 반면, 중국에서 전리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광둥성으로 전체 1,455건 가운데 376건(25.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저장성(213건),

허난성(104건), 장수성(97건), 산둥성(96건)으로 나타났음. 광둥성은 중국 중공업 제품의 최대 모조품 생산지로 알려져 있음.

o 일본 특허청의 2005년도 중국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 결과 및 QBPC가 2001년에 조사한 중국모조품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의 모조품 실태가 완화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일본 기업들은 “악화” 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미국, 유럽계의 기업들은 “완화”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대조적이었음. 그러나, 어느쪽 조사이든 현재의 중국 당국의 모조품 대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o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중국모조품실태조사가 2004년 중소기업청에 의해 1차 이루어졌으나 통계화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일부 기업의 사례를 정리 발표한 것에 그쳤음. 결국 본 조사가 중국모조품실태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음.

2. 2차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기간

o 2006년 5월 12일 - 2006년 6월 15일

(2) 조사대상 및 설문지 발송

o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 2006년 5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대 중국 수출기업 9,976개사 중, 무작위로 추출한 3,351개사

o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 주중 kotra 현지사무소에 등록된 1,373개사

(3) 조사방법

o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 우편에 의한 설문지 배부 및 회수

o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 우편에 의한 설문지 배부
- 우편 및 직접방문에 의한 설문지 회수

<지역별 설문지 배부 및 회수>

① 광저우사무소 : 설문지 우편 발송 및 회수

② 베이징사무소 : 베이징과 텐진을 포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뒤 일부 기업들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

③ 상하이사무소 : 상하이, 션양, 다렌을 포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베이징과 같이 설문지 발송 후 방문 조사를 병행

④ 칭다오사무소 : 우편 발송 후,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

(4) 설문지 회수 및 회수율

o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 109개사, 회수율 3.3%

o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 377개사, 회수율 27.5%

<설문지 발송 및 회수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발송	회수	회수율
국내		3,351	109	3.3
중국	광저우	590	67	11.4
	베이징, 텐진	180	68	37.8
	상하이, 션양, 다롄	500	155	31.0
	칭다오	103	87	84.5
	소계	1,373	377	27.5
합계		4,724	486	10.3

* 주) 중국진출 현지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KOTRA의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칭다오 사무소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베이징 사무소가 텐진지역을 담당하였고 상하이 사무소가 선양과 다롄지역을 담당하여 설문지를 발송 및 회수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룹화 하였음.

(5) 기업규모별 회수율

o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 응답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전체 109개 기업 중 4개사임

o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 전체 응답기업 377개사 중 103개사(27.3%)가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임
- 지역별로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가 응답기업 중 대기업 비율이 30.0%

이상 점유하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베이징과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회사 규모별 응답기업>

(단위 : 개사, %)

구분		대기업 (300인이상)	중소기업 (300인미만)	전체	대기업비율
국내		4	105	109	3.7
중국	광저우	15	52	67	22.4
	베이징	25	43	68	36.8
	상하이	37	78	115	32.2
	칭다오	18	69	87	20.7
	션양, 다롄	8	32	40	20.0
	소계	103	274	377	27.3
합계		107	379	486	22.0

나.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1) 귀사가 중국에 진출 또는 수출을 시작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o 응답기업

⇒ 대기업 106개사, 중소기업 359개사 등 총 465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복수응답이 1개사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465	106	359	대기업1
100	22.8	77.2	

o 지역별 진출 또는 수출 연도

⇒ 국내소재 수출기업의 중국진출은 1990년대 말에 잠시 주춤하였다가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역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에 잠시 주춤하였다가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중국진출 또는 수출 연도>

(단위 : 개사, %)

구분		1995 이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국내		12	8	6	24	28	14	3	95
		12.6	8.4	6.3	25.3	29.5	14.7	3.2	100
중국	광저우	19	10	7	9	15	7	0	67
		28.4	14.9	10.4	13.4	22.4	10.4	0.0	100
	베이징	17	9	2	9	15	13	1	66
		25.8	13.6	3.0	13.6	22.7	19.7	1.5	100
	상하이	24	13	6	7	26	35	3	114
		21.1	11.4	5.3	6.1	22.8	30.7	2.6	100
	칭다오	12	4	5	9	29	25	0	84
		14.3	4.8	6.0	10.7	34.5	29.8	0.0	100
	션양·다롄	6	4	4	7	7	11	1	40
		15.0	10.0	10.0	17.5	17.5	27.5	2.5	100
	소계	78	40	24	41	92	91	5	371
		21.0	10.8	6.5	11.1	24.8	24.5	1.3	100
합계		90	48	30	65	120	105	8	466
		19.3	10.3	6.4	13.9	25.8	22.5	1.7	100

o 기업규모별 중국진출 또는 수출 연도

⇒ 대기업은 1999년 이전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42.1%인 반면, 중소기업은 2000년 이후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72.7%에 이르고 있음.

<기업규모별 중국진출 또는 수출 연도>

(단위 : 개사, %)

구분	1995 이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대기업	45	19	6	9	19	9	0	107
	42.1	17.8	5.6	8.4	17.8	8.4	0.0	100
중소기업	45	29	24	56	101	96	8	359
	12.5	8.1	6.7	15.6	28.1	26.7	2.2	100
전체	90	48	30	65	120	105	8	466
	19.3	10.3	6.4	13.9	25.8	22.5	1.7	100

o 업종별 중국진출 또는 수출연도

⇒ 전기·전자 업종과 섬유·의복·신발 업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으며, 진출연도는 전기·전자가 2000년 이후 진출한 반면, 섬유·의복·신발 업종은 1995년 이전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에도 진출이 많았음. 특히, 자동차·운송기계 업종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진출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업종의 중국진출이 특히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업종별 중국진출 또는 수출 연도>

(단위 : 개사, %)

구분	1995 이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기계	10	10	3	14	9	12	1	59
	16.9	16.9	5.1	23.7	15.3	20.3	1.7	100
전기·전자	18	13	6	19	30	16	1	103
	17.5	12.6	5.8	18.4	29.1	15.5	1.0	100
자동차·운송기계	4	1	0	2	3	3	2	15
	26.7	6.7	0.0	13.3	20.0	20.0	13.3	100
문방구·잡화	8	1	2	2	12	8	0	33
	24.2	3.0	6.1	6.1	36.4	24.2	0.0	100
섬유·의복·신발	21	5	5	7	18	16	0	72
	29.2	6.9	6.9	9.7	25.0	22.2	0.0	100
식품·음료·주류	4	4	1	1	5	5	0	20
	20.0	20.0	5.0	5.0	25.0	25.0	0.0	100
석유·화학	12	9	6	5	17	5	0	54
	22.2	16.7	11.1	9.3	31.5	9.3	0.0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0	0	1	3	5	11	1	21
	0.0	0.0	4.8	14.3	23.8	52.4	4.8	100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또는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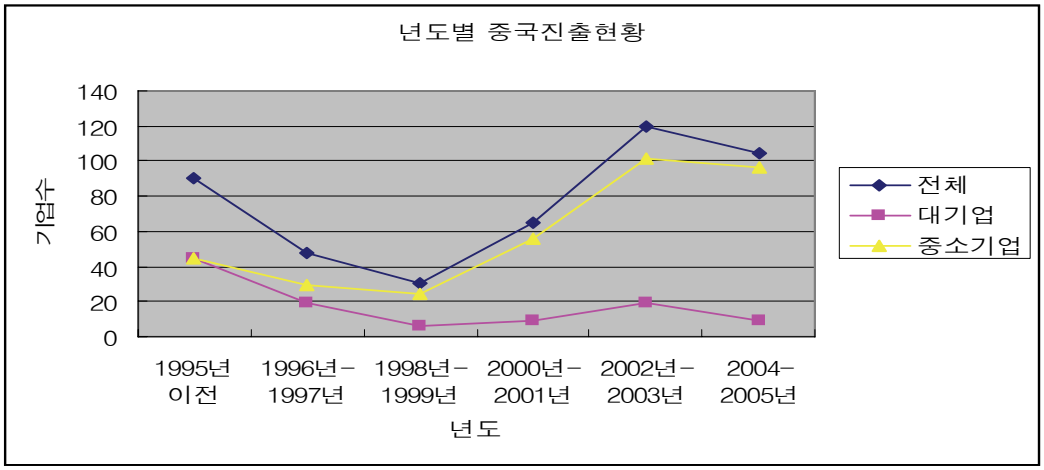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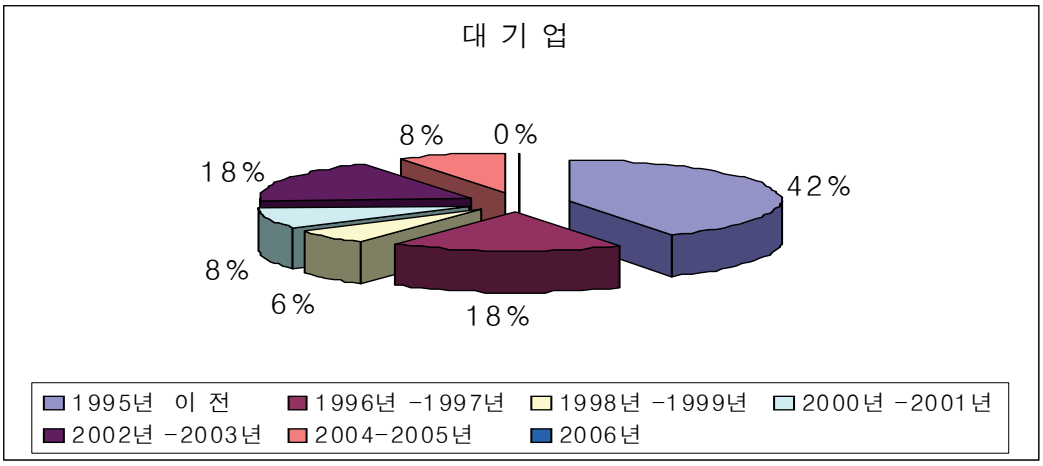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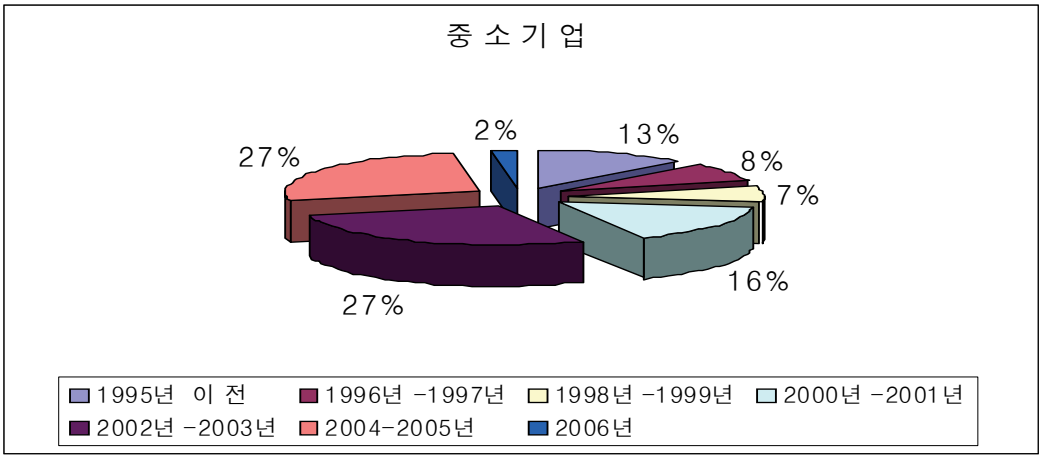

(2) 귀사가생산하는제품은(다수품목인 경우 주요 생산품)?

o 응답기업

⇒ 대기업 107개사, 중소기업 377개사 등 총 484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484	107	377
100	22.1	77.9

o 지역별 주요 생산품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주력 생산품은 기계, 전기・전자 및 석유화학 제품이 63%를 차지하는 반면, 식기・도자기, 화장・목욕용품 및 영화・음반・도서 등은 미미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력 생산품은 전기・전자제품이 20.7%, 섬유·의복·신발 제품이 16.0%, 석유화학 제품이 10.0% 순임

<주요생산품>

(단위 : 개사, %)

구분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운송기계	문방구·잡화	섬유·의복·신발	식기·도자기	식품·음료·주류	석유화학품	화장·목욕용품	영화·음반·도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타	합계
국내		26	26	3	8	11	1	7	16	2	0	3	5	108
		24.1	24.1	2.8	7.4	10.2	0.9	6.5	14.8	1.9	0.0	2.8	4.6	100
중국	광조우	9	30	2	9	5	0	0	4	0	0	0	8	67
		13.4	44.8	3.0	13.4	7.5	0.0	0.0	6.0	0.0	0.0	0.0	11.9	100
	베이징	3	12	5	3	3	0	7	6	1	3	10	14	67
		4.5	17.9	7.5	4.5	4.5	0.0	10.4	9.0	1.5	4.5	14.9	20.9	100
	상하이	12	16	2	2	30	0	1	16	6	2	8	20	115
		10.4	13.9	1.7	1.7	26.1	0.0	0.9	13.9	5.2	1.7	7.0	17.4	100
	칭다오	8	14	1	13	16	3	7	11	0	0	1	13	87
		9.2	16.1	1.1	14.9	18.4	3.4	8.0	12.6	0.0	0.0	1.1	14.9	100
	선양・다렌	4	6	3	2	6	1	1	2	1	0	0	14	40
		10.0	15.0	7.5	5.0	15.0	2.5	2.5	5.0	2.5	0.0	0.0	35.0	100
	소계	36	78	13	29	60	4	16	39	8	5	19	69	376
		9.6	20.7	3.5	7.7	16.0	1.1	4.3	10.4	2.1	1.3	5.1	18.4	100
전체		62	104	16	37	71	5	23	55	10	5	22	74	484
		12.8	21.5	3.3	7.6	14.7	1.0	4.8	11.4	2.1	1.0	4.5	15.3	100

o 기업규모별 주요 생산품

⇒ 대기업의 주요 생산품은 전기・전자(27.1%), 섬유・의복・신발(15.0%), 석유화학(15.9%) 순이며, 중소기업도 전기・전자(19.9%), 섬유・의복・신발(14.6%), 기계(14.1%) 순으로 대기업과 유사함.

<기업규모별 주요 생산품>

(단위 : 개사, %)

구분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운송기계	문방구・잡화	섬유・의복・신발	식기・도자기	식품・음료・주류	석유화학품	화장・목욕용품	영화・음반・도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타	합계
대기업	9	29	3	6	16	1	7	17	3	0	2	14	107
	8.4	27.1	2.8	5.6	15.0	0.9	6.5	15.9	2.8	0.0	1.9	13.1	100
중소기업	53	75	13	31	55	4	16	38	7	5	20	60	377
	14.1	19.9	3.4	8.2	14.6	1.1	4.2	10.1	1.9	1.3	5.3	15.9	100
전체	62	104	16	37	71	5	23	55	10	5	22	74	484
	12.8	21.5	3.3	7.6	14.7	1.0	4.8	11.4	2.1	1.0	4.5	15.3	100

(3) 상표・디자인・특허 등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있습니까?

o 응답기업

⇒ 대기업 107개사, 중소기업 377개사 등 총 484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484	107	377
100	22.1	77.9

o 지역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여부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이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9개사 중, 24개사(22.0%)에 불과

⇒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보다 약간 더 높은 35.5%에 불과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국내		85	24	109
		78.0	22.0	100
중국	광조우	55	12	67
		82.1	17.9	100
	베이징	30	37	67
		44.8	55.2	100
	상하이	69	46	115
		60.0	40.0	100
	칭다오	59	27	86
		68.6	31.4	100
	선양·다렌	29	11	40
		72.5	27.5	100
	소계	242	133	375
		64.5	35.5	100
전체		327	157	484
		67.6	32.4	100

o 기업규모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여부

⇒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기업은 57.0%인 반면, 중소기업은 25.5%에 불과하여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업규모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대기업	46	61	107
	43.0	57.0	100
중소기업	281	96	377
	74.5	25.5	100
전체	327	157	484
	67.6	32.4	100

o 업종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여부

⇒ 중국에서 자동차·운송기계 업종의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률이 5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식품·음료·주류 업종이 52.2%로 뒤를 이었고, 문방구·잡화 및 섬유·의복·신발 업종의 등록률이 각각 24.3%, 21.4%로 가장 낮았음

<업종별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기계	45	17	62
	72.6	27.4	100
전기·전자	72	32	104
	69.2	30.8	100
자동차·운송기계	7	9	16
	43.8	56.3	100
문방구·잡화	28	9	37
	75.7	24.3	100
섬유·의복·신발	55	15	70
	78.6	21.4	100
식품·음료·주류	11	12	23
	47.8	52.2	100
석유화학	33	22	55
	60.0	40.0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14	8	22
	63.6	36.4	100

<중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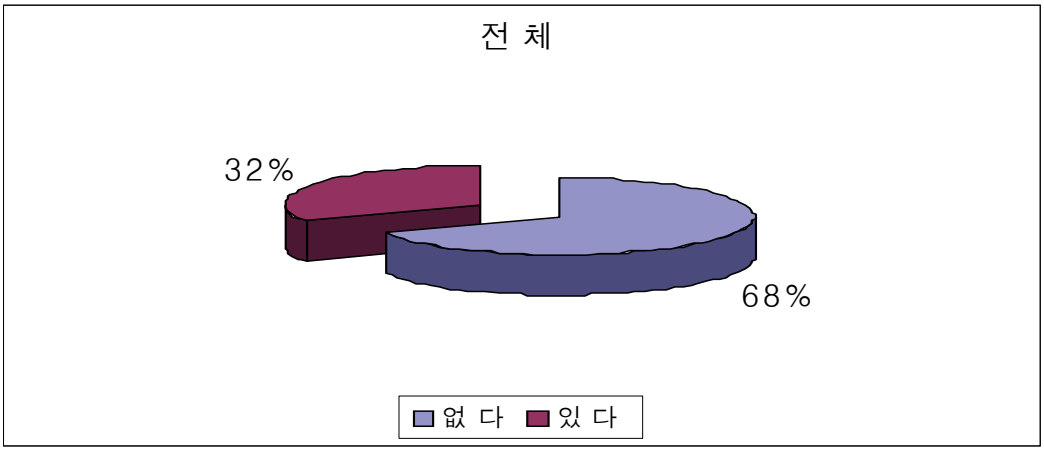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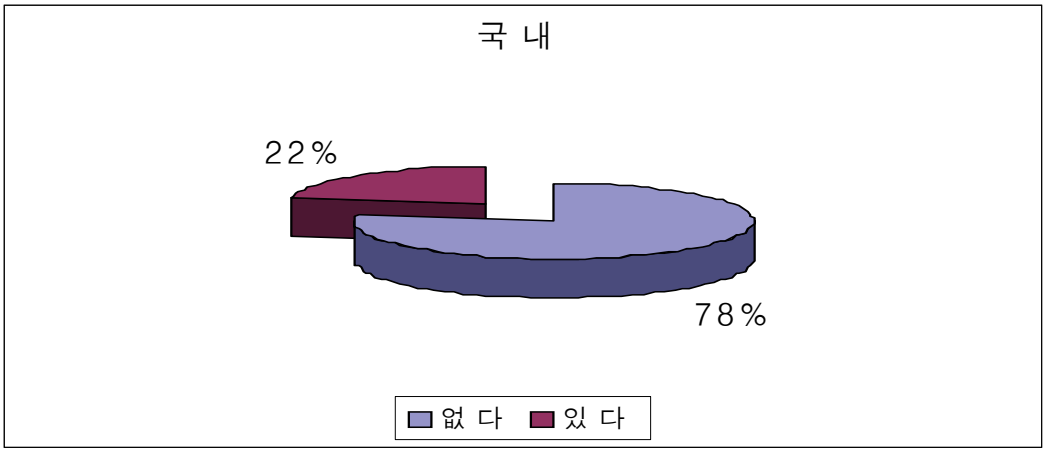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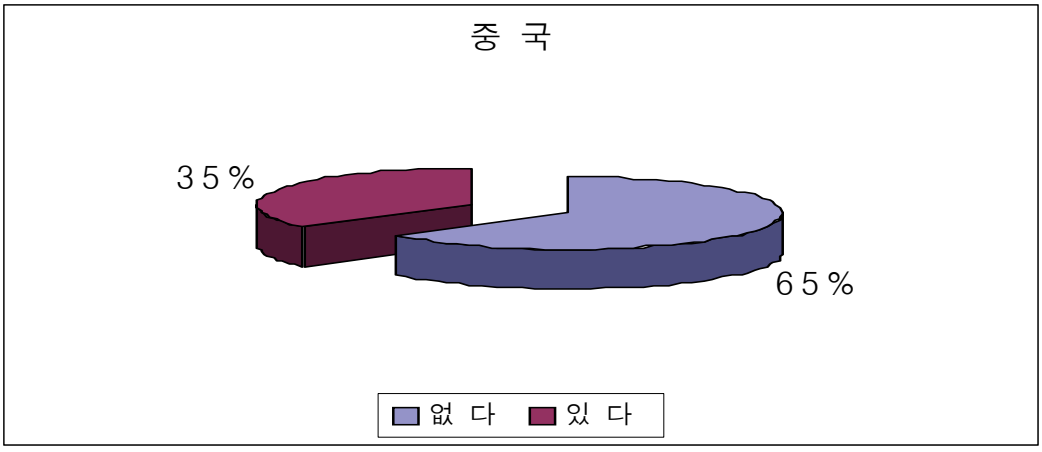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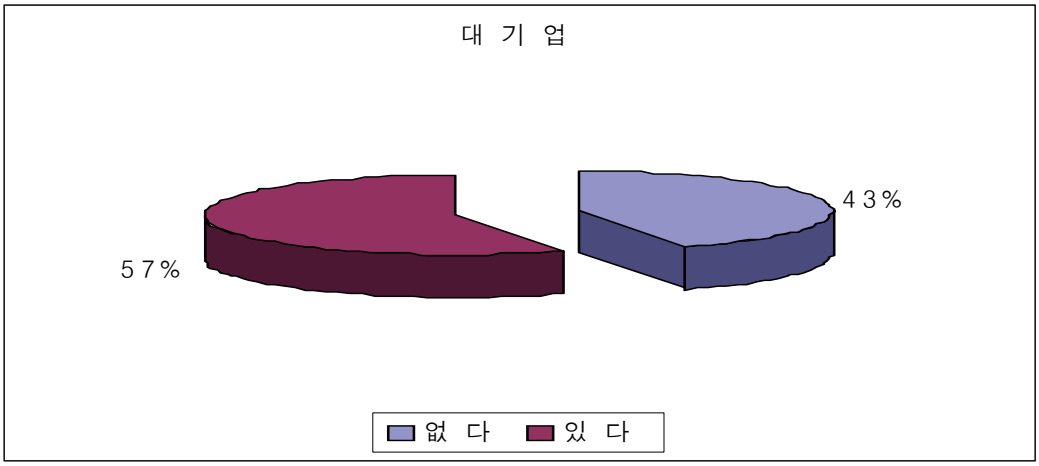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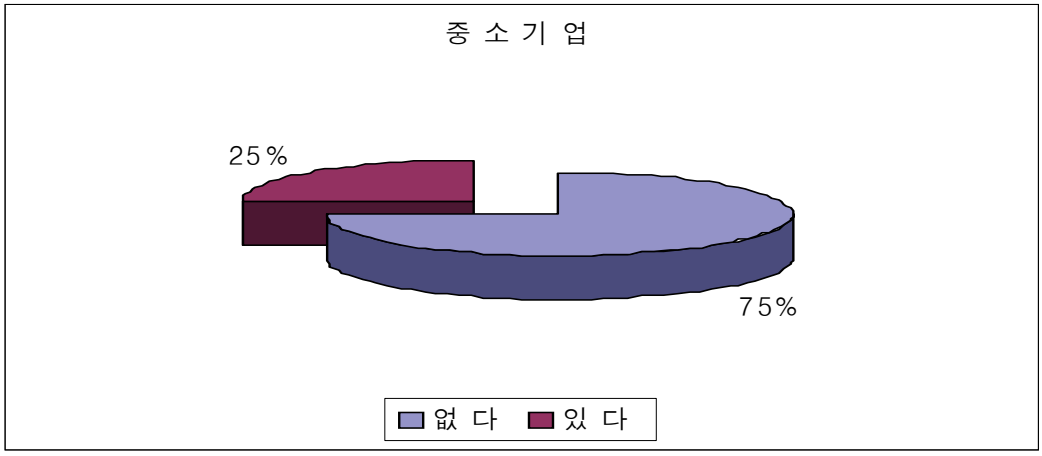

(3-1)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은?

o 응답기업

⇒ 대기업 61개사, 중소기업 93개사 등 총 154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154	61	93	대기업20/중소기업27
100	39.6	60.4	

o 지역별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

⇒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현황을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119개사(55.9%), 특허·실용신안 50개사(23.5%), 디자인 41개사(19.2%)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이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건수는 특허·실용신안 18건(50.0%), 상표 11건(30.6%), 디자인 6건(16.7%) 순인 반면,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이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건수는 상표 108건(61.0%), 디자인 35건(19.8%), 특허·실용신안이 32건(18.1%)으로 응답하여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특허·실용신안을 중시하고,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상표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기타	합계
국내		11	6	18	1	36
		30.6	16.7	50.0	2.8	100
중국	광조우	8	2	4	0	14
		57.1	14.3	28.6	0.0	100
	베이징	32	11	13	0	56
		57.1	19.6	23.2	0.0	100
	상하이	38	13	13	1	65
		58.5	20.0	20.0	1.5	100
	칭다오	21	7	1	1	30
		70.0	23.3	3.3	3.3	100
	션양·다렌	9	2	1	0	12
		75.0	16.7	8.3	0.0	100
	소계	108	35	32	2	177
		61.0	19.8	18.1	1.1	100
전체		119	41	50	3	213
		55.9	19.2	23.5	1.4	100

o 기업규모별 출원 또는 등록건수

⇒ 대기업이 상표(56건), 디자인(20건), 특허・실용신안(13건) 순으로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상표(63건), 특허・실용신안(37건), 디자인(21건) 순으로 출원 또는 등록하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상표나 디자인보다 특허・실용신안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자기 제품의 브랜드화에서 뒤떨어져 있음을 반영

<기업규모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건수>

(단위 : 개사, %)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기타	합계
대기업	56	20	13	1	90
	62.2	22.2	14.4	1.1	100
중소기업	63	21	37	2	123
	51.2	17.1	30.1	1.6	100
전체	119	41	50	3	213
	55.9	19.2	23.5	1.4	100

o 업종별 출원 또는 등록건수

⇒ 모든 업종에서 상표를 중시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송기계 업종에서는 상표보다 특허・실용신안을 더 중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비중은 낮았으나, 문방구·잡화 분야만은 상대적으로 디자인 등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업종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건수>

(단위 : 개사, %)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기타	합계
기계	10	4	7	1	22
	45.5	18.2	31.8	4.5	100
전기·전자	21	8	14	1	44
	47.7	18.2	31.8	2.3	100
자동차·운송기계	4	2	7	0	13
	30.8	15.4	53.8	0.0	100
문방구·잡화	6	4	2	0	12
	50.0	33.3	16.7	0.0	100
섬유·의복·신발	13	4	4	0	21
	61.9	19.0	19.0	0.0	100
식품·음료·주류	11	3	2	1	17
	64.7	17.6	11.8	5.9	100
석유화학	17	6	5	0	28
	60.7	21.4	17.9	0.0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5	2	4	0	11
	45.5	18.2	36.4	0.0	100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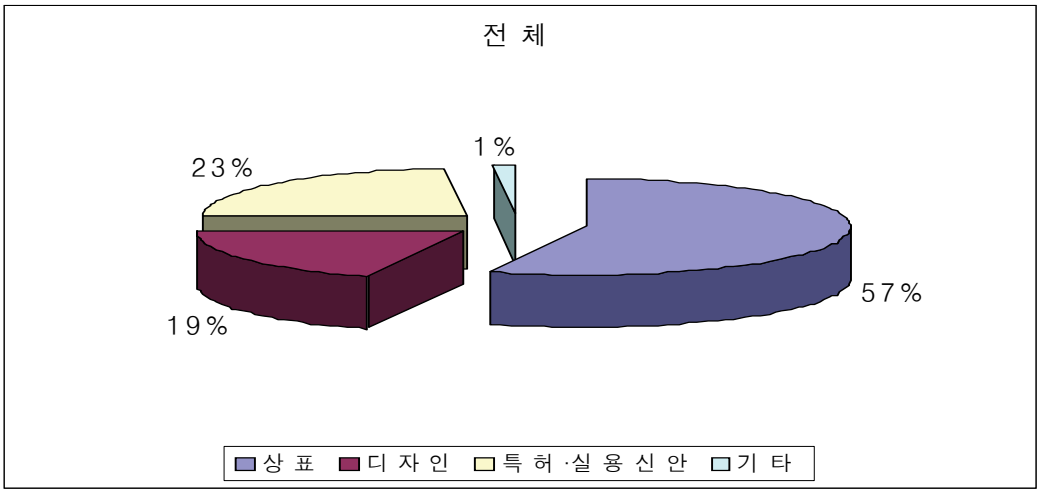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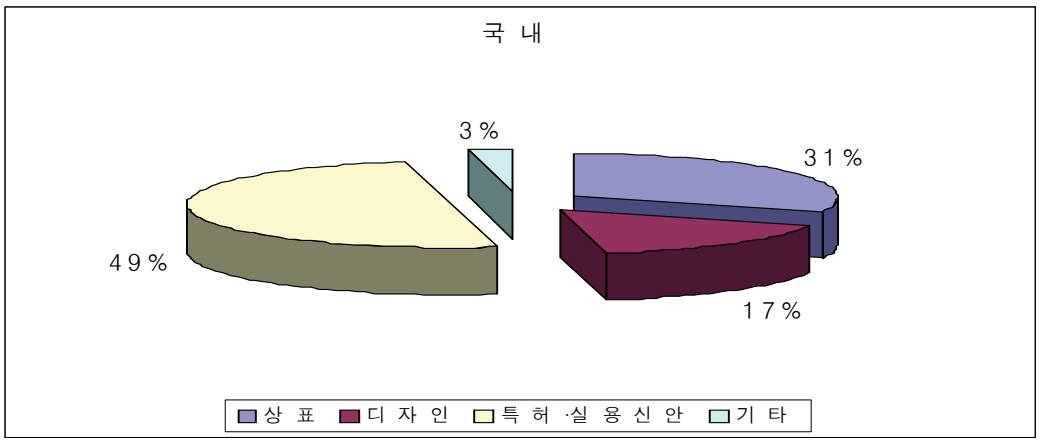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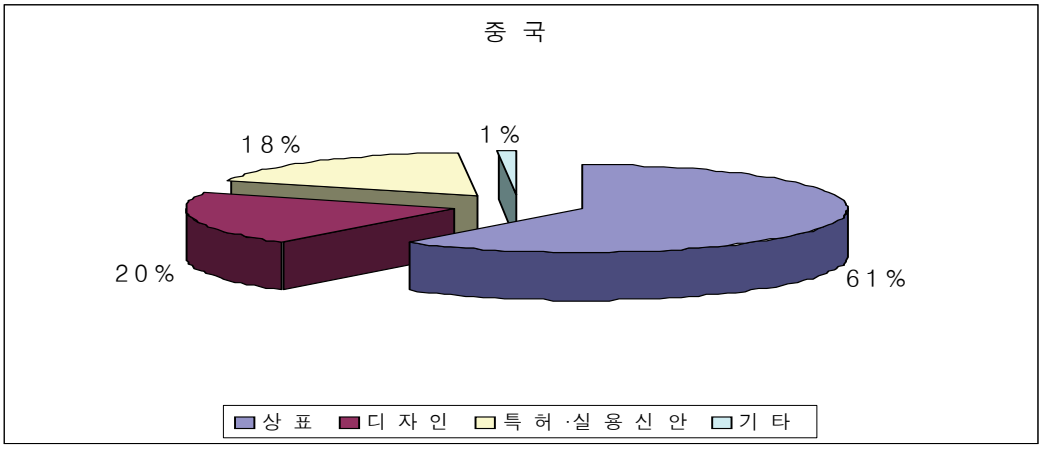

(3-2) 출원 또는 등록시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로는?

o 응답기업

⇒ 대기업 56개사, 중소기업 90개사 등 총 146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복수응답이 16개사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146	56	90	대기업7/중소기업9
100	22.8	77.2	

o 지역별 출원 또는 등록시의 정보획득 경로

⇒ 우리 기업들은 중국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때 주로 국내·외의 변리사나 변호사 등 지재권 전문가(62.2%)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특허청(15.9%)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중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의 해외 공관(2.4%)이나 KOTRA 현지 무역관(1.2%)의 역할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우리 기업들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회사 내부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확보율(14%)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이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할 때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대부분 국내의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41.7%)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일부는 중국 현지의 전문가(29.2%)로부터도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사자체의 전문가 확보율은 12.5%에 불과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중국 현지의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43.6%), 국내의 전문가(17.1%) 및 특허청 등 국내의 지재권 전문기관(16.4%) 순으로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로>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대사관등 우리공관	KOTRA 현지 무역관	국내의 지재권 전문가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가	회사 자체의 전문가	기타	합계
국내		3	0	0	10	7	3	1	24
		12.5	0.0	0.0	41.7	29.2	12.5	4.2	100
중국	광조우	2	0	0	1	6	2	1	12
		16.7	0.0	0.0	8.3	50.0	16.7	8.3	100
	베이징	7	2	0	8	19	3	1	40
		17.5	5.0	0.0	20.0	47.5	7.5	2.5	100
	상하이	11	0	0	10	18	10	1	50
		22.0	0.0	0.0	20.0	36.0	20.0	2.0	100
	칭다오	3	2	2	4	12	2	2	27
		11.1	7.4	7.4	14.8	44.4	7.4	7.4	100
	션양·다롄	0	0	0	1	6	3	1	11
		0.0	0.0	0.0	9.1	54.5	27.3	9.1	100
	소계	23	4	2	24	61	20	6	140
		16.4	2.9	1.4	17.1	43.6	14.3	4.3	100
전체		26	4	2	34	68	23	7	164
		15.9	2.4	1.2	20.7	41.5	14.0	4.3	100

o 기업규모별 출원 또는 등록시의 정보취득 경로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국내의 지재권 전문가 보다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기업규모별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로>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대사관등 우리공관	KOTRA 현지 무역관	국내의 지재권 전문가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가	회사 자체의 전문가	기타	합계
대기업	7	2	0	14	24	14	4	65
	10.8	3.1	0.0	21.5	36.9	21.5	6.2	100
중소기업	19	2	2	20	44	9	3	99
	19.2	2.0	2.0	20.2	44.4	9.1	3.0	100
전체	26	4	2	34	68	23	7	164
	15.9	2.4	1.2	20.7	41.5	14.0	4.3	100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이 19.2%에 이르는 반면, 자체 인력은 9.1%에 머물러 대기업의 10.8% 및 21.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일수록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o 업종별 출원 또는 등록시의 정보취득 경로

⇒ 모든 업종에서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가와 국내의 지재권 전문가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특히 문방구·잡화 업종의 경우 대부분(75.0%)이 중국 현지의 전문가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있음

<업종별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로>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대사관 등 우리공관	KOTRA 현지 무역관	국내의 지재권 전문가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가	회사 자체의 전문가	기타	합계
기계	3	0	0	7	7	2	2	21
	14.3	0.0	0.0	33.3	33.3	9.5	9.5	100
전기·전자	8	2	0	5	13	6	0	34
	23.5	5.9	0.0	14.7	38.2	17.6	0.0	100
자동차·운송기계	2	0	0	1	3	0	1	7
	28.6	0.0	0.0	14.3	42.9	0.0	14.3	100
문방구·잡화	0	0	0	1	6	1	0	8
	0.0	0.0	0.0	12.5	75.0	12.5	0.0	100
섬유·의복·신발	3	0	0	3	9	2	0	17
	17.6	0.0	0.0	17.6	52.9	11.8	0.0	100
식품·음료·주류	2	0	1	2	5	2	1	13
	15.4	0.0	7.7	15.4	38.5	15.4	7.7	100
석유화학	1	1	1	8	8	3	0	22
	4.5	4.5	4.5	36.4	36.4	13.6	0.0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3	0	0	1	5	0	0	9
	33.3	0.0	0.0	11.1	55.6	0.0	0.0	100

<출원 또는 등록관련 정보 취득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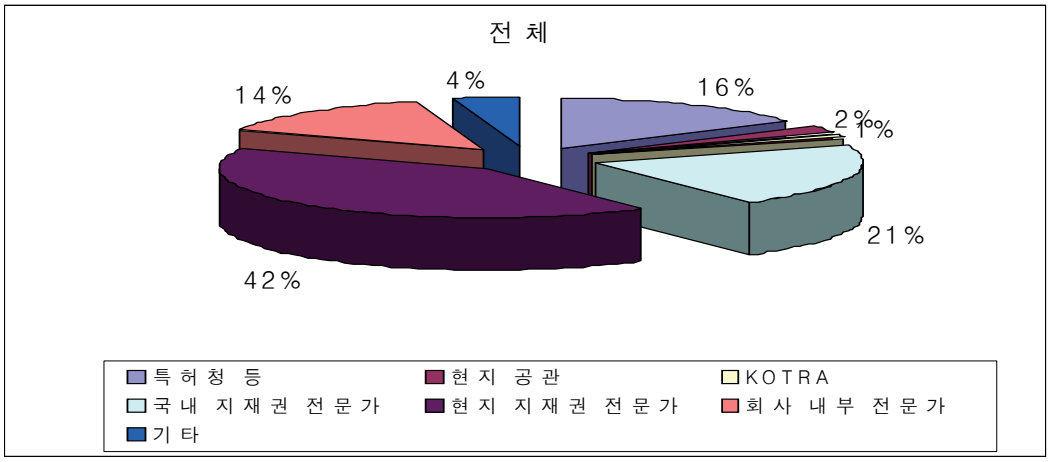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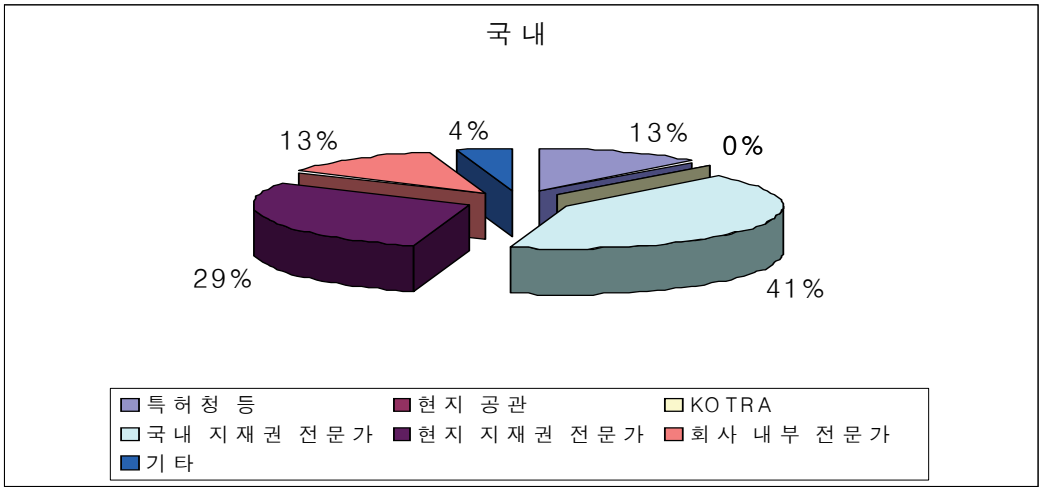
국 내
13%
4%
13%
0%
29%
41%
특허청 등
현지 공관
KOTRA
국내 지재권 전문가
현지 지재권 전문가
회사 내부 전문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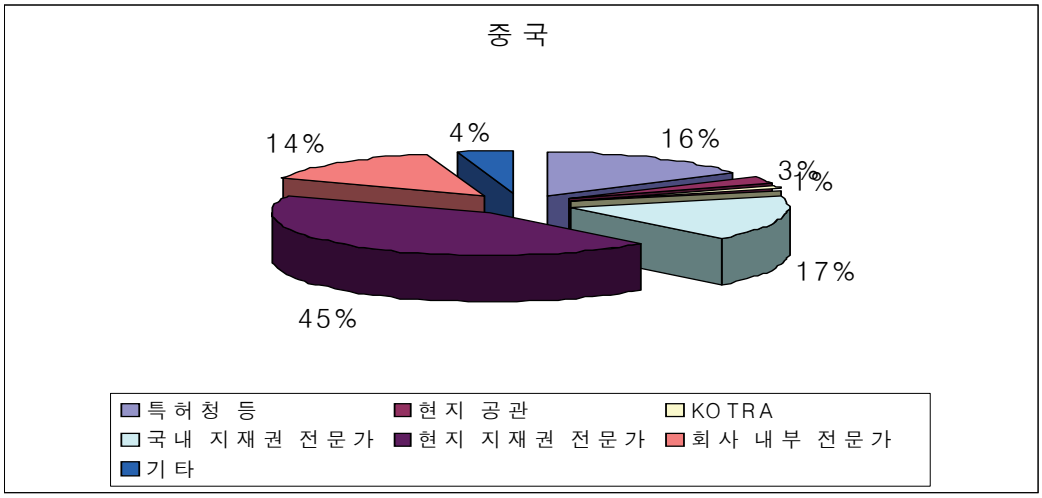
중 국
14%
4%
16%
3%
1%
17%
45%
특허청 등
현지 공관
KOTRA
국내 지재권 전문가
현지 지재권 전문가
회사 내부 전문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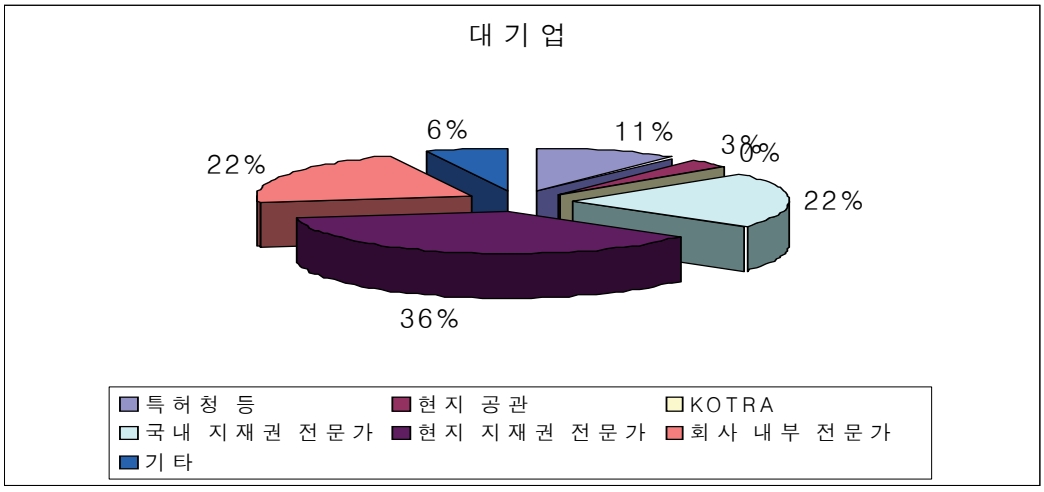
대 기 업
6%
11%
3%
0%
22%
22%
36%
특허청 등
현지 공관
KOTRA
국내 지재권 전문가
현지 지재권 전문가
회사 내부 전문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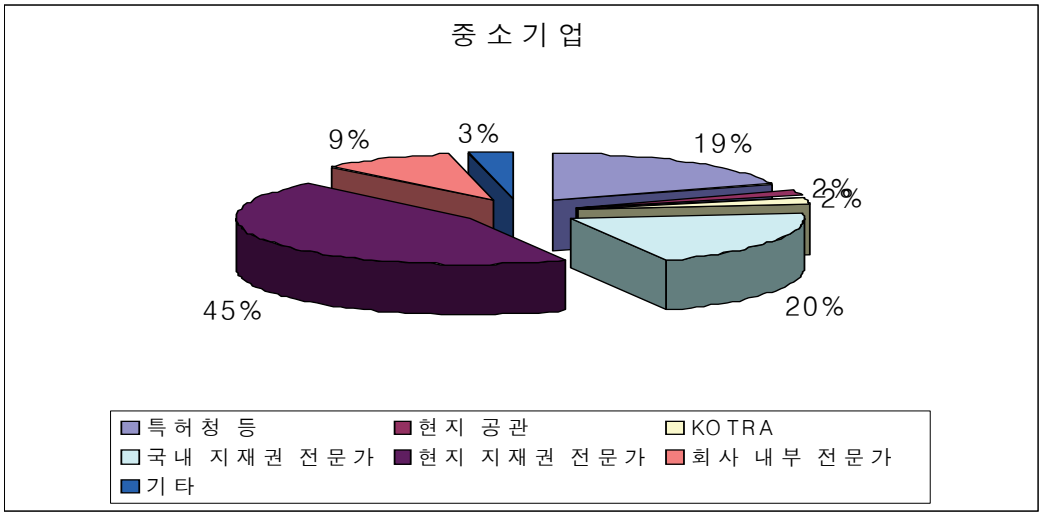

(4)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다면, 그 이유는?

o 응답기업

⇒ 대기업 43개사, 중소기업 258개사 등 총 301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복수응답이 8개사 있었음

<표 2-1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301	43	258	중소기업8
100	14.3	85.7	

o 지역별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없는 이유

⇒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과반수가 넘는 53.1%가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없거나 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대 중국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출원·등록을 위한 절차의 어려움이나 소요 비용을

이유로 든 경우는 9%와 8%로 낮았음

⇒ 구체적으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53.4%인 반면, 출원·등록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는 단지 5.0%에 불과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역시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52.8%인 반면, 출원·등록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는 단지 8.7%에 불과

<지역별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는 이유>

(단위 : 개사, %)

구분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출원·등록하고 싶지만 구체적 절차를 몰라서	출원·등록효과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서	중국의 제도에 신뢰성이 없어 등록 후 권리유지 불확실	기타	합계
국내		18	25	4	9	15	9	80
		22.5	31.3	5.0	11.3	18.8	11.3	100
중국	광저우	22	7	4	6	9	5	53
		41.5	13.2	7.5	11.3	17.0	9.4	100
	베이징	5	6	2	2	3	8	26
		19.2	23.1	7.7	7.7	11.5	30.8	100
	상하이	12	14	9	6	9	15	65
		18.5	21.5	13.8	9.2	13.8	23.1	100
	칭다오	21	18	3	3	3	8	56
		37.5	32.1	5.4	5.4	5.4	14.3	100
	션양·다롄	4	12	2	2	3	6	29
		13.8	41.4	6.9	6.9	10.3	20.7	100
	소계	64	57	20	19	27	42	229
		27.9	24.9	8.7	8.3	11.8	18.3	100
전체		82	82	24	28	42	51	309
		26.5	26.5	7.8	9.1	13.6	16.5	100

o 기업규모별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없는 이유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없거나 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지만, 중국제도에 대한 불신은 대기업이 7.0%인 반면, 중소기업은 14.7%로 중소기업이 중국정부에 대하여 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규모별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는 이유>

(단위 : 개사, %)

구분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출원·등록하고 싶지만 구체적 절차를 몰라서	출원·등록 효과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서	중국의 제도에 신뢰성이 없어 등록 후 권리유지 불확실	기타	합계
대기업	9	13	1	3	3	14	43
	20.9	30.2	2.3	7.0	7.0	32.6	100
중소기업	73	69	23	25	39	37	266
	27.4	25.9	8.6	9.4	14.7	13.9	100
전체	82	82	24	28	42	51	309
	26.5	26.5	7.8	9.1	13.6	16.5	100

o 업종별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없는 이유

⇒ 모든 업종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계・전기・전자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업종은 출원・등록의 효과에 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응답도 10% 이상 조사되었음

<업종별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는 이유>

(단위 : 개사, %)

구분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출원·등록하고 싶지만 구체적 절차를 몰라서	출원·등록 효과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서	중국의 제도에 신뢰성이 없어 등록 후 권리유지 불확실	기타	합계
기계	9	11	5	8	10	3	46
	19.6	23.9	10.9	17.4	21.7	6.5	100
전기·전자	15	13	4	8	14	12	66
	22.7	19.7	6.1	12.1	21.2	18.2	100
자동차·운송기계	2	2	1	0	0	2	7
	28.6	28.6	14.3	0.0	0.0	28.6	100
문방구·잡화	13	8	1	1	4	0	27
	48.1	29.6	3.7	3.7	14.8	0.0	100
섬유·의복·신발	15	16	4	2	6	9	52
	28.8	30.8	7.7	3.8	11.5	17.3	100
식품·음료·주류	3	3	0	0	1	4	11
	27.3	27.3	0.0	0.0	9.1	36.4	100
석유화학	10	9	2	1	2	5	29
	34.5	31.0	6.9	3.4	6.9	17.2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4	1	2	2	1	4	14
	28.6	7.1	14.3	14.3	7.1	28.6	100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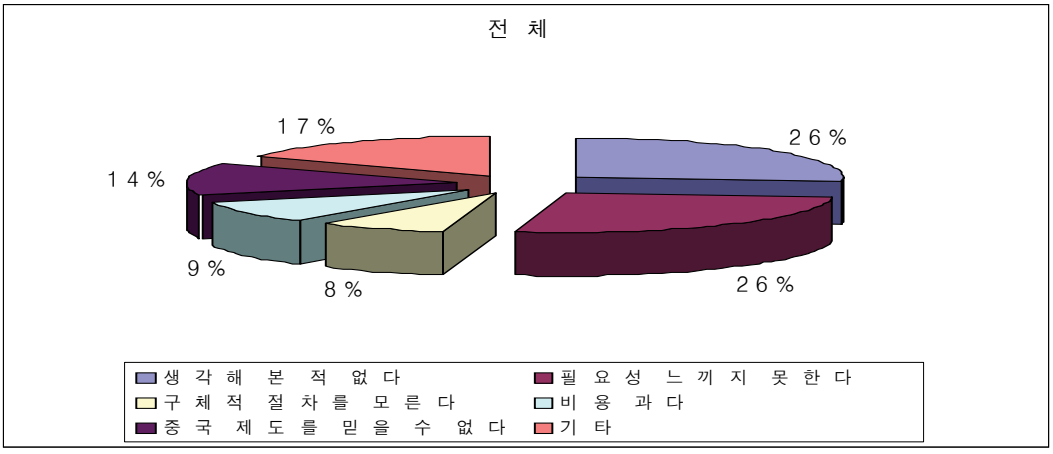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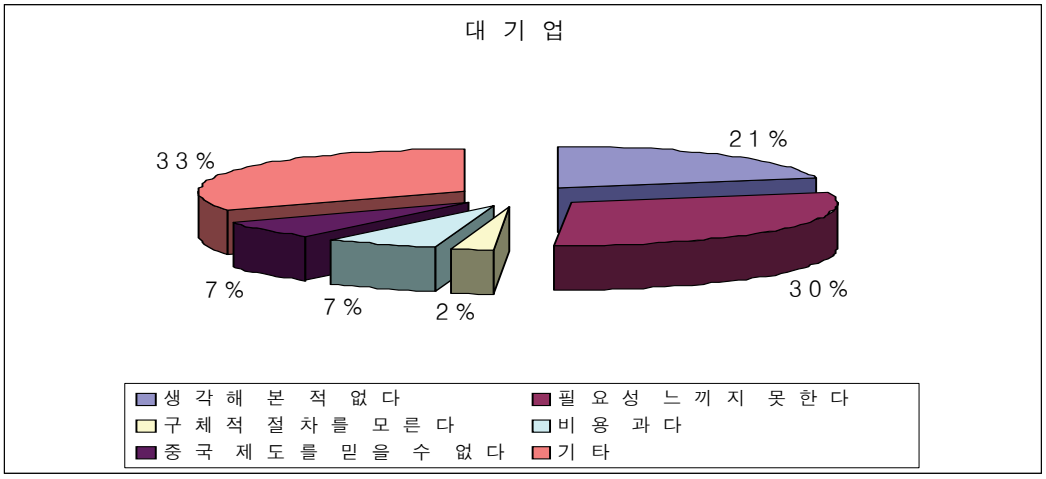
대 기 업
33%
21%
7%
7%
2%
30%
생각해 본 적 없다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
구체적 절차를 모른다
비용 과다
중국 제도를 믿을 수 없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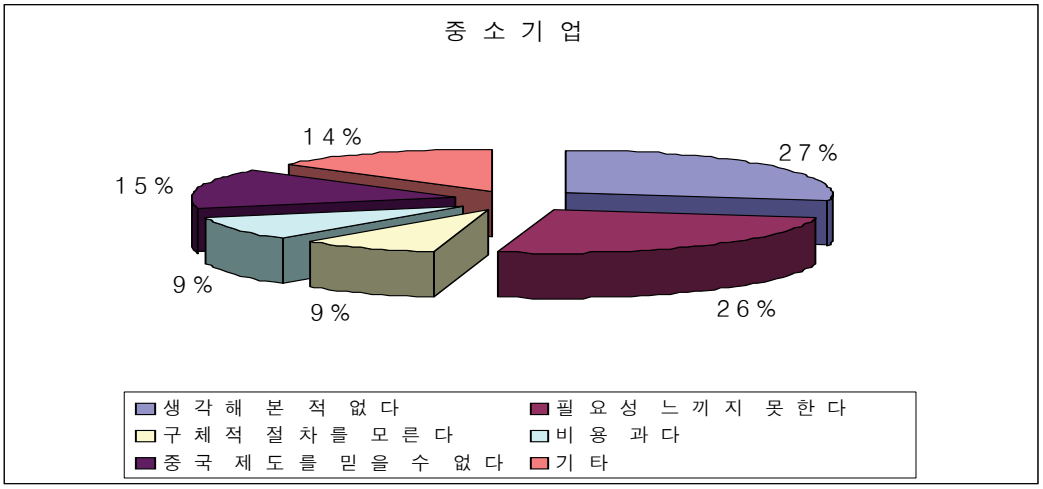
중 소 기 업
14%
27%
15%
9%
9%
26%
생각해 본 적 없다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
구체적 절차를 모른다
비용 과다
중국 제도를 믿을 수 없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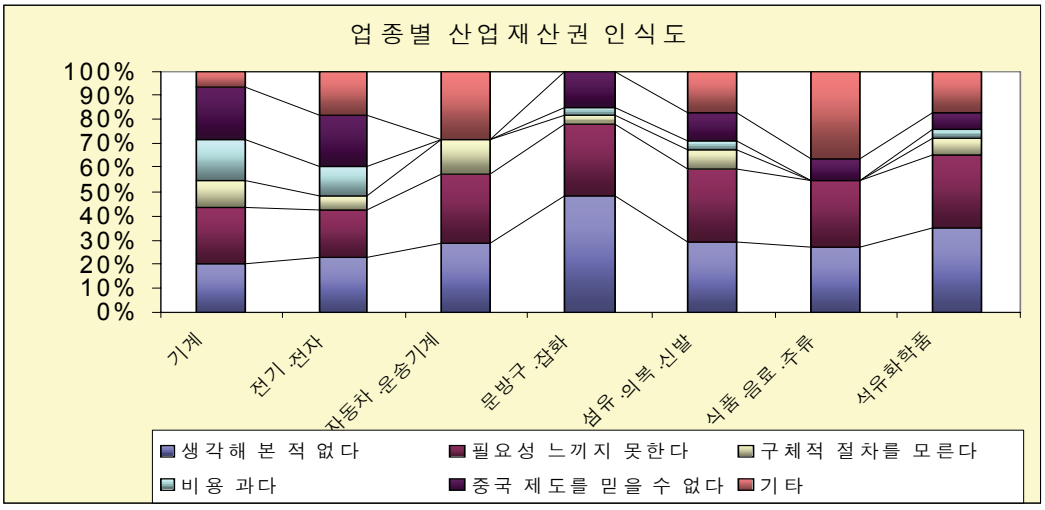
업종별 산업재산권 인식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운송기계
문방구.잡화
섬유.의복.신발
식품.음료.주류
석유화학품
생각해 본 적 없다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
구체적 절차를 모른다
비용 과다
중국 제도를 믿을 수 없다
기타

(5) 귀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기업이 침해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o 응답기업

⇒ 대기업 104개사, 중소기업 348개사 등 총 452개 기업이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452	104	348
100	23.0	77.0

o 지역별 침해 또는 분쟁발생 경험

⇒ 전체 응답기업 452개 업체 가운데 18.8%인 85개 기업이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이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기업이 침해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4.3%인 반면, 없다는 응답은 85.7%를 차지하였음.

⇒ 그리고,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20.2%가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기업이 침해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는 반면, 79.8%가 침해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어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들을 중국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베이징 지역에 소재한 응답기업 67개사 중 26개사가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칭다오나 션양·다롄, 광저우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침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 침해 또는 분쟁발생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국내		90	15	105
		85.7	14.3	100
중국	광저우	53	9	62
		85.5	14.5	100
	베이징	41	26	67
		61.2	38.8	100
	상하이	74	22	96
		77.1	22.9	100
	칭다오	73	9	82
		89.0	11.0	100
	션양・다롄	36	4	40
		90.0	10.0	100
	소계	277	70	347
		79.8	20.2	100
전체		367	85	452
		81.2	18.8	100

o 기업규모별 침해 또는 분쟁발생 경험

⇒ 대기업은 104개 응답기업 중 31개(29.8%) 기업이 침해 또는 분쟁을 경험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348개 중 54개(15.5%) 기업이 침해 또는 분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침해 받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설문 5-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침해는 주로 수요자에게 일정 정도 알려진 상표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사 제품의 브랜드화 분야에서 대기업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기업규모별 중국인 또는 중국현지기업의 침해 또는 분쟁발생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대기업	73	31	104
	70.2	29.8	100
중소기업	294	54	348
	84.5	15.5	100
전체	367	85	452
	81.2	18.8	100

o 업종별 침해 또는 분쟁발생 경험

⇒ 중국에서 가장 많이 침해 또는 분쟁이 발생한 업종은 자동차·운송기계 업종(43.8%)이고, 그 다음으로 식품·음료·주류 업종(30.4%)인 반면, 산업재산권 침해 또는 분쟁이 가장 적게 발생한 업종은 기계(13.3%)와 섬유·의복·신발(11.9%) 업종이었음

<업종별 중국인 또는 중국현지기업의 침해 또는 분쟁발생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기계	52	8	60
	86.7	13.3	100
전기·전자	79	23	102
	77.5	22.5	100
자동차·운송기계	9	7	16
	56.3	43.8	100
문방구·잡화	28	6	34
	82.4	17.6	100
섬유·의복·신발	59	8	67
	88.1	11.9	100
식품·음료·주류	16	7	23
	69.6	30.4	100
석유화학	44	8	52
	84.6	15.4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19	3	22
	86.4	1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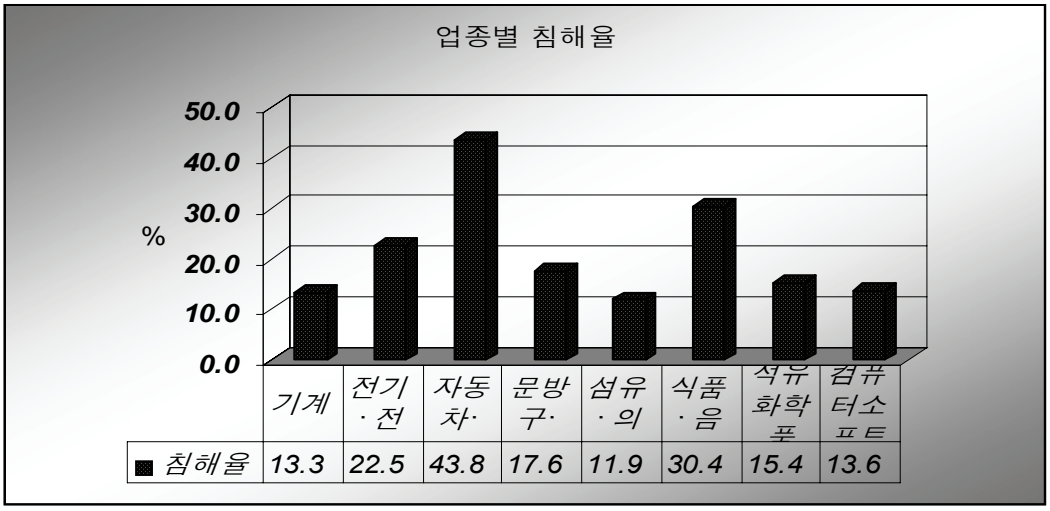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기업의 침해 또는 분쟁발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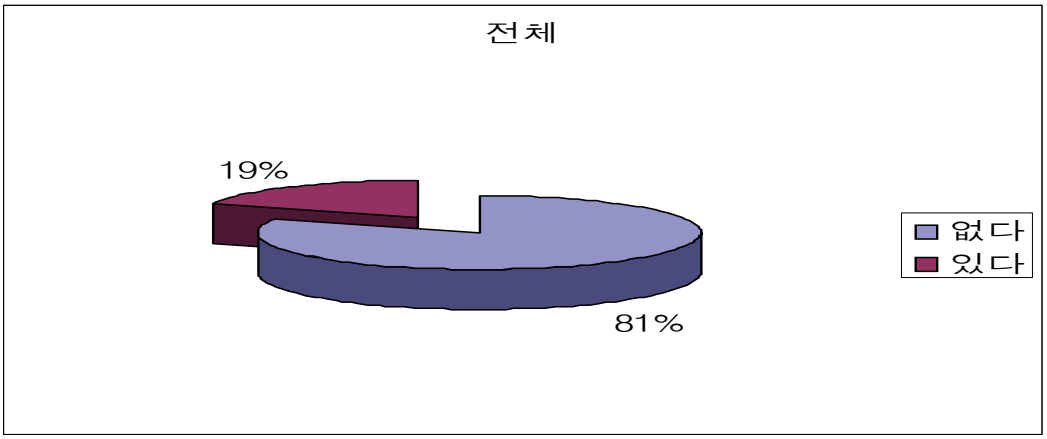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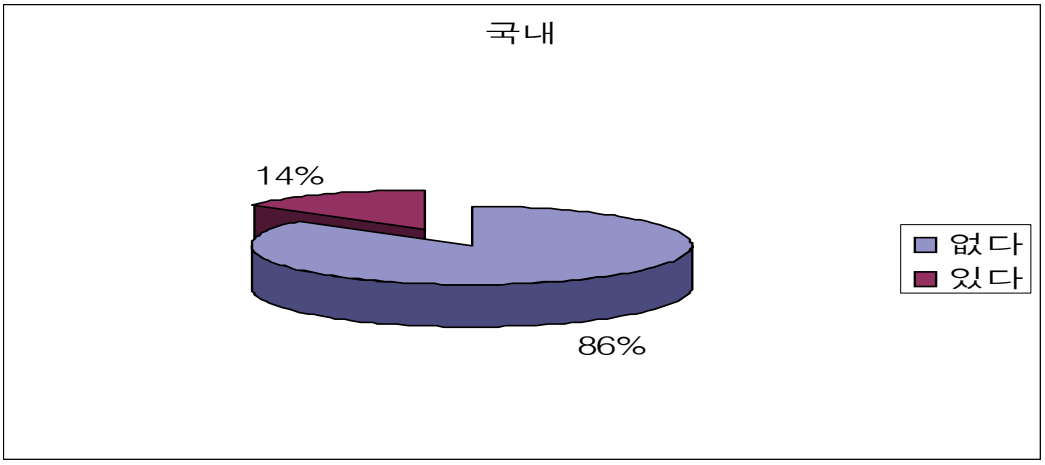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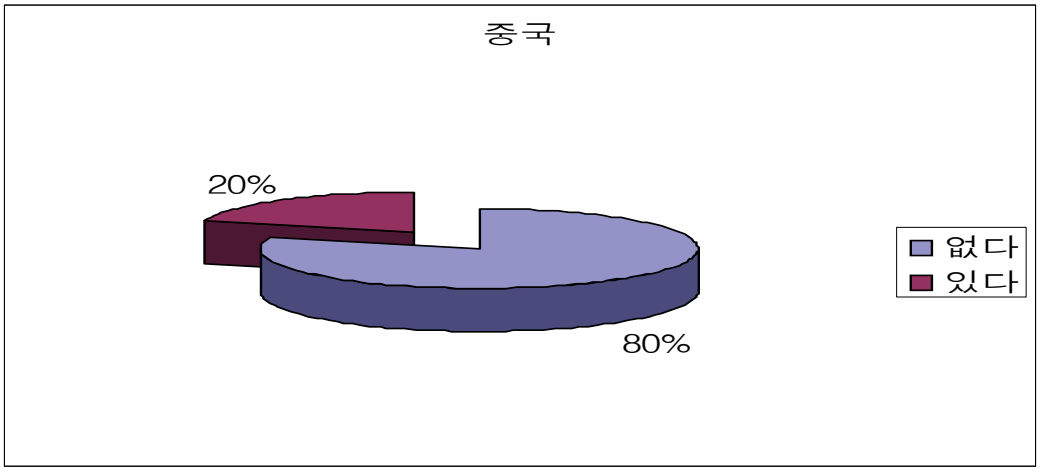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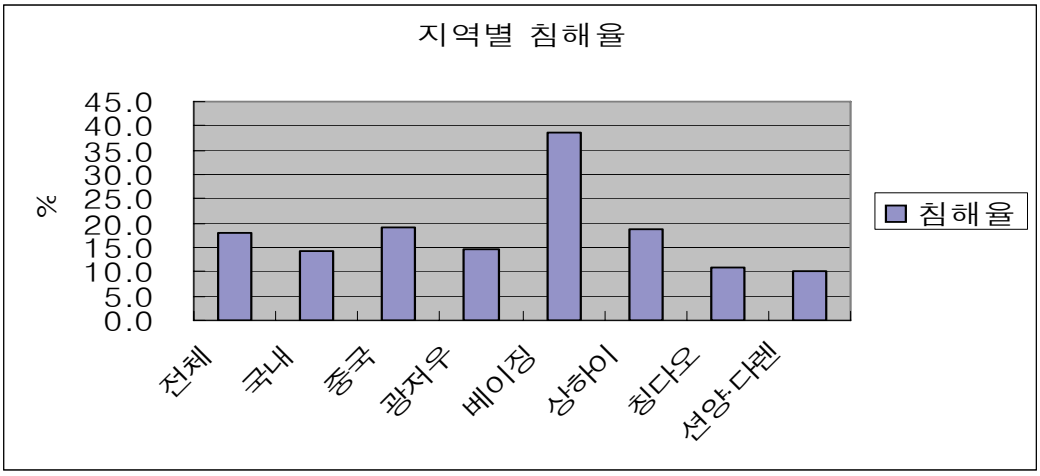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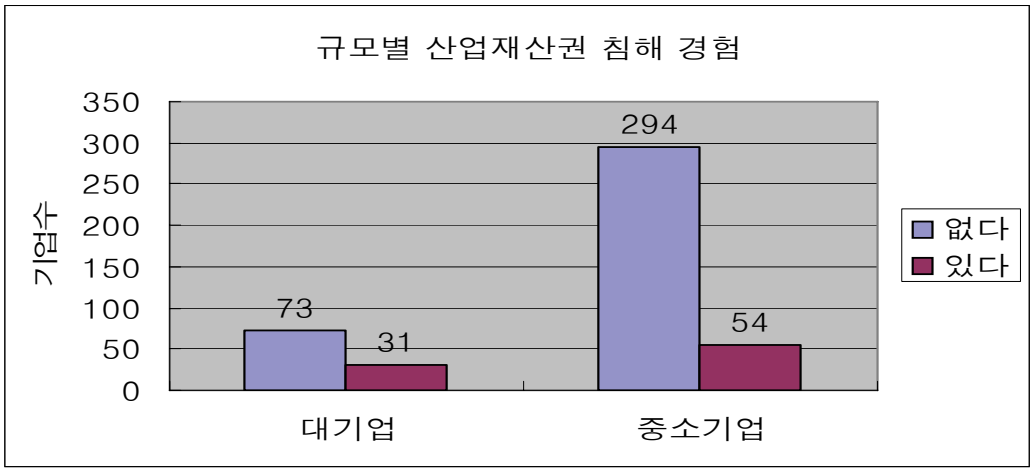

(5-1)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는?

o 응답기업

⇒ 대기업 27개사, 중소기업 48개사 등 총 75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75	27	48
100	36.0	64.0

o 지역별 최초 침해발생연도

⇒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5개사 가운데 75개사가 침해 발생시기를 묻는 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침해가 “2000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는 2001년부터 해마다 양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의 중국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침해발생은 2002년과 2003년에 많이 발생한 반면,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2001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

(단위 : 개사, %)

구분		2000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국내		3	1	3	4	1	2	1	15
		20.0	6.7	20.0	26.7	6.7	13.3	6.7	100
중국	광저우	0	1	0	0	3	3	1	8
		0.0	12.5	0.0	0.0	37.5	37.5	12.5	100
	베이징	3	2	3	3	5	6	1	23
		13.0	8.7	13.0	13.0	21.7	26.1	4.3	100
	상하이	5	0	0	3	4	6	1	19
		26.3	0.0	0.0	15.8	21.1	31.6	5.3	100
	칭다오	0	0	1	3	0	2	0	6
		0.0	0.0	16.7	50.0	0.0	33.3	0.0	100
	션양・다롄	2	0	2	0	0	0	0	4
		50.0	0.0	50.0	0.0	0.0	0.0	0.0	100
	소계	10	3	6	9	12	17	3	60
		16.7	5.0	10.0	15.0	20.0	28.3	5.0	100
전체		13	4	9	13	13	19	4	75
		17.3	5.3	12.0	17.3	17.3	25.3	5.3	100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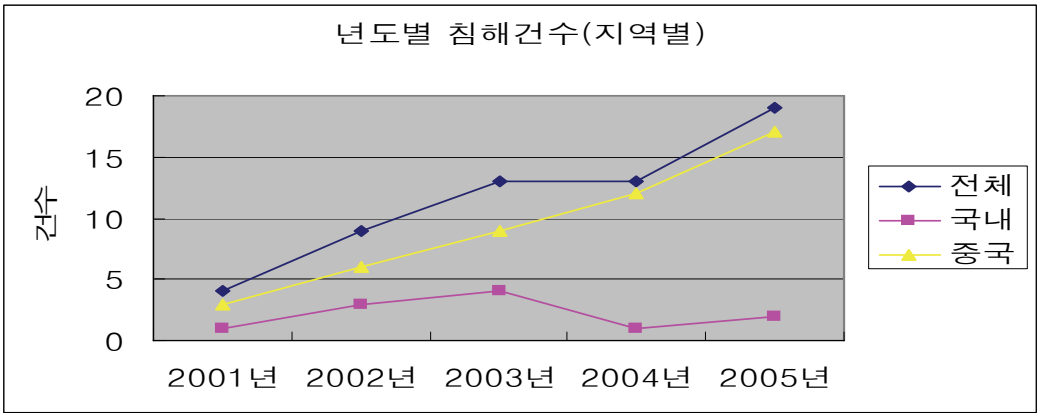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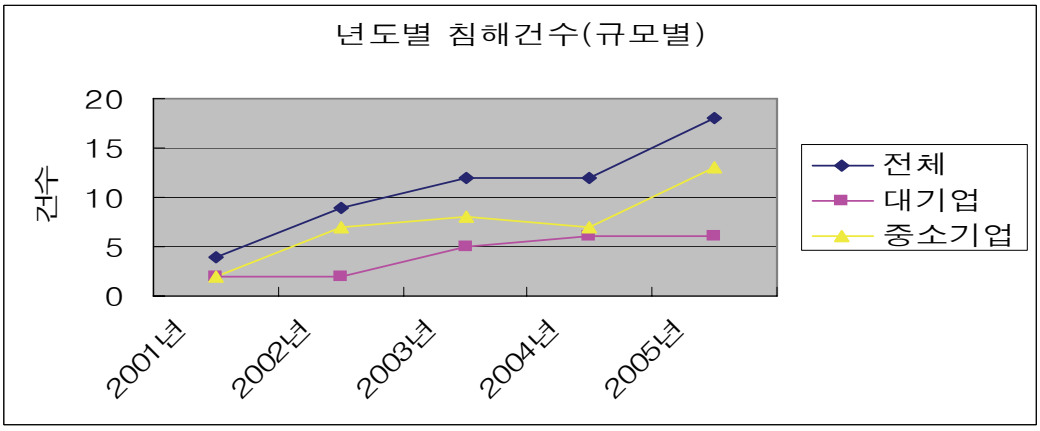

o 기업규모별 최초 침해발생연도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01년부터 침해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기업규모별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

(단위 : 개사, %)

구분	2000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대기업	6	2	2	5	6	6	0	27
	22.2	7.4	7.4	18.5	22.2	22.2	0.0	100
중소기업	7	2	7	8	7	13	4	48
	14.6	4.2	14.6	16.7	14.6	27.1	8.3	100
전체	13	4	9	13	13	19	4	75
	17.3	5.3	12.0	17.3	17.3	25.3	5.3	100

o 업종별 최초 침해발생연도

⇒ 업종별 침해 건수의 증가 추세는 업종별 응답수가 적어 의미 있는 추세를 분석이 곤란하지만, 기계 업종은 2004년에 가장 많이 침해가 발생(37.5%)했고, 자동차·운송기계 업종(57.1%)과 컴퓨터소프트웨어(66.7%)은 2005년에 가장 많은 침해가 발생하였음

<업종별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

(단위 : 개사, %)

구분	2000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기계	2	0	0	1	3	1	1	8
	25.0	0.0	0.0	12.5	37.5	12.5	12.5	100
전기·전자	1	1	2	4	3	5	1	17
	5.9	5.9	11.8	23.5	17.5	29.4	5.9	100
자동차·운송기계	1	0	1	0	1	4	0	7
	14.3	0.0	14.3	0.0	14.3	57.1	0.0	100
문방구·잡화	0	1	1	1	0	2	0	5
	0.0	20.0	20.0	20.0	0.0	40.0	0.0	100
섬유·의복·신발	2	0	0	1	1	2	0	6
	33.3	0.0	0.0	16.7	16.7	33.3	0.0	100
식품·음료·주류	1	2	0	2	1	1	0	7
	14.3	28.6	0.0	28.6	14.3	14.3	0.0	100
석유화학	1	0	2	2	1	2	0	8
	12.5	0.0	25.0	25.0	12.5	25.0	0.0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0	0	0	0	1	2	0	3
	0.0	0.0	0.0	0.0	33.3	66.7	0.0	100

(5-2) 침해받은 권리는?

o 응답기업

⇒ 대기업 30개사, 중소기업 51개사 등 총 81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복수응답이 대기업 9개사, 중소기업 14개사가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81	30	51	대기업9/중소기업14
100	37.0	63.0	

o 지역별 침해받은 권리

⇒ 어떤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복수응답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침해가 가장 많은 순서로 나열하면, 상표 > 디자인 > 특허·실용신안의 순이었음

⇒ 지역적으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침해응답이 36.4%, 상표권에 대한 침해응답이 18.2%인 반면,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경우는 상표권 침해응답이 44.3%, 특허·실용신안 침해응답 12.5%로 조사되었음

<지역별 침해받은 권리>

(단위: 개사, %)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인터넷도메인	기타	합계
국내		4	6	8	1	0	1	2	22
		18.2	27.3	36.4	4.5	0.0	4.5	9.1	100
중국	광저우	3	1	5	0	0	0	1	10
		30.0	10.0	50.0	0.0	0.0	0.0	10.0	100
	베이징	16	13	4	3	2	0	1	39
		41.0	33.3	10.3	7.7	5.1	0.0	2.6	100
	상하이	12	7	2	1	1	1	3	27
		44.4	25.9	7.4	3.7	3.7	3.7	11.1	100
	칭다오	4	1	0	0	0	1	1	7
		57.1	14.3	0.0	0.0	0.0	14.3	14.3	100
	션양·다롄	4	1	0	0	0	0	0	5
		80.0	20.0	0.0	0.0	0.0	0.0	0.0	100
	소계	39	23	11	4	3	2	6	88
		44.3	26.1	12.5	4.5	3.4	2.3	6.8	100
전체		43	29	19	5	3	3	8	110
		39.1	26.4	17.3	4.5	2.7	2.7	7.3	100

o 기업규모별 침해받은 권리

⇒ 대기업은 상표 침해응답이 51.2%, 디자인 침해응답 23.3%, 특허・실용신안 침해응답 9.3%인 반면, 중소기업은 상표 침해응답 30.0%, 디자인 침해응답 28.3%, 특허・실용신안 침해응답 21.7%로 상표 및 특허・실용신안 침해응답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업규모별 침해받은 권리>

(단위: 개사, %)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인터넷도메인	기타	합계
대기업	22	10	4	2	1	2	2	43
	51.2	23.3	9.3	4.7	2.3	4.7	4.7	100
중소기업	18	17	13	3	2	1	6	60
	30.0	28.3	21.7	5.0	3.3	1.7	10.0	100
전체	43	29	19	5	3	3	8	110
	39.1	26.4	17.3	4.5	2.7	2.7	7.3	100

o 업종별 침해받은 권리

⇒ 특허·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는 기계(36.4%) 및 자동차·운송기계(27.3%) 업종이 많은 반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전기·전자(37.9%), 섬유·의복·신발(50.0%), 식품·음료·주류(66.7%) 및 석유화학(41.7%) 업종이,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는 문방구·잡화(50.0%) 업종이 침해받았다고 응답

<업종별 침해받은 권리>

(단위: 개사, %)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인터넷도메인	기타	합계
기계	3	3	4	0	0	0	1	11
	27.3	27.3	36.4	0.0	0.0	0.0	9.0	100
전기·전자	11	8	6	0	1	0	3	29
	37.9	27.5	20.7	0.0	3.4	0.0	10.3	100
자동차·운송기계	2	2	3	2	0	1	1	11
	18.1	18.1	27.3	18.1	0.0	9.1	9.1	100
문방구·잡화	1	4	2	1	0	0	0	8
	12.5	50.0	25.0	12.5	0.0	0.0	0.0	100
섬유·의복·신발	4	1	1	1	0	0	1	8
	50.0	12.5	12.5	12.5	0.0	0.0	12.5	100
식품·음료·주류	6	3	0	0	0	0	0	9
	66.7	33.3	0.0	0.0	0.0	0.0	0.0	100
석유화학	5	1	3	1	0	2	0	12
	41.7	8.3	25.0	8.3	0.0	16.7	0.0	100

<침해받은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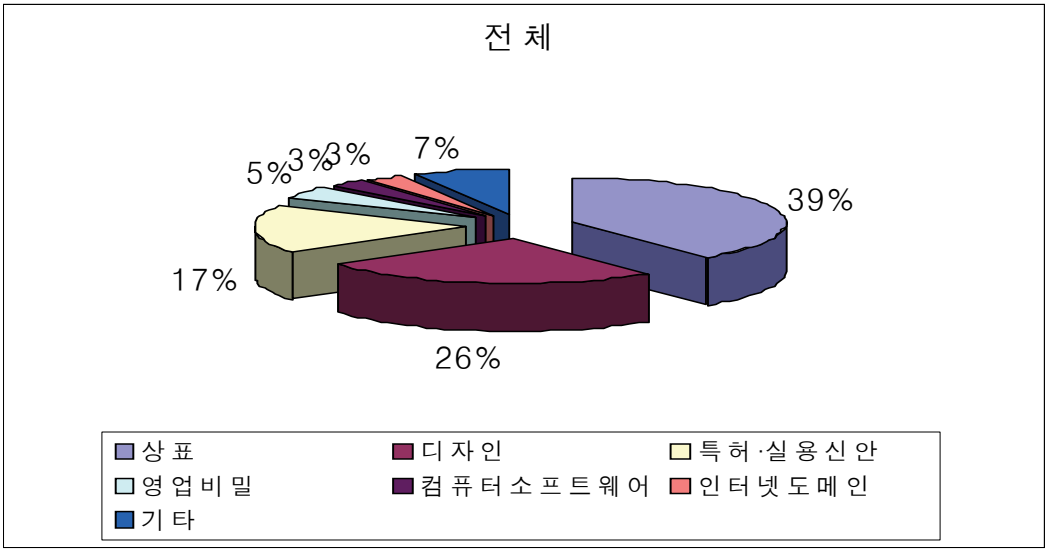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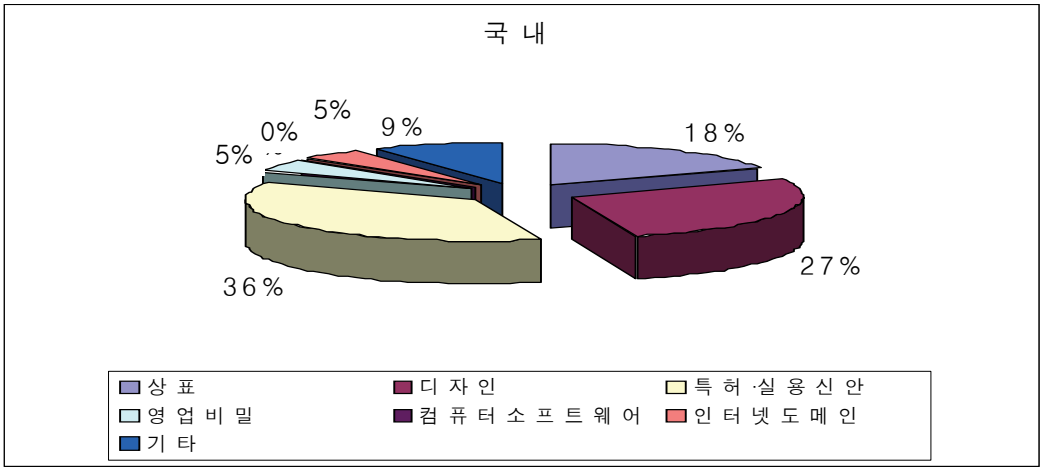
국 내
5%
0%
9%
5%
18%
27%
36%
상 표
디 자 인
특 허 ·실 용 신 안
영 업 비 밀
컴 퓨 터 소 프 트 웨 어
인 터 넷 도 메 인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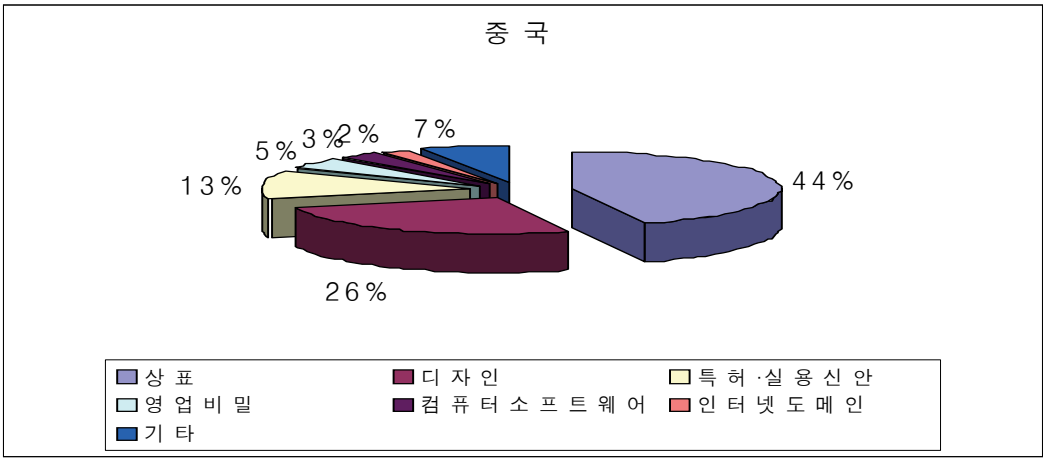
중 국
5%
3%
2%
7%
13%
44%
26%
상 표
디 자 인
특 허 ·실 용 신 안
영 업 비 밀
컴 퓨 터 소 프 트 웨 어
인 터 넷 도 메 인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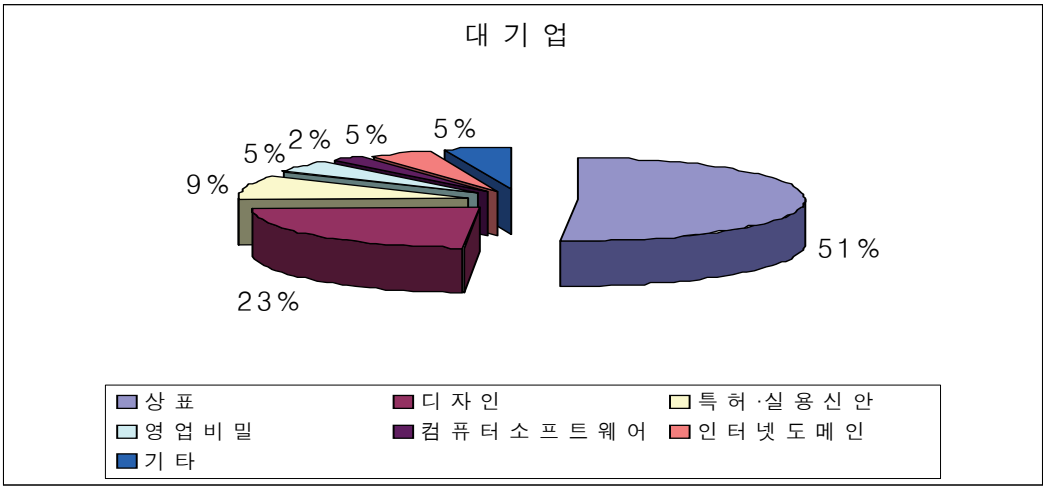
대 기 업
5%
2%
5%
5%
9%
51%
23%
상 표
디 자 인
특 허 ·실 용 신 안
영 업 비 밀
컴 퓨 터 소 프 트 웨 어
인 터 넷 도 메 인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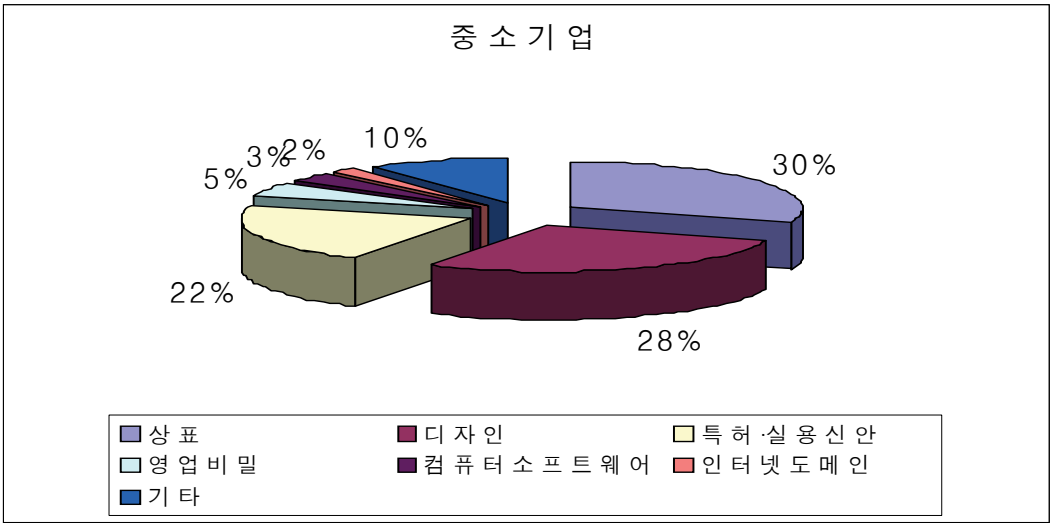

<침해받은 권리와 지역별 출원 또는 등록률과의 관계>

□ 권리별 피침해율과 지역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률(설문 3-1)을 비교하여 보면,

⇒ 상표,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을 비교하면 권리 침해가 많은데도 산업재산권 등록률이 가장 낮은 것은 디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즉, 디자인은 중국에서 상표권 다음으로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권리임에도 우리 기업들의 디자인출원 및 등록률은 19.2%에 불과하여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에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리별 피침해율과 지역별 출원 또는 등록률>

(단위: %)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기타	합계
국내	피침해율	18.2	27.3	36.4	18.0	100
	등록률	30.6	16.7	50.0	2.8	100
중국	피침해율	44.3	26.1	12.5	17.0	100
	등록률	61.0	19.8	18.1	1.1	100
전체	피침해율	39.1	26.4	17.3	17.0	100
	등록률	55.9	19.2	23.5	1.4	100

<침해받은 권리와 기업규모별 출원 또는 등록률과의 관계>

□ 권리별 피침해율과 기업규모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률(설문 3-2)을 비교하여 보면,

⇒ 대기업은 상표등록률(62.2%)과 피침해율(51.2%)이 높고, 디자인은 침해율(23.3%)과 등록률(22.2%)이 비슷한 반면,

⇒ 중소기업은 상표등록률(51.2%)에 비하여 피침해율(30.0%)이 낮으며, 디자인 피침해율(28.3%)은 등록률(17.1%)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 대기업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많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률 역시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디자인에 대한 피침해가 많지만 이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은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임

<권리별 피침해율과 기업규모별 출원 또는 등록률>

(단위: %)

구분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기타	합계
대기업	피침해율	51.2	23.3	9.3	16.2	100
	등록률	62.2	22.2	14.4	1.1	100
중소기업	피침해율	30.0	28.3	21.7	20.0	100
	등록률	51.2	17.1	30.1	1.6	100
전체	피침해율	39.1	26.4	17.3	17.2	100
	등록률	55.9	19.2	23.5	1.4	100

(5-3) 침해받은 권리를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하였는지 여부?

o 응답기업

⇒ 대기업 30개사, 중소기업 50개사 등 총 80개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80	30	50
100	37.5	62.5

o 지역별 피침해 권리의 등록여부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피침해 권리에 대한 대 중국 출원 또는 등록이 저조(33.3%)한 반면,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침해 발생시를 대비하여 대 중국 출원 또는 등록이 높은(66.2%)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침해된 권리의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여부>

(단위: 개사, %)

구분		출원 또는 등록 하였음	출원 또는 등록 하지 않았음	합계
국내		5	10	15
		33.3	66.7	100
중국	광저우	8	1	9
		88.9	11.1	100
	베이징	18	7	25
		72.0	28.0	100
	상하이	11	10	21
		52.4	47.6	100
	칭다오	2	4	6
		33.3	66.7	100
	션양·다롄	4	0	4
		100.0	0.0	100
	소계	43	22	65
		66.2	33.8	100
전체		48	32	80
		60.0	40.0	100

o 기업규모별 피침해 권리의 등록여부

⇒ 대기업은 응답기업의 80%가 피침해 권리에 대하여 출원 또는 등록을 하여 침해 발생시 대응에 필요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두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단지 48.0%만이 침해 발생시 대응에 필요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국내소재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피침해 권리에 대한 대 중국 출원 또는 등록이 단지 9.1% 수준에 그쳐 중국에서 침해발생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59.0%에 이르러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국내의 중소기업에 비해 중국의 모조품에 대한 대비를 훨씬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역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모조품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업규모별 침해된 권리의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여부>

(단위: 개사, %)

구분	출원 또는 등록 하였음	출원 또는 등록 하지 않았음	합계
대기업	24	6	30
	80.0	20.0	100
중소기업	24	26	50
	48.0	52.0	100
전체	48	32	80
	60.0	40.0	100

<중소기업의 대 중국 출원 또는 등록>

(단위: 개사, %)

구분	출원 또는 등록 하였음	출원 또는 등록 하지 않았음	합계
국내	1	10	11
	9.1	90.9	100
중국	23	16	39
	59.0	41.0	100
전체	24	26	50
	48.0	52.0	100

o 업종별 피침해 권리의 등록여부

⇒ 전기・전자 업종 및 식품・음료・주류 업종이 피침해 권리에 대한 대 중국 출원 또는 등록률(71.4%)이 높고, 문방구・잡화 업종은 낮은(20.0%)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샘플 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업종별 침해된 권리의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여부>

(단위: 개사, %)

구분	출원 또는 등록 하였음	출원 또는 등록 하지 않았음	합계
기계	4	4	8
	50.0	50.0	100
전기·전자	15	6	21
	71.4	28.6	100
자동차·운송기계	4	3	7
	57.1	42.9	100
문방구·잡화	1	4	5
	20.0	80.0	100
섬유·의복·신발	4	2	6
	66.7	33.3	100
식품·음료·주류	5	2	7
	71.4	28.6	100
석유화학	5	3	8
	62.5	37.5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1	2	3
	33.3	66.7	100

<단순 출원 또는 등록률(설문 3)과 피침해 권리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률 (설문 5-3) 비교>

□ 설문 3의 단순 출원 또는 등록률과 설문 5-3의 중국에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피침해 권리에 대한 출원등록률을 비교해보면,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60.0%는 중국에서 피침해발생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고,

⇒ 이를 단순히 출원 또는 등록한 율(설문3) 32.4%와 비교해보면, 실제로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율은 단순 등록률보다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단순 출원 또는 등록률과 피침해 권리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률의 비교>

구분	단순 출원 또는 등록률	침해된 권리의 출원 또는 등록률
대기업	57.0%	80.0%
중소기업	25.5%	48.0%
전체	32.4%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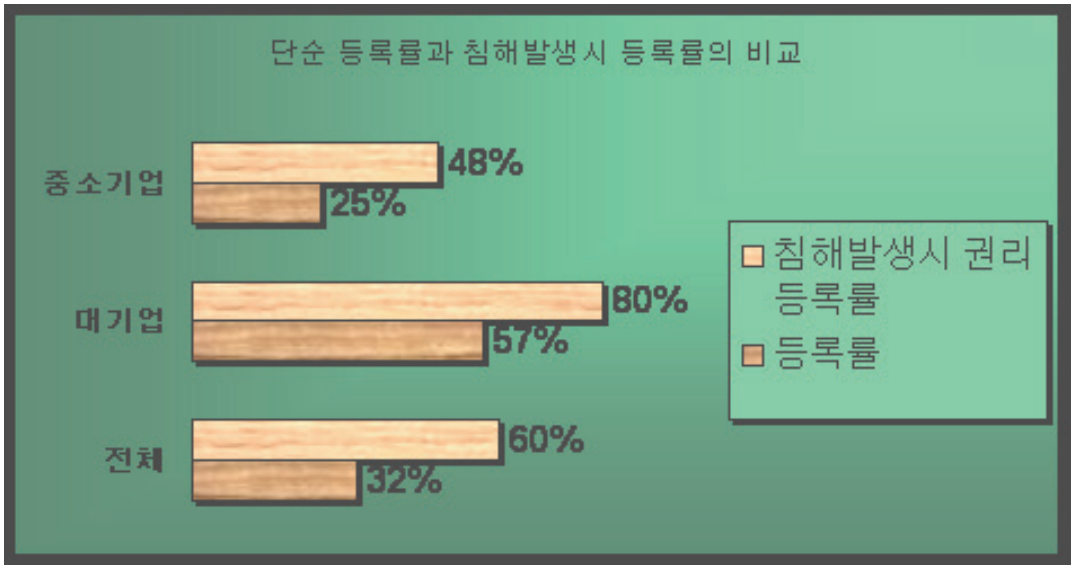

(6) 평소 산업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o 응답기업

⇒ 대기업 101개사, 중소기업 345개사 등 총 446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복수응답이 대기업 4개사 및 중소기업 6개사가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446	101	345	대기업4/중소기업6
100	23	77	

o 지역별 산업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 전제 응답기업의 57.1%가 평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침해 발생 시 대응한다(41.4%) 및 대응하지 않는다(15.7%)라고 응답하여 특별한 예방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예방 조치를 한다고 응답한 35.9%의 예방 조치의 내용도 시장 감시가 대부분인 24,8%를 차지하였고, 세관 신고 등의 사전적 조치를 취한 비율은 8.7%,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발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에 불과

⇒ 지역별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이나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이 같은 분포를 나타내었음

<지역별 침해예방활동>

(단위 : 개사, %)

구분		지속적 관심을 갖고 모조품 유통 등 시장을 항상감시	외부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적발활동	관련 당국에 세관조치, 단속을 위한 상표등록 등	평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않고 침해발생 시 대응	대응하지 않는다	기타	합계
국내		28	3	7	45	14	8	105
		26.7	2.9	6.7	42.9	13.3	7.6	100.0
중국	광저우	15	1	1	22	22	3	64
		23.4	1.6	1.6	34.4	34.4	4.7	100.0
	베이징	15	2	11	24	9	3	64
		23.4	3.1	17.2	37.5	14.1	4.7	100.0
	상하이	28	4	8	52	6	12	110
		25.5	3.6	7.3	47.3	5.5	10.9	100.0
	칭다오	21	1	9	32	17	4	84
		25.0	1.2	10.7	38.1	20.2	4.8	100.0
	션양·다롄	7	0	4	15	4	2	32
		21.9	0.0	12.5	46.9	12.5	6.3	100.0
	소계	86	8	33	145	58	24	354
		24.3	2.3	9.3	41.0	16.4	6.8	100.0
전체		114	11	40	190	72	32	459
		24.8	2.4	8.7	41.4	15.7	7.0	100.0

o 기업규모별・업종별 산업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 대기업의 46.2%가 평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침해 발생 시 대응한다(33.0%) 및 대응하지 않는다(13.2%)라고 응답하여 특별한 예방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49.1%는 평소에 시장 감시(38.7%), 세관 신고(6.6%) 및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발 활동(3.8%)을 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응답기업의 60.3%가 평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침해 발생 시 대응한다(41.4%) 및 대응하지 않는다(15.7%)에 응답하여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전체 응답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규모별 침해예방활동>

(단위 : 개사, %)

구분	지속적 관심을 갖고 모조품 유통 등 시장을 항상감시	외부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적발활동	관련 당국에 세관조치, 단속을 위한 상표등록 등	평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않고 침해발생 시 대응	대응하지 않는다	기타	합계
대기업	41	4	7	35	14	5	106
	38.7	3.8	6.6	33.0	13.2	4.7	100.0
중소기업	73	7	33	155	58	27	353
	20.7	2.0	9.3	43.9	16.4	7.6	100.0
전체	114	11	40	190	72	32	459
	24.8	2.4	8.7	41.4	15.7	7.0	100.0

<업종별 침해예방활동>

(단위 : 개사, %)

구분	지속적 관심을 갖고 모조품 유통 등 시장을 항상감시	외부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적발활동	관련 당국에 세관조치, 단속을 위한 상표등록 등	평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않고 침해발생 시 대응	대응하지 않는다	기타	합계
기계	17	1	4	25	10	2	59
	28.8	1.7	6.8	42.4	16.9	3.4	100
전기·전자	33	1	9	41	12	7	103
	32.0	1.0	8.7	39.8	11.7	6.8	100
자동차·운송기계	6	0	2	7	2	0	17
	35.3	0.0	11.8	41.2	11.8	0.0	100
문방구·잡화	7	1	2	11	12	2	35
	20.0	2.9	5.7	31.4	34.3	5.7	100
섬유·의복·신발	15	2	5	25	12	4	63
	23.8	3.2	7.9	39.7	19.0	6.3	100
식품·음료·주류	7	0	2	7	3	4	23
	30.4	0.0	8.7	30.4	13.0	17.4	100
석유화학	12	2	1	28	6	3	52
	23.1	3.8	1.9	53.8	11.5	5.8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2	1	4	11	2	0	20
	10.0	5.0	20.0	55.0	10.0	0.0	100

<침해예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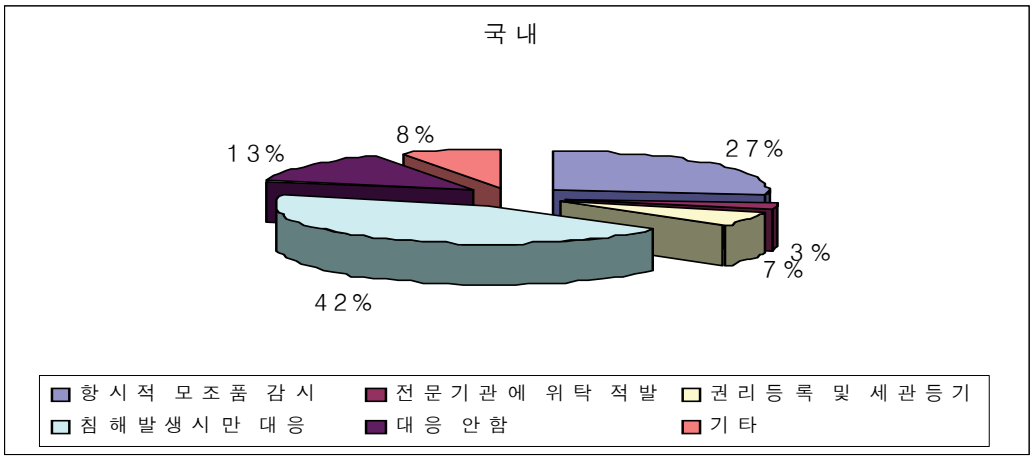
국 내
8%
13%
27%
3%
7%
42%
항시적 모조품 감시
전문기관에 위탁 적발
권리등록 및 세관등기
침해발생시만 대응
대응 안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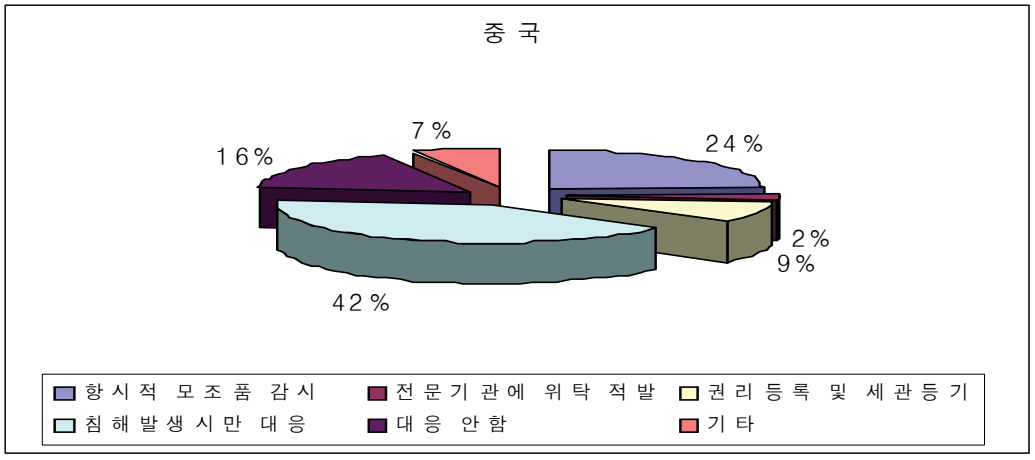
중 국
7%
16%
24%
2%
9%
42%
항시적 모조품 감시
전문기관에 위탁 적발
권리등록 및 세관등기
침해발생시만 대응
대응 안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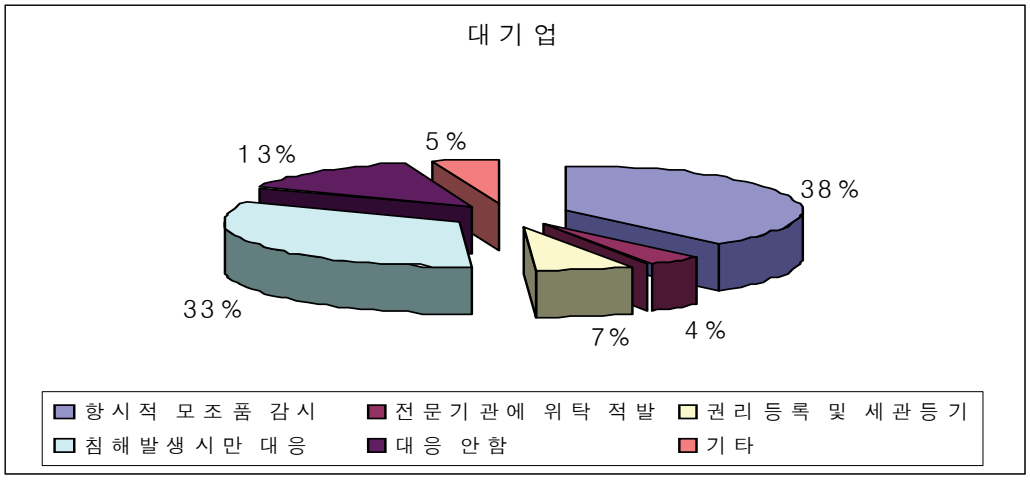
대 기 업
5%
13%
38%
33%
7%
4%
항시적 모조품 감시
전문기관에 위탁 적발
권리등록 및 세관등기
침해발생시만 대응
대응 안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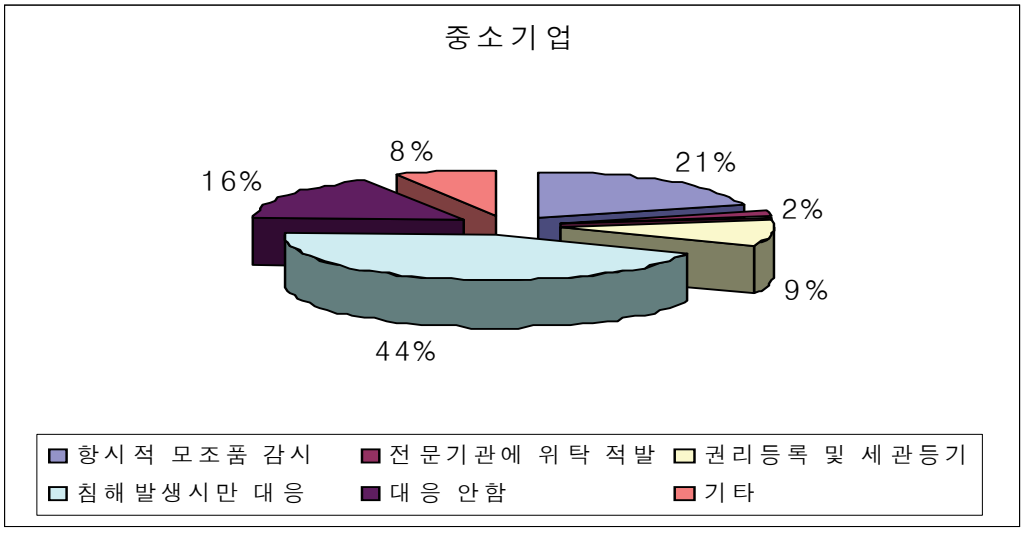

(7)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견해?

o 응답기업

⇒ 대기업 105개사, 중소기업 364개사 등 총 469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469	105	364
100	22.4	77.6

o 지역별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견해

⇒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의 정도 변화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기업의 48.4%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2.8%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71.2%가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침해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9%에 불과

⇒ 지역별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68.6%가 과거보다 침해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42.8%)에 비하여 중국의 지재권 보호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정도에 대한 견해>

(단위 : 개사, %)

구분		과거보다 증가	과거와 차이없음	과거보다 감소	침해없음	모르겠음	합계
국내		70	9	0	1	22	102
		68.6	8.8	0.0	1.0	21.6	100
중국	광저우	21	22	11	0	12	66
		31.8	33.3	16.7	0.0	18.2	100
	베이징	32	21	4	0	9	66
		48.5	31.8	6.0	0.0	13.6	100
	상하이	56	28	12	0	18	114
		49.1	24.6	10.5	0.0	15.8	100
	칭다오	29	17	8	7	24	85
		34.1	20.0	9.4	8.2	28.2	100
	션양·다롄	19	10	2	0	5	36
		52.8	27.8	5.6	0.0	13.8	100
	소계	157	98	37	7	68	367
		42.8	26.7	10.1	1.9	18.5	100
전체		227	107	37	8	90	469
		48.4	22.8	7.9	1.7	19.2	100

o 기업규모별・업종별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견해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전체응답의 결과와 유사하게 조사되어 침해를 피부로 느끼는 정도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같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업종별로도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하게 조사되었음

<기업규모별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정도에 대한 견해>

(단위 : 개사, %)

구분	과거보다 증가	과거와 차이없음	과거보다 감소	침해없음	모르겠음	합계
대기업	51	29	9	0	16	105
	48.6	27.6	8.6	0.0	15.2	100
중소기업	176	78	28	8	74	364
	48.4	21.4	7.7	2.2	20.3	100
전체	227	107	37	8	90	469
	48.4	22.8	7.9	1.7	19.2	100

<업종별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정도에 대한 견해>

(단위 : 개사, %)

구분	과거보다 증가	과거와 차이없음	과거보다 감소	침해없음	모르겠음	합계
기계	35	10	2	0	12	59
	59.3	16.9	3.4	0.0	20.3	100
전기·전자	54	23	7	3	16	103
	52.4	22.3	6.8	2.9	15.5	100
자동차·운송기계	8	3	0	1	4	16
	50.0	18.8	0.0	6.3	25.0	100
문방구·잡화	16	11	3	1	1	32
	50.0	34.4	9.4	3.1	3.1	100
섬유·의복·신발	31	12	6	1	16	66
	47.0	18.2	9.1	1.5	24.2	100
식품·음료·주류	11	3	1	0	7	22
	50.0	13.6	4.5	0.0	31.8	100
석유화학	23	4	1	0	10	38
	60.5	10.5	2.6	0.0	26.3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6	9	5	0	2	22
	27.3	40.9	22.7	0.0	9.1	100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정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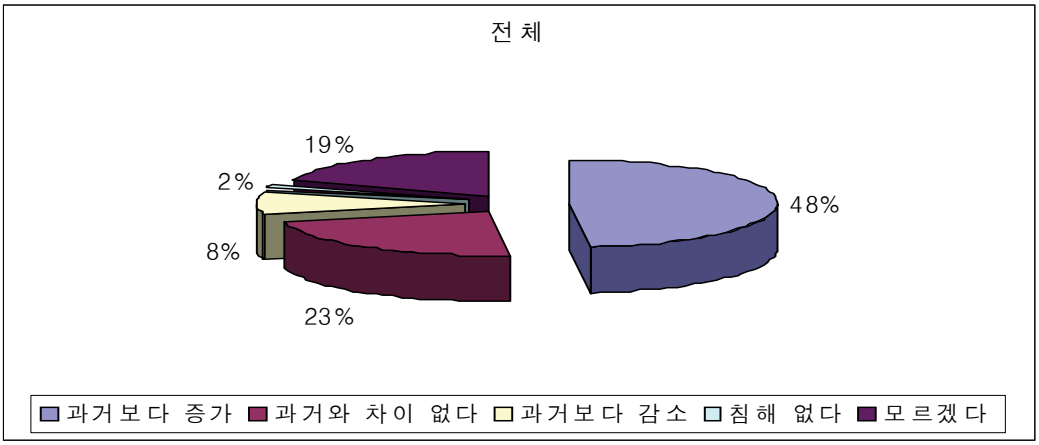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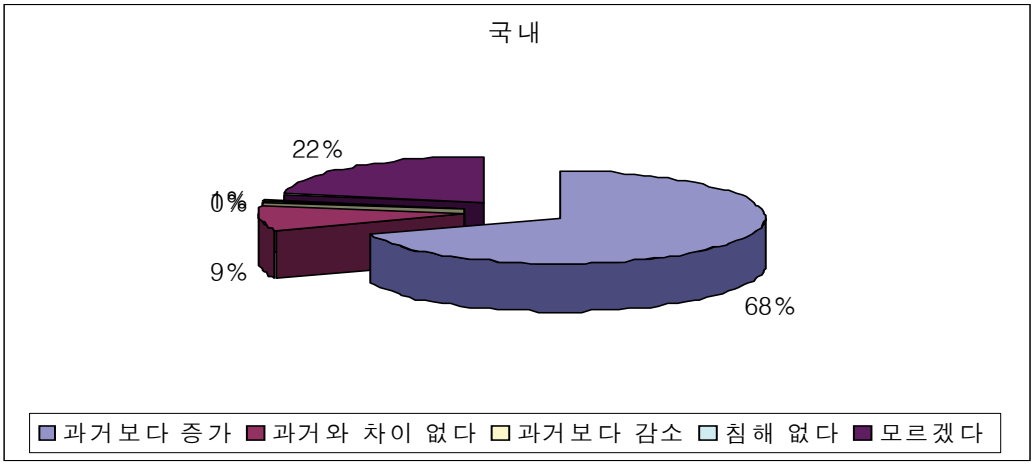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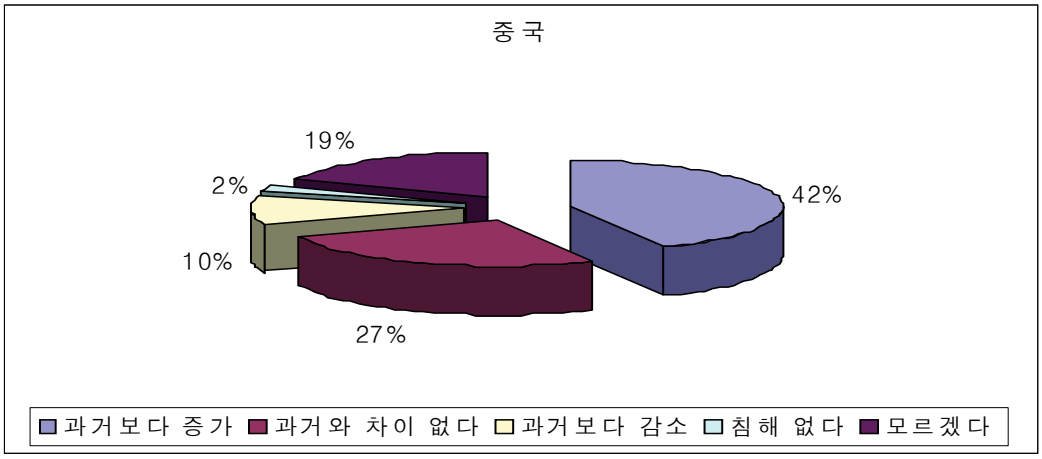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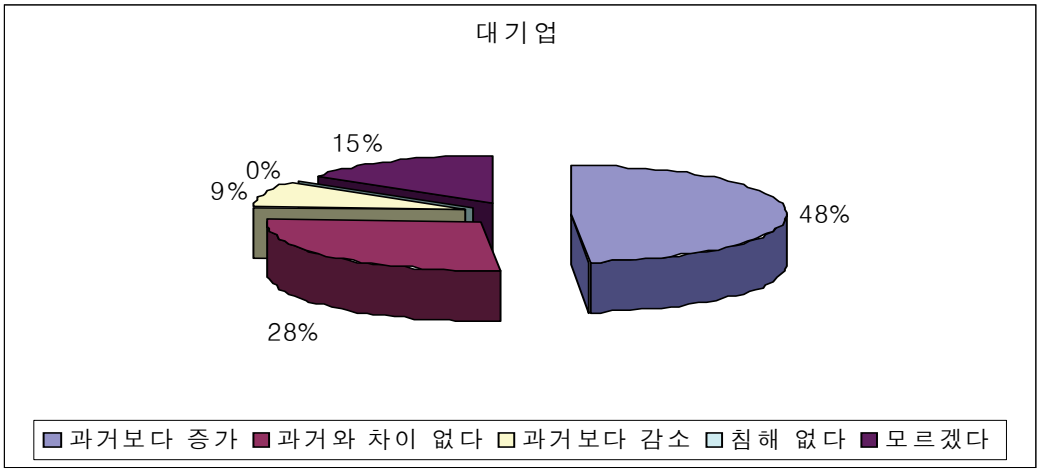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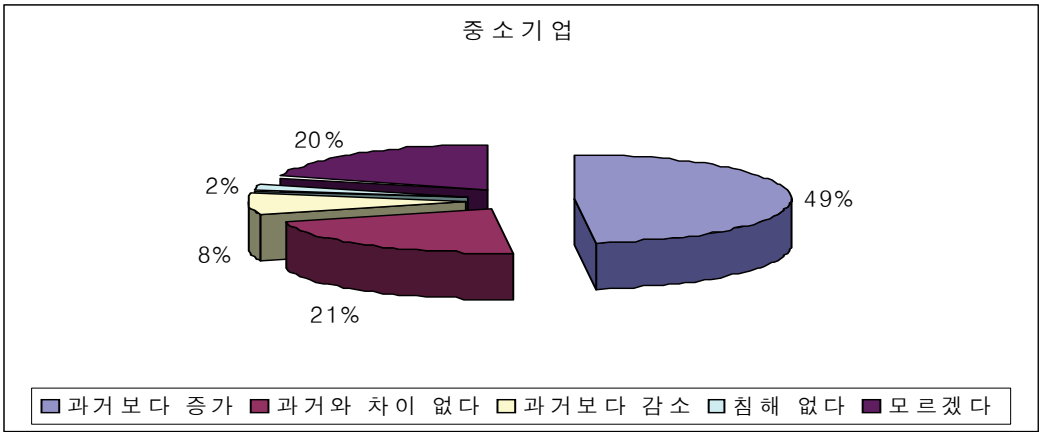

(8) 중국 단속당국 또는 사법당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o 응답기업

⇒ 대기업 104개사, 중소기업 348개사 등 총 452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452	104	348
100	23.0	77.0

o 지역별 중국 당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

⇒ 중국 당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기업의 과반수 이상(57.3%)이 약간 불만(25.0%) 또는 매우 불만(32.3%)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다는 34.7%, 대체로 만족(7.5%) 또는 매우 만족(0.4%)은 7.9%에 불과하여 중국 당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약간 불만・매우 불만 63.5%, 보통 31.2%인 반면, 만족과 매우만족은 5.4%에 불과하여,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약간 불만・매우 불만 55.7%, 보통 35.7%, 만족과 매우만족 8.7%에 비하여 더욱 불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 중국정부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단위 : 개사, %)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합계
국내		1	4	29	30	29	93
		1.1	4.3	31.2	32.3	31.2	100
중국	광저우	0	14	30	10	10	64
		0.0	21.9	46.9	15.6	15.6	100
	베이징	1	2	23	14	26	66
		1.5	3.0	34.8	21.2	39.4	100
	상하이	0	3	34	31	43	111
		0.0	2.7	30.6	27.9	38.7	100
	칭다오	0	11	29	19	24	83
		0.0	13.3	34.9	22.9	28.9	100
	션양·다롄	0	0	12	9	14	35
		0.0	0.0	34.3	25.7	40.0	100
	소계	1	30	128	83	117	359
		0.3	8.4	35.7	23.1	32.6	100
전체		2	34	157	113	146	452
		0.4	7.5	34.7	25.0	32.3	100

o 기업규모별・업종별 중국 당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에 의한 평가 또는 업종별 평가 역시 전체 응답 결과와 별반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유사한 결과로 조사되었음

<기업규모별 중국정부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단위 : 개사, %)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합계
대기업	1	6	38	28	31	104
	1.0	5.8	36.5	26.9	29.8	100
중소기업	1	28	119	85	115	348
	0.3	8.0	34.2	24.4	33.0	100
전체	2	34	157	113	146	452
	0.4	7.5	34.7	25.0	32.3	100

<업종별 중국정부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단위 : 개사, %)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합계
기계	1	2	17	17	19	56
	1.8	3.6	30.4	30.4	33.9	100
전기·전자	0	14	33	24	28	99
	0.0	14.1	33.3	24.2	28.3	100
자동차·운송기계	0	0	7	4	5	16
	0.0	0.0	43.8	25.0	31.3	100
문방구·잡화	0	1	10	9	14	34
	0.0	2.9	29.4	26.5	41.2	100
섬유·의복·신발	1	9	23	15	18	66
	1.5	13.6	34.8	22.7	27.3	100
식품·음료·주류	0	0	8	9	3	20
	0.0	0.0	40.0	45.0	15.0	100
석유화학	0	2	21	12	15	50
	0.0	4.0	42.0	24.0	30.0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0	2	8	6	6	22
	0.0	9.1	36.4	27.3	27.3	100

<중국정부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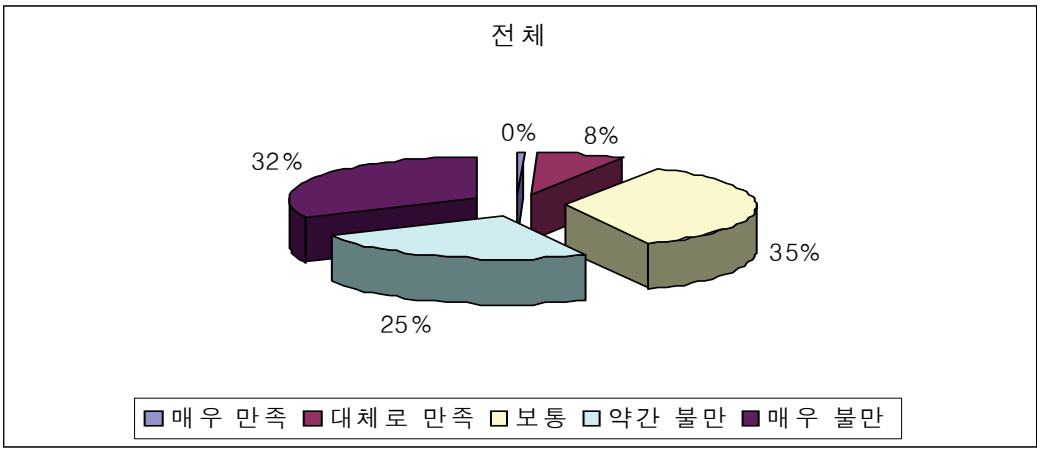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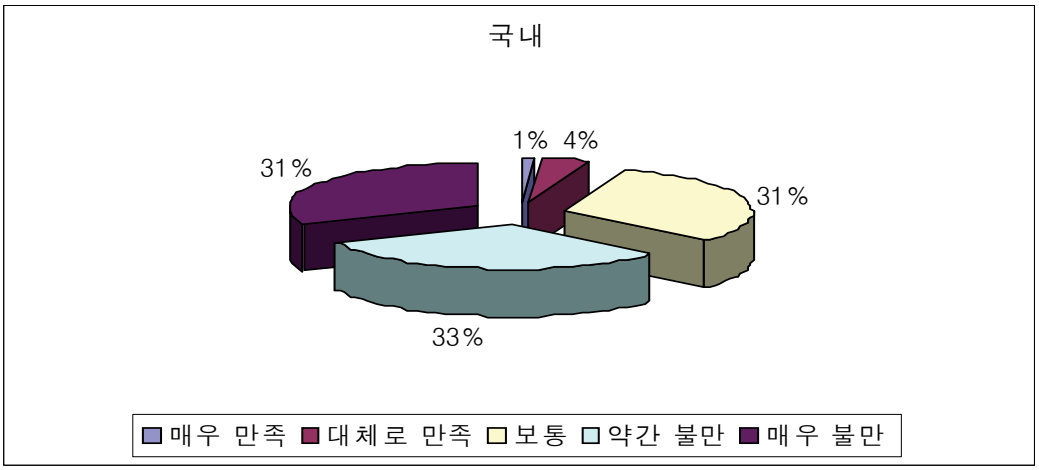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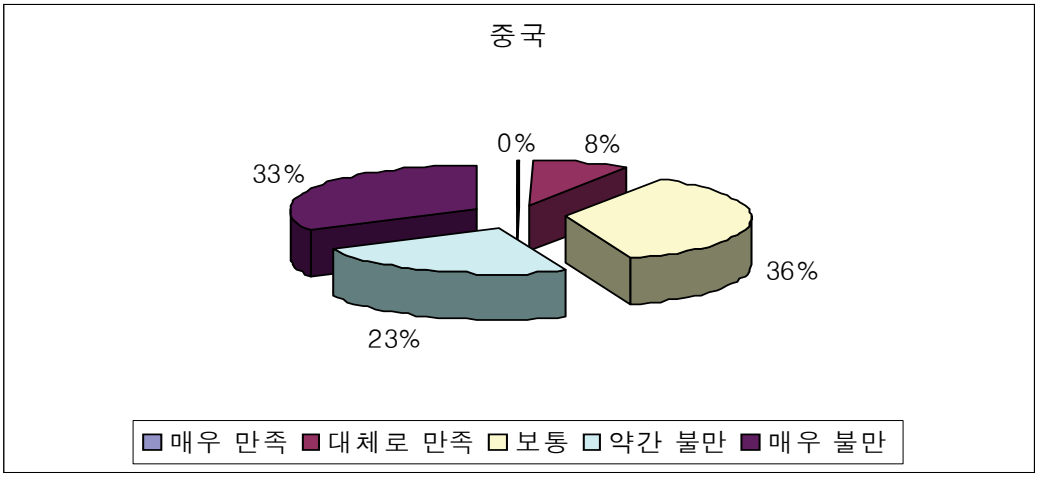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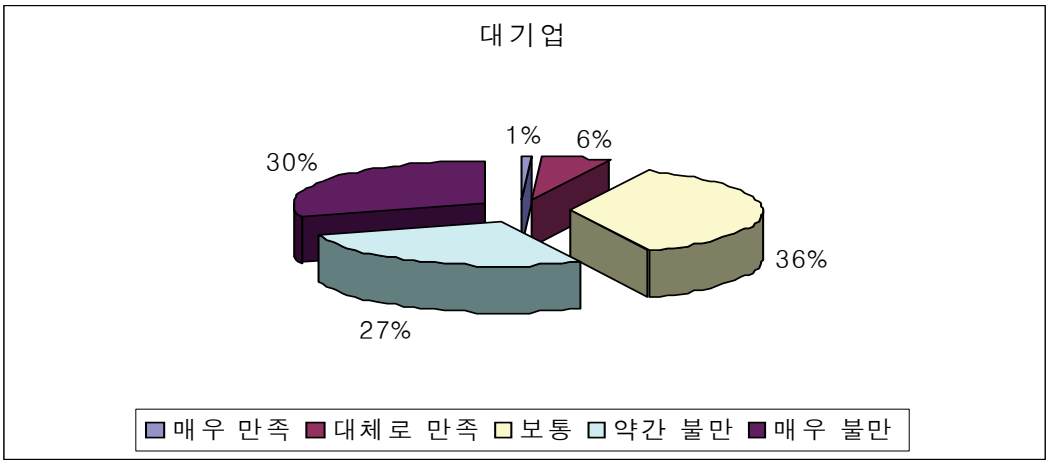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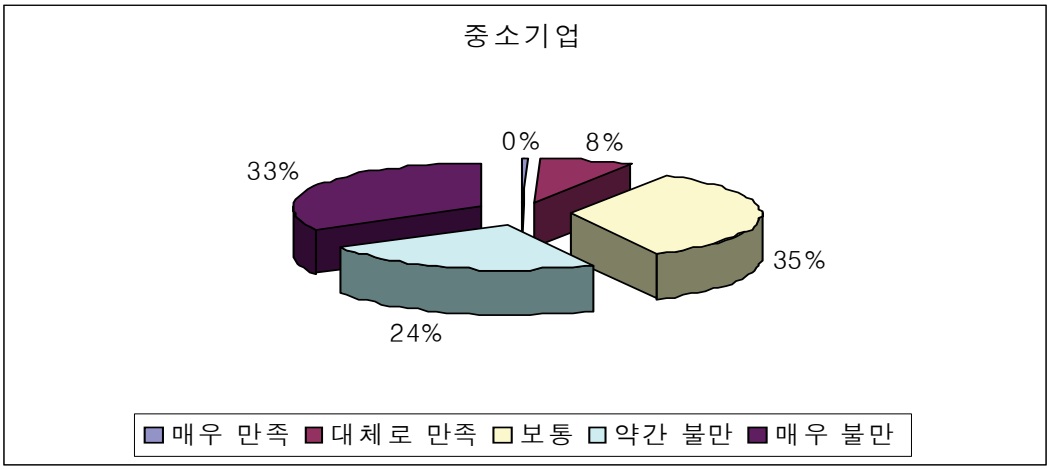

(9)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요망사항(자유기술)

o 응답기업

⇒ 대기업 28개사, 중소기업 79개사 등 총 107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107	28	79
100	26.2	73.8

o 정부 차원의 지원 요망 사항

- 교육 및 정보제공

⇒ 30개 응답기업이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한 교육,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 21개 응답기업이 정부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관한 정보, 침해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촉구하였고,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업들 가운데에는 중국에서의 모조품 실태 파악도 함께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교육 및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세미나 개최를 요구한 기업도 4개사가 있었으며, 그밖에 중소기업 유망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지원을 요청하거나, 침해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막아달라는 요청, 특허청이 해외지재권의 출원을 일괄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업도 있었음.

- 실태 파악 및 기업과 정부의 공동 대응

⇒ 7개 응답기업이 중국에서의 모조품 실태 파악을 주문하였으며, 2개 응답기업은 중국에서의 모조품 문제에 대처하려면 기업과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4개 응답기업이 각 기업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중국 모조품 침해 대응에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상담인력 현지 배치 및 중국 모조품 문제에 대응할 전담조직의 설치

⇒ 5개 응답기업이 현지에서 침해 발생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의 파견 및 배치를 요청하였으며,

⇒ 13개 응답기업이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들 기업들 가운데는 중국 모조품 문제에 관한 대응창구의 단일화를 함께 주장하는 예가 많았음.

⇒ 또한, 3개 응답기업은 구체적으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의 개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모조품 신고센터의 운영을 요청하였음.

- 기타

⇒ 13개 응답기업이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에 따르는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13개 기업이 중국 당국과의 담판・협상・항의 등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였음.

다. 2차 설문조사에 관한 소결

(1)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

o 설문 조사의 결과를 단순 확장하여 계산하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에 직접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전체 기업의 약 18.8%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적어도 1차례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 침해 발생의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지난 200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침해 건수의 25%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지속됨에 따라 침해 발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주로 침해되는 권리는 상표권(36.4%) > 디자인권(26.4%) > 특허·실용신안(17.3%)의 결과로 조사되었음.

(2)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o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전체 응답기업의 32.4%만이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하였고 나머지 67.6%는 산업재산권 확보가 전무한 상태였음. 그 결과 실제로 중국에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두고 있었던 경우는 전체 침해 사건의 60%에 그쳤고, 나머지

40%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o 중국에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산업재산권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없다”(26.5%),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26.5%)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여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됨.

(3)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의 변화 추세에 대한 평가

o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의 정도 변화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48.4%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2.8%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71.2%가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 3차 심층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기간

o 2006년 6월 19일 - 2006년 7월 7일

(2) 조사대상 및 설문지 발송

o 조사대상

- 2차 설문조사 결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및 국내 언론매체에 중국 모조품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된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o 지역별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 34개 기업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 72개 기업

o 기업규모별

- 대기업 : 36개 기업
- 중소기업 : 70개 기업

(3) 설문지 발송 및 상담

o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 설문지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전화를 통한 침해 사실 확인 및 상담

o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 중국 진출 현지 한국기업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 전화를 통한 침해 사실 확인 및 상담

(4) 설문지 회수 및 회수율

o 전체 회수율 : 38.7%

o 지역별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 34개 기업 중 13개 기업, 회수율 38.2%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 72개 기업 중 28개 기업, 회수율 38.9%

<지역별 설문지 발송 및 회수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설문대상	회수	회수율
국내	34	13	38.2
중국	72	28	38.9
합계	106	41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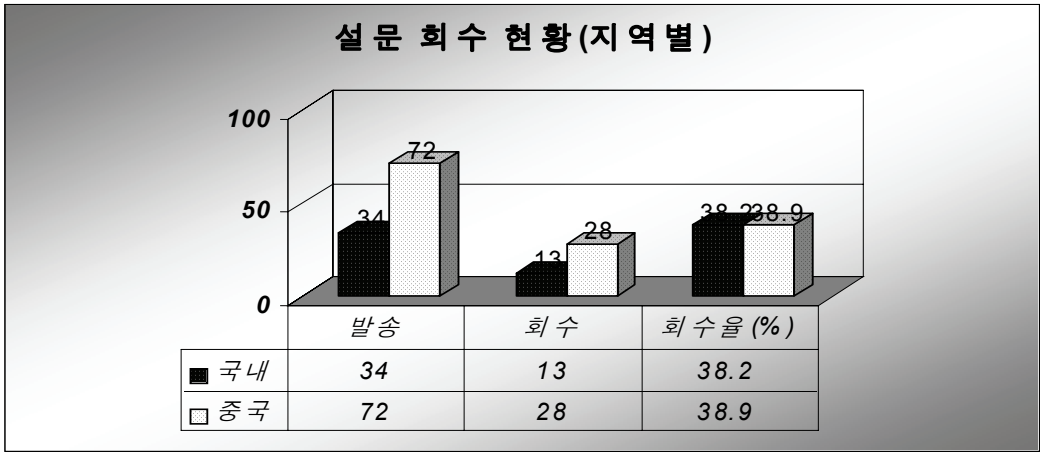

o 규모별

- 대기업 : 36개 기업 중 16개 기업, 회수율 44.4%
- 중소기업 : 70개 기업 중 25개 기업, 회수율 35.7%

<지역별 설문지 발송 및 회수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설문대상	회수	회수율
대기업	36	16	44.4
중소기업	70	25	35.7
합계	106	41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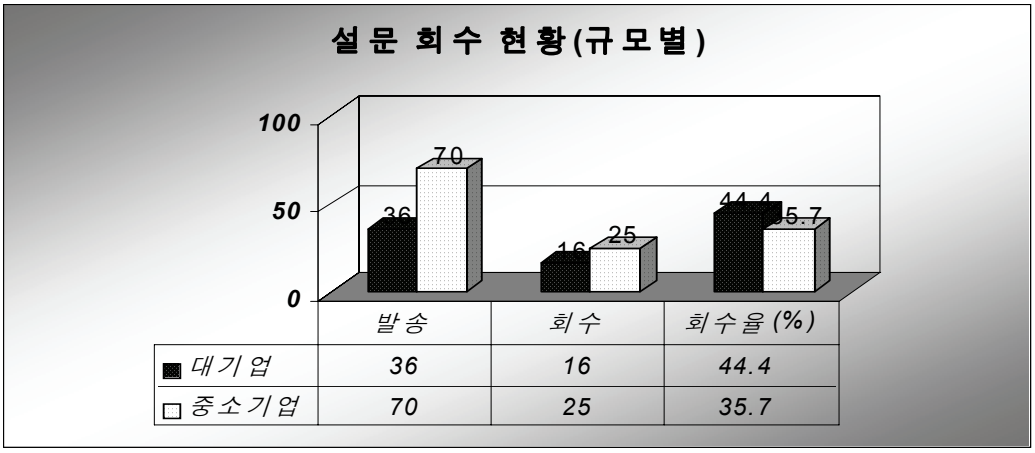

나.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1) 귀사의 산업재산권 침해주체는?

o 응답기업

⇒ 대기업 15개사, 중소기업 24개사 등 총 39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 4개사가 복수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39	15	24	중소기업 4
100	38.5	61.5	

o 지역별 침해주체

⇒ 전체적으로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에 의해 침해를 입고 있는 비율이 69.8%에 가까워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인이나 대리인(14.0%)”에 의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지 한국기업에 의한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10%가 되었음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53.3%가 “거래관계 없는 현지인”에 의해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거래관계 있는 현지인”에 의한 침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대부분(78.6%)이 “거래관계 없는 현지인”에 의해 산업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 산업재산권 침해주체>

(단위 : 개사, %)

구분	거래관계 없는 현지인	거래관계 있는 현지인·대리인	현지 채용직원	현지 타국기업	현지 한국기업	기타	합계
국내	8	4	0	1	2	0	15
	53.3	26.7	0.0	6.7	13.3	0.0	100
중국	22	2	1	1	2	0	28
	78.6	7.1	3.6	3.6	7.1	0.0	100
합계	30	6	1	2	4	0	43
	69.8	14.0	2.3	4.7	9.3	0.0	100

※ 복수응답 : 국내 3, 중국 1

o 기업규모별 침해주체

⇒ 대기업의 산업재산권 침해주체는 전부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인 반면, 중소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인(53.6%)”,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 또는 대리인(21.4%)”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14.3%)”에 의하여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규모별 침해주체>

(단위 : 개사, %)

구분	거래관계 없는 현지인	거래관계 있는 현지인·대리인	현지 채용직원	현지 타국기업	현지 한국기업	기타	합계
대기업	15	0	0	0	0	0	15
	100.0	0.0	0.0	0.0	0.0	0.0	100
중소기업	15	6	1	2	4	0	28
	53.6	21.4	3.6	7.1	14.3	0.0	100
합계	30	6	1	2	4	0	43
	69.8	14.0	2.3	4.7	9.3	0.0	100

※ 복수응답 : 중소기업 4

<산업재산권 침해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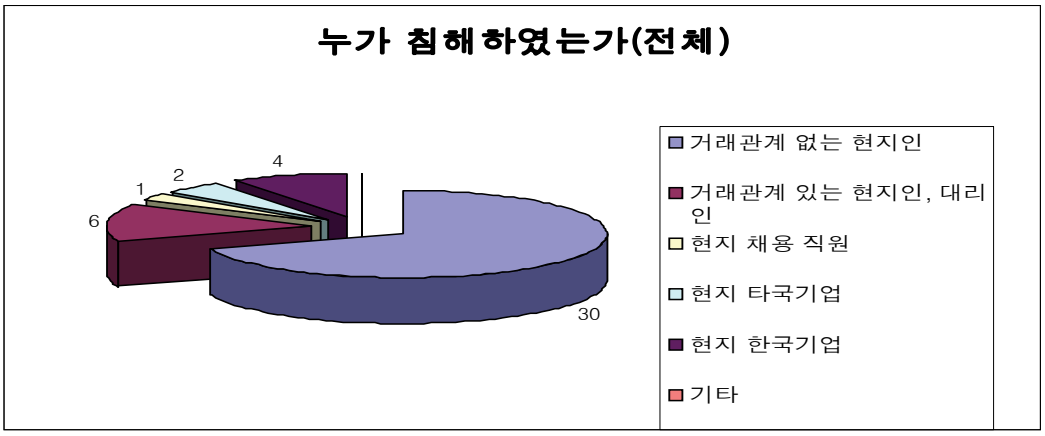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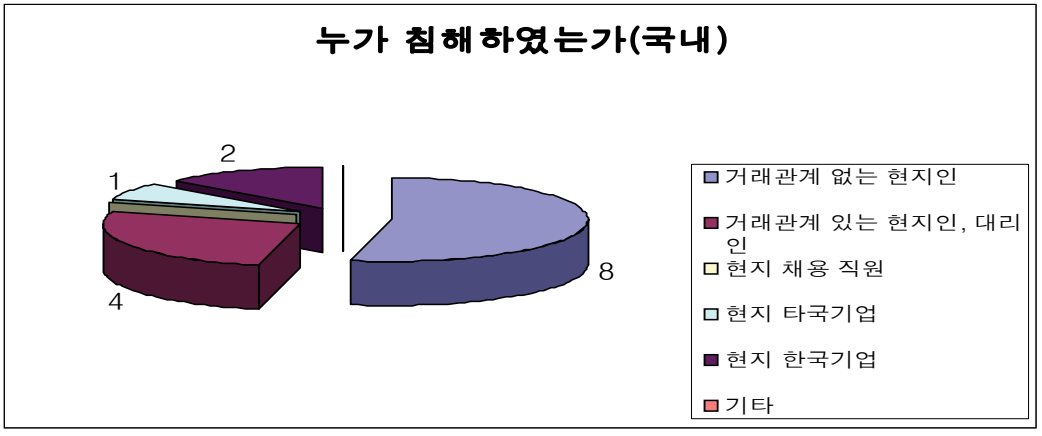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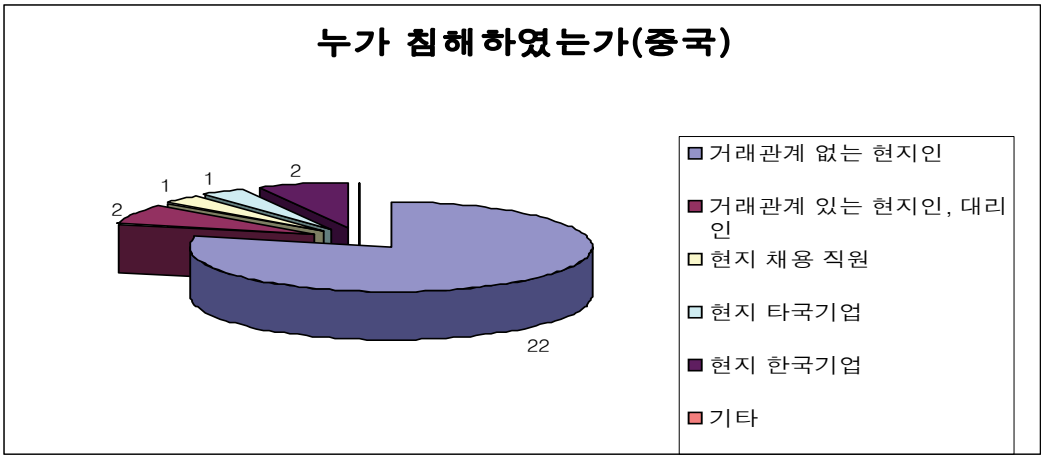
누가 침해하였는가(중국)
2
1
1
2
22
거래관계 없는 현지인
거래관계 있는 현지인, 대리인
현지 채용 직원
현지 타국기업
현지 한국기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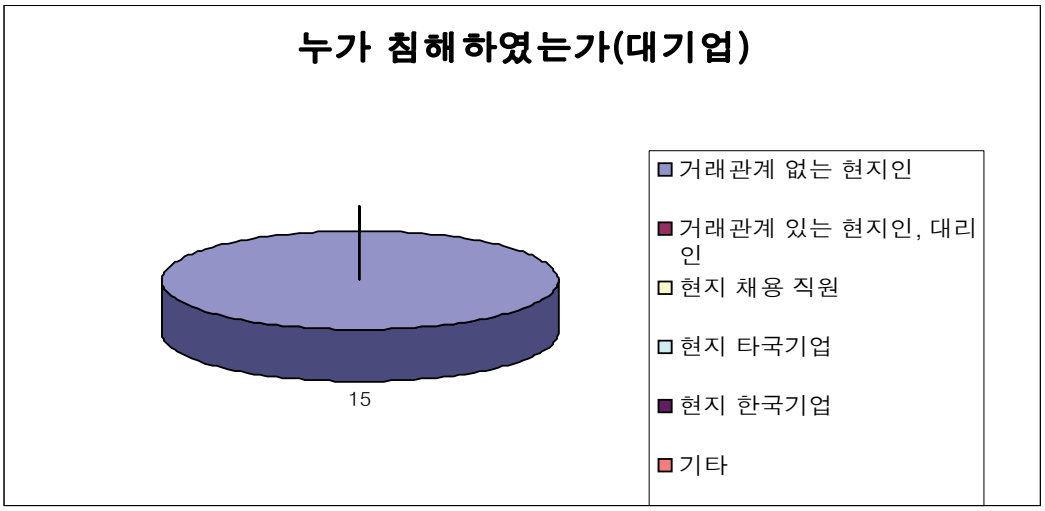
누가 침해하였는가(대기업)
15
거래관계 없는 현지인
거래관계 있는 현지인, 대리인
현지 채용 직원
현지 타국기업
현지 한국기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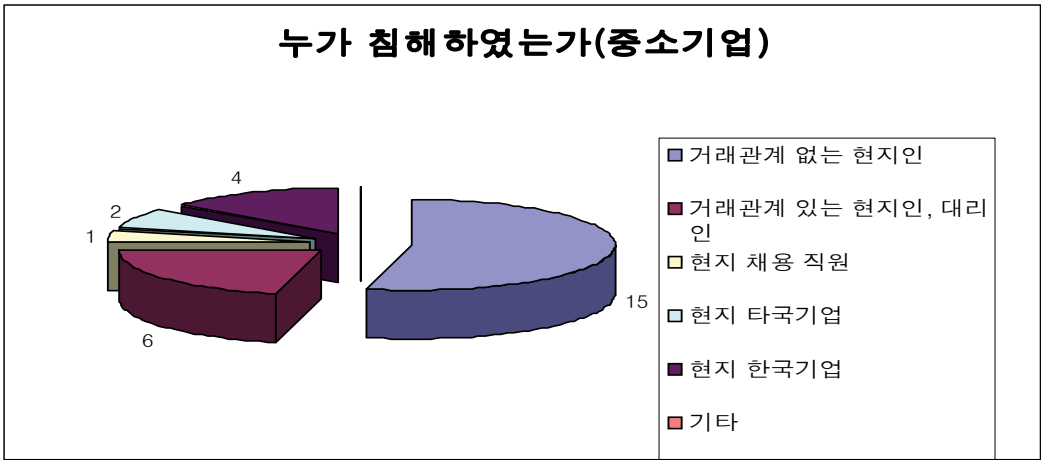
누가 침해하였는가(중소기업)
4
2
1
6
15
거래관계 없는 현지인
거래관계 있는 현지인, 대리인
현지 채용 직원
현지 타국기업
현지 한국기업
기타

(2) 침해 및 분쟁에 따른 피해규모는?

o 피해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기업 4개사, 중소기업 5개사 등 모두 9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제시한 기업은 모두 5개사로 전부 중소기업이었으며,

- 피해액은 적게는 1년에 1억3천만원에서 많게는 1년에 1백억원의 피해를 본다고 응답

(3) 산업재산권의 침해형태는?

o 응답기업

⇒ 대기업 15개사, 중소기업 23개사 등 총 38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5개사의 복수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38	15	23	대기업3/중소기업5
100	39.5	60.5	

o 지역별 침해형태

⇒ 전체적으로 우리기업의 약 45.7%가 등록된 산업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등록 산업재산권의 무단사용 및 모조품 유통 등이 32.6%, 미등록 산업재산권을 선점당한 경우는 15.2%로 조사되었음.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에 등록하지 않은 산업재산권의 현지인에 의한 무단사용”이 가장 많은 33.3%를 차지하였고, 미등록 산업재산권을 선점 당한 경우와 미등록 권리의 모조품 유통이 각각 14.3%를 차지하여 등록된 권리의 침해 23.8%와 크게 대비되고 있음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현지에 등록한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64.0%로 가장 많아,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에 비해 산업재산권 확보를 통해 침해에 대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지인에 의한 미등록 산업재산권의 무단 선등록 및 무단사용이 각각 16.0%, 20.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진출 현지 기업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인식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 산업재산권 침해 형태>

(단위 : 개사, %)

구분	미등록 산재권 무단 선등록	미등록 산재권 현지인 무단사용	미등록 산재권 모조품 유통	모조품 수출입	기타 (등록권리 침해)	합계
국내	3	7	3	3	5	21
	14.3	33.3	14.3	14.3	23.8	100
중국	4	5	0	0	16	25
	16.0	20.0	0.0	0.0	64.0	100
합계	7	12	3	3	21	46
	15.2	26.1	6.5	6.5	45.7	100

※ 복수응답 : 국내 8

o 기업 규모별 산업재산권의 침해 형태

⇒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형태는 대기업 55.6%, 중소기업 39.3%가 침해당한 경우로 응답되어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침해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반면에 미등록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형태는 대기업 44.4%, 중소기업 60.7%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규모별 산업재산권 침해 형태>

(단위 : 개사, %)

구분	미등록 산재권 무단 선등록	미등록 산재권 현지인 무단사용	미등록 산재권 모조품 유통	모조품 수출입	기타 (등록권리 침해)	합계
대기업	3	4	0	1	10	18
	16.7	22.2	0.0	5.6	55.6	100
중소기업	4	8	3	2	11	28
	14.3	28.6	10.7	7.1	39.3	100
합계	7	12	3	3	21	46
	15.2	26.1	6.5	6.5	45.7	100

※ 복수응답 : 대기업 3, 중소기업 5

<산업재산권 침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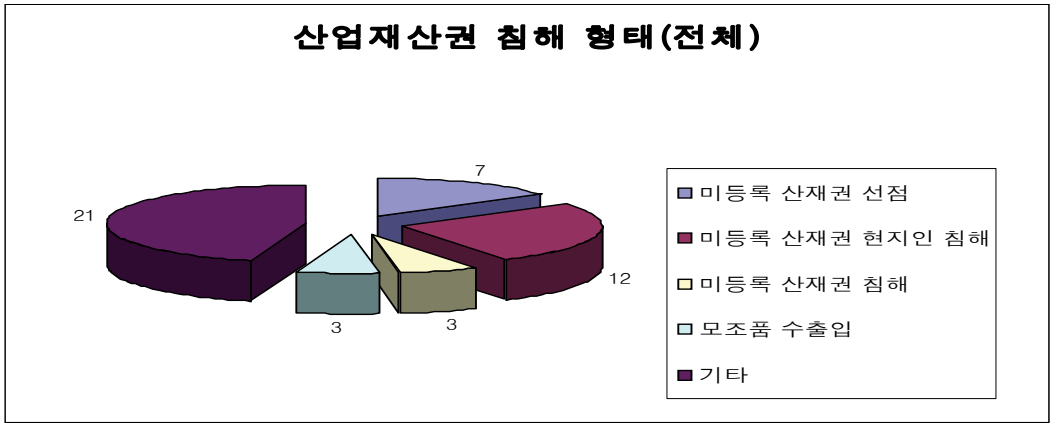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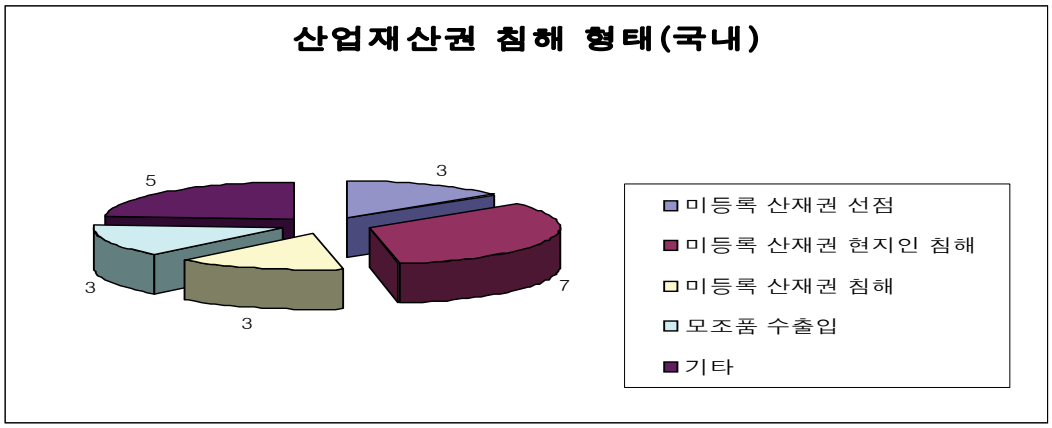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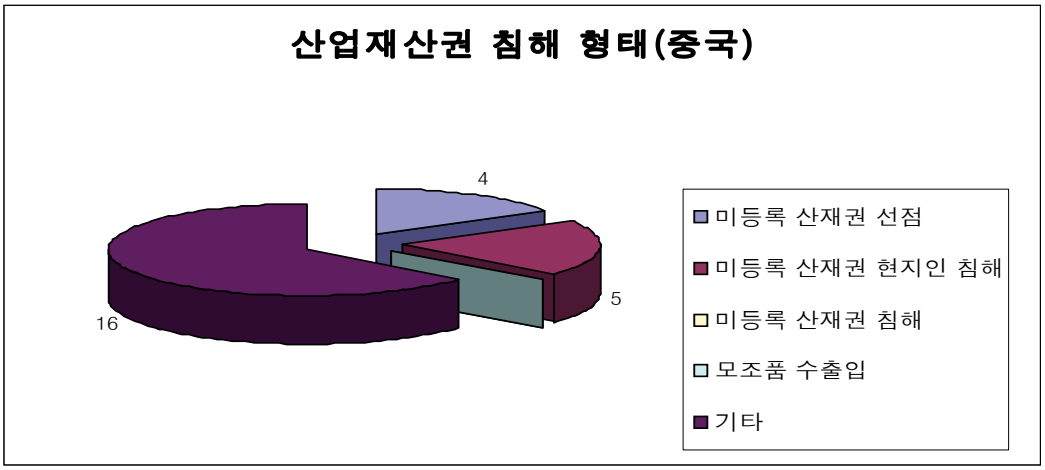
산업재산권 침해 형태(중국)
4
5
16
미등록 산재권 선점
미등록 산재권 현지인 침해
미등록 산재권 침해
모조품 수출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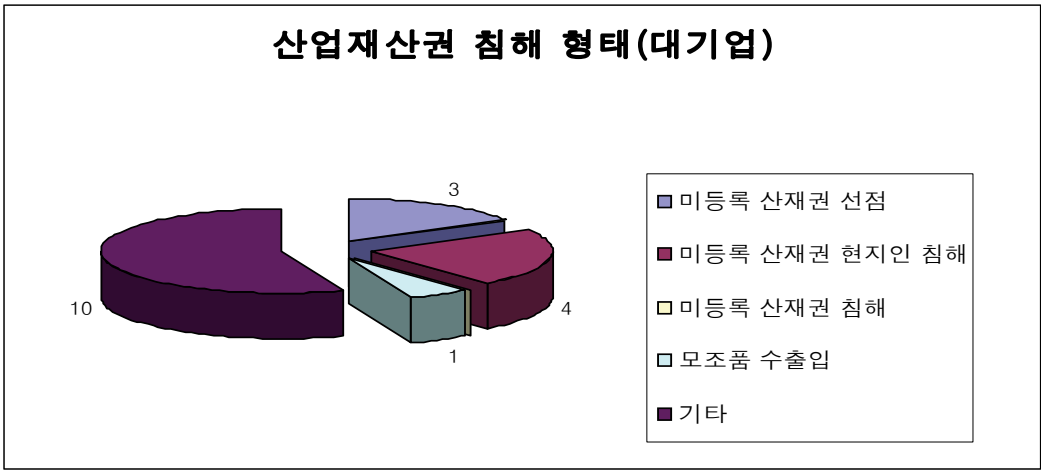
산업재산권 침해 형태(대기업)
3
10
4
1
미등록 산재권 선점
미등록 산재권 현지인 침해
미등록 산재권 침해
모조품 수출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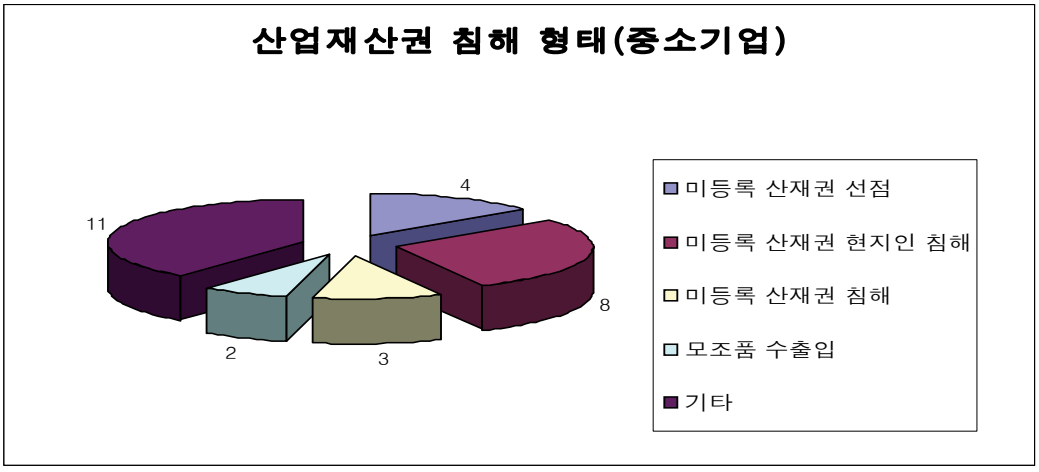
산업재산권 침해 형태(중소기업)
4
11
8
2
3
미등록 산재권 선점
미등록 산재권 현지인 침해
미등록 산재권 침해
모조품 수출입
기타

(4)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

o 응답기업

⇒ 대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6개사 등 총 27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대기업 2개사와 중소기업 7개사의 복수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27	11	16	대기업2/중소기업7
100	40.7	59.3	

o 지역별 침해발생 원인

⇒ 전체 응답기업의 55.6%가 “우리나라 상표·디자인·기술 등의 현지에서의 유명성 및 유용성”을 중국에서 산업재산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현지인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법·제도상의 미비(19.4%)”,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 관리 소홀(13.9%)”을 침해원인으로 들고 있음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중국에서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상표·디자인·기술 등의 현지에서의 유명성 및 유용성(52.9%)”을 꼽았고, 이어 “중국 산업재산권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17.6%)”과 “현지인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법·제도상의 미비(17.6%)”를 들고 있으며,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역시 “우리나라 상표·디자인·기술 등의 현지에서의 유명성 및 유용성(57.9%)”을 첫째 이유로 꼽았으며, 이어 “현지인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법·제도상의 미비(21.1%)”를 둘째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과 달리 “중국 산업재산권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 않아 국내소재 수출기업과 침해인식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침해발생 원인>

(단위 : 개사, %)

구분	우리 산재권의 유명성・유용성	현지 관계당국의 산재권 출원・등록 소홀	권리자의 산재권 보호・관리 소홀	현지 산재권 제도의 정보부족	현지인의 인식부족 및 법제미비	기타	합계
국내	9	0	2	3	3	0	17
	52.9	0.0	11.8	17.6	17.6	0.0	100
중국	11	1	3	0	4	0	19
	57.9	5.3	15.8	0.0	21.1	0.0	100
합계	20	1	5	3	7	0	36
	55.6	2.8	13.9	8.3%	19.4	0.0	100

※ 복수응답 : 국내 6, 중국 3

o 기업 규모별 침해발생 원인

⇒ 침해발생 원인으로 대기업은 “우리나라 상표・디자인・기술 등의 현지에서의 유명성 및 유용성(61.5%)”, “현지인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법・제도상의 미비(15.4%)”,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 관리 소홀(15.4%)” 순으로 산업재산권 침해발생의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상표·디자인·기술 등의 현지에서의 유명성 및 유용성(52.2%)”, “현지인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법·제도상의 미비(21.7%)”, “중국 산업재산권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13.0%)”,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 관리 소홀(13.0%)” 순으로 산업재산권 침해발생의 원인으로 들고 있어, 대기업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업규모별 침해발생 원인>

(단위 : 개사, %)

구분	우리 산재권의 유명성·유용성	현지 관계당국의 산재권 출원·등록 소홀	권리자의 산재권 보호·관리 소홀	현지 산재권 제도의 정보부족	현지인의 인식부족 및 법제미비	기타	합계
대기업	8	1	2	0	2	0	13
	61.5	7.7	15.4	0.0	15.4	0.0	100
중소기업	12	0	3	3	5	0	23
	52.2	0.0	13.0	13.0	21.7	0.0	100
합계	20	1	5	3	7	0	36
	55.6	2.8	13.9	8.3	19.4	0.0	100

※ 복수응답 : 대기업 2, 중소기업 7

<산업재산권 침해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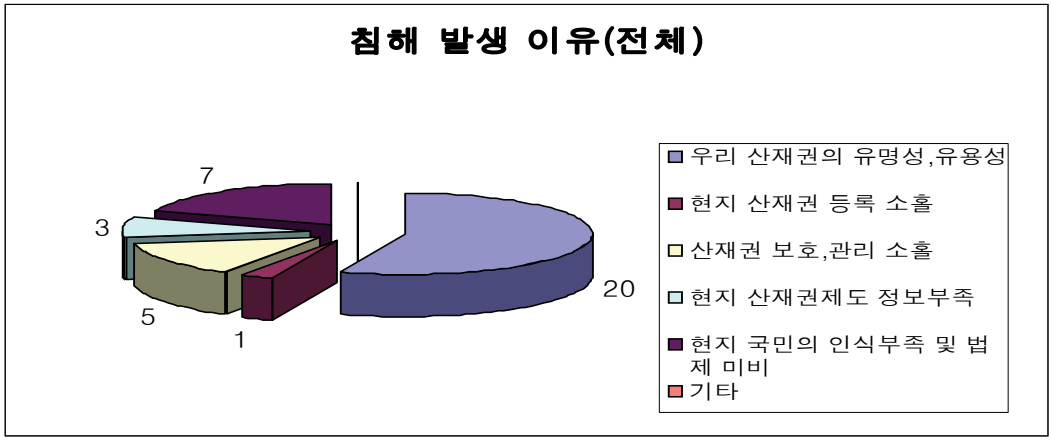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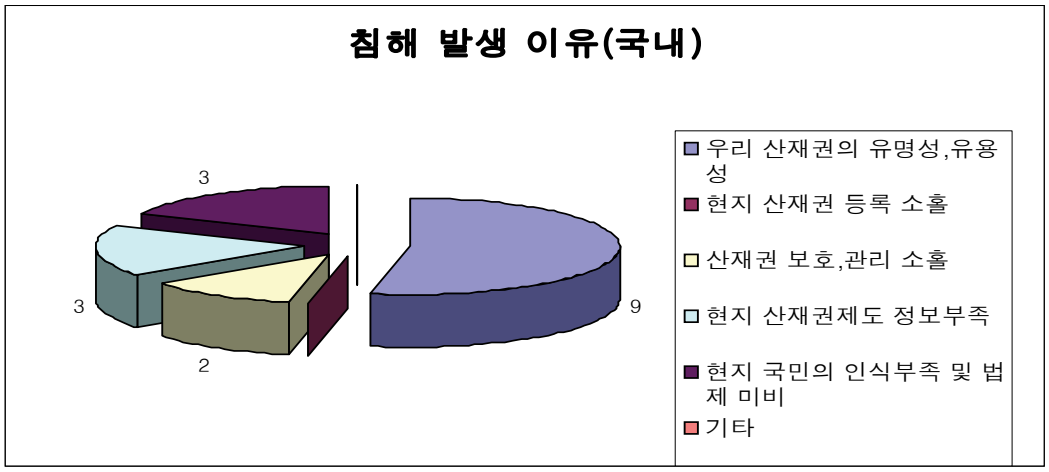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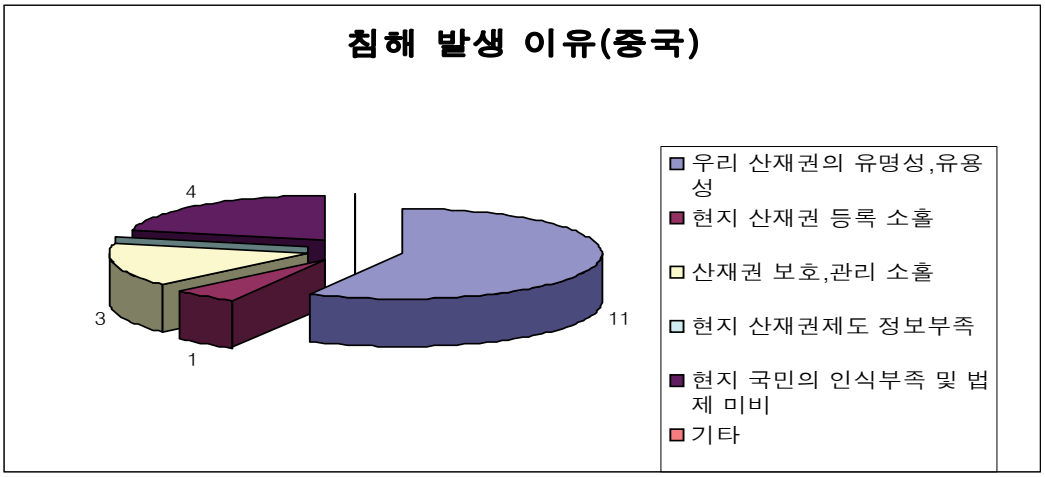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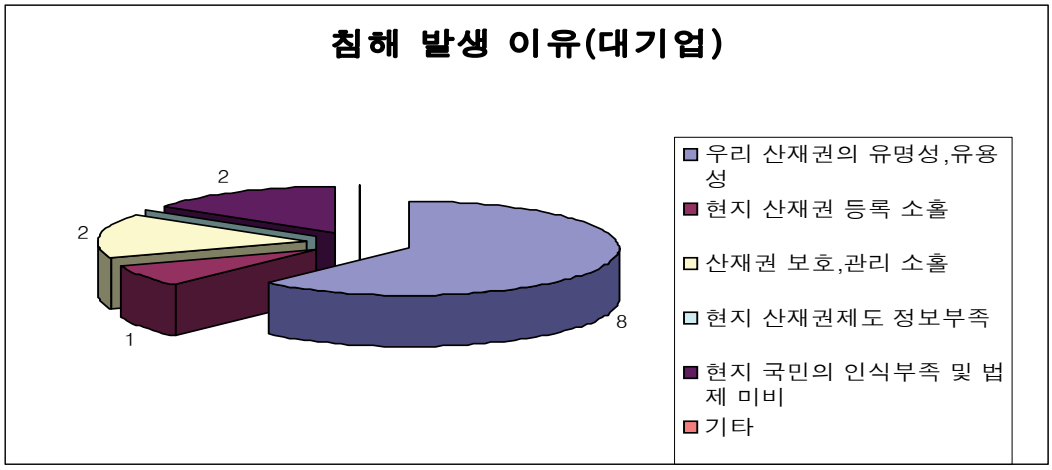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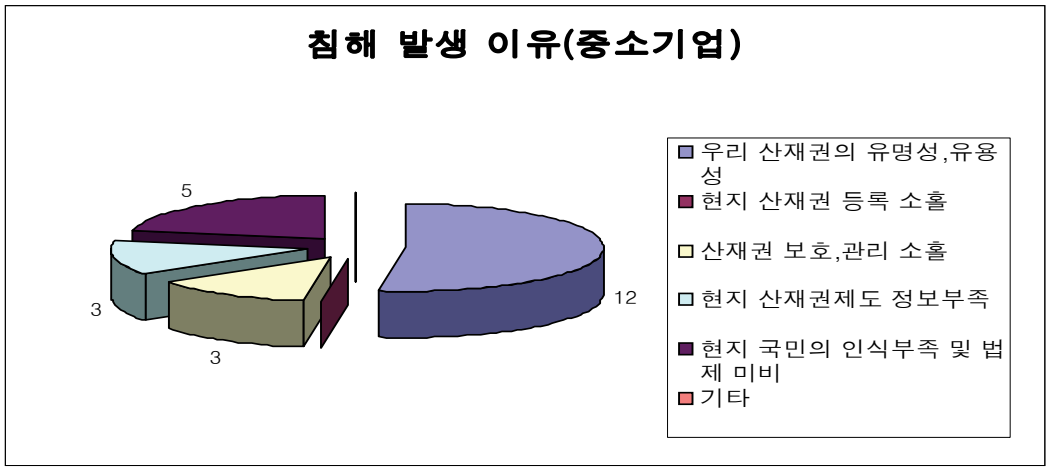

(5) 침해품을 발견한 경로는?

o 응답기업

⇒ 대기업 14개사, 중소기업 24개사 등 총 38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대기업 1개사와 중소기업 8개사의 복수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38	14	24	대기업1/중소기업8
100	36.8	63.2	

o 지역별 침해품을 발견한 경로

⇒ 전체 응답기업의 42.6%가 “중국 및 해외소재 자사의 영업조직의 조사를 통하여” 침해품을 발견했으며, 27.7%가 “중국 거래처의 우호적인 제보를 통하여 발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 한 경우도 19.1%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30.0%가 “중국 거래처의 우호적인 제보를 통하여 발견”하였고, 25.0%가 “중국 및 해외소재 자사의 영업조직의 조사를 통하여” 침해품을 발견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55.6%가 “중국 및 해외소재 자사의 영업조직의 조사를 통하여”, 25.9%가 “중국 거래처의 우호적인 제보를 통하여 발견”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국내소재 기업에 비해 현지의 자체 영업조직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들 영업조직에 의해 침해품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 침해품 발견 경로>

(단위 : 개사, %)

구분	전문 조사업체 의뢰	중국 거래처 제보	해외 거래처 클레임	중국소재 회사영업 조직	중국 행정기관 통보	우연히 발견	기타	합계
국내	2	6	1	5	0	4	2	20
	10.0	30.0	5.0	25.0	0.0	20.0	10.0	100
중국	0	7	0	15	0	5	0	27
	0.0	25.9	0.0	55.6	0.0	18.5	0.0	100
합계	2	13	1	20	0	9	2	47
	4.3	27.7	2.1	42.6	0.0	19.1	4.3	100

※ 복수응답 : 국내 7, 중국 2

o 기업규모별 침해품을 발견한 경로

⇒ 대기업은 66.7%가 “중국 및 해외소재 자사의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침해품을 찾아내고, “중국 거래처의 우호적인 제보를 통하여 발견”은 단지 6.7%에 불과한 반면,

⇒ 중소기업은 “중국 및 해외소재 자사의 영업조직”을 활용한 경우는 31.3%이고, “중국 거래처의 우호적인 제보를 통하여 발견”이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현지의 거래처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체 영업조직이 취약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설문 결과의 특이사례는 중소기업 가운데 2개사가 중국 현지의 전문 조사기관을 이용하여 침해품을 발견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한국의 전체 대기업을 통틀어 단지 몇 개 기업만이 현지 전문 조사 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인 응답이었음

<기업규모별 침해품 발견 경로>

(단위 : 개사, %)

구분	전문 조사업체 의뢰	중국 거래처 제보	해외 거래처 클레임	중국소재 회사영업 조직	중국 행정기관 통보	우연히 발견	기타	합계
대기업	0	1	1	10	0	1	2	15
	0.0	6.7	6.7	66.7	0.0	6.7	13.3	100
중소기업	2	12	0	10	0	8	0	32
	6.30	37.5	0.0	31.3	0.0	25.0	0.0	100
합계	2	13	1	20	0	9	2	47
	4.30	27.7	2.1	42.6	0.0	19.1	4.3	100

※ 복수응답 : 대기업 1, 중소기업 8

<침해품 발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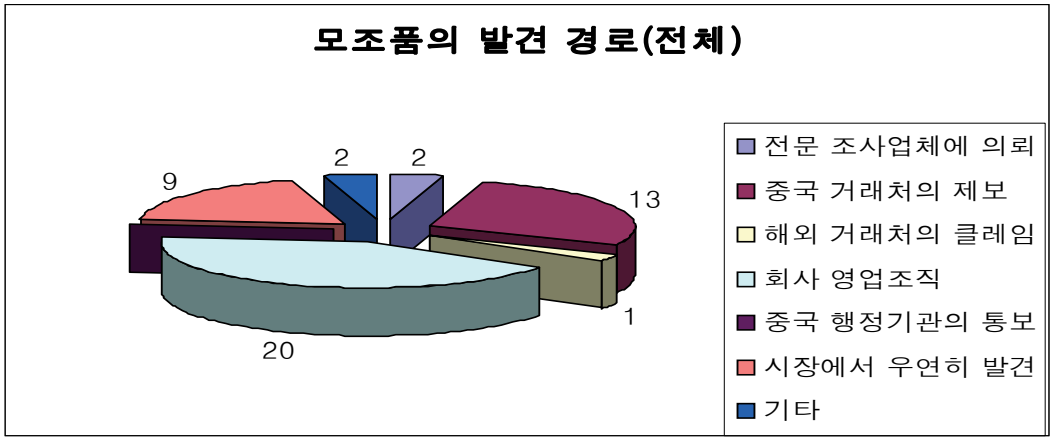
모조품의 발견 경로(전체)
2
2
9
13
1
20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
중국 거래처의 제보
해외 거래처의 클레임
회사 영업조직
중국 행정기관의 통보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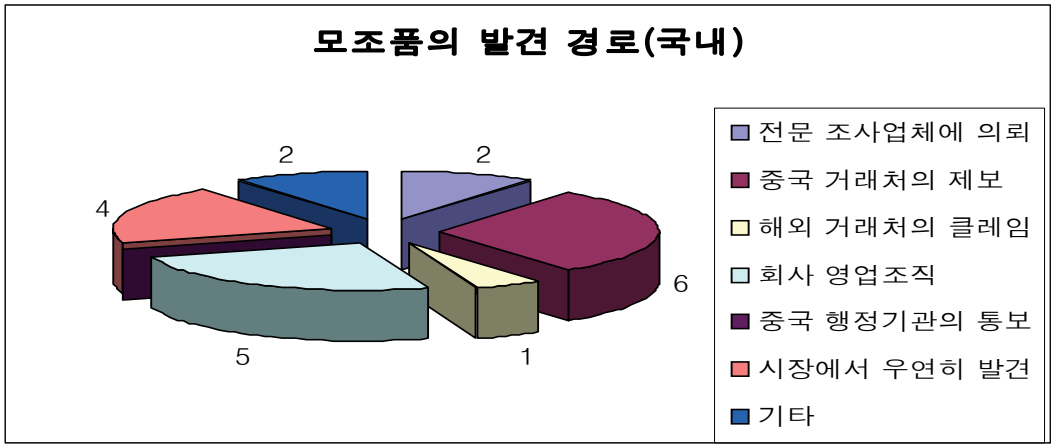
모조품의 발견 경로(국내)
2
2
4
6
5
1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
중국 거래처의 제보
해외 거래처의 클레임
회사 영업조직
중국 행정기관의 통보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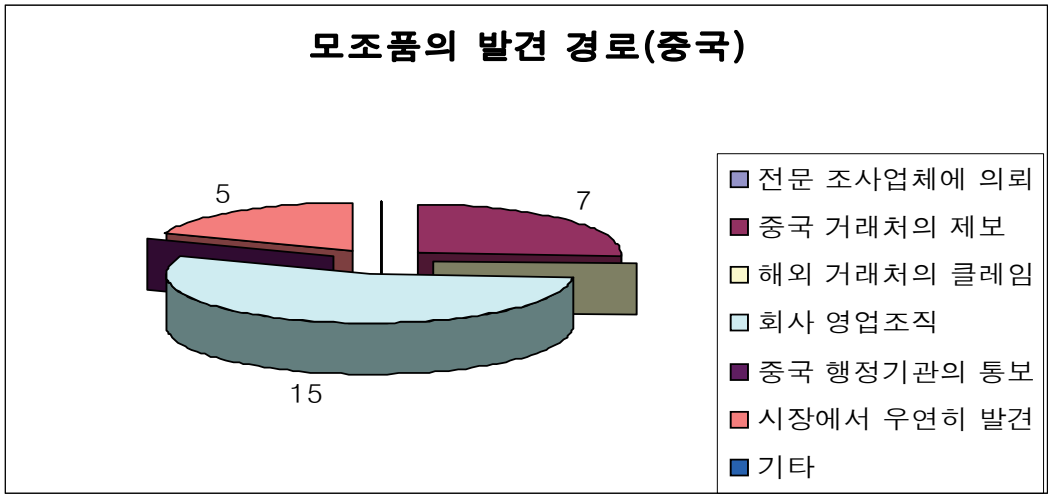
모조품의 발견 경로(중국)
5
7
15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
중국 거래처의 제보
해외 거래처의 클레임
회사 영업조직
중국 행정기관의 통보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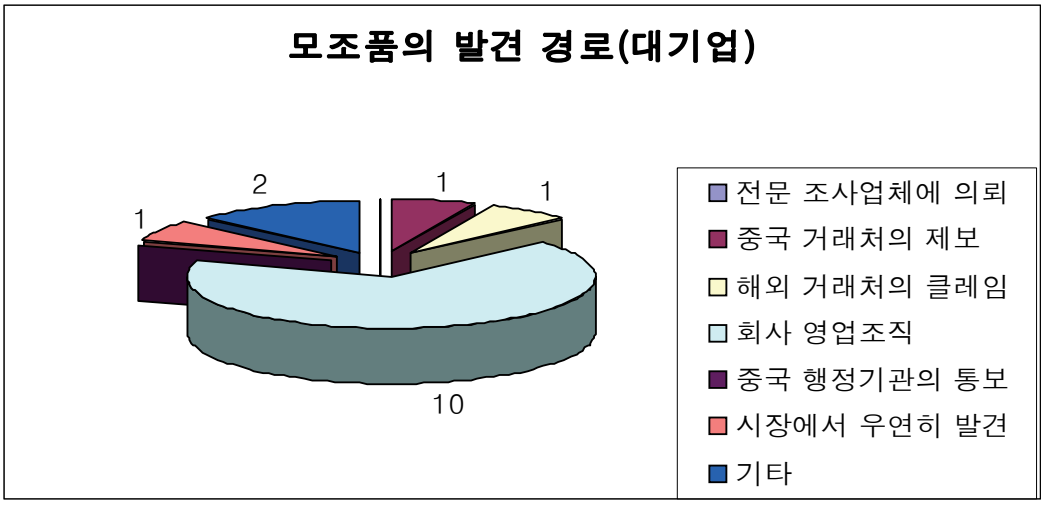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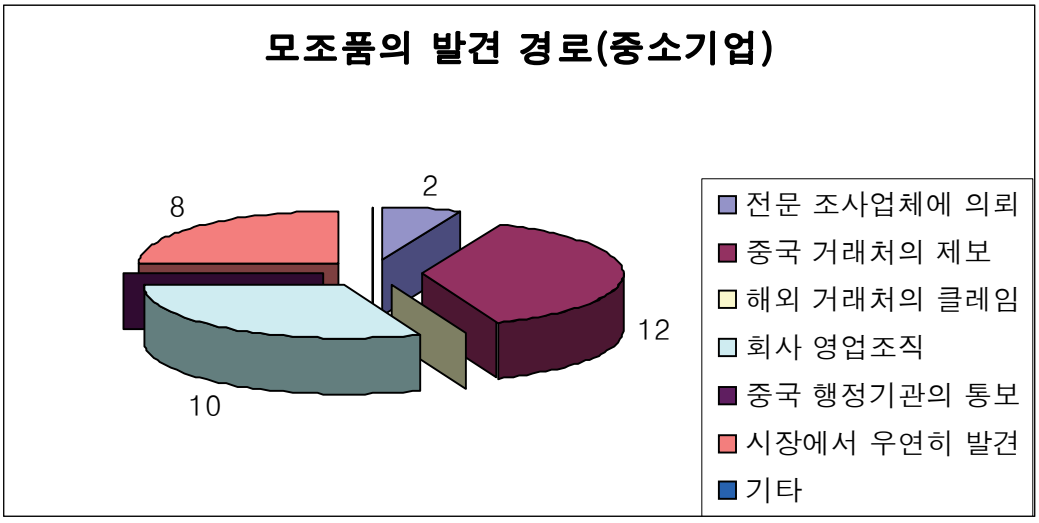

(6) 침해품의 제조・유통・판매 경로

o 침해품의 제조・유통・판매 경로를 묻는 질문에 모두 9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침해품은 중국 국경 내에서 제조되고,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다고 응답

- 모조품은 주로 소규모의 공장에서 제조
- 판매는 내수의 경우에는 대형마켓보다는 일반 시장이나 소매상에서 주로 판매하고, 수출의 경우에는 주로 도매시장을 통해 해외로 수출

- 수출되는 국가들로는 주로 동남아 지역과 중동 지역을 들 수 있으며, 러시아나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동구유럽 국가들과 대만 등지에도 수출되는 것으로 응답

※ QBPC의 중국모조품실태조사(2002-2003) 결과에 따른 모조품의 제조 및 유통 경로

o 모조품 제조

⇒ 중국에서의 모조품 제조는 주로 "무허가공장"(응답자의 79.06%, 복수응답 포함), "사영기업"(75.39%), "개인"(74.87%)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모조품 제조자의 성격(유효 응답 : 209개사)>

(단위 : 개사, %)

침해자의 성격	응답 기업	비율
국가 소유 및 국가 주식소유 회사	18	9.42
집단소유 및 성시 소유 기업	76	39.79
유한책임회사	20	10.47
사영회사	144	75.39
외국투자기업	5	2.62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회사	9	4.71
개인	143	74.87
무허가 공장	151	79.06

o 유통 경로

⇒ 트레이딩 마켓, 통상의 도소매상은 직접 판매와 함께 모조품 유통의 중요 경로들이며, 트레이딩 마켓 및 전문상가들은 지금까지 모조품의 주 집산, 유통의 센터가 되어 왔음. 동시에 일부 모조품 제조자들은 인터넷을 새로운 경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세계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음.

o 저가 판매

⇒ 응답 기업의 70%는 모조품이 정품의 75%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응답하였고, 정품의 75%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응답자의 30%는 짝퉁이 정품에 근접할수록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응답하였음.

o 모조품의 지역적 유통

⇒ 모조품의 유통을 지역적 측면에서 보면 3가지의 주요한 특징이 드러났음. 첫째는 모조품 유통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모조행위는 연안 지역에서 더욱 만연해 있으며, 셋째는 모조품의 지역적 유통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정 분야의 모조품은 특정 지역에서 만연해 있는 양상을 띰.

⇒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모조품은 정품이 생산되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임. 이는 자기 행정 구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음.

<모조품의 생산, 판매 지역(유효응답 : 192개사)>

(단위 : %)

구 분	전체 기업		중국 기업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도시 내	30.73	31.25	31.58	27.33	27.03	32.43
성 내	68.23	66.67	71.71	61.63	51.35	56.76
성 외부 판매	84.38	84.90	82.24	74.42	94.59	91.89
해외 수출		18.23		12.21		35.14

(7) 침해 발생시의 대응방안은?

o 응답기업

⇒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17개사 등 총 23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7개사의 복수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23	6	17	대기업3/중소기업7
100	26.1	73.9	

o 지역별 침해발생시의 대응방안

⇒ 우리 기업들은 모조품 발견 등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66.7%가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0.3%는 대처곤란으로 포기(12.1%)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18.2%)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침해발생시 형사적으로 대응을 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불과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사·형사·행정조치 및 침해 경고 등의 적극대응이 64.7%, 대처 곤란으로 포기(23.5%),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11.8%)이 3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민사·형사·행정조치 및 침해 경고 등의 적극대응이 68.9%,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 25.0%로 국내소재 한국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침해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과는 달리 “형사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중국진출 기업들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보호’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침해발생시 대응 방안>

(단위 : 개사, %)

구분	민사 조치	형사 조치	행정 조치	지재권 출원	침해 경고	대처 곤란 포기	조치 안함	기타	합계
국내	3	3	2	1	2	4	2	0	17
	17.6	17.6	11.8	5.9	11.8	23.5	11.8	0.0	100
중국	6	0	3	0	2	0	4	1	16
	37.5	0.0	18.8	0.0	12.5	0.0	25.0	6.3	100
합계	9	3	5	1	4	4	6	1	33
	27.3	9.1	15.2	3.0%	12.1	12.1	18.2	3.0	100

※ 복수응답 : 국내 7, 중국 3

o 기업 규모별 침해 발생시 대응 방안

⇒ 대기업은 침해발생시 77.8%가 법적 조치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22.2%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소기업은 62.5%가 각종 조치를 취하고, 37.5%가 대처곤란으로 대응을 포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규모별 침해발생시 대응 방안>

(단위 : 개사, %)

구분	민사 조치	형사 조치	행정 조치	지재권 출원	침해 경고	대처 곤란 포기	조치 안함	기타	합계
대기업	3	1	1	1	1	0	2	0	9
	33.3	11.1	11.1	11.1	11.1	0.0	22.2	0.0	100
중소 기업	6	2	4	0	3	4	4	1	24
	25.0	8.3	16.7	0.0	12.5	16.7	16.7	4.2	100
합계	9	3	5	1	4	4	6	1	33
	27.3	9.1	15.2	3.0	12.1	12.1	18.2	3.0	100

※ 복수응답 : 대기업 3, 중소기업 7

<침해발생시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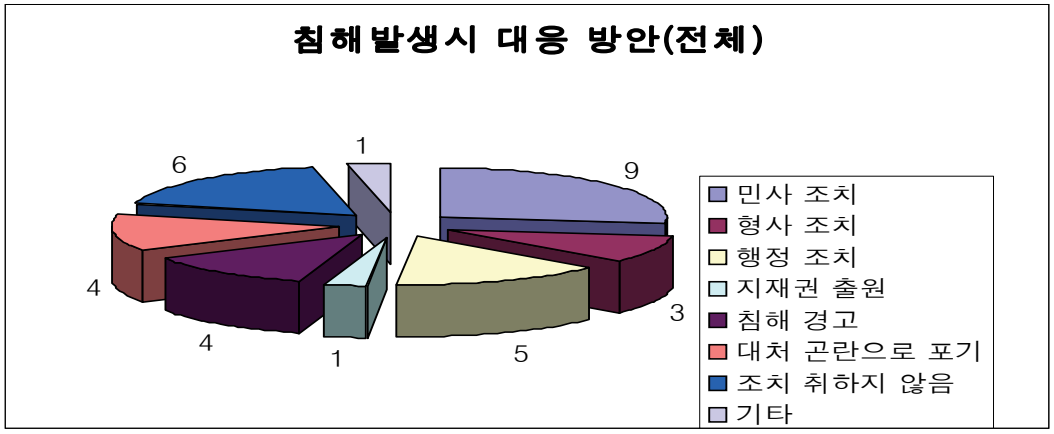
침해발생시 대응 방안(전체)
1
6
9
4
3
4
1
5
민사 조치
형사 조치
행정 조치
지재권 출원
침해 경고
대처 곤란으로 포기
조치 취하지 않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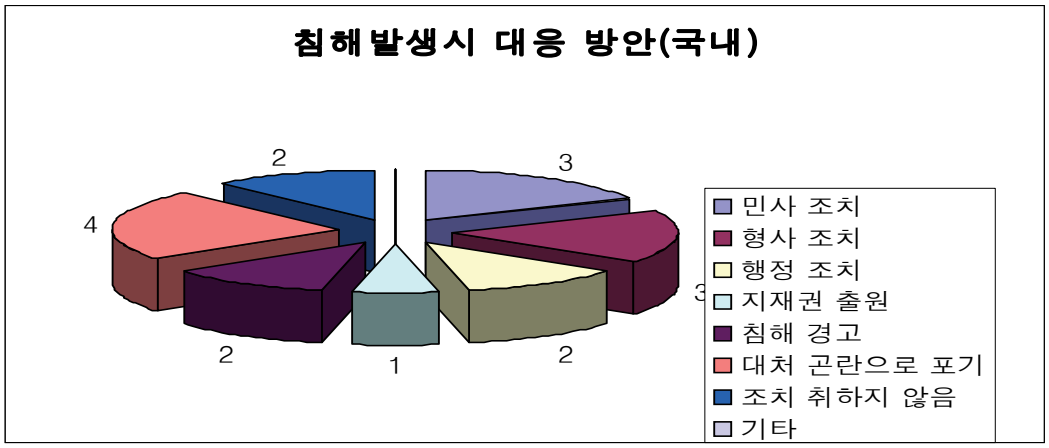
침해발생시 대응 방안(국내)
2
3
4
3
2
1
2
민사 조치
형사 조치
행정 조치
지재권 출원
침해 경고
대처 곤란으로 포기
조치 취하지 않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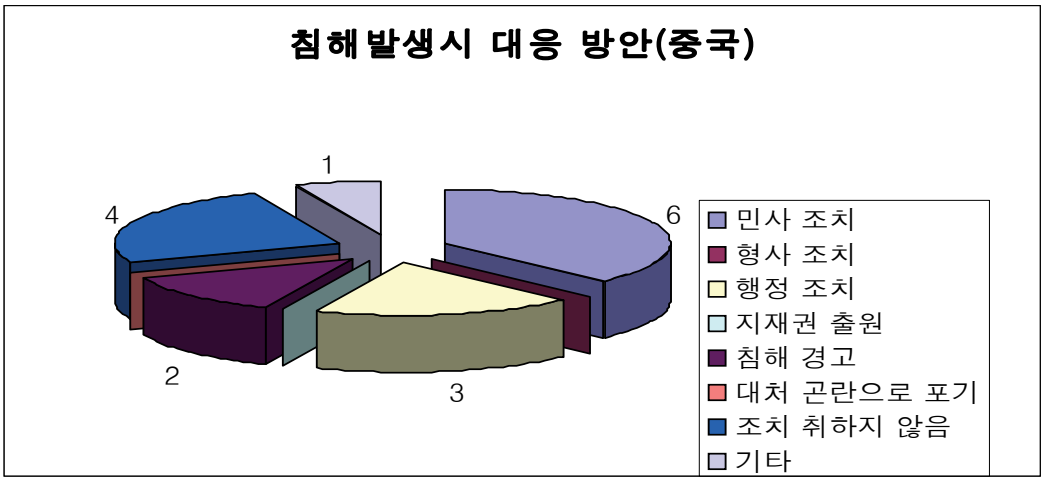
침해발생시 대응 방안(중국)
1
4
6
2
3
민사 조치
형사 조치
행정 조치
지재권 출원
침해 경고
대처 곤란으로 포기
조치 취하지 않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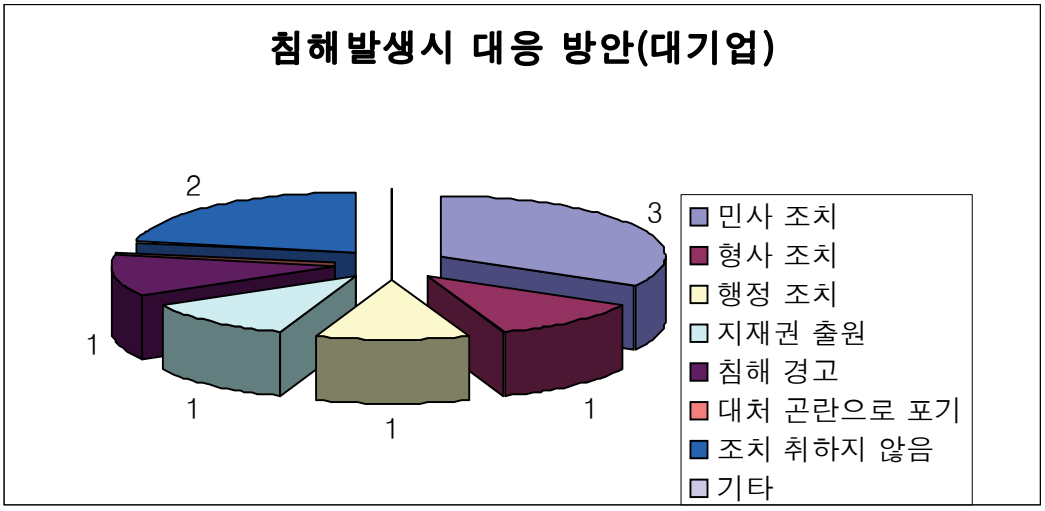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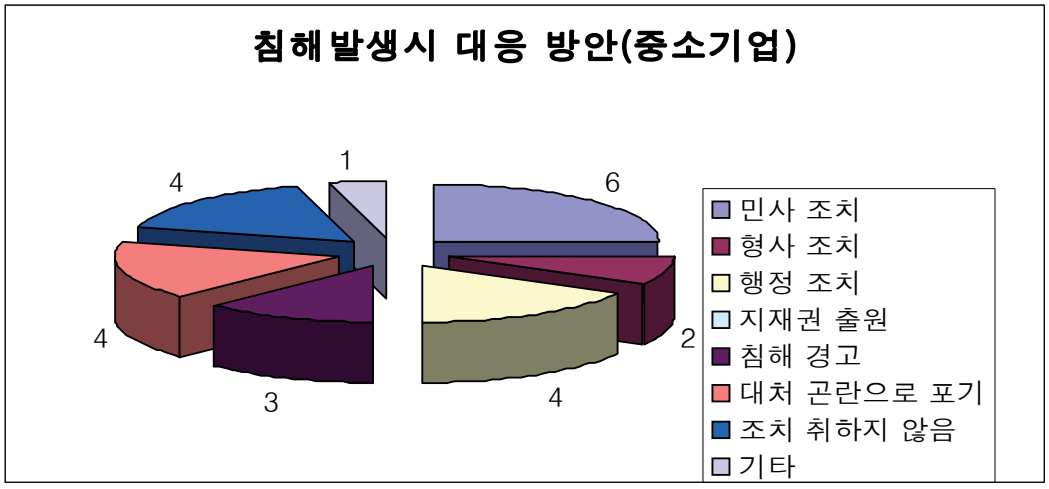

(8) 민사적 대응조치 결과

o 설문 7에서 침해발생시 민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모두 9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민사 조치를 통해 해당 모조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개 기업이었음

o 민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민사 소송의 제기가 2건, 경고장 발송이 2건, 상대방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가 1건이었으며,

- 경고장 발송은 우리 기업들이 소 제기의 전 단계 또는 소 제기를 전제

하지 않은 경고로서 많이 이용하는데 반하여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 반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2건은 달리 경고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밖에 무효심판을 통해 모조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침해자가 침해를 부인하고 '자기의 실용신안권의 존재'를 주장해 와, 해당 실용신안권을 무효시킴으로써 상대방의 모조품 생산을 중단시킨 사례임.

o 중국의 지재권 관련 침해금지 소송의 심급관할

- 중국에서의 지재권 관련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을 담당하며, 고급인민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함. 중국은 2심제이므로 항소심이 최종심임. 간혹 소가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는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을 맡고, 항소심은 최고인민법원이 맡게 되는데, 조사 결과 LG산전의 상표분쟁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음.

o 침해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심급당 약 1년에서 1년 6월이 소요되며,
- 외국 기업의 분쟁 사건을 대리해 본 경험이 충분한 법률사무소나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심급당 약 한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9) 형사적 법적 대응 결과

o 설문 7에서 침해발생시 형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 중국 란광주식회사는 회사명칭의 이니셜이 "LG"로서 문자 "LG+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이 란광주식회사는 한국의 LG산전이 "LG" 브랜드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자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북경시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당시 란광주식회사가 손해배상으로 요구한 금액이 인민폐 1억위안이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통상 섭외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이 인민폐 8천만위안을 넘으면 중급인민법원 대신 고급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란광주식회사와 LG산전의 소송의 제1심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되었다. 본 소송에서 LG가 승소하였고, 란광주식회사는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항소심을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담당한 바 있다. 참고로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사로서 모두 3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나, 형사적 조치 결과 침해자를 구속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

(10) 행정적 단속 조치 결과

o 설문 7에서 침해발생시 공상행정관리국, 전리국, 세관 등 지재권 침해 단속기관에 신고 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모두 5개 기업으로 조사되었음

- 이들 기관을 통한 단속결과 행정처벌에 이른 경우는 4건이었으며,
- 행정처벌의 내용은 “벌금 및 압수”이고, 통상 행정처벌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행정 단속을 하는 경우 직접 침해 단속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에는 공식 비용은 들지 않음. 그러나 전문단속회사를 이용하여 행정 단속을 맡기는 경우에는 침해자 조사부터 행정처벌서를 받는 데까지 전 절차에 대한 비용으로 약 한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됨.

(11) 침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o 응답기업

⇒ 대기업 8개사, 중소기업 14개사 등 총 22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대기업 2개사와 중소기업 1개사의 복수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22	8	14	대기업2/중소기업1
100	36.4	63.6	

o 지역별 침해발생시 대응하지 아니한 이유

⇒ 전체 응답기업의 72.0%가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과다한 비용 문제로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가 크지 않아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에 불과하였음. 조사 결과 “기타”에 응답한 비율도 24%나 되었는데, 대부분이 피해를 당한 산업재산권이 아직 출원중이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음(중국은 출원중인 산업재산권의 경우 발명특허만 보호할 뿐 기타 상표·디자인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중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음).

⇒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경우, 침해가 발생했는데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의 62.5%가 “중국의 법적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 응답하여 법률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비용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12.5%의 응답자를 합하면 약 75%가 법적 서비스 부재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률적 대응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중국 모조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경우도 국내소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과다한 비용”을 첫번째 이유로 꼽았는데 그 비율은 52.9%에 이르렀으며,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17.6%를 합하면 모두 70%의 기업들이 뚜렷한 법적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개사, %)

구분	대응방법을 몰라서	구제절차가 복잡, 비용 과다	피해가 크지 않아서	기타	합계
국내	1	5	1	1	8
	12.5	62.5	12.5	12.5	100
중국	3	9	0	5	17
	17.6	52.9	0.0	29.4	100
합계	4	14	1	6	25
	16.0	56.0	4.0	24.0	100

※ 복수응답 : 국내 1, 중국 2

o 기업 규모별 침해발생시 대응하지 아니한 이유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제절차의 복잡성과 과다한 비용”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이 60.0%, 중소기업이 53.3%였으며,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이 20.0%, 중소기업이 13.3%로 오히려 대기업에서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실제로 전화 상담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및 특허출원이 많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특허나 상표의 전문가를 사내에 두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았으며, 더구나 출원·등록 관련 업무가 아닌 침해대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음

<기업규모별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개사, %)

구분	대응방법을 몰라서	구제절차가 복잡, 비용 과다	피해가 크지 않아서	기타	합계
대기업	2	6	1	1	10
	20.0	60.0	10.0	10.0	100
중소기업	2	8	0	5	15
	13.3	53.3	0.0	33.3	100
합계	4	14	1	6	25
	16.0	56.0	4.0	24.0	100

※ 복수응답 : 대기업 2, 중소기업 1

<기업규모별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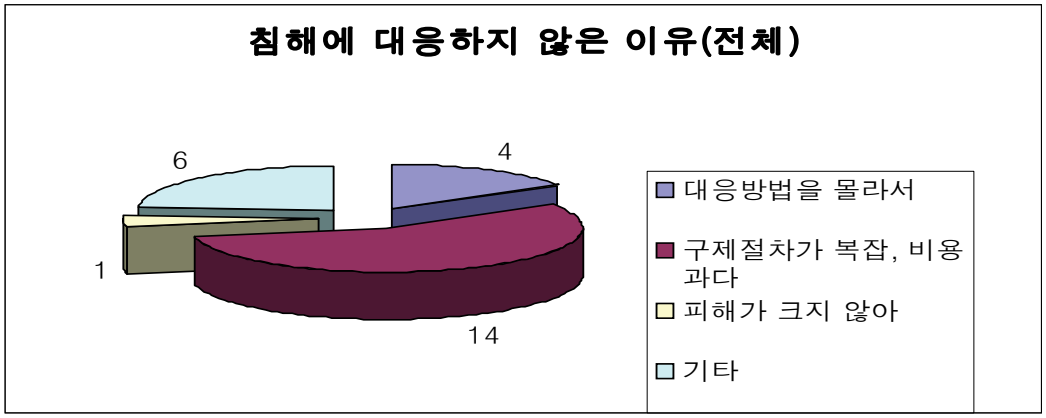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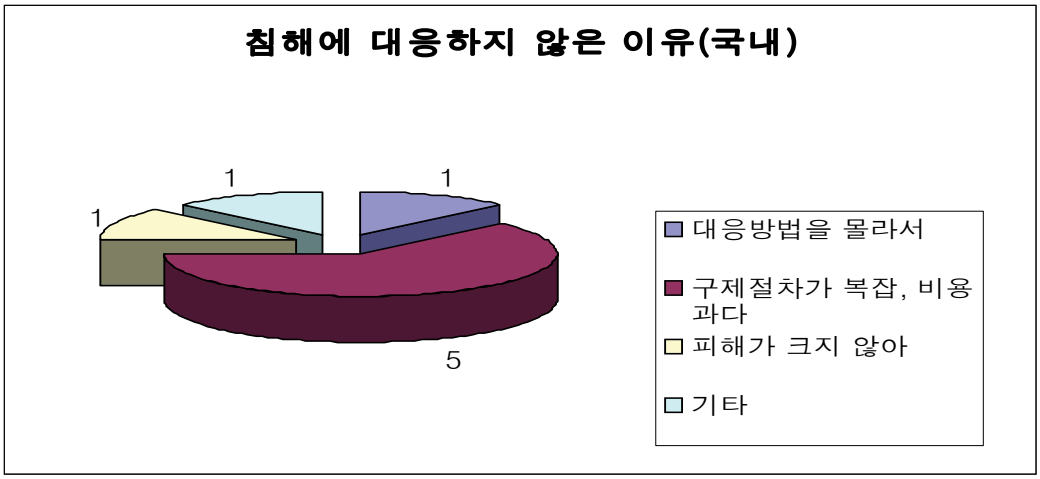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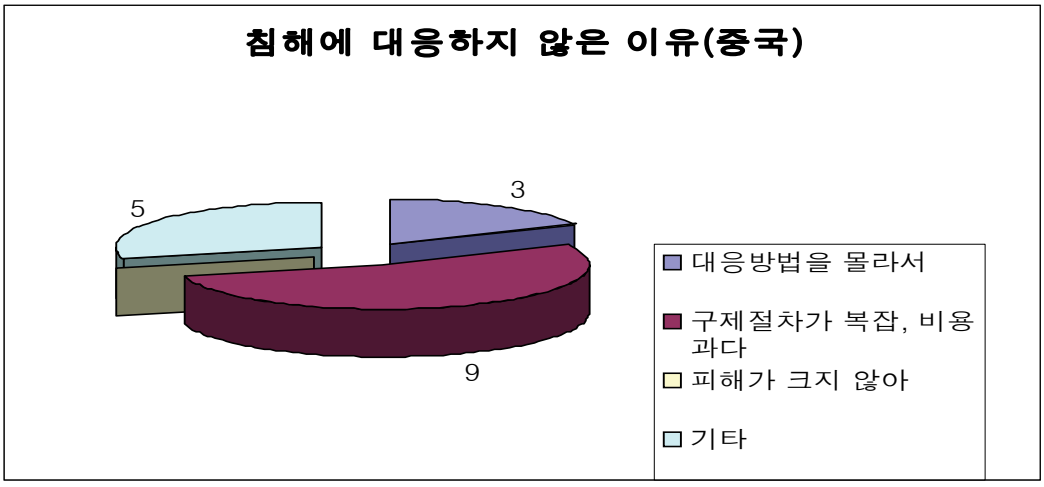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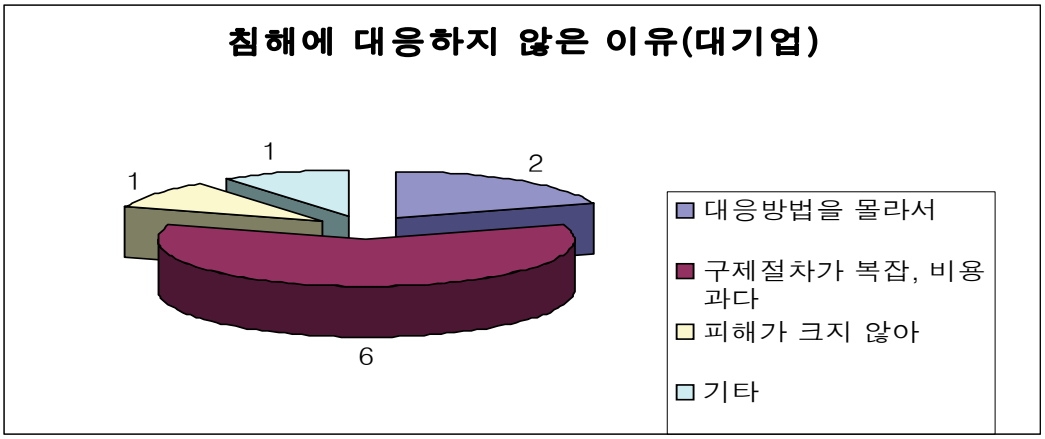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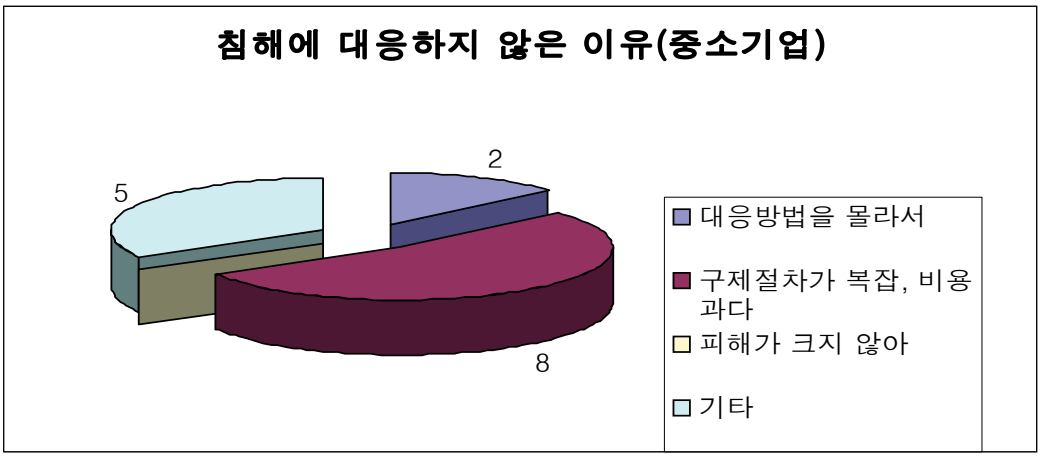

(12) 침해 대응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o 응답기업

⇒ 대기업 8개사, 중소기업 15개사 등 총 23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대기업 5개사와 중소기업 14개사의 복수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23	8	15	대기업5/중소기업14
100	34.8	65.2	

o 지역별 침해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

⇒ 전체 응답기업의 33.3%가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부족”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침해자(상품)와 관련된 정보수집의 어려움(28.6%)”, “절차의 복잡성과 미비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26.2%)”도 침해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지재권보호 절차가 복잡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27.8%)”, “침해업체 파악, 유통경로 등 침해자(상품)와 관련된 정보수집의 곤란(22.2%)”이 그 뒤를 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 현지에서의 법률 상담 곤란”은 5.6%에 불과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침해자(상품)과 관련된 정보수집의 곤란”을 첫째로 응답하여 33.3%를 차지하였으며, “인력과 비용 부족”이 29.2%, ‘절차의 복잡성과 단속 실효성 없음’이 25.0%로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음

<지역별 침해대응시 애로 사항>

(단위 : 개사, %)

구분	침해관련 정보수집 곤란	현지의 법률 상담 곤란	절차의 복잡·미비로 실효성 없음	침해 대처 인력·비용 부족	기타	합계
국내	4	1	5	7	1	18
	22.2	5.6	27.8	38.9	5.6	100
중국	8	2	6	7	1	24
	33.3	8.3	25.0	29.2	4.2	100
합계	12	3	11	14	2	42
	28.6	7.1	26.2	33.3	4.8	100

※ 복수응답 : 국내 8, 중국 11

o 기업규모별 침해대응시 가장 큰 애로사항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두 '인력과 비용의 부족', '침해자(상품)과 관련된 정보수집의 곤란', '절차의 복잡성과 단속 실효성 없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각각 30.8%, 30.8%, 23.1%였고, 중소기업은 34.5%, 27.6%, 27.6%로 나타났음.

<기업규모별 침해대응시 애로 사항>

(단위 : 개사, %)

구분	침해관련 정보수집 곤란	현지의 법률 상담 곤란	절차의 복잡·미비로 실효성 없음	침해 대처 인력·비용 부족	기타	합계
대기업	4	1	3	4	1	13
	30.8	7.7	23.1	30.8	7.7	100
중소기업	8	2	8	10	1	29
	27.6	6.9	27.6	34.5	3.4	100
합계	12	3	11	14	2	42
	28.6	7.1	26.2	33.3	4.8	100

※ 복수응답 : 대기업 5, 중소기업 14

<침해대응시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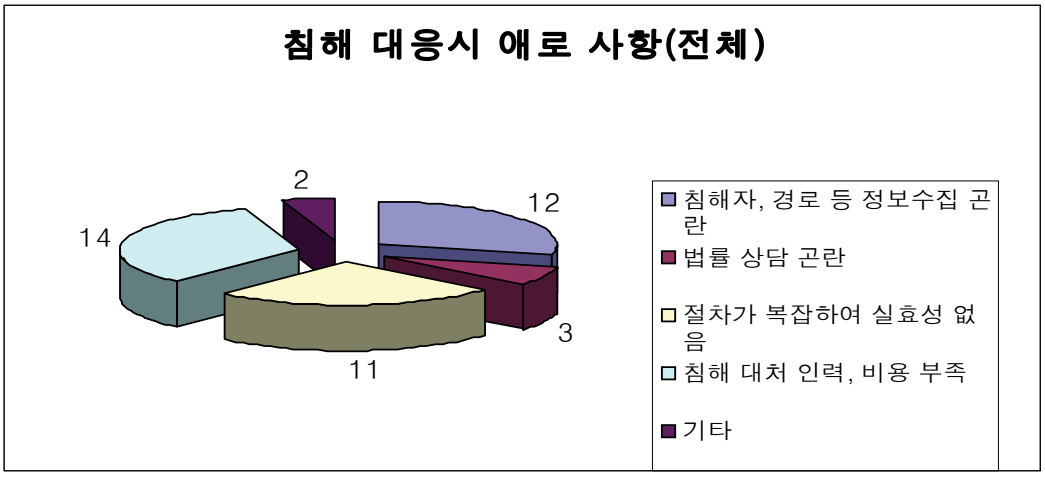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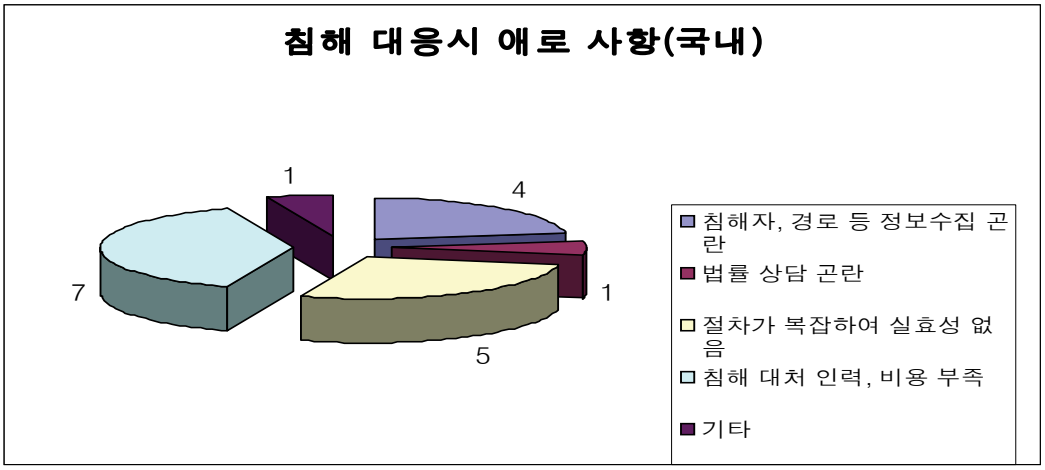
침해 대응시 애로 사항(국내)
1
4
7
1
5
침해자, 경로 등 정보수집 곤란
법률 상담 곤란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 없음
침해 대처 인력, 비용 부족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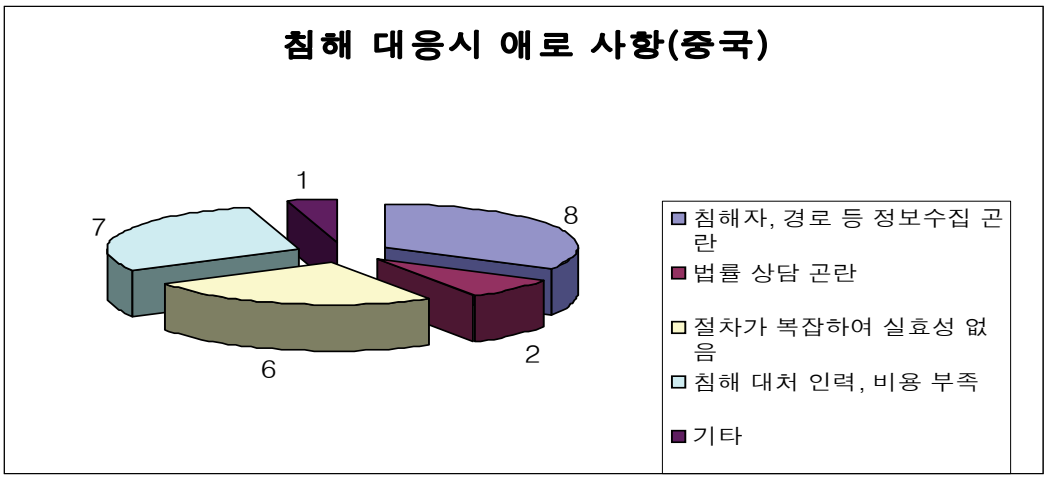
침해 대응시 애로 사항(중국)
1
7
8
6
2
침해자, 경로 등 정보수집 곤란
법률 상담 곤란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 없음
침해 대처 인력, 비용 부족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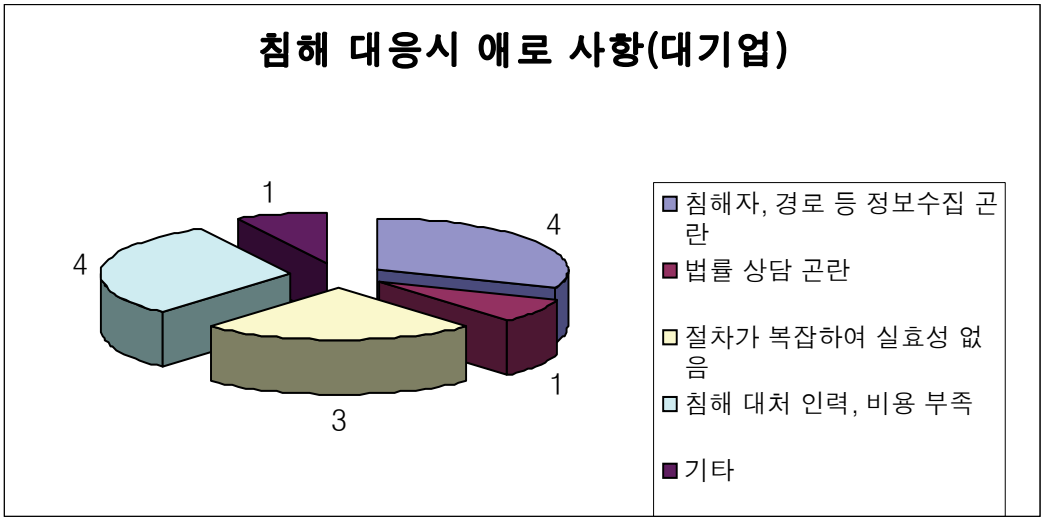
침해 대응시 애로 사항(대기업)
1
4
4
1
3
침해자, 경로 등 정보수집 곤란
법률 상담 곤란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 없음
침해 대처 인력, 비용 부족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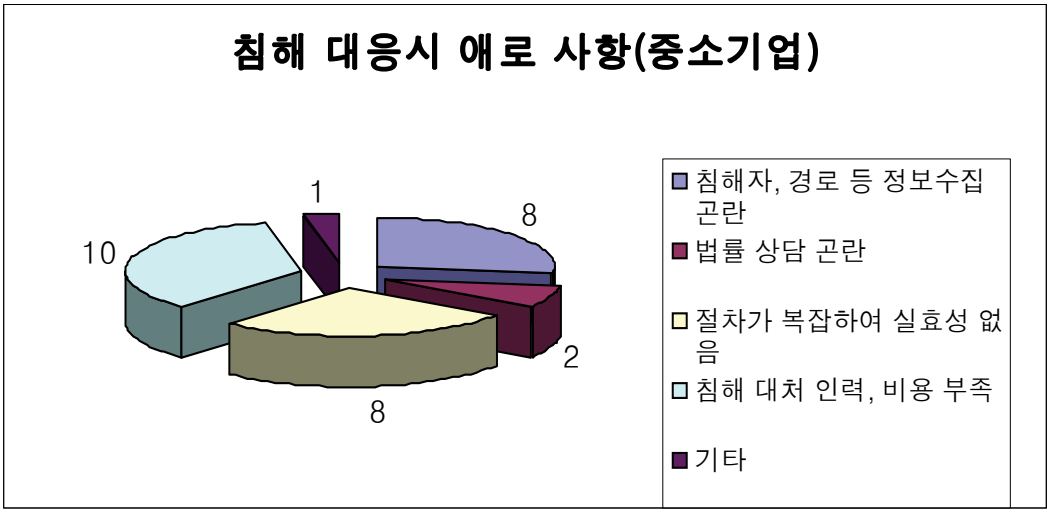

(13) 침해발생시 도움을 받는 곳?

o 응답기업

⇒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11개사 등 총 17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기업 중 대기업 2개사와 중소기업 2개사의 복수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복수응답
17	6	11	대기업2/중소기업2
100	35.3	64.7	

o 지역별 침해발생시 도움받는 곳

⇒ 중국에서 침해발생시 도움받는 곳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52.4%가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에 응답했으며,

KOTRA 무역관 14.3%, 특허청 등 국내의 지재권 전문기관 9.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지역별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50.0%)", "특허청 등 국내의 지재권 전문기관(16.7%)", "KOTRA 등 현지무역관(16.7%)", "회사자체 인력을 활용하므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개 기업에 불과한 반면,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55.6%)", "회사자체 인력을 활용하므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있음(33.3%)", "KOTRA 등 현지무역관(11.1%)"이라고 응답하여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침해대응시 도움받는 곳>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현지 대사관 등 공관	KOTRA 무역관	현지 고용 변호사·변리사	도움받지 않음 (자체 인력)	기타	합계
국내	2	0	2	6	1	1	12
	16.7	0.0	16.7	50.0	8.3	8.3	100
중국	0	0	1	5	3	0	9
	0.0	0.0	11.1	55.6	33.3	0.0	100
합계	2	0	3	11	4	1	21
	9.5	0.0	14.3	52.4	19.0	4.8	100

※ 복수응답 : 국내 3, 중국 1

o 기업규모별 침해대응시 도움받는 곳

⇒ 대기업의 62.5%, 중소기업의 46.2%가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기타 특허청 등 국내의 지재권 전문기관, KOTRA 등을 이용하는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현지의 법률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비용 지불 능력상 당연한 결과로 보임

<기업규모별 침해대응시 도움받는 곳>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현지 대사관 등 공관	KOTRA 무역관	현지 고용 변호사·변리사	도움받지 않음 (자체 인력)	기타	합계
대기업	1	0	1	5	1	0	8
	12.5	0.0	12.5	62.5	12.5	0.0	100
중소기업	1	0	2	6	3	1	13
	7.7	0.0	15.4	46.2	23.1	7.7	100
합계	2	0	3	11	4	1	21
	9.5	0.0	14.3	52.4	19.0	4.8	100

※ 복수 응답 : 대기업 2, 중소기업 2

<침해대응시 도움받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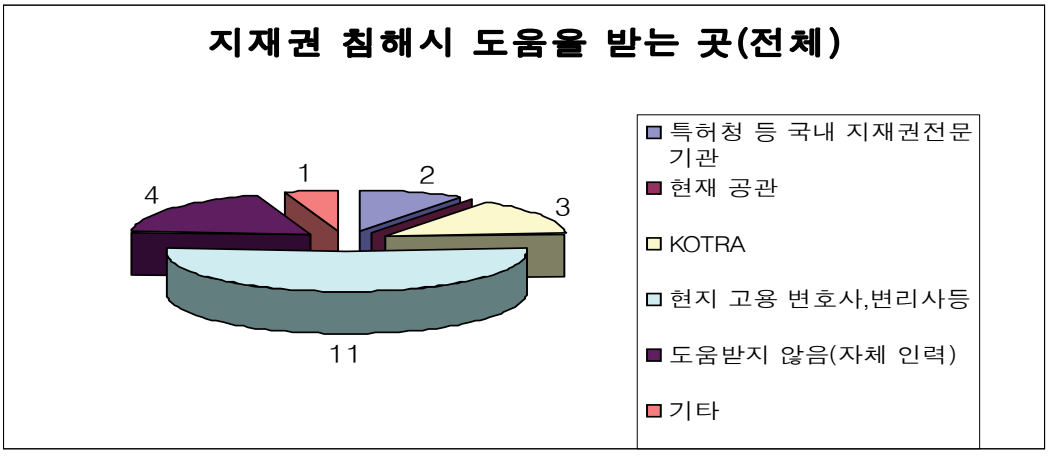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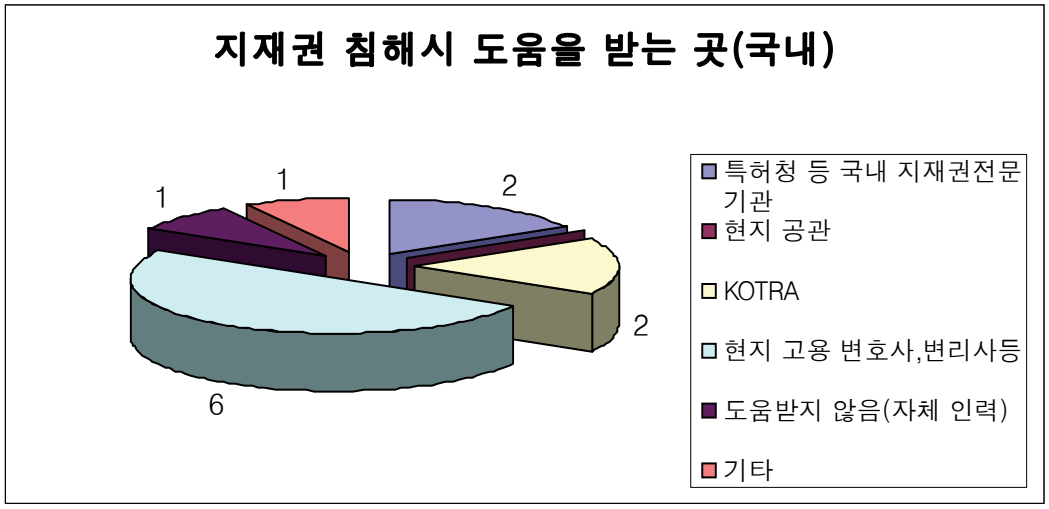
지재권 침해시 도움을 받는 곳(국내)
1
1
2
2
6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전문 기관
현지 공관
KOTRA
현지 고용 변호사,변리사등
도움받지 않음(자체 인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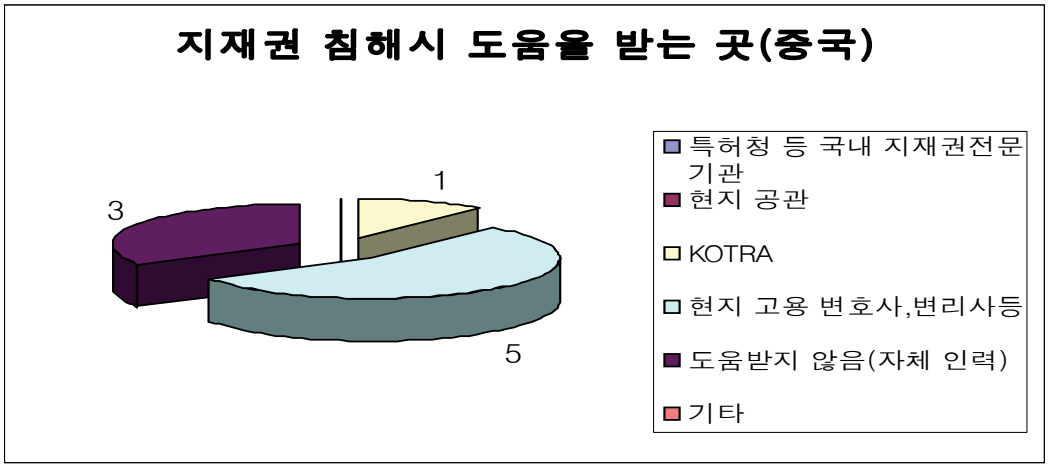
지재권 침해시 도움을 받는 곳(중국)
3
1
5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전문 기관
현지 공관
KOTRA
현지 고용 변호사,변리사등
도움받지 않음(자체 인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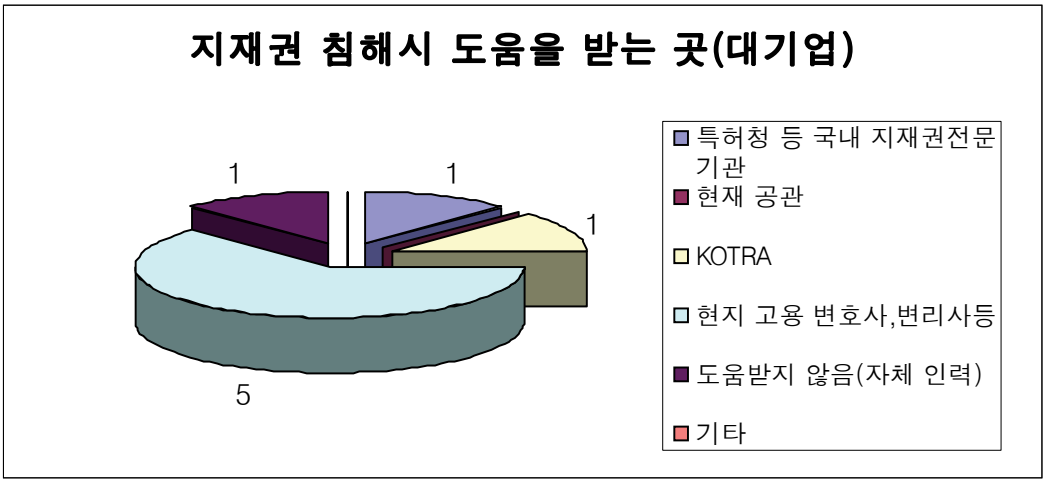
지재권 침해시 도움을 받는 곳(대기업)
1
1
1
5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전문 기관
현재 공관
KOTRA
현지 고용 변호사,변리사등
도움받지 않음(자체 인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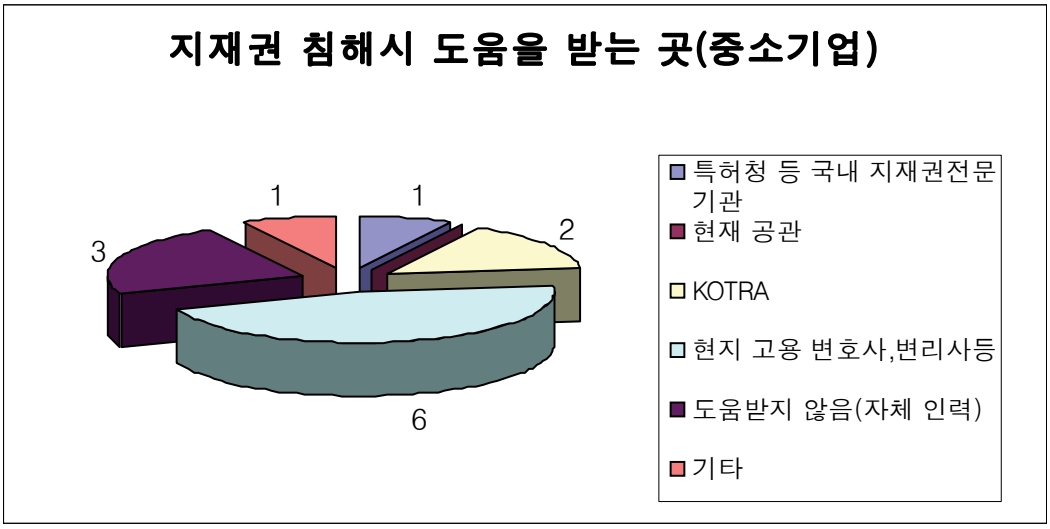

(14)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파견필요성에 대한 의견

o 응답기업

⇒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12개사 등 총 18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18	6	12
100	33.3	66.7

o 지역별 중국에 지재권 전문가 파견에 대한 의견

⇒ 응답기업의 61.1%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3.3%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에 응답하여 94.4%가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 정부에서 중국에 지재권 전문가를 파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응답기업의 5.6%는 큰 도움이 못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지역별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80.0%)”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10.0%)”에 응답하여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중국 파견에 대하여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37.5%)”,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62.5%)”에 응답하여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에 비해서는 기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파견 필요성>

(단위 : 개사, %)

구분	절대 필요	도움이 될 것	큰 도움이 못될 것	잘 모름	기타	합계
국내	8	1	1	0	0	10
	80.0	10.0	10.0	0.0	0.0	100
중국	3	5	0	0	0	8
	37.5	62.5	0.0	0.0	0.0	100
합계	11	6	1	0	0	18
	61.1	33.3	5.6	0.0	0.0	100

o 기업규모별 중국에 지재권 전문가 파견에 대한 의견

⇒ 대기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0.0%,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50.0%의 응답분포를 보였으며,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6.7%,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5.0%에 응답하여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파견에 대한 기대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규모별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파견 필요성>

(단위 : 개사, %)

구분	절대 필요	도움이 될 것	큰 도움이 못될 것	잘 모름	기타	합계
대기업	3	3	0	0	0	6
	50.0	50.0	0.0	0.0	0.0	100
중소기업	8	3	1	0	0	12
	66.7	25.0	8.3	0.0	0.0	100
합계	11	6	1	0	0	18
	61.1	33.3	5.6	0.0	0.0	100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파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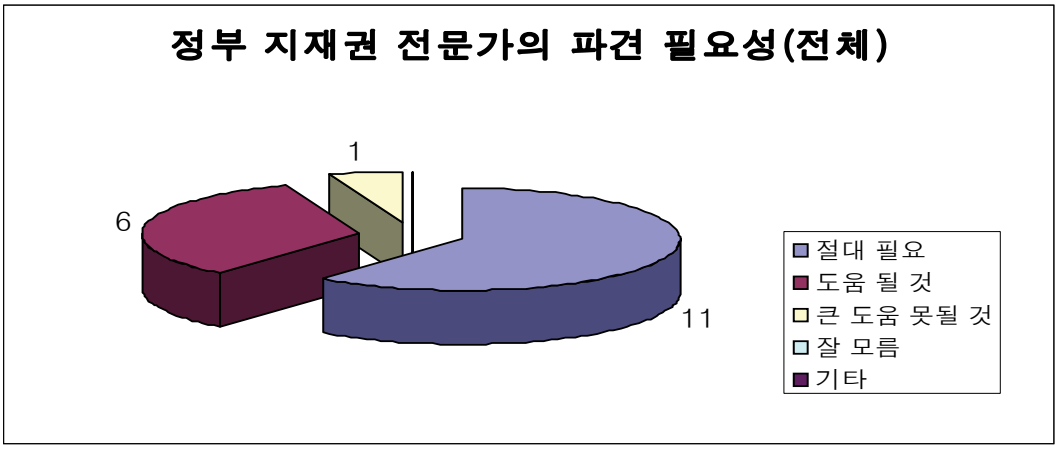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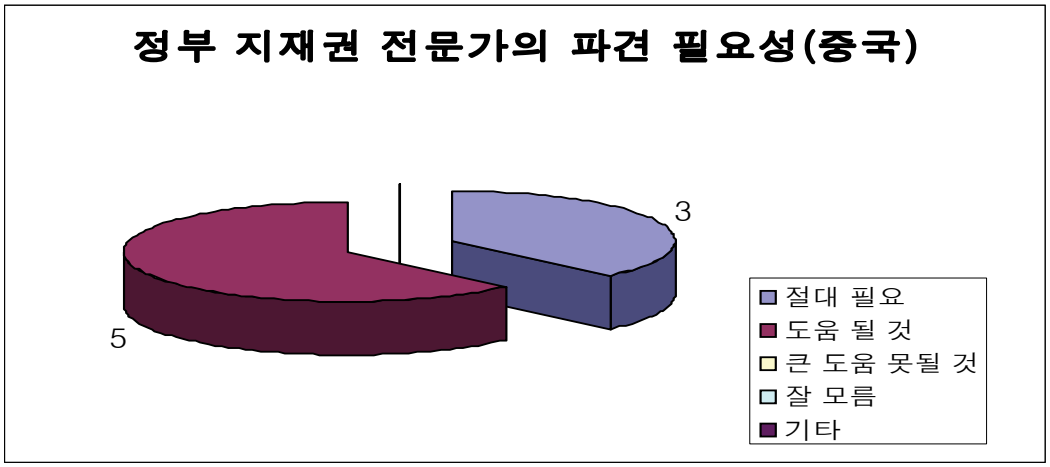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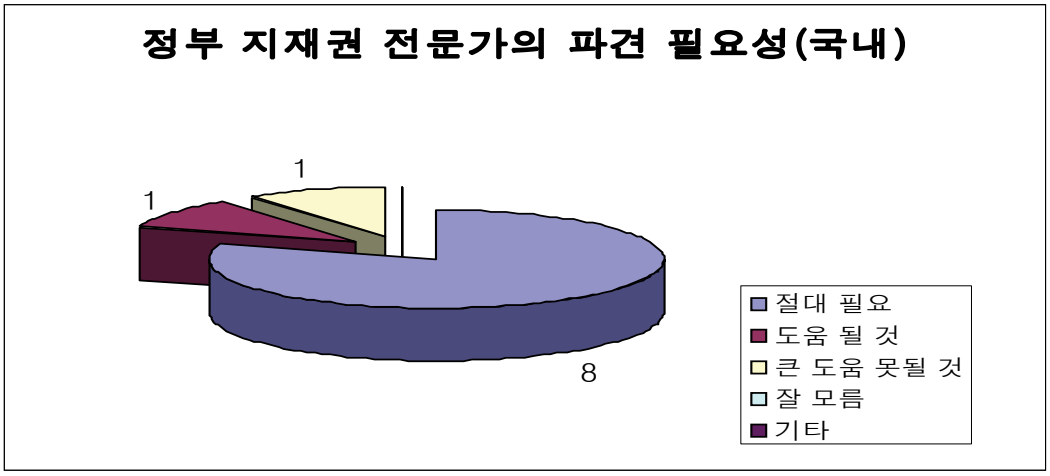
정부 지재권 전문가의 파견 필요성(국내)
1
1
8
절대 필요
도움 될 것
큰 도움 못될 것
잘 모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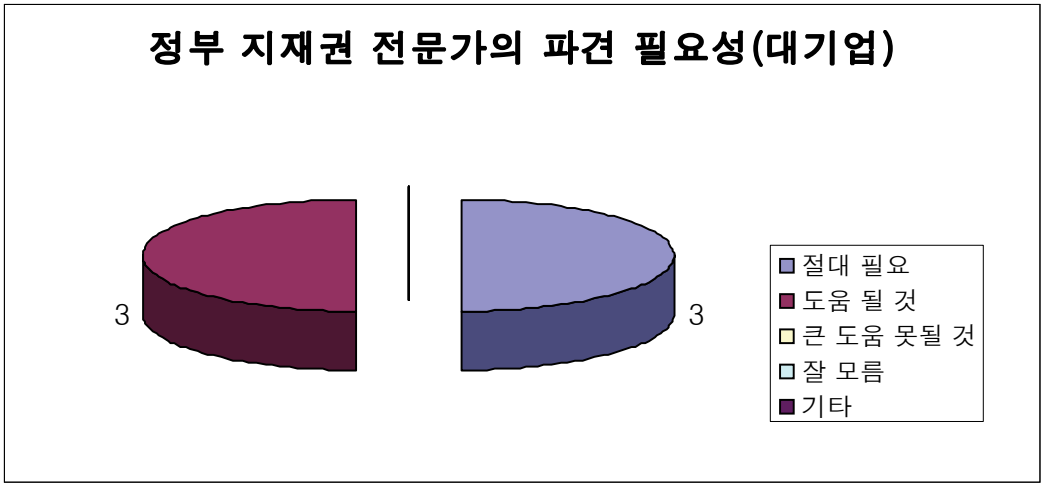
정부 지재권 전문가의 파견 필요성(대기업)
3
3
절대 필요
도움 될 것
큰 도움 못될 것
잘 모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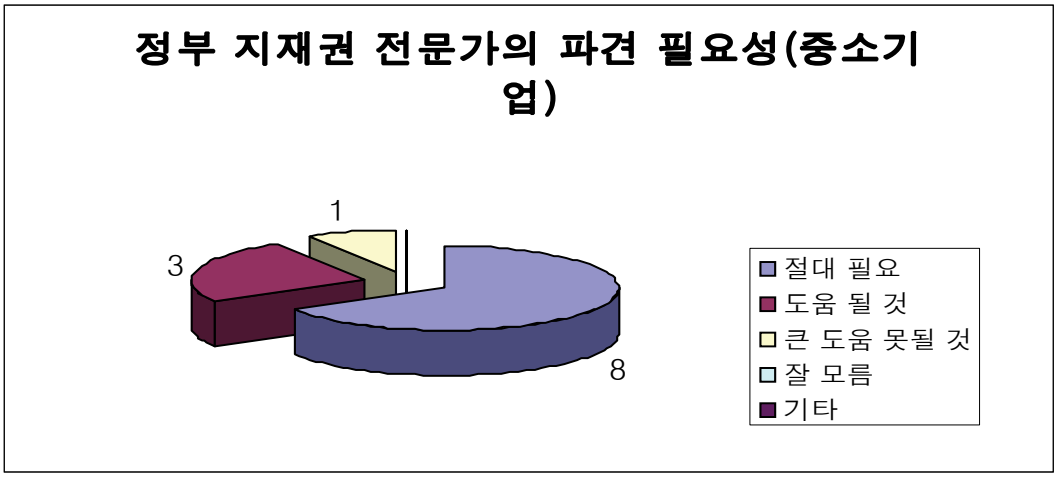
정부 지재권 전문가의 파견 필요성(중소기업)
1
3
8
절대 필요
도움 될 것
큰 도움 못될 것
잘 모름
기타

(15) 중국 파견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제

o 응답기업

⇒ 설문 14번과 관련된 것으로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11개사 등 총 17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대기업 4개사 중소기업 4개사의 복수 응답이 있었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17	6	11
100	35.3	64.7

o 지역별 중국 파견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제

⇒ 응답기업의 56.0%가 중국파견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관계당국과 접촉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꼽았으며, “피침해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12.0%)”, “피침해 기업과 함께 침해 조사(12.0%)”, “기업방문 지재권 애로상담(12.0%)”, “지역 순회 설명회(8.0%) 등 다양한 활동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75.0%가 “관계당국과 접촉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하였고, “피침해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피침해 기업과 함께 침해 조사”, “기업방문 지재권 애로상담”도 각각 8.3%씩 응답하였음

⇒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역시 “관계당국과 접촉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첫째 과제로 꼽았지만, 그 비율은 38.5%로 낮게 나타난 반면, ‘법률 자문’,

‘침해 조사’, ‘방문 애로상담’, ‘순회 설명회’ 각각 15.4%씩을 차지하여 다양한 활동을 주문하고 있음

<지역별 정부파견 지재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

(단위 : 개사, %)

구분	외교적 해결 노력	법률자문	침해조사	방문 애로상담	순회 설명회	기타	합계
국내	9	1	1	1	0	0	12
	75.0	8.3	8.3	8.3	0.0	0.0	100
중국	5	2	2	2	2	0	13
	38.5	15.4	15.4	15.4	15.4	0.0	100
합계	14	3	3	3	2	0	25
	56.0	12.0	12.0	12.0	8.0	0.0	100

※ 복수응답 : 국내 3, 중국 5

o 기업규모별 중국 파견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제

⇒ 대기업의 40.0%가 중국파견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관계당국과 접촉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피침해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20.0%)”, “기업방문 지재권 애로상담(20.0%)”, “피침해 기업과 함께 침해 조사(10.0%)”, “지역 순회 설명회(10.0%) 등에 응답하였음

⇒ 중소기업도 중국파견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관계당국과 접촉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첫째로 꼽았는데, 그 비율은 66.7%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았음.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됨.

<기업규모별 정부파견 지재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

(단위 : 개사, %)

구분	외교적 해결 노력	법률자문	침해조사	방문 애로상담	순회 설명회	기타	합계
대기업	4	2	1	2	1	0	10
	40.0	20.0	10.0	20.0	10.0	0.0	100
중소기업	10	1	2	1	1	0	15
	66.7	6.7	13.3	6.7	6.7	0.0	100
합계	14	3	3	3	2	0	25
	56.0	12.0	12.0	12.0	8.0	0.0	100

※ 복수응답 : 대기업 4, 중소기업 4

<정부파견 지재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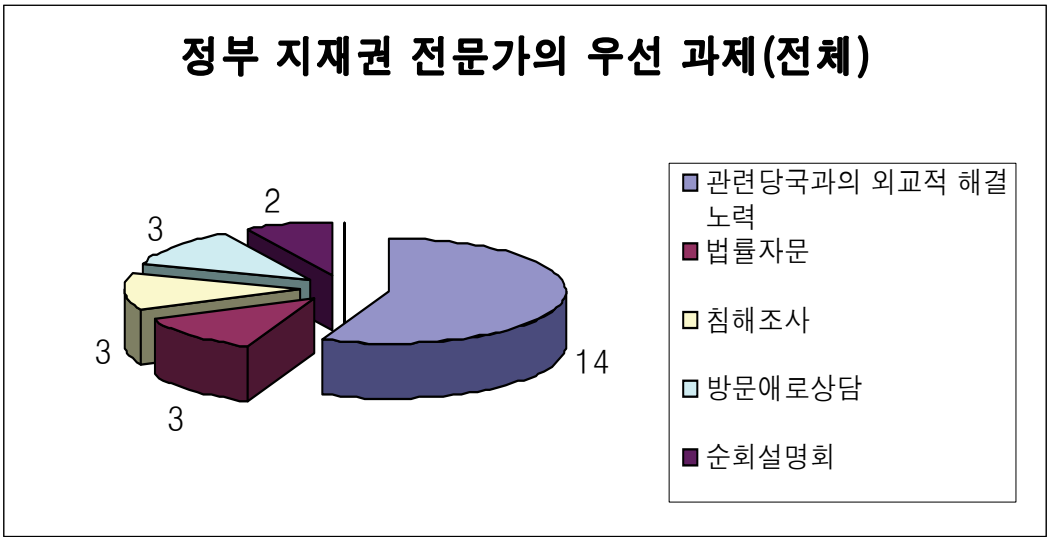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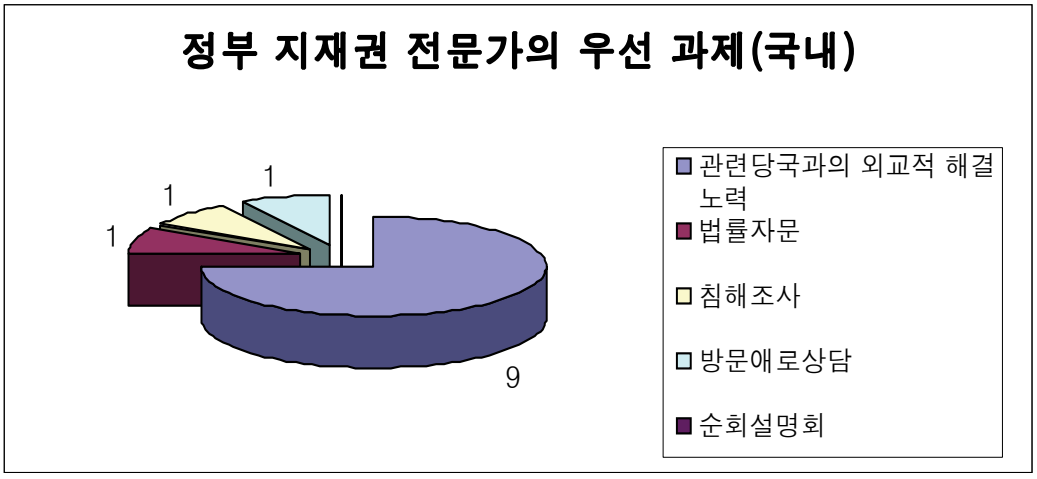
정부 지재권 전문가의 우선 과제(국내)
1
1
1
9
관련당국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
법률자문
침해조사
방문애로상담
순회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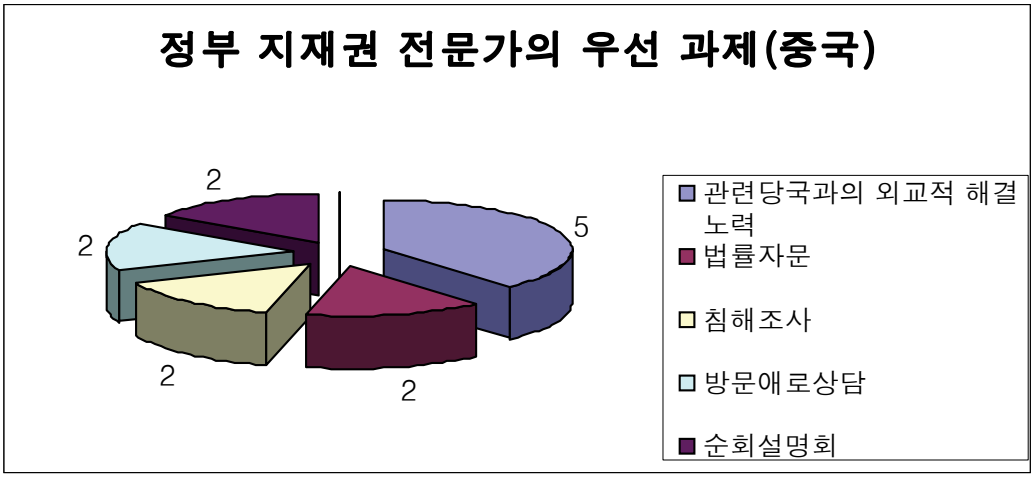
정부 지재권 전문가의 우선 과제(중국)
2
2
2
2
5
관련당국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
법률자문
침해조사
방문애로상담
순회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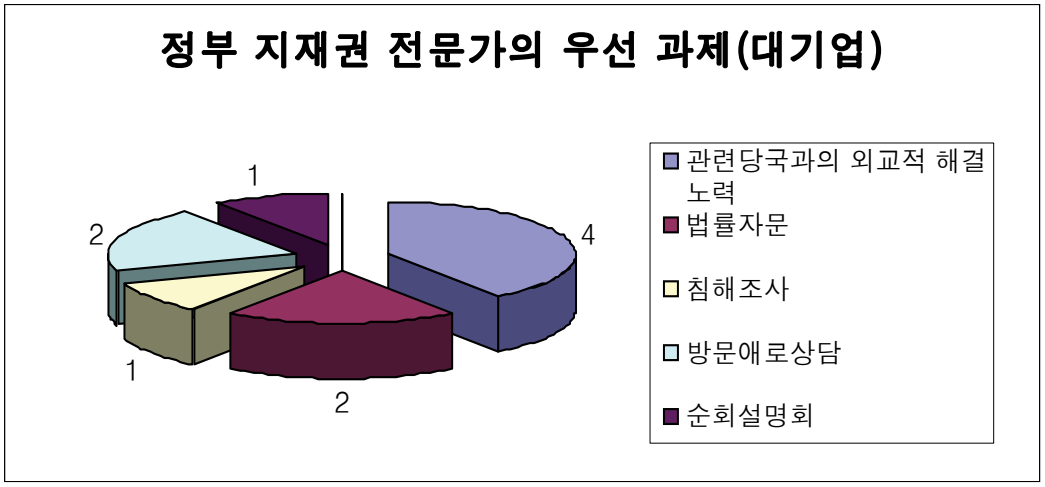
정부 지재권 전문가의 우선 과제(대기업)
1
2
1
2
4
관련당국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
법률자문
침해조사
방문애로상담
순회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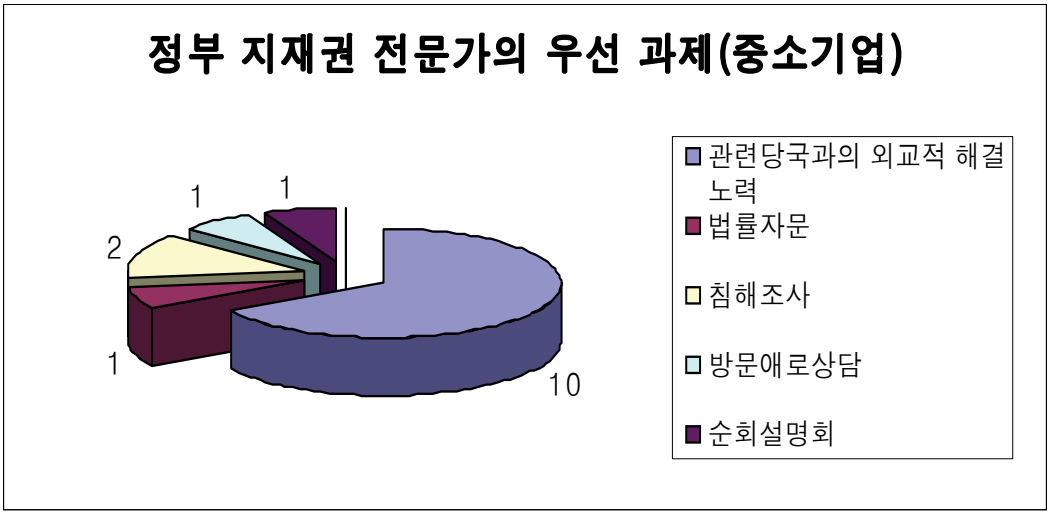

(16)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요망사항은

o 응답기업

⇒ 전체 응답 기업 중 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12개사 등 총 15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기업규모별 응답기업 분포>

(단위 : 개사, %)

응답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15	3	12
100	20	80

o 요망 사항 분석

- 교육 및 홍보 : 3개 기업
- 비용지원 : 1개 기업
- 정보 제공 : 1개 기업
- 상담인력 현지 배치 : 3개 기업

- 홈페이지 개설 및 신고센터 운영 : 1개 기업
- 중국 당국과의 협상, 항의 등의 외교적 노력 : 5개 기업
- 실태 파악 : 1개 기업(전체 응답 기업 중 7개 기업이 중국에서의 모조품 실태 파악을 주문)
- 중국 모조품 문제에 대응할 전담조직의 설치 : 1개 기업

다. 3차 심층조사에 관한 소결

(1)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들의 대응

o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침해자는 "거래관계 없는 현지인"(69.8%)이었으며, "거래관계 있는 현지인이나 대리인"(14.0%)에 의한 침해도 조사되었음.

o 지재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취하는 조치들 가운데 민사조치(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단속조치(15.2%)가 그 뒤를 이었음.

(2) 침해발생 원인

o 침해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상표, 디자인, 기술 등의 현지에서 유명성 및 유용성"(55.6%)을 꼽았는데, 전화상담 결과 피침해기업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일정 정도 이상 알려진 기업들이었음.

o 이는 QBPC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맥이 상통하는 것으로 "높은 이윤의 추구"는 곧 우리 기업의 유명세에 편승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o 따라서,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 현지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조품의 유통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첨단 기술 제품이라든가, 대규모의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중국에서의 높은 인지도는 불가피하고 모조품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임.

o 이렇게 사업 성공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모조품 문제의 해결 정도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모조품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된 106개 기업 가운데 단 9개 기업만이 법적 조치 결과 모조품 문제를 해결했다고 응답하였음.

(3) 침해발생시 가장 큰 애로사항

o 우리 기업이 침해에 대응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침해에 대처할 인력과 비용 부족”(33.3%), “침해관련 정보수집 곤란”(28.6%), “절차의 복잡・미비로 실효성 없음”(26.2%)이었음.

Ⅲ. 결론(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전략)

Ⅲ. 결론(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전략)

1.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

(1) 낮은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률(2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3-1 및 4)

o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과 중국 진출 현지 한국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률'은 32.4%에 불과하였음.

-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률'은 25.5%에 불과하여 전체 중소기업 4개 기업 가운데 3개 기업은 침해 발생시 대처할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

o 중국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 전체 응답기업의 과반수가 넘는 53.1%가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없다" 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산업재산권을 출원・등록하지 않는 기업 가운데 출원·등록을 위한 절차의 어려움이나 소요 비용을 이유로 든 경우는 7.8%와 9.1%에 불과

o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산업재산권이 왜 필요한지,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통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중국 수출기업이나 중국 진출기업에서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문방구·잡화, 섬유·의복·신발, 석유화학 업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전기·전자나 기계분야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규모별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대기업	46	61	107
	43.0	57.0	100
중소기업	281	96	377
	74.5	25.5	100
전체	327	157	484
	67.6	32.4	100

<기업규모별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는 이유>

(단위 : 개사, %)

구분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출원·등록하고 싶지만 구체적 절차를 몰라서	출원·등록 효과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서	중국의 제도에 신뢰성이 없어 등록 후 권리유지 불확실	기타	합계
대기업	9	13	1	3	3	14	43
	20.9	30.2	2.3	7.0	7.0	32.6	100
중소기업	73	69	23	25	39	37	266
	27.4	25.9	8.6	9.4	14.7	13.9	100
전체	82	82	24	28	42	51	309
	26.5	26.5	7.8	9.1	13.6	16.5	100

(2) 중소기업의 인식부족이 더 심각

o 침해 또는 분쟁발생 경험유무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2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5)와 산업재산권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2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3)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침해 또는 분쟁발생 경험이 없는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률은 24.9%로 낮았지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률은 69.4%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피침해 경험과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침해 또는 분쟁발생의 경험이 있게 되면 거의 모든 기업(93.5%)이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침해의 경험을 보고도 여전히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을 소홀히 하는 비율이 44.4%나 되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침해 또는 분쟁발생 경험유무와 산업재산권 등록여부와의 관계>

(단위 : 개사, %)

설문 5			설문 3			
			출원 또는 등록 하지 않음	출원 또는 등록함	합계	출원 또는 등록률
경험 없음	국내		74	16	90	17.8
	중국	광저우	50	3	53	5.7
		베이징	22	19	41	46.3
		상하이	62	30	92	32.6
		칭다오	52	21	73	28.8
		션양·대련	29	7	36	19.4
		소계	215	80	295	27.1
	전체		289	96	385	24.9
경험 있음	국내		7	8	15	53.3
	중국	광저우	1	8	9	88.9
		베이징	8	18	26	69.2
		상하이	7	15	22	68.2
		칭다오	3	6	9	66.7
		션양·대련	0	4	4	100.0
		소계	19	51	70	72.9
	전체		26	59	85	69.4

<기업규모별 침해 또는 분쟁발생 경험유무와 산업재산권 등록여부와의 관계>

(단위 : 개사, %)

설문 5		설문 3			
		출원 또는 등록 하지않음	출원 또는 등록함	합계	출원 또는 등록률
경험 없음	대기업	43	30	73	41.1
	중소기업	246	66	312	21.2
	전체	289	96	385	24.9
경험 있음	대기업	2	29	31	93.5
	중소기업	24	30	54	55.6
	전체	26	59	85	69.4

(3) 국내소재 중소기업이 중국진출 중소기업보다 더 취약(2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5-3)

o 중국에서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관한 조사 결과,

-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48.0%만이 해당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어, 나머지 52.0%는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침해 발생시 해당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률이 80.0%에 이른 반면, 중소기업은 48.0% 수준에 머물렀으며,
- 특히,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률은 59.0%인 반면, 국내 중소기업은 고작 9.1%에 불과하여 국내소재 중소기업은 중국에서 모조품이 발생하더라도 속수무책인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국내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기업규모별 침해된 권리의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여부>

(단위: 개사, %)

구분	출원 또는 등록 하였음	출원 또는 등록 하지 않았음	합계
대기업	24	6	30
	80.0	20.0	100
중소기업	24	26	50
	48.0	52.0	100
전체	48	32	80
	60.0	40.0	100

<중소기업의 대 중국 출원 또는 등록>

(단위: 개사, %)

구분	출원 또는 등록 하였음	출원 또는 등록 하지 않았음	합계
국내소재 중소기업	1	10	11
	9.1	90.9	100
중국진출 중소기업	23	16	39
	59.0	41.0	100
전체 중소기업	24	26	50
	48.0	52.0	100

나. 침해발생시 대응능력 부족

(1) 침해대응에 필요한 비용 및 정보부족(3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11 및 12)

o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전체의 66.7%가 “민사 조치”, “형사 조치”, “행정 조치”, “침해 경고” 등 법적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처 곤란으로 포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0.3%이 이름.

- 침해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의 법적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6.0%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 “대응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16.0%를 합하면 전체의 72%가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구제에 드는 비용이 커서 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그리고, “중국에서 산업재산권 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침해 행위에 대처할 인력과 비용의 부족(33.3%)”을 꼽았음.

o 따라서, 중국 모조품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자체 지재권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체 지재권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쉽게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침해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이 부닥뜨리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되며, 실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사, %)

구분	대응방법을 몰라서	구제절차가 복잡, 비용 과다	피해가 크지 않아	기타	합계
국내	1	5	1	1	8
	12.5	62.5	12.5	12.5	100
중국	3	9	0	5	17
	17.6	52.9	0.0	29.4	100
합계	4	14	1	6	25
	16.0	56.0	4.0	24.0	100

<표 : 침해 대응시 애로 사항>

(단위: 개사, %)

구분	침해자, 경로 등 정보수집 곤란	법률 상담 곤란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 없음	침해 대처 인력, 비용 부족	기타	합계
국내	4	1	5	7	1	18
	22.2	5.6	27.8	38.9	5.6	100
중국	8	2	6	7	1	24
	33.3	8.3	25.0	29.2	4.2	100
합계	12	3	11	14	2	42
	28.6	7.1	26.2	33.3	4.8	100

(2) 침해발생시의 대응능력(3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8·9·10)

o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지재권 피해를 당했을 때 전체의 66.7%가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희박.

- 민사 조치를 취했다고 설문에 응한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손해배상에 이른 기업은 하나도 없었으며, 전화 상담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경고 조치'에 머물렀고 경고 조치에 대한 아무런 응답조차 얻을 수 없었다고 함.
- 형사 조치의 경우에는 3개의 기업이 시도하였으나 침해자의 형사 처벌(구속)에 이른 기업은 하나도 없었음.
- 그러나, 행정 조치는 모두 5개 기업이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가운데 4개 기업이 침해자에게 행정 처벌(벌금 및 압수)을 받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함.

o 따라서, 중국에서 지재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법적 대응조치에 대한 치밀한 전략 및 법률 적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낮은 공적기관의 활용도

(1)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시 공적기관의 활용도(2차 설문조사, 설문 항목 3-2)

o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시 관련 정보의 취득 경로로서 특허청, 해외 공관, KOTRA 등의 공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1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 가운데서 특허청 활용 비율 15.9%를 제외하면 해외 공관 내지 KOTRA는 각각 2.4%, 1.2%로 아직은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외의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허청 의존도가 19.2%로 조사되어 공적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조사되었음

- 우리 기업들의 공적 기관 활용도에서 지역별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허청에 대한 의존도에서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에 비해 특허청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특허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 국내기업의 경우 12.5%만이 특허청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한 반면, 중국 현지기업은 16.4%가 특허청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해외 공관이나 중국 KOTRA의 역할이 아직은 미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따라서,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에게 지재권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정보 제공 거점화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로(지역별)>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대사관등 우리공관	KOTRA 현지 무역관	국내의 지재권 전문가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가	회사 자체의 전문가	기타	합계
국내	3	0	0	10	7	3	1	24
	12.5	0.0	0.0	41.7	29.2	12.5	4.2	100
중국	23	4	2	24	61	20	6	140
	16.4	2.9	1.4	17.1	43.6	14.3	4.3	100
전체	26	4	2	34	68	23	7	164
	15.9	2.4	1.2	20.7	41.5	14.0	4.3	100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로(규모별)>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대사관 등 우리공관	KOTRA 현지 무역관	국내의 지재권 전문가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가	회사 자체의 전문가	기타	합계
대기업	7	2	0	14	24	14	4	65
	10.8	3.1	0.0	21.5	36.9	21.5	6.2	100
중소기업	19	2	2	20	44	9	3	99
	19.2	2.0	2.0	20.2	44.4	9.1	3.0	100
전체	26	4	2	34	68	23	7	164
	15.9	2.4	1.2	20.7	41.5	14.0	4.3	100

(2) 침해대응시 공적기관 활용도(3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13)

o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약 24%가 공적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한국 특허청이 9.5%, KOTRA가 14.3%로 나타났음.

o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경우 특허청과 KOTRA가 각각 16,7%로 조사된 반면,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KOTRA 11.1%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전화 상담 결과에 따르면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이 KOTRA의 도움을 받은 내용이란 주로 현지 법률사무소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IP China - Desk가 금년 4월 개소된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우리기업들에게 KOTRA의 역할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음.

o 따라서,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청이,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KOTRA가 각각 우리 기업들의 침해 대응 지원을 확대하여 내용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역별 침해대응시 도움받는 곳>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현지 대사관 등 공관	KOTRA 무역관	현지 고용 변호사·변리사	도움받지 않음 (자체 인력)	기타	합계
국내	2	0	2	6	1	1	12
	16.7	0.0	16.7	50.0	8.3	8.3	100
중국	0	0	1	5	3	0	9
	0.0	0.0	11.1	55.6	33.3	0.0	100
합계	2	0	3	11	4	1	21
	9.5	0.0	14.3	52.4	19.0	4.8	100

라. 기타

(1) 기업내 지재권 전문가 부족(2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3-2)

o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시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회사 자체 전문가”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4.0%에 불과

- 이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약 21.5%의 기업이 자체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9.1%만이 자체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되어 있음.

o 지재권의 확보 및 침해 대응은 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이해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기업들이 자사 내에 지재권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회사 인력을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기업규모별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로>

(단위 : 개사, %)

구분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대사관등 우리공관	KOTRA 현지 무역관	국내의 지재권 전문가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가	회사 자체의 전문가	기타	합계
대기업	7	2	0	14	24	14	4	65
	10.8	3.1	0.0	21.5	36.9	21.5	6.2	100
중소기업	19	2	2	20	44	9	3	99
	19.2	2.0	2.0	20.2	44.4	9.1	3.0	100
전체	26	4	2	34	68	23	7	164
	15.9	2.4	1.2	20.7	41.5	14.0	4.3	100

(2)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파견 요망(3차 설문조사, 설문항목 14 및 15)

o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재권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기업 대다수가 기대를 표시하였음.

-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94.4%가 정부 지재권 전문가의 중국 파견에 대하여 “절대 필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절대 필요”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국내소재 기업일수록, 그리고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 이는 침해 행위에 법적으로 대처할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중국 현지에 영업 조직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영업 조직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국내소재 기업들일수록 중국 모조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외교적 노력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풀이됨.

<지역별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파견 필요성>

(단위 : 개사, %)

구분	절대 필요	도움이 될 것	큰 도움이 못될 것	잘 모름	기타	합계
국내	8	1	1	0	0	10
	80.0	10.0	10.0	0.0	0.0	100
중국	3	5	0	0	0	8
	37.5	62.5	0.0	0.0	0.0	100
합계	11	6	1	0	0	18
	61.1	33.3	5.6	0.0	0.0	100

<기업규모별 정부의 지재권 전문가 파견 필요성>

(단위 : 개사, %)

구분	절대 필요	도움이 될 것	큰 도움이 못될 것	잘 모름	기타	합계
대기업	3	3	0	0	0	6
	50.0	50.0	0.0	0.0	0.0	100
중소기업	8	3	1	0	0	12
	66.7	25.0	8.3	0.0	0.0	100
합계	11	6	1	0	0	18
	61.1	33.3	5.6	0.0	0.0	100

o 또한, 정부 지재권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56%가 "관련 당국(공상행정관리국, 전리국, 해관 등)과 접촉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밖에도 "법률 자문", "침해 조사", "방문 애로 상담"에 대해서도 각각 12%가 우선 과제로 꼽았음.

- "외교적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국내소재 기업일수록 그리고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정부 지재권 전문가의 파견 필요성에 대항 응답 성향과 일치함.

<지역별 정부파견 지재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

(단위 : 개사, %)

구분	외교적 해결 노력	법률자문	침해조사	방문 애로상담	순회 설명회	기타	합계
국내	9	1	1	1	0	0	12
	75.0	8.3	8.3	8.3	0.0	0.0	100
중국	5	2	2	2	2	0	13
	38.5	15.4	15.4	15.4	15.4	0.0	100
합계	14	3	3	3	2	0	25
	56.0	12.0	12.0	12.0	8.0	0.0	100

<기업규모별 정부파견 지재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

(단위 : 개사, %)

구분	외교적 해결 노력	법률자문	침해조사	방문 애로상담	순회 설명회	기타	합계
대기업	4	2	1	2	1		10
	40.0	20.0	10.0	20.0	10.0		100
중소기업	10	1	2	1	1		15
	66.7	6.7	13.3	6.7	6.7		100
합계	14	3	3	3	2		25
	56.0	12.0	12.0	12.0	8.0		100

2. 외국의 사례(일본 JETRO와 QBPC의 활동을 중심으로)

가. 일본의 JETRO 및 중국일본상회의 활동

(1) 연혁

o 일본의 대 중국 모조품 대응 조직은 JETRO의 지적재산권부와 중국일본상회의 지식경제포럼 IPG(이하 "일본상회 IPG"라 약칭함, IPG는 '지적재산권문제연구그룹'의 약칭임)가 있음

- JETRO의 지적재산권부의 본부는 JETRO 북경센터(이하 "JETRO PKIP"라 약칭함)에 있으며, 일본상회 IPG는 북경과 상해의 일본상회에 설치되어 있음
- 두 단체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호 협력하며 전반적인 일본 기업들의 모조품 대응을 지도하고 있음

o JETRO-PKIP는 2001년 4월 JETRO의 북경센터에 설치되었으며, JETRO-PKIP 설치 이전에는 일본 국내의 JETRO에서 해외 지재권 보호의 일환으로 중국 지재권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수집, 판례 분석, 대 모조품 대응책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는데, 2001년 JETRO-PKIP의 설치 이후로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활동은 JETRO-PKIP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고 있음.

o 일본상회 IPG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북경의 일본상회 내에 북경 IPG를 설치하였고, 2002년 9월에는 상해 IPG를 설치하였음.

(2) 주요업무 내용

1) JETRO-PKIP

o JETRP-PKIP는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은 JETRP-PKIP가 주요 활동 사항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임.

-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각종 상담
-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중국국가기관과의 연락조정
- 기타 중국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o JETRO-PKIP의 중국 지재권 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지금까지의 JETRO-PKIP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각종 조사보고서의 발간(JETRP-PKIP가 2005년까지 연구 발간한 보고서들 가운데서 주요한 것만을 추려 보면 아래와 같음)

『중국모조품실태설문조사』(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중국에서의 영업비밀보호와 기술유출방지』(2005년)

『중국기업에서의 사내 지직재산제도의 현황』(2005년)

『중국에서의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분쟁』(2005년)

『중국콘텐츠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발전전략과 지재권보호조사』 (2005년)

『중국기업의 모방대책실태조사』(2005년)

『중국변리사제도』(2005년)

『중국감정제도에 대한 조사보고』(2005년)

『2004년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문제에 관한 보고』(2004년)

『중국에서의 저명상표의 인정·보호제도에 대하여』(2004년)

『중국에서의 반도체산업과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조사보고서』(2003년)

『2002년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문제에 관한 보고』(2002년)

『중국에서의 외자기업의 R&D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2001년)

『중국에서의 산학관 연대의 현상과 지식재산권 측면에 관한 조사보고서』(2000년)

『중국에서의 모조품의 상황과 단속 실태』(2001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위조행위에 관한 보고서』(2000년)

『중국에서의 특허, 상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조사수단에 관한 조사 레포트』(2000년)

『중국의 유통단계에서의 부정상품의 현상과 대책』(1999년)

『구미기업의 모방제품 단속 동향에 대한 조사보고서』(1999년)

『중국기술이전법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1999년)

『중국상표제도와 상호등록제도에 대하여』(1999년)

- 중국 지재권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의 실시간 번역 제공 및 소개
  -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령 및 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개정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 정부 및 지재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발표하는 제반 보고서 및 추진 계획, 강령 등 지재권 제도의 개선 및 지재권 관련법의 집행과 관련된 중국 정부 및 유관 단체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일본어로 번역 및 소개.
  - 중국에서 지재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대리기구 리스트, 감정기관 리스트, 국가감독검사기관리스트 들의 작성 및 업데이트.
  - 중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의 제공
  - 뉴스레터의 발간, 월간으로 발간되는 뉴스레터는 “경제 종합”, “법률, 법규등”, “모조품문제”, “중국행정·사법 관련”, “다국적기업의 R&D”, “기타 IPR관련”의 다양한 섹터로 구성되며 한달 동안의 주요 기사를 망라하여 일본어로 번역 및 소개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가장 쉽고 정리된 중국 IP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
- 중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재권 관련 법령 및 사법해석의 개정에 적극 참여
  - JETRO-PKIP는 최근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제도를 활용하여 일본계 기업의 해당 법령 및 사법해석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북경과 상해의 IPG의 주요 활동

o JETRO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해 중국일본상회 내에 설치된 북경IPG 또는 상해IPG의 활동은 일본계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민간 분야의 활동이라는 성격 차이가 뚜렷함.

- 먼저 북경IPG가 밝히고 있는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 IPG 정기총회(격월 개최)
  - · 모조품 대책 세미나의 개최(격월 개최)
  - · 정보교환회의 개최
  - · 모조품시장시찰
  - · 정기상황보고서의 작성(연도보고서)
  - · 중국지재권 관련 조사연구(KETRO 조사사업과의 연대)
  - · 중국 정부 및 사법기관과의 의견 교환회의 개최
  - · 일본지식재산협회, 국제지식재산보호포럼 등과의 연대
  - · QBPC 등 구미단체와의 연대
  - · 전문위원회(전략위원회)에 의한 실천적이며 전략적인 사례 연구
- 상해IPG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 · 침해 대응 사례 연구집의 발간
  - · 세미나 및 사례 발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기 회의 개최(2005년 7회)
  - · “모방품세관조치대책WG”활동을 통해 중국 세관과의 의견 교환의 회동을 개최
  - · 중국 정부 기관의 관련자들을 초청하는 세미나의 개최
  - · 구미기업과의 정보 교환
  - · 중국모조품문제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

· 2005년 중국에서의 영업비밀보호관리의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대응책 검토를 2006년의 중점 사업으로 채택함.

(3) 조직 구성

o JETRO-PKIP

- JETRO-PKIP는 JETRO 북경센터 내의 한 부서로 5명으로 구성된 사무국 성격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o 북경 IPG

- 일본기업연합체의 성격으로 정·부 그룹장을 운영간사로 하는 5명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2006년 8월 2일 현재 77개사임.
- IPG는 기업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계 각종 단체도 회원사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임. 예를 들어 일본대사관, 일본무역진흥기구,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등 각종 단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음.

o 상해IPG

- 상해의 일본상회 내에 설치된 기업, 단체의 연합체로서 2006년 8월 2일 현재 111개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나. QBPC의 활동

(1) 연혁

o QBPC는 Quality Brands Protection Committee의 약자로서 유명상표보호위원회라고 하며, QBPC는 외국투자기업 중국연합회(CAEFI, China Association of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에 설치되어 있음.

- QBPC는 처음 미국과 유럽의 유명 상품 메이커들이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여 2000년 3월 2일 에 결성하였는데, 현재는 일본계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음

(2) 목적

o QBPC는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 산업계, 그리고 기타 조직들이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즉, QBPC는 거시적으로 중국에서의 지재권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재권 법령의 미비점 개선, 지재권 관련법의 집행기관들의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제반 정책, 계획의 유도 및 지원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

(3) 주요활동

o 모조품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지금까지 『2001-2002 DRC Report』, 『2002-2003 DRC Report』를 통해 모조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실태조사는 모조품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QBPC의 새로운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기존에 실시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데 활용함.

o 반모조품 행위 업데이트

- QBPC는 중국에서 지재권보호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재권 보호에 역할을 수행하는 당국들의 활동 상황 및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해당 법령의 개선 정도 등을 체크하여 업데이트해 오고 있음.
- 지금까지 『2001 Anti-Counterfeiting Update』, 『2002 Anti-Counterfeiting Update』, 『2003 Anti-Counterfeiting Update』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형사 기소 표준”, “세관”, “행정 단속”, “집행 기관 간 공조”, “지방보호주의” 등의 현 상황, 개선된 점, 그리고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QBPC는 수 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재권 관련 법규 내의 집행 관련 규정의 명시, 처벌 규정의 강화를 주장하여 왔으며, 나아가 이들 법규를 집행하는 사법당국(공안국), 행정당국(공상행정관리국등) 및 세관의 역

할 증대, 공정한 집행, 집행 기관간의 공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사건의 중앙정부 담당 등을 촉구하여 왔음. 본 반모조행위 업데이트는 이들 기관들의 활동 및 관련 법규의 개선 정도를 체크하고 현재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제안을 담고 있음.

- 특히, QBPC는 2004년 말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새롭게 발표한 형사기소표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을 이끌어내었다고자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새로운 형사기소표준은 기존의 표준에 비해 형사 기소의 문턱을 훨씬 낮춘 효과가 있음.

o 연도보고서의 발표

- 본 연도보고서는 QBPC의 위원회들과 산업별그룹(IWGs)이 자신들의 1년의 활동 및 성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2002, 2003, 2004년도 연도보고서가 발표되었다. QBPC에는 현재 7개의 위원회와 14개의 산별그룹이 설치되어 있음.

o Best 10 케이스 발표

- QBPC는 매년 지재권 관련 법 집행분야에서 베스트 10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JETRO의 정기 모임에서 하는 “사례 발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QBPC의 베스트 10 사례 발표는 공식적이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모조품단속전문 사설기관들은 자신의 단속 결과가 이 베스트 10 사례에 든 것을 홍보 포인트로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행사임.

o 중국 지재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뉴스레터의 발간

- QBPC 역시 중국 지재권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홈페이지(www.qbpc.org.cn) 및 매월 발간하는 뉴스레터에 게재하고 있으며, 중국 지재권 관련 법령 및 해석의 영어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음.

o 총회 및 컨퍼런스의 개최

- QBPC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의 관련

당국을 향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000년 이래 QBPC는 80회가 넘는 컨퍼런스 및 중국 당국과의 합동 프로젝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컨퍼런스들에서는 각종 세미나와 베스트 사례 등의 발표가 진행됨.

o 중국 지재권 관련 당국과의 협력

- QBPC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재권 관련 사법해석의 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또한 QBPC는 2003년 및 2004년에 중국의 우이 부총리와 지재권 을 주제로 한 미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지재권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음.

(4) 조직구성

o QBPC는 미국, 유럽, 일본의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회원들이 운영하는 단체로서, 현재 15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회원은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과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정회원은 현재 15개 기업임.

o QBPC는 7개의 분과위원회와 14개의 산별그룹이 있어 회원들은 이 위원회와 산별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7개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 베스트 실천/집행위원회 : 사건 처리 및 조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집행 기관들과 함께 베스트 실천 사례의 교류를 담당
- 커뮤니케이션위원회 :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 타인의 지재권 에 관한 존종에 관한 일반 공중의 인식 제고를 담당. 매체 인터뷰, 뉴스레터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 세관위원회 : 중국과 외국의 세관 및 국제기구들의 협업을 통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세관 협력을 담당
- 정부협력위원회 : 중국의 고위급 정부 지도자, 여러 지재권 관련 기관들과의 회합 등, 중국 당국과 관련된 QBPC의 모든 활동을 주관

- 법령위원회 : 지재권 관련 법, 규정, 사법해석의 연구, 제정, 개정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업무 담당
- 회원서비스위원회 : 회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경험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제반QBPC의 활동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신규 회원을 영입하는 업무 담당
- 특허위원회 : 특허입법 분야에서의 중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참여하며, 특허권의 효율적인 법적 보호를 제고하고, 혁시과 기술진보를 고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

3. 정부 건의사항

가. 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1) 현장중심의 순회설명회 개최

o 우리기업들의 산업재산권 인식 제고는 단순한 이론 및 설명으로는 곤란하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현장위주의 교육이 효과적임

- 특허청에서는 국내 및 중국의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위주의 지재권 보호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2) 특화된 중국 지재권 보호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o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들의 지재권 담당자들을 위한 중국 지재권 보호에 관한 특화된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재권 전문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대기업조차 출원 및 등록 업무 외에 권리의 보호 분야에서는 중국 지재권 분야에 실무 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의 부족은 중국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o 본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적인 접근에 못지않게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들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에 밀착한 실무적인 교육이 되어야 함.

나. 정부부문의 중국 지재권 관련 연구·조사·정보의 제공

(1) 기초 조사 및 연구의 활성화

o 중국 지재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재권 제도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 및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

- 일본의 JETRO-PKIP, 북경IPG, 상해IPG의 예나, QBPC의 예를 보더라도

이들 단체는 중국에서의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중국 지재권 법령, 제도, 통계, 관련 단체의 활동, 주요 기사, 사례, 판례 등 광범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o 중국 지재권 제도 전반에 관한 기초 조사 및 연구는 중국 지재권 문제에 관한 한국 내 전문가의 양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전문가의 양성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조사, 연구 프로젝트의 운영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음.

(2) 중국 지재권 문제 전문 웹사이트의 구축

o JETRO-PKIP의 웹사이트나 QBPC의 웹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지재권 문제 전문 웹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재권 관련 간행물을 통해 산발적으로 연구 기사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각 기관들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법령의 번역 및 연구 성과물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일반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이들 연구 성과물들을 찾아 참고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o 따라서, 새로 구축하는 웹사이트는 정부 기관 프로젝트 리포트, 각종 연구단체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 및 검증한 뒤 한 곳에 모아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중국 지재권 문제 전문 뉴스레터의 발간

o 웹사이트의 운영과 함께 중국 지재권 관련 최신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이메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뉴스레터 역시 웹사이트에 항시 게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피침해 기업에 대한 상담 활성화 및 비용지원

(1) 피침해 기업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

o 분쟁 및 침해발생시의 법적 조치는 현지의 법률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지만, 피침해 기업으로 하여금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언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의 법률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파견할 필요가 있음.

(2) 상표 및 디자인의 해외출원 비용 지원

o 조사 결과 우리 기업이 주로 침해당하는 산업재산권은 상표(39.1%)와 디자인(26.4%)으로서 특허·실용신안(17.3%)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침해 발생시 침해당한 해당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기업의 비율은 40%였으며, 이를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보면 52%의 침해 경험 사례에서 침해에 대처할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러나, 현재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원비용 지원 사업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반면, 상표나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이 요망됨(중국에서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약 150만원 안팎이며, 디자인은 약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특허나 실용신안은 약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3) 분쟁해결 비용 지원

o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산업재산권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의 부족'임.

- 현재 중국에서 역량 있는 모조품단속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모조품 조사 및 행정 단속을 실시하는 데는 약 6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

되며, 특허 분쟁에 수반되는 무효심판 절차는 1심급당 약 1천만원,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는 약 심급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따라서, 만약 한 기업이 모조품을 발견하여 해당 제조 기업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행정 단속 조치를 실시하고 나아가 침해자에 대한 민사 조치까지 취한다면, 그 비용은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들며, 만약 항소심을 고려한다면 이 비용은 5천만원을 훨씬 상회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o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사비용을 포함하여 심판 및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해주고 있으나, 심판의 전단계인 조사비용은 별도로 지원해주지 않으므로 심판 및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에 소요되는 단속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심판 및 소송의 전단계인 조사비용만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조직화

(1) KOTRA의 역할 확대 및 강화

o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의 대 중국 지재권 관련 정보제공 및 법률상담 등 관련 업무는 특허청이 당연히 공적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중국현지에서의 지재권 관련 정보제공 및 법률상담 등의 지원은 지리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현재 KOTRA의 IP CHINA DESK가 수행하고 특허청의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업무 외에 각종 정보 제공·법률상담 등에 대한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필요시 특허청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KOTRA 내에 기업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의 창설이 필요

o 현재 KOTRA는 IP CHINA DESK를 2006년에 조직하여 활동에 들어갔으므로 이제 걸음마 단계이며,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IP CHINA DESK의 활동을 보충 또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o 이 협의체의 주요업무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관한 1) 정보 교류 2) 사례 공유 3) 중국 지재권 당국에 대한 요구 수렴 및 전달 4) 모조품 대응책 연구 5)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및 정책의 전달 기구로 활동

- 이러한 협의체는 지재권 보호의 직접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여러 지재권 집행 당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하며, 그들이 요청하는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한국의 정부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 협의체에는 중국의 모조품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인 대응과 일정한 모조품 대응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는 삼성이나 LG 등 우리 대기업들의 참여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노하우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3) 중국 현지의 법률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검증이 필요

o 현재 중국에는 자격·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많은 사이비성 법률가 및 해결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모조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접근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사례들이 있음.

o 중국의 경우 특허분쟁이나 디자인 모방, 상표권 침해 등의 지재권 분쟁 분야는 이제 겨우 태동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중국 현지의 법률사무소나 특허사무소라 하더라도 실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음.

o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등 지재권 분쟁이 빈번하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별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관련 기구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검증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요망됨.

마. 기타(특허관의 파견 및 IPG 그룹의 활동 지원)

o 정부 지재권 전문가(이하 “특허관”)를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본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대부부의 기업(94.4%)이 특허관의 중국 파견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표시하였으며, 특허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접촉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56%)을 꼽은 바 있음.

〈붙임 1〉

국내 신문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피침해 업체 조사 결과

회사	모조된 상품	보도 시기	침해된 권리
일학레저	낚시찌	2006년	불명
삼성전자, LG전자	배터리	2006년	상표권
엠피오	MP3	2006년	디자인권
LG패션	의류(닥스)	2006년	상표권
KT&G	담배(더원, 레종 등)	2006년	상표권
이순심	유아용 욕조	2006년	불명
레인콤	MP3	2006년	상표권, 디자인권
LG전자	세탁기, 에어컨, 휴대폰	2006년	상표권
VK주식회사	휴대폰	2006년	상표권
상신브레이크	브레이크	2006년	상표권
손오공	완구	2005년	불명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2005년	상표권
오토닉스	산업자동화기기	2005년	상표권
쓰리세븐	손톱깎이	2005년	상표권
대림자동차	스쿠터	2005년	디자인권
동원F&b, 종가집김치	김치	2005년	상표권
하니웰코리아	자동차부품 터보	2005년	상표권
GM대우	자동차(마티즈)	2005년	디자인권
쌍용자동차	자동차(랙스턴)	2005년	디자인권
현대자동차	자동차(엑센트)	2005년	디자인권
아이옵스	MP3	2005년	상표권

회사	모조된 상품	보도 시기	침해된 권리
LG화학	인조대리석, 섀시	2005년	상표권
에이블씨엔씨	화장품(미샤)	2005년	상표권
삼성전자	휴대폰	2005년	상표권
넥스트엠	귀마개, 모자	2005년	불명
금성다이아몬드	유리절단용 다이아몬드공구	2004년	불명
K2	등산용품	2004년	상표권
신현철	다기	2004년	불명
거원, 디지탈웨이, 이라테크	MP3	2004년	불명
동아연필	마이겔	2004년	불명
에센시아	칫솔살균기	2004년	영업비밀
거창석재	석재	2004년	상표권
(주)대명화성	알루미늄 복합판넬	2003년	상표권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2003년	상표권 선점
(주)데이콤	상표	2003년	상표권 선점
농심	도메인선점	2003년	상표권
화승	르까프	2003년	상표권
벨금속	손톱깎이	2003년	상표권
오케이피혁	축구공	2003년	상표권
(주)하이파이브	의류(울시)	2003년	상표권
오리온	초코파이	2000년	상표권
블루텍	MP3	2005년	디자인권
은성디벨럽먼트	속눈썹 성형기구	2004년	불명

〈붙임 2〉

2차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에서는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KOTRA와 공동으로 유미특허법인에 위탁하여 침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사)의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대외적인 기업비밀로서 철저히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o 특허청 국제협력팀: (TEL) 82-42-481-5066 / (FAX) 82-42-472-3459

o KOTRA 구본경 과장: (TEL) / (FAX)

o 유미특허법인 김동균 변리사: (TEL) / (FAX)

□ 기업정보

회사명	회 사 명 : 현지법인명 : ※ 설문지 응답자가 중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만 **현지법인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락처	회사주소 : e-mail : 전화번호 :
기업규모 (본사기준)	① 대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②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 설문사항

1. 중국에 귀사가 진출한 또는 수출을 시작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① 1995년 이전 ② 1996년 - 1997년 ③ 1998년 - 1999년
④ 1999년 - 2001년 ⑤ 2002년 - 2003년 ⑥ 2004년 - 2005년
⑦ 2006년

2.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아래의 상품분류 중 어디에 속합니까?
(택1, 다수품목인 경우 주력상품)

① 기계 ② 전기・전자 ③ 자동차・운송기계
④ 문방구・잡화 ⑤ 섬유・의복・신발 ⑥ 식기・도자기
⑦ 식품・음료・주류 ⑧ 석유화학품 ⑨ 화장・목욕용품
⑩ 영화・음반・도서 ⑪ 컴퓨터 소프트웨어 ⑫ 기타 [ ]

3. 귀사는 중국에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있습니까?

① 없다(4번 항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② 있다.

3-1. 귀사가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상표

② 디자인

③ 특허・실용신안

④ 기타 〔　　〕

3-2.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있다면,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습니까? (응답 후 5번 항목으로 이동)

①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②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우리 공관

③ KOTRA 등 현지 무역관

④ 국내의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

⑤ 중국 현지의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

⑥ 회사 자체 전문가

⑦ 기타 〔　　〕

4.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③ 출원・등록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잘 모르겠다.

④ 출원・등록의 효과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다

⑤ 중국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신뢰성이 없어 등록 후 권리 유지가 불확실하다

⑥ 기타 〔　　〕

5. 귀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기업이 침해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6번 항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② 있다.

5-1.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① 2000년 이전　② 2001년　③ 2002년　④ 2003년

⑤ 2004년　⑥ 2005년　⑦ 2006년

5-2. 침해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① 상표　② 디자인　③ 특허・실용신안

④ 영업비밀　⑤ 컴퓨터 소프트웨어　⑥ 인터넷 도메인

⑦ 기타 [　　]

5-3. 침해된 권리는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하였습니까?

① 출원 또는 등록하였다

② 출원 또는 등록하지 않았다

6. 평소 산업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회사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모조품 유통 등에 대한 시장을 항상 감시한다.

② 외부 침해 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적발활동을 한다.

③ 관련 당국에 세관 조치, 단속을 위한 상표 등록 등을 해두었다.

④ 평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침해 발생 시 대응한다.

⑤ 대응하지 않는다

⑥ 기타 [　　]

7.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의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②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③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다

④ 침해가 전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8. 중국 단속 당국 또는 사법 당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대체로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스럽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 건의사항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요망사항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붙임 3〉

3차 설문조사지

1. 누가 귀사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했습니까?(복수답변 가능)

①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혹은 기업)

②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인 또는 대리인 등

③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

④ 현지 진출 타국기업 혹은 타국인

⑤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

⑥ 기 타 〔 〕

2. 침해 및 분쟁에 따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피해산정이 곤란 한 경우, 시장점유율, 판매량 등을 침해전과 후로 대비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어떤 형태로 산업재산권을 침해받았습니까?(복수답변 가능)

① 현지 특허 또는 상표당국에 미등록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기술, 상표, 디자인권 등)을 현지인이 무단 선등록

② 현지에 미등록한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기술, 상표, 디자인 등)을 현지인이 무단사용 또는 모조품 유통

③ 현지에서 미등록한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특허기술, 상표, 디자인 등)을 모방한 모조품 유통

④ 모조품의 수출입

⑤ 기타 〔 〕

4. 침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우리나라 상표, 디자인, 기술 등의 현지에서 유명성 및 유용성

② 해당국 관계당국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의 소홀

③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등 산업재산권 보호·관리의 소홀

④ 해당국 산업재산권제도 등에 대한 정보부족

⑤ 현지 국민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제도상의 미비

⑥ 기 타 〔 〕

5. 귀사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침해품을 발견하셨습니까? (복수답변 가능)

①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발견

② 중국 거래처의 우호적인 제보를 통하여 발견

③ 해외 거래처의 클레임을 받고서야 알았다.

④ 중국 및 해외소재 회사 영업조직의 조사를 통하여 발견

⑤ 중국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

⑥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⑦ 기 타 〔 〕

6. 귀사의 침해품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제조 → 유통 → 판매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조

6-2 유통

6-3 판매

7. 침해발생시 대처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답변 가능)

① 변호사(혹은 변리사)를 통한 민사상 법적 대응(8번 항목에 응답)

② 변호사(혹은 변리사)를 통한 형사상 법적 대응(9번 항목에 응답)

③ 지재권 침해 단속기관(공상행정관리국, 전리국, 세관 등)에 신고(10번 항목에 응답)

④ 해당국 관계기관에 지재권 출원

⑤ 현지 판매상, 광고매체를 통하여 모방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경고

⑥ 대처곤란으로 포기

⑦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11번 항목에 응답)

⑧ 기 타[ ]

8.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대응했다면,

8-1 해결유무?

8-2 해결되었다면 승소여부 및 해결기간?

8-3 승소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여부 및 수령한 배상금액?

8-4 국내소재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하였는지 여부?

8-5 소요비용은(침해조사비용, 변호사 비용 및 변리사 비용을 구분)?

9. 침해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대응했다면,

9-1 해결유무?

9-2 해결되었다면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

9-3 국내소재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하였는지 여부?

9-4 소요비용은(침해조사비용, 변호사 비용 및 변리사 비용을 구분)?

10. 지재권 침해 단속기관(공상행정관리국, 전리국, 세관 등)에 신고했다면,

10-1 해결유무?

10-2 해결되었다면 단속실시 여부 및 해결기간?

10-3 침해자가 받은 조치는?

10-4 국내소재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하였는지 여부?

10-5 소요비용은(침해조사비용, 변호사 비용 및 변리사 비용을 구분)?

11. 침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라서

② 당해국가의 법적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③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서

④ 기 타 [ ]

12. 중국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침해업체파악, 유통경로 등 침해자(상품)와 관련된 정보수집의 곤란

② 대처방안에 대한 해당국 현지에서의 법률적 상담 곤란

③ 해당국의 지재권보호 절차가 복잡하여 미비로 단속의 실효성 없음

④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족

⑤ 기 타 [ ]

13. 귀사는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① 특허청 등 국내의 지재권 전문기관

② 현지 대사관 등 우리공관

③ KOTRA 등 현지 무역관

④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

⑤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회사 자체인력 활용)

⑥ 기 타[ ]

14.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③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 타[ ]

15. 14번 문항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국에 파견한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련 당국(공상행정관리국, 전리국, 해관 등)과 접촉하여 외교적 해결노력

② 피침해 기업에 법률자문

③ 피침해 기업과 함께 침해조사

④ 기업방문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상담

⑤ 지역순회 지식재산권 보호설명회 개최

⑥ 기 타[ ]

16.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붙임 4〉

개별기업의 침해 및 상담사례

1. 개요

o 인터넷 조사 및 2차 및 3차 설문조사 시, 침해 및 분쟁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했으며, 사례조사시 기업에서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개를 생략하였으며, 상담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였음

2. 국내소재 중국 수출기업

(1) A기업

o 업종

- 엘리베이터 사업 매각후 현재는 전력기기 생산

o 권리 확보 : 상표, 디자인, 특허

o 침해 현황

- 중국 R회사와의 상표권 분쟁을 제외하고 아직 중국에서의 모조품 문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외에 동남아 지역에서 A기업의 전력기기들이 많이 모조되고 있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 상담 내용

- 중국 모조품 단속 절차, 비용 등에 관한 개략적인 컨설팅을 진행함.

(2) B기업

o 업종

- 1995년 이전부터 중국에 방향제와 연료첨가제 판매하고 있음.

o 권리 확보 : 상표 출원

o 침해 현황

- 상표와 디자인 침해. 거래관계에 있던 현지 판매상이 B기업 상표를 선점 등록함. B기업에서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 현지 판매상의 선등록상표가 인용상표로 나타나 거절됨. 이 현지 판매상은 상표 선점뿐 아니라 B기업의 방향제를 모방하여 판매함. 상표, 용기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였음. 중국에서는 방향제가 많이 판매되는데, 98년부터는 용기 디자인도 모방하기 시작함. 용기 디자인의 사이클은 약 2년 정도임. 디자인별 개별 침해품들은 소량이어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현지 판매상의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B기업의 선사용을 이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함. 선등록상표를 취소시킨 뒤 상표 재출원하였음. 그러나 출원공고 후 선등록상표권자였던 현지 판매상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 현재로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아 마땅한 권리 행사 방법을 찾을 수 없음.

o 상담 내용

- 상표는 출원중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더구나 이의신청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이의절차만도 약 3년 가까이 걸릴 수 있음. 만약 심판 등의 분쟁이 이어진다면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시도록 권유함.

(3) C기업

o 업종

- 현재 주력 제품은 특수환경용 베이링으로, 반도체장비, LCD장비에 들어가는 베어링임. 소재는 주로 세라믹, 1999년~2001년 사이에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중소기업.

o 권리확보 : 없음

o 침해 현황

- 중국의 한 업체가 C기업의 약자를 이용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C기업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는 현지 거래처의 제보가 있었음. 현재 실제 모조품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으나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C기업의 약자 브랜드는 중국에 꽤 알려져 있다고 함.

o 침해에 대한 대응

- 회사 이름으로 해당 도메인 운영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경고하였더니 1주일 뒤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음.
- 현재 중국까지 지재권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모조품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움.

(4) D기업

o 업종

- 도아프레임 생산업체. 2002년 이후 중국 수출한 중소기업

o 권리 확보 : 실용신안

o 침해 현황

- 도아프레임의 선설치 고정방식을 후설치조립식방식으로 바꾸는 기술로 미국, 한국,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함. 이 기술을 중국의 도아프레임 생산업체들이 실시하였음. 중국 실용신안은 2002년 1월에 등록됨.

o 침해에 대한 대응

- 누가 어디에서 침해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음. 대응하기가 어려움.

o 상담 내용

- 해외지재권보호 지원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함.

(5) E기업

o 업종

- 제봉기 생산, 판매업체. 1995년 이전에 중국에 수출을 시작한 중소기업.

제봉기 판매 및 중국생산도 함.

o 권리 확보 : 상표, 디자인, 특허

o 침해 현황

- 거래관계가 있던 중국 기업이 E기업의 고유상표를 그대로 부착한 모터 모조품을 판매함.

o 침해에 대한 대응

- 중국 현지의 대리인을 통해 침해금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 모터는 주력품이 아니어서 현재는 관망 중임.

o 상담 내용

- 중국 모조품 단속 절차등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 해외지재권보호 지원프로그램 소개.

(6) F기업

o 업종

- 케이블 전선의 배관자재 생산. 중국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현재 포기한 상태임.

o 권리 확보 : 없음

o 침해 현황

- 중국 현지인과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중국측 파트너가 한국에서 파견보낸 한국인을 포섭하여 합작회사를 이용하여 몰래 배관자재를 만들어 판매하여 현재는 합작법인을 포기한 상태임.
- 그러나, 합작법인에서 철수하려 하자 상대방이 기계의 반출을 거절하고 있어 철판・자제・시설비를 포함하여 2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함.
- 합작 파트너는 요녕성 무순시의 인민대표이며 조선족 통역만 믿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 구청, 시청은 비협조적이며 심양의 시골이어서 더 심함. 영사 또는 한인협회에서 조선족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이들 변호사들은 “합의보라” 또는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할 뿐 그것으로 더 이상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음. 한 변호사는 돈부터 달라고 하고 전체 합의금의 30%를 요구하였음.

3. 중국진출 현지 한국기업

(1) G기업

o 업종

- G기업은 불량PCB 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4년 이후 중국에 진출하였음. 불량 PCB 수리업은 이제 중국에서 막 시작되고 있는 업종으로 G기업은 이 분야에서 선발업체임.

o 권리확보

- 중국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발명특허는 2002년 출원하여 2006년 2월에 등록되었음. 특허의 권리자는 과거 S전기에 근무했던 사람의 부인이며, G기업은 이 특허의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전용사용권자임.

o 침해 현황

- 중국업체들이 동종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G기업의 중국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특허 침해로 의심되는 기업에는 대만 업체도 있음. 지금까지는 앞선 품질을 내세워 대처해 왔고, 항상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점차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임. 예를 들어, G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때에는 PCB Sheet 당 단가가 18위엔이었으나, 현재는 13위엔으로 떨어진 상태임.

o 침해에 대한 대응

- 동종 업체들이 늘어나는 경향이어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외국 회사로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상당히 조심스러움. 현재는 심천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납품 거래처에 협조요청서를 발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심천의 변호사에 따르면,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함. 다만,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을까 걱정하고 있음. 권리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 특허출원이 늦어져 타국에서 동일 발명(패밀리 출원)이 공개된 뒤에 중국에서 출원된 것 같다고 함.

o 침해 대응 상담역할 : 심천의 변호사

o 상담 내용

- 먼저 특허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특히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 거래처에 협조 공문 내지 경고장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림. 중국 법률상 영업 방해에 관한 규정 및 판례가 어떤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선행된 뒤 그 결정이나 판결에 기초하여 거래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림.

(2) H기업

o 업종

- 이어폰 겉 표면에 고무를 입히는 작업(라버링)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2~2003년에 중국에 진출하였음.

o 권리확보 : 중국에 특허 등록

o 침해 현황 및 대응

- 큰 규모의 중국업체 한 곳이 H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

는데, 상대 침해 회사도 특허를 등록하여 두고 있었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회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상대 회사의 특허는 무효가 확정되었음. 무효 확정 후 상대 회사는 침해품 생산을 중지하였고, H기업은 손해배상은 포기하였음.

o 상담 내용

- 법원 판결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설문조사에도 법원 판결서도 보내오지 않았음. H기업은 익명 처리를 요청함. 상대 회사도 성실한 태도로 침해품 생산을 중지하였으므로 상대방 업체도 드러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

(3) I기업

o 업종

- 카드리더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이미 1995년 이전에 중국에 진출하였음.

o 권리확보 : 중국에 실용신안 등록

o 침해 현황

- 중국의 경쟁업체들에서 등록 고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주요 고객은 은행쪽이어서 거래처는 제한되어 있음. 등록 고안은 ATM 등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확인이 어려움. 현재까지 한 곳의 경쟁업체가 등록 고안을 무단 실시하고 있는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현재까지 대응 안하고 있으나, 장차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중임.

o 상담 내용

- 상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림. 중국 업체들에 비해 한국 기업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침해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림. 다만, 상주 상당자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즉, 얼굴을 맞대고 상의할 일도 있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사건 발생 전에 사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

(4) J기업

o 업종

- 컨테이너 생산 중소기업으로서 이미 1995년 이전에 중국에 진출하였음. 생산된 컨테이너는 중국 내수 판매는 하지 않고 전량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o 권리확보

- 4종의 특허를 중국에 등록함. 각 특허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에 등록하였음.

o 침해 현황

- J기업에서 개발한 컨테이너 중, 국내, 해상 운송 겸임 53피트 장축 컨테이너를 2005년에 중국의 한 경쟁업체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J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중국의 경쟁업체는 중국 내 컨테이너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대형업체로서 자기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을 생산하면서 J기업의 기술을 실시하였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중국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할 기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미국에서 상대 중국회사를 상대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음. 아울러 상대 중국회사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상대방 회사는 현재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침해임을 인정한 전제 위에서 특허료 등의 협상 단계에 와 있음.

(5) K기업

o 침해 현황 및 대응

- K기업의 협력업체 가운데 중국에 먼저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이 K기업의 중국 도메인(com.cn)을 선점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사에서 해당 업체에 도메인 폐쇄를 요청하였음. 별다른 분쟁없이 해결되었음.

(6) L기업

o 업종

- 현재는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인테리어 시공뿐만 아니고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물품들의 판매도 함께 한 바 있음.

o 권리 확보 : 없음

o 침해 현황

- 1997년에 인테리어 등기구(아크릴등)를 처음으로 중국에 들여와 판매하였음. 당시 중국에는 아크릴등이 없어 처음 6개월 동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매달 약 30만위안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97년 말부터 모조장식등이 출현하면서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였음. 중국 기업들은 L기업이 명명한 아크릴등의 개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자인, 재료도 그대로 모방하였음. 모조품을 보면 그 사이즈를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고 L기업 판매가의 반값에 시장에 내 놓았음.
- 더구나 일본의 M전기에서 아크릴등을 들여와 중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여 고가품으로는 M전기에 치이고 아래로는 중국기업들에 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임. 결국 98년 등기구등 인테리어 물품 판매에서 손을 떼고 시공업만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에는 L기업의 상호를 가장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해 주는 업체가 생겨 곤란을 겪고 있음. 중국 인테리어 업체가 L기업의 사업자 등록증과 도급허가증까지 위조하여 L기업의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음.

이 사기 업체에 일을 맡기는 거래처들은 싼 값을 선호하여 정보를 제공하려 들지 않아 해당 사기 업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당시는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음.

o 상담 내용

- 지금이라도 L기업의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도록 권유함. 자칫 경쟁업체가 L기업의 상호를 먼저 등록하면 오히려 거꾸로 침해 주장을 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표권을 확보하면 사기 업체들을 고소하는데 유리하므로 먼저 서비스표등록을 서두르시라고 권유드림.

(7) M기업

o 업종

- 외식산업. 1995년 이전에 북경에 진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한식전문 외식산업 업체임.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음.

o 권리 확보 : 상표권, 디자인권

o 침해 현황

- 과거 M외식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북경에서 M이라는 이름의 간판을 내 걸고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이들은 모두 과거 M에서 책임자급으로 일하던 중국인들임. 모두 4곳임.

o 침해에 대한 대응

- 지금까지는 시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진행해 옴. 최근 이들 4곳을 흡수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들 전체와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임. 자체 브랜드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 즉 인테리어, 식재료 등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정식 사용권을 부여할 생각도 있다고 함.

o 상담 내용

- 해외 지재권 침해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이용해 보실 것을 권유함.

(8) N기업

o 업종

- N기업의 북경 사무소로서 주로 한국 유자차를 중국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o 권리 확보 : 상표 출원 상태

o 침해 현황

- 상표권 선점 사건. N기업의 마크를 2004년 6월 23일에 출원하였는데 산동성의 조선족으로 보이는 L이 N기업의 유사 마크 같은 것에 한자를 결합하여 2004년 6월에 출원한 사실이 발견됨.
- L은 그 후 N기업과 거래하면서 유자차를 판매하는 한 판매상에 접근하여 이 출원을 팔겠다고 하면서 5만 위안을 달라고 하였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L의 상표출원은 아직 미등록이며 본부 법률구조팀에서 검토중임. 중국에서는 L이 출원한 마크가 보통명칭으로 취급되고 있음. 현재 회사명칭도 N기업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
- “한국”이라는 국가명 표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본부 법률구조팀에서 이 문제로 협상 중임.

o 상담 내용

- L의 출원 상표는 식별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으나, L의 출원상표가 등록된다고 하여도 N기업에 대하여 권리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만약 새로운 상표 출원시에 한자 韓國으로 인해 거절이유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에는 권리불요구제도가 시행되므로 이를 활용해 볼 것을 권유함. 아울러, L의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9) O기업

o 업종

-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1995년 이전에 중국진출한 중소기업으로 자동차 충격완화장치를 생산하고 있음.

o 권리 확보 : 상표, 디자인, 특허권

o 침해 현황

- 중국 기업들이 O기업의 마크를 표시하여 자동차 충격완화장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충격완화장치는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에도 납품하지만 일반 수리업체에도 판매함. 침해는 일반 수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 수리업체들은 대단히 저가인 모조품을 선호하고 있어, 모조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도 침해행위는 계속되고 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음.

(10) P기업

o 업종

- 제과업종. 2002년~2003년에 중국에 진출함.

o 권리 확보 : 상표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침해 현황

- P기업이 중국에 판매점을 오픈하기 5~6년 전부터 P기업과 유사한 명칭으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음. 침해 현황을 보면, 아주 많은 P기업 유사 제과점이 전국에서 성업중임. 예를 들어, 청도쪽을 보면, 한국

제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조선족이 청도에 10개의 점포를 열고 있고, 안휘성에서도 PP라는 이름으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P기업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P기업의 케익 제품들을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음. 안휘성의 침해자는 한 일본인 고객이 안휘성에 여행을 갔다 발견하고는 모든 사진을 찍어 보내 줘서 알게 되었음. 이 일본인 고객에 보답하려 했으나 끝내 사절함.

- 처음 중국에 진출했을 때 먼저 PP라는 명칭의 제과점 때문에 혼동이 많이 발생했음. 6만 북경의 한국인들이 PP를 P기업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나, P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츰 유사 제과점과 정식 P 체인점과의 구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음.
- 현재도 이들 유사 제과점들이 P기업의 케익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현재 P기업의 중국 명칭의 상표등록이 어렵다는 중국 변호사의 견해를 들은 바 있음. 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움. 출원은 2년 전에 했지만 거절됨.

o 상담 내용

- P기업의 상표등록가능성을 다른사무소에서 재차확인해 볼 것을 권유함

(11) Q기업

o 업종

- 의료기계 판매. 1996년~1997년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현재 중국에 1,200개의 판매점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한 바 있음.

o 권리확보 :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o 침해 현황

- 특허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2006년 들어서 한국에서 특허를

내고 개발하여 제품화한 것을 아직 중국에 들여오기도 전에 한국 국적의 한 기업이 이 기술을 채용하여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음. 추정컨대, Q기업의 특허를 추적하여 한국에서 공개되면 이를 파악하여 즉시 침해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는, Q기업의 제품은 대단히 고가이고 중국 기업의 유사 모조품들은 저가품이어서 침해품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금년 들어 나오고 있는 다른 한국 기업의 모조품들은 한국의 특허 기술을 채용하여 Q기업이 중국에 판매를 개시하기도 전에 시장에 출시하는 형국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태임. 이들 제품의 기술은 현재 중국에 출원중인 상태임.

o 침해에 대한 대응

- 현재 관련 특허가 중국에 출원중인 상태여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지금까지의 중국 기업의 저가 모조품에 대해서는 무시해 왔지만 이번 모조품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상담 내용

- 침해 대응시 해외지재권보호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권유함.

(12) R기업

o 업종 : 전자

o 권리 확보 : 상표, 디자인, 특허 다수 확보

o 침해 현황

- R기업의 상표침해가 많이 발생함.

o 침해에 대한 대응

- 2005년 말부터 수시 행정단속 체계를 갖추었음. 중국의 전문 단속 기관과 협약을 맺고 수시로 모조품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음. 대형 법률사무소보다 작은 규모의 단속 전문업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전문적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세관에 관련 지식재산권을 등기하여 두고 있음.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기한 이후 세관에서 모조품을 적발하여 연락을 취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크게 효과를 보고 있음. 세관을 이용한 모조품 단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담보 문제였는데, 2006년 7월부터 일괄담보 제도가 시행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음.
- 모조품 단속시 가장 어려운 것은 침해자 정보를 파악하는 것임. 단속 전문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정보에 그침.

o 상담 내용

- 중국의 다른 모조품 단속 업체를 소개해 주기로 함.

(13) S기업

o 업종

- 수처리 역삼투분리막을 제조 판매하는 대기업으로 1998년~1999년 사이에 중국에 진출하였음.

o 권리 확보 : 상표, 디자인, 특허

o 침해 현황

- S기업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한 모조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침해자는 상해의 한 중국기업이고 최근에는 S기업의 영문 명칭에서 알파벳 순서만 살짝 바꾼 브랜드를 사용하는 기업이 광주에서 발견됨.

o 침해에 대한 대응

- 변호사를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고 검토한 바 있음. 그러나 변호사는 중국기업 내에 6개의 법인이 있고 대표자가 여러 명 있으나 모두 이름만의 대표이고 진짜 대표는 직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 대표가 없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엿음.

- 나아가 침해품을 확보하였지만 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질 않아 침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웠음.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작년에 같은 브랜드, 같은 스티커의 모조품이 나왔음.

(14) T기업

o 업종

- 사포 생산, 판매 업체. 1995년 이전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o 권리 확보 : 상표

o 침해 현황

- T기업의 상표가 현재 중국에서 인지도는 아주 높은 편임. 현재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기업들의 모조품들이 T기업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음. 중국의 각지에 대리상들이 있으며, 주로 이 대리상들이 모조품 샘플을 계속하여 보내 주고 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각 대리상에 모조품 대응을 맡겨 두고 있음. 각 대리상은 개별 모조품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피하고 있음, 거래처 등에 통지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거래처들은 성능 차이가 워낙 커서 모조품임을 통지하면 거래를 하지 않고 있음.

o 상담 내용

- 대형 모조품 공급업자가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함. 법적 조치시 해외지재권보호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함.

(15) U기업

o 업종

- 의류 생산. 판매업체. 1995년 이전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o 권리 확보 : 상표권

o 침해 현황

- 1995년 경에 A상표로 숙녀용 타이즈를 생산하여 판매한 바 있음. 러시아에 주로 수출하였고, 중국 국내에서도 1995년과 1996년에 큰 호응을 얻어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이때부터 중국 기업들 10여곳에서 전방위적으로 모조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함. A상표를 부착한 모조품들은 U기업의 제품 가격 20위엔보다 훨씬 싼 12위엔에 팔림. 결국 A상표는 포기하였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해당 공상국을 통해 모조품 단속을 요청한 적이 있었음. 그러나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더구나 모조품 제조업체들이 다수여서 손을 대기가 어려웠음.

o 상담 내용

- 모조품 단속에 관한 행정 절차 및 단속 전문 업체 활용법을 설명드리고, 현재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특허청이나 KOTRA에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해외지재권보호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시도록 권유함.

(16) V기업

o 업종

- 미용실운영업. 한국 V기업의 중국 지사임. 2002년~2003년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으로 B라는 명칭으로 미용실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음.

o 권리확보 : 상표 디자인

o 침해 현황

- 미용실 업계에서 중국에 프렌차이즈 붐이 일고 있음. 현재 B라는 간판을 달고 프렌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다수 있음. 대부분 영세

하지만 가맹점을 많게는 50개, 적게는 2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들 업체들은 간판만 B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식 체인점에 공급하고 있는 미용실 전문용품들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음. 즉, B상표가 부착된 미용실 전문용품 모조품을 사용하고 있음.

- 미용실 체인점의 경우 따로 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용용품 판매 중간상들이 B상표를 무단 사용하면서 체인점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즉, 본사가 있고, 체인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공급자들이 모조품을 대 주는 것을 빌미로 B라는 간판을 내 거는 느슨한 형태의 체인점이라 볼 수 있음. 이런 관계로 이들 체인점 상호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음.
- 유사 미용실은 대부분 손님들의 제보로 알게 됨. 침해는 여러 성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음. B 미용실 및 미용용품 브랜드를 성장시키려면, 체인점들이 정품 미용용품을 사용하고 체인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들 유사 업체 및 모조품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고문 변호사를 통해 공상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우리 성에서는 수차례 유사 B 미용실의 간판을 내리게 한 적이 있음. 우리 성의 공상국은 상당히 협조적임.
- 고문 변호사가 공상국에 협조를 요청하면 공상국에서 해당 업체에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방식임. 따라서 아직 정식적인 행정 단속을 벌여 행정 처벌서를 받은 바는 없지만 수차례 유사 업체의 간판을 내리게 하고, 모조 미용용품의 사용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업체 간판 내렸다”고 함. 공상국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웬만하면 간판을 내리는 것으로 보임. 벌금 맞는 것보다는 이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o 상담 내용

-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본사 또는 중간상의 적발을 위해 중국 모조품 단속 전문업체를 활용해 볼 것과 그에 관한 해외지재권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것을 권유함.

(17) W기업

o 업종

- 한국기업의 중국법인. 포털 사이트 운영하며, 2004년 이후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o 권리확보 : 없음

o 침해 현황

- 한 중국기업이 도메인을 등록하고 한국 W기업의 중국 사이트라고 광고 하였음. 그밖에도 W기업의 명칭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업체들이 많았음.
- W기업은 중국에서는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함.

o 침해에 대한 대응

-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는 본사 법무팀에서 사건을 처리함. 현재는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었음.

(18) X기업

o 업종

- X기업의 상하이 법인.

o 권리 확보 : 상표

o 침해 현황

- X기업의 광고 copy 모방사건. 하얼빈 소재의 자동차 회사에서 X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던 자동차 광고 copy를 그대로 본떠 자기 자동차 광고

copy에 사용한 사건.

o 침해에 대한 대응

- X기업의 본사 법무팀과 수입차 대리점이 대응을 모색하던 중에 중국 기업이 홈페이지에서 관련 copy를 자체적으로 삭제하였음.

(19) Y기업

o 업종

- 공장자동화기계에 사용되는 센서를 생산, 판매함. 2002년~2003년 사이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o 권리 확보 : 상표

o 침해 현황

- 상표권 침해. 똑 같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 상표도 같고, 외관도 같아 일반인은 구별이 어려움. 거래처에 모조품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유통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센서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타격을 입고 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KOTRA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먼저 제조자를 찾아 경고를 할 생각이며, 상대방이 침해를 중지하면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생각임. 해외지재권보호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해자에 대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KOTRA에서 소개해 중국 특허사무소를 소개해줌

(20) Z기업

o 업종

- 피아노 제조 판매. Z기업의 중국법인. 1995년 이전에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o 침해 현황

-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디자인의 모방. 새로운 디자인의 피아노가 출시되면 중국 악기제조업체들이 6개월도 못되어 약간 변형한 디자인의 피아노를 시장에 내놓고 있음.
- Z기업은 본래 악기 디자인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외국에서는 디자인이 강점인데 중국에서는 디자인 모방이 극심하여 디자인 장점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태임. 현재 중국에는 악기 메이커가 수백업체에 이름.

o 침해에 대한 대응

- 회사 이름으로 여러 차례 침해업체들에 경고장을 보내 봤지만 한번도 답변을 들은 바 없었음. 악기 메이커들이 너무 많고 땅도 넓어 어디서 모조품이 유통되는지 알기도 어렵고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려움. 현재로서는 1년 내지 2년 내에 모델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아노의 외관보다 내부의 품질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o 상담 내용

-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특히 모델의 수명이 길지 않으면 디자인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는 현재 중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나아가 회사 명의로 보내는 경고장은 효용성이 떨어지며, 중국 변호사 명의로 경고장을 발송할 필요가 있음.

(21) AA기업

o 침해 현황

- 상표권 선점문제임.
- 과거 AA기업은 중국 개방 이전부터 홍콩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중국 시장 개방 후 중국에 직접 진출하였음. 그런데 중국 진출 후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AA상표가 이미 중국에 등록되어 있었음. 상표권자는 AA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상이었음. 나아가 이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로

AA기업은 거꾸로 모조품 제조자로 몰림.

- AA기업은 결국 상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AA기업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

(22) AB기업

o 업종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임. 2004년~2005년 사이에 중국진출.

o 권리 확보 : 상표출원중

o 침해 현황

- 침해 문제가 아니라 세관에서 모조품으로 몰린 사건임.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회사 이니셜을 따서 제품에 상표로 부착하였더니 공상국에서 물건을 모두 압수해 갔음.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들을 모두 보여주었지만 막무가내였음.

o 상담 내용

- 수출물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수출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도 없이 물품을 압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임.
- 상표출원을 올해 3월에 했다면 등록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임. 응답자는 3월이면 등록된다고 들었다고 하지만 그럴리가 없으니 재차 확인해 보기를 권유함.

(23) AC기업

o 업종 : A기업의 중국법인으로, 온라인게임제공업. 2002년~2003년 사이에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임.

o 권리 확보 : 상표

o 침해 현황

- 온라인게임의 불법제공. 저작권 침해. A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을 그대로 copy하여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이 있음. 이들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데, IP를 추적해 봐야 계속적인 IP 변경으로 인해 추적이 쉽지 않음.
- 이들은 전신업체와 서로 짜고 서버를 운영하고 있음. 전신쪽에서 협조를 하면 이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전신쪽에서 협조해 주지 않음. 중국에도 사이버 수사대가 있지만, 황색 사이트나 정치 관련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고, 지재권침해에는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o 침해에 대한 대응

- 대응하기 어려움. IT기업의 협의체가 있음. 상해IP기업협의체가 그것임. 상회에 소속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이팍이라는 정통부 산하의 상해지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24) AD기업

o 업종

- 자동차 유리 생산업체. 1995년 이전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o 권리 확보 : 상표, 디자인, 특허

o 침해 현황

- AD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자동차 유리를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이 있음. 자동차 유리에 AD기업의 상표를 그대로 부착하여 판매하는데 인쇄된 상표가 엉성하여 표가 남.
- 한글라스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면 금새 똑같이 모방한 제품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KS넘버나 생산일자의 숫자 하나가 빠지거나 하는 에러를

범하기도 함.

o 침해에 대한 대응

- 자동차 회사에 납품도 하고 AS시장에 팔기도 하는데 AS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 모조품을 찾아내 법적으로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그러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큼.

o 상담 내용

- 중국의 모조품 단속 전문회사의 활동을 소개하고, 해외지재권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도록 권유함.

4. 인터넷 조사기업

(1) AE기업

o 2006년 3월 24일 조선일보 8면에 관련 기사 게재됨

o 업종 : 담배 제조 판매

o 확인 사항

-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에세나 더원은 착오였음.
- 다만 레종에 대해서는 조사중임. 레종 모조품 자체가 발견된 것은 아니며, 필립모리스사의 담배 모조품 단속 과정에서 레종 포장지가 발견된 것임.
- 에세는 초슬림담배로서 모조가 거의 불가능함. 초슬림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는 세계에서 몇 대 안되며, 중국에서 제조된다고 보기 어려움.
- 문제는 수출품이 국내로 역수입되는 것임. 국내 시판 가격과 수출 가격의 격차를 점차 줄여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TIME 담배는 중동쪽에서 모조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TIME은 슬림형이 아니라 레귤러 제품이어서 모조가 가능함. 인도에서도 모조품이 발견되어 현지 고소를 한 바 있음.

(2) AF기업

o 2005년 11월 28일 한겨레 13면에 관련 기사 게재됨

o 업종 : 손톱깎기 생산, 판매. 중국 현지에 진출하였음.

o 확인 내용

- 중국 시장 전체에서 유통되는 AF 브랜드 제품의 98%가 짝퉁이다. 정품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실사해 보면 대부분이 모조품이다. 과거 중국 정부에서 의약품이나 담배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조품을 단속하면서 AF 브랜드 제품도 함께 단속이 이루어졌던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역부족이다.
- 중국 시장에서 AF 브랜드는 신적인 존재였다. 과거 열악한 품질의 손톱깎기들이 유통되었지만 지금은 장비를 들여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품질이 좋은 모조품도 유통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수요자들 역시 제품의 대부분이 가짜임을 잘 알고 있다.

o 침해에 대한 대응

- 침해 대응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손쓸 단계가 아니다. 모조품을 만드는 업체는 수없이 많고 시장은 너무 넓고, 그들을 찾아내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현재로서는 아이템을 자주 변경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익을 실현하고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3) AG기업

o 2005년 11월 24일 매일경제에 관련 기사 게재됨

o 확인 내용

- 중국 짝퉁 오토바이가 한국에 수입되었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어 이를 확인하여 보았음.
- 한국 수입업자를 고소하자, 한국 수입업자가 AG기업의 오토바이 등록의장 5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음. 그 가운데

1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계속중이고, 두 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하였고, 나머지 두 건은 특허법원에 승소한 바 있음.

- 짝퉁 오토바이의 수입에 대한 고소 사건은 이들 무효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이 짝퉁 오토바이는 계속하여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판매량이 얼마큼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광고는 계속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 짝퉁 오토바이의 중국 생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업재산권 확보를 하지 않았음. 중국뿐 아니라 유럽쪽 수출도 많은데 아직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제품들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하여 필요한 국가들에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 있음.

(4) AH기업

o 2005년 7월 10일 이데일리신문(인터넷)에 관련 기사 게재됨

o 업종

- 식품, 식품 가공 및 요식업

o 확인 내용

- AH기업 상표를 모조한 짝퉁 제품은 아직 중국에서 발견된 적은 없다. 신문 기사는 일본에 관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짝퉁 제품이 발견되었는데,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조된 것임. 동남아 지역에서도 짝퉁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AH기업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들이고, 동남아 현지에서 생산된 것들임.
- 중국은 상표 모방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의 문제가 있음. AH기업은 중국에서 서비스표를 확보하였는데, 중국에서 AH기업 브랜드를 이용하여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검토중임.

- 사실 이들 프랜차이즈점들은 AH기업이 상표를 출원하기 직전부터 중국에서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들을 AH기업 가맹점을 흡수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 조치를 통해 금지시켜야 하는 것인지 등등 대응책 마련 중에 있음.

o 상담 내용

- 본사를 찾는 것이 좋을 듯함. 한국에서 한국 기업 명의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중국의 서비스표권 침해 업체들이 더 세를 불리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본사를 찾아 미리 증거를 확보한 뒤, 중국 변호사 명의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순서이며,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해도 됨.

(5) AI기업

o 2003년 7월 25일 매일경제 2면에 관련 기사 게재됨

o 업종

- 손톱깎기 제조 판매, 중국 현지 공장 운영. 중국 내수 판매는 하지 않으며, 전량 외국으로 수출함.

o 확인 사항

- AI기업의 브랜드를 모방하여 손톱깎기를 제조하여 동남아나 두바이 등으로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다수 있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모조품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현재는 중국의 단속전문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모조품 단속에 대해서는 한국의 한 특허사무소에 위임해 두고 있음. AI 상표는 중국 세관에도 등기하여 두었음.
- AI기업은 중국 내수 시장에는 제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모조품 제조자들의 모조품 수출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음. 동남아 등지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장이 모조품에 의해 잠식되었으며, AI기업 브랜드에 짝퉁이 많

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음.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음.

- AI기업은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대규모로 자사 브랜드 제품을 모조해 수출해 온 한 중국 기업에 대해 연속 2회 단속을 실시한 바 있음. 1차 단속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단속을 실시하여 그 회사에 AI 기업 제품을 모조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음. 제2차 단속때 상당한 수량의 모조품이 발견되었으나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음. 기소할 수 있는 침해액에는 이르렀지만 1차 단속이후 자사 브랜드를 약간 변형하여 모방하였기 때문에 '동일 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기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음.

〈붙임 5〉

2005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및 중국일본상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1. 조사의 목적과 개요

본 조사는, 중국진출 일본계기업의 모방 피해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2005년 3월에 제트로 베이징 센터와 중국일본상회가 실시한 것이다. (2001년 11월의 제1회 조사, 2002년 12월의 제2회 조사에 이어 이번이 3회째).

또한, 본 조사는 전 중국의 각 도시에 조직되어 있는 일본상회, 일본인 클럽 등에 가입되어 있는 현지 일본계제조업을 중심으로 1,890사에 대해 실시했다. (회답 기업 수는 167사)

이제, 특허청이 공표한 본 조사결과를 특허청의 허가를 받아 전재함.

2. 회답 결과

(1) 기본항목

기본항목

회답기업수	167사 (유효 회답 151사, 유효 회답률 8.0%)			
소재지별 내역	베이징시	45	스촨성	6
	상하이시	20	푸젠성	4
	중칭시	1	광둥성	28
	톈진시	4	홍콩	13
	요녕시	10	기타	11
	산둥성	9	무회답	6
	장수성	10		

업종별 내역	기계제조업	17
	전자, 전기제조업	52
	섬유, 잡화제조업	9
	식품, 화학, 의약제조업	20
	도자기제조업	2
	그 외 제조업	34
	도매업	11
	소매업	3
	그 외 서비스업	10
	무회답	9
본사 자본금별 내역	5천만엔 미만	11
	5천만엔 이상 1억엔 미만	9
	1억엔 이상 3억엔 미만	21
	3억엔 이상	112
	무회답	14
종업원수별 내역	50명 미만	29
	50명 이상 100명 미만	8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2
	300명 이상	86
	무회답	12
진출형태별 내역	중국기업(타이완, 홍콩 제외) 과의 합병기업	43
	타국기업과의 합병기업	7
	일본기업의 현지법인	82
	주재원사무소	17
	그 외	7
	무회답	11

2) 각 설문에 대한 회답 (전 38문)

문1. 중국의 모조품 문제에 대한 인식

「단호하게 단속해야」(75.5%, 전회조사 대비 5.4 퍼센트 증가), 「제품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야」(19.2%, 동 6.6 퍼센트 감소)을 합하면 94.7% (동 1.2 퍼센트 감소)에 이르러, 여전히 일본계기업 전체에 「모조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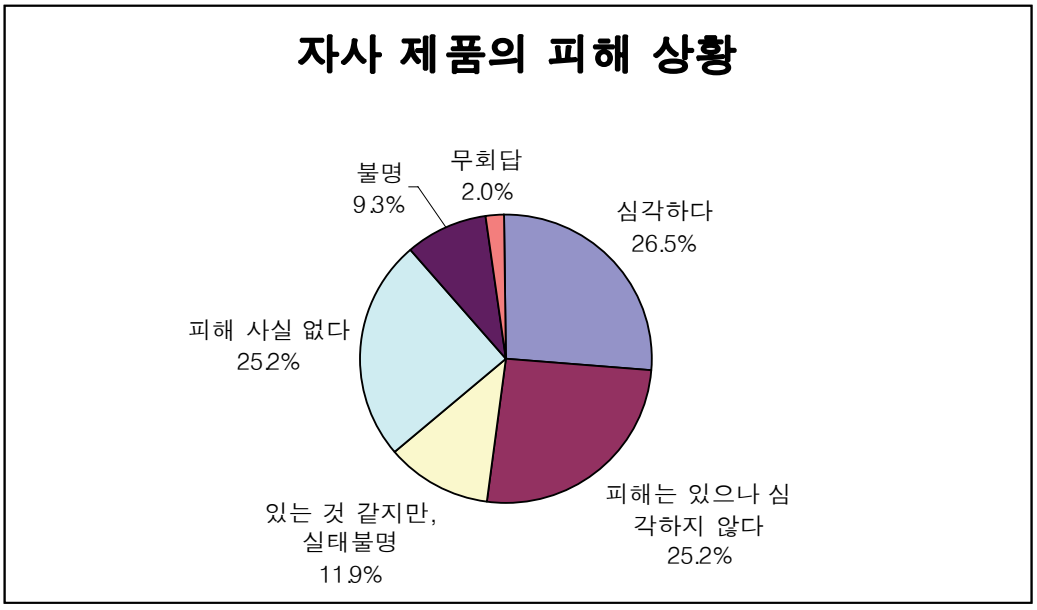

문2. 자사제품의 모조품 피해상황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기업은 26.5%(전회 비 13.1퍼센트 증가), 「피해는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기업은 25.2%(동 3.0퍼센트)으로서 모조품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 51.7%(동 16.1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또한 「있는 것 같지만 실태는 불분명하다」는 기업 11.9%(동 6.8퍼센트)를 합하면 63.6%(동9.3 증가)의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모조품 피해를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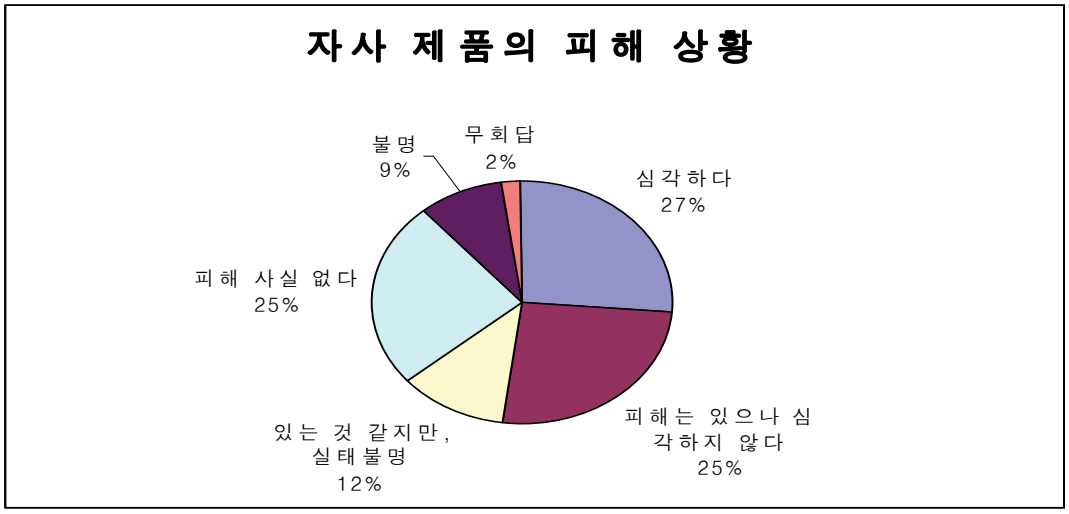

(주) 이하 문 3~38은, 문2에서 「피해 있음」이라고 응답한 기업(80사)이 회답.

문3. 침해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침해되고 있는 권리는, 상표권 75.0% (전회 비 3.2퍼센트 증가), 디자인권 62.5%(동 6.0퍼센트 감소)에 집중되어 있다. 모조품이 여전히 디자인과 상표를 도용하고, 진품을 모방한, 소위 데드카피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술의 중핵을 이루는 특허권 침해는 25.0%로 전회와 비교해 10.2 퍼센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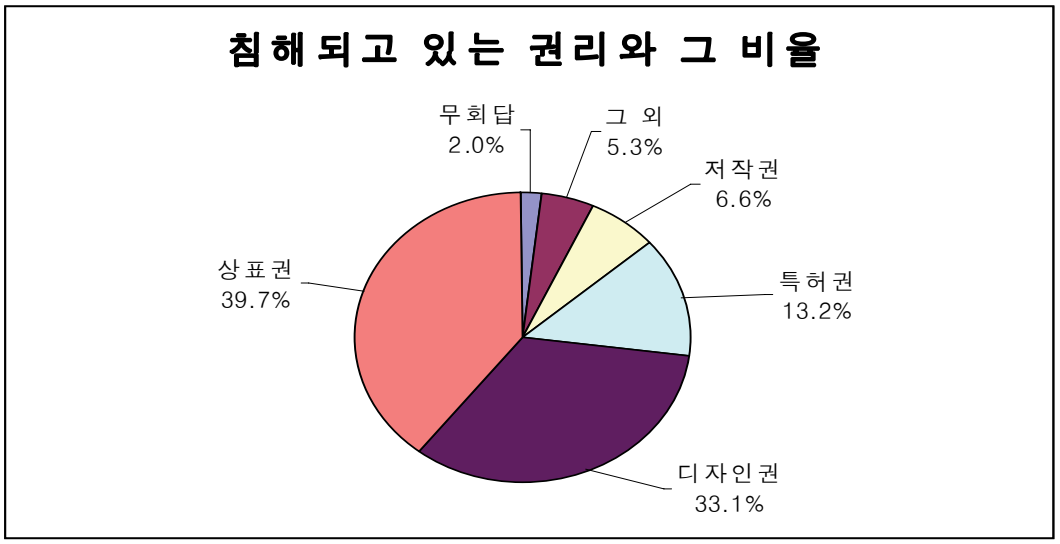

문4. 모조품 피해 중 가장 큰 지식재산권

한편 피해의 크기로 보면, 상표권의 피해가 56.3%(전회 비3.3퍼센트 증가)로 가장 크며, 이어 디자인권 28.8%(동 7.4퍼센트 감소), 특허권 2.5%(동 1.5퍼센트 증가). 저작권 2.5%(동 1.8퍼센트 증가)라는 비율을 보여 준다. 모조품 피해의 측면에서도 상표권 침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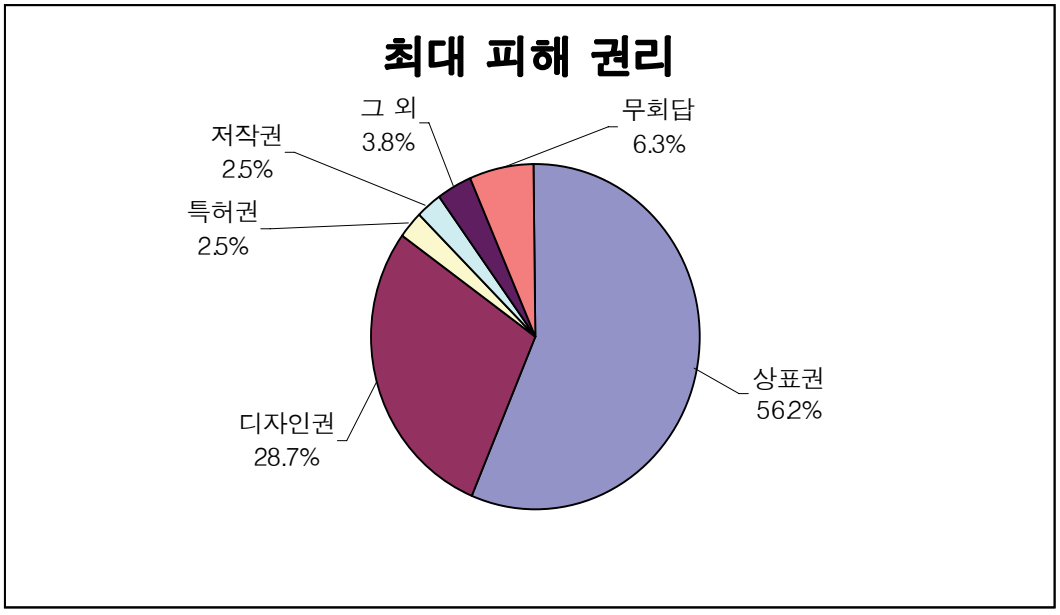

문5. 피해를 입고 있는 모조품의 종류 (금회 조사부터 신설)

「거의 똑같은 데드카피」가 67.5%로 최대며, 여전히 데드카피의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점은 있으나 혼동하기 쉬운 제품」은 42.5%, 「자사와의 관련성에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은 12.5%를 점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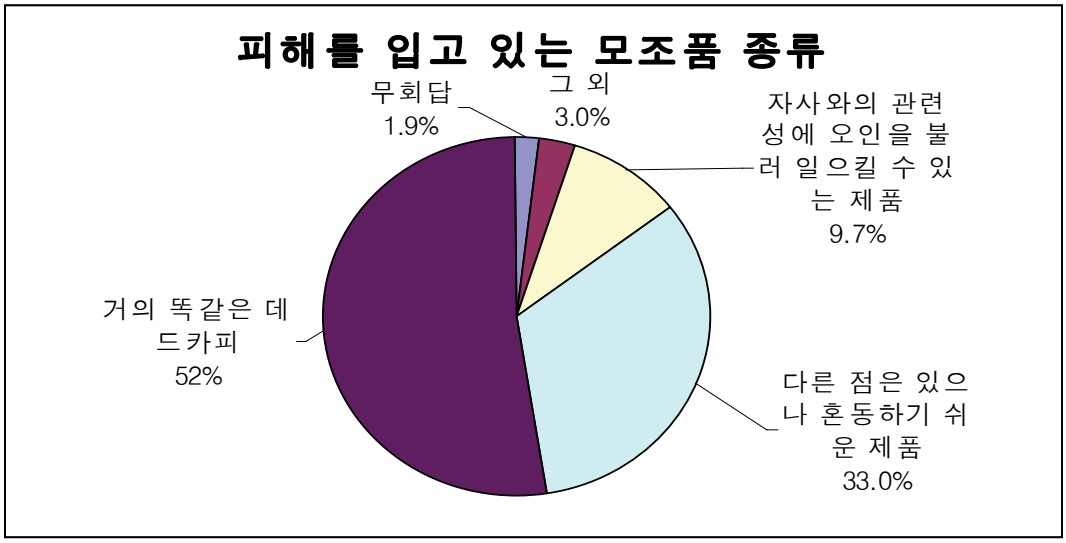

문6. 모조품에 의한 연간 피해액

모조품에 의한 진품의 매출 손실이 10억엔 이상인 기업은 16.3%(전회 비 7.6퍼센트 증가), 1억엔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35.1%(동 5.6퍼센트 증가). 한편, 피해액 산정 불명/ 곤란이라는 기업이 55.0%(동1.4퍼센트 감소)로, 여전히 반수를 넘기고 있어 모조품 피해 파악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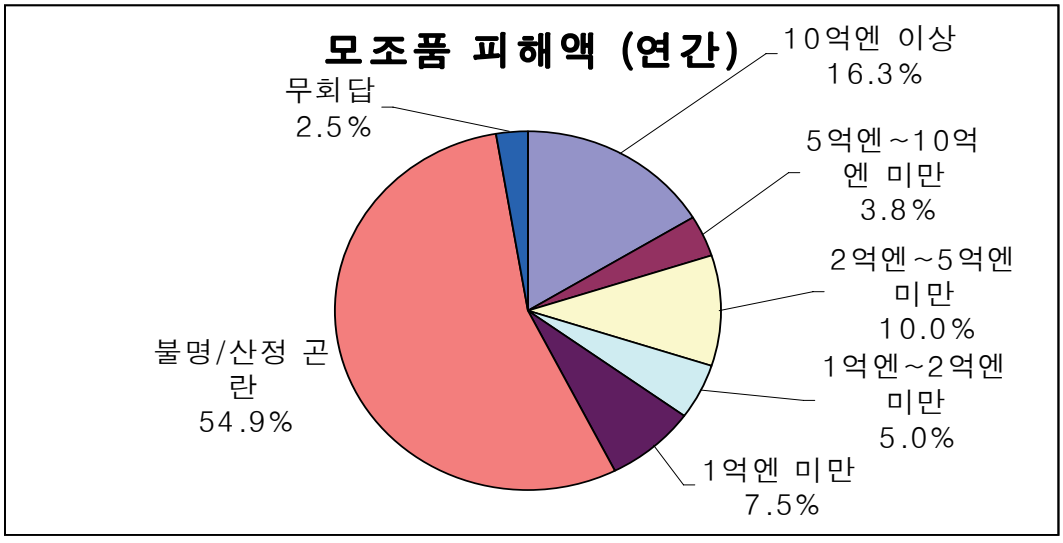

문7. 작년과 비교한 모조품 피해 상황

「악화 경향」 (30.0%, 전회 비 12.6퍼센트 증가), 「선택하자면 악화 경향」(31.3%, 동 5.6퍼센트 감소)을 합하면 6할 이상의 기업이 모조품 피해는 악화경향이라 응답. 반면 「개선 경향」이라고 보는 기업은 2.5%로 전회 비 10.9퍼센트 감소해, 중국 정부에 따른 모조품 단속강화책의 효과가 아직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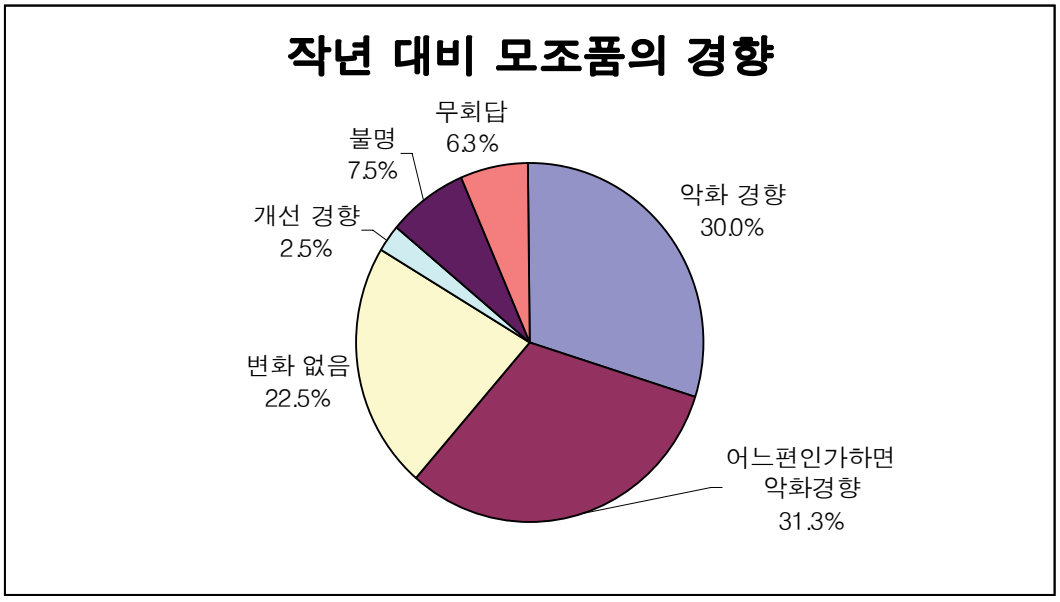

문8. 최대 피해 지역(최악 3 선택)

모조품의 피해지역에 대해, 제조 거점은 광둥성(48.8%), 저장성(23.8%), 장수성(22.5%)가 워스트 3으로, 또한 유통 거점으로는 광둥성(63.8%), 상하이시(31.3%), 베이징시(26.3%)가 각각 워스트 3이다. 지역으로는 광둥성의 피해 실태가 현저한 것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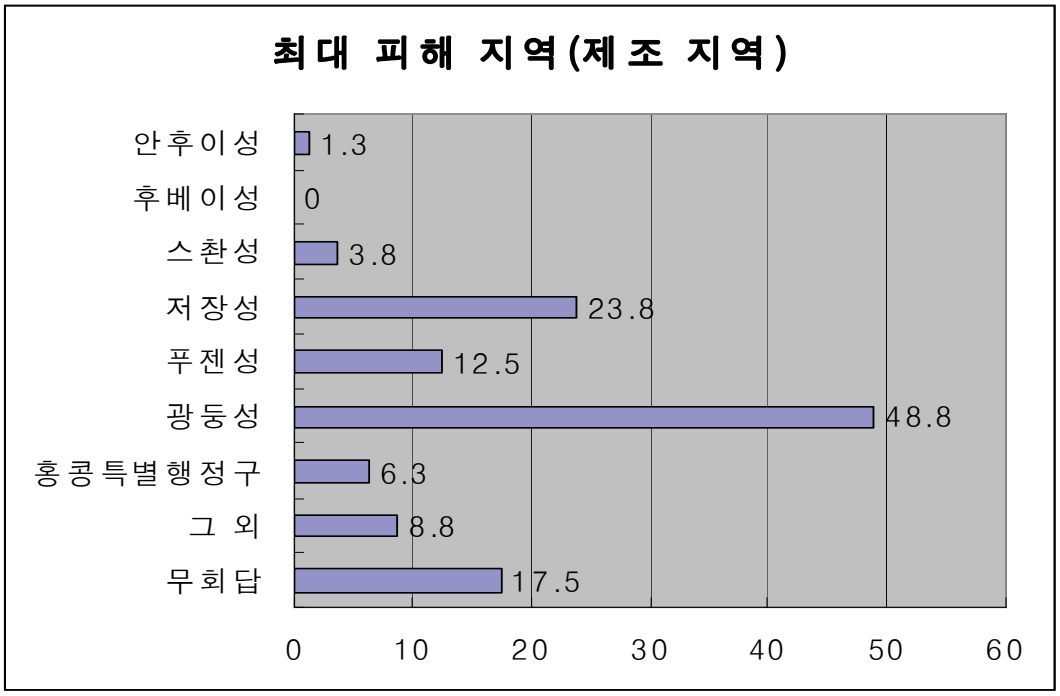
최대 피해 지역(제조 지역)
안후이성
후베이성
스촨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홍콩특별행정구
그 외
무회답
1.3
0
3.8
23.8
12.5
48.8
6.3
8.8
17.5
0
10
20
30
40
5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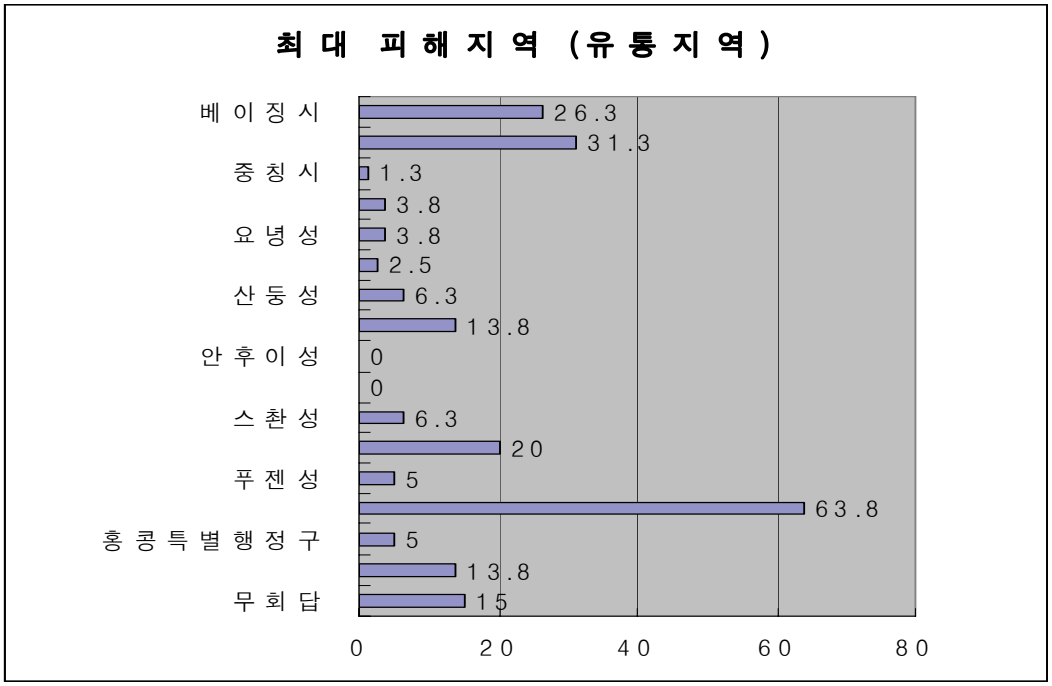
최 대 피 해 지 역 (유 통 지 역)
베 이 징 시
중 칭 시
요 녕 성
산 둥 성
안 후 이 성
스 촨 성
푸 젠 성
홍 콩 특 별 행 정 구
무 회 답
26.3
31.3
1.3
3.8
3.8
2.5
6.3
13.8
0
0
6.3
20
5
63.8
5
13.8
15
0
20
40
60
80

문9. 중국에의 공장 진출의 기술 이전과 모조품 피해 관련성

「중국공장 제조품에 직접 피해가 있다」는 기업은 38.8% (전회 비6.8퍼센트 감소), 「중국공장에서 제품 제조시 이용하는 기술과 관련된 제품에 피해가 있다」는 기업은 12.5%(동8.3퍼센트 감소) 인 것에 대하여, 「공장은 진출하지 않았으나 공여기술 활용 피해가 있음」인 기업은21.3%(동 5.9퍼센트 증가)이었다. 여전히, 기술과 모조품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에의 투자, 생산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충분한 예방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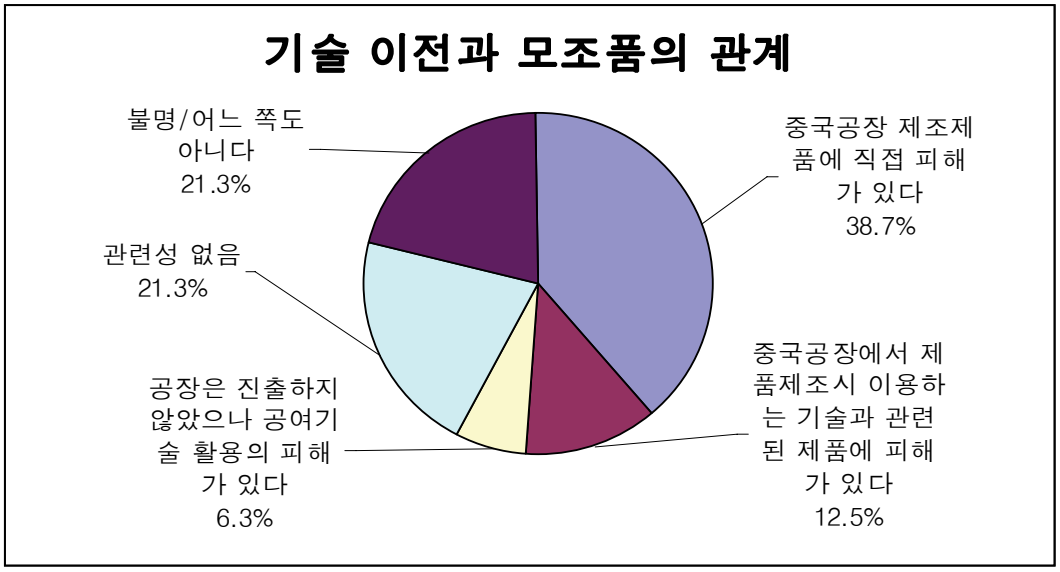

문10. 중국제 모조품의 품질

「진품에 상당히 가깝다」는 기업이 23.8%(전회 비 0.4퍼센트 감소), 진품에는 미치지 않으나 「향상하고 있으나 진품에 열등함」이라고 회답한 기업은 42.5%(동 12.5퍼센트 감소)로 감소경향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모조품 업자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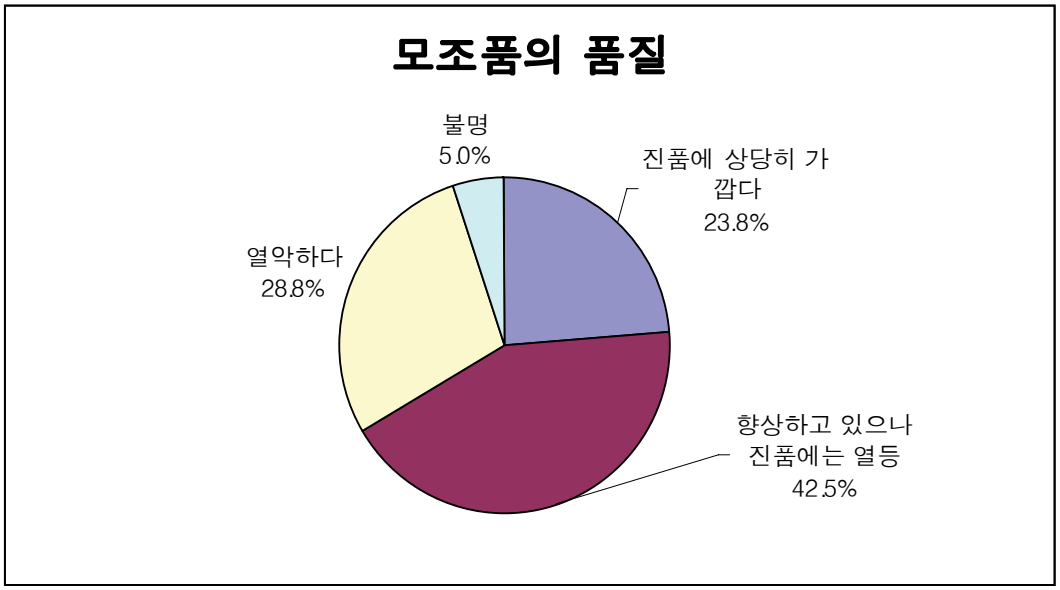

문11. 중국 국내에서의 모조품의 판매가격 (금회 조사부터 신설)

모조품 제품 판매가격에 대해서, 자사 제품가격의 약 50%~80% 미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40.0%를 점유하고, 자사 제품의 반액 이하라고 답한 기업은 35.1%를 점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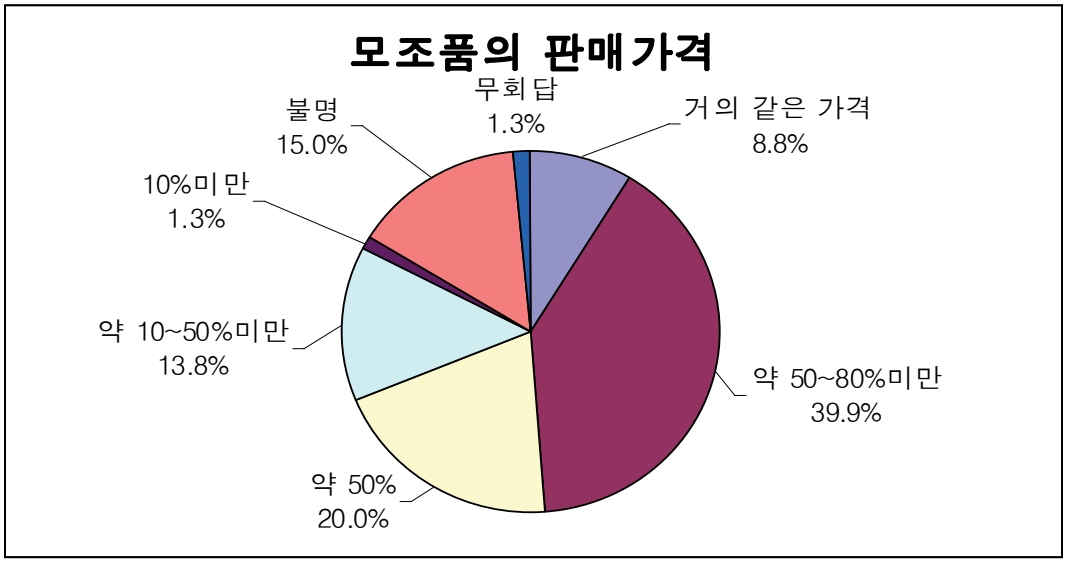

문12. 중국제 모조품의 수출 상황

「심각한 수출 피해가 있다」라는 기업은 20.0%(전회 비 9.9퍼센트 증가)을 점유, 「어느 정도」(20.0%, 동 2.1퍼센트 감소), 「의혹 있음」(20.0%, 0.1 퍼센트 감소)을 포함하면, 60.0%(동 7.7퍼센트 증가)의 기업이 「수출 피해가 있음」이다. 여전히 중국제 모조품의 수출 피해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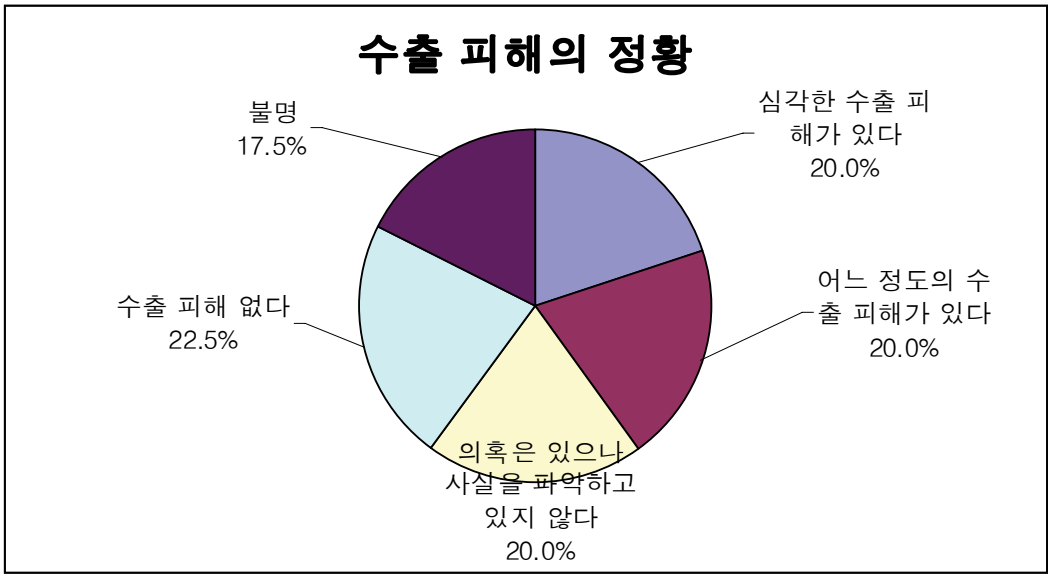

문13. 총 피해에서 차지하는 수출 피해 비율

모조품 피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 피해의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15.1%(전회 비0.4퍼센트 감소)로 전회와 비교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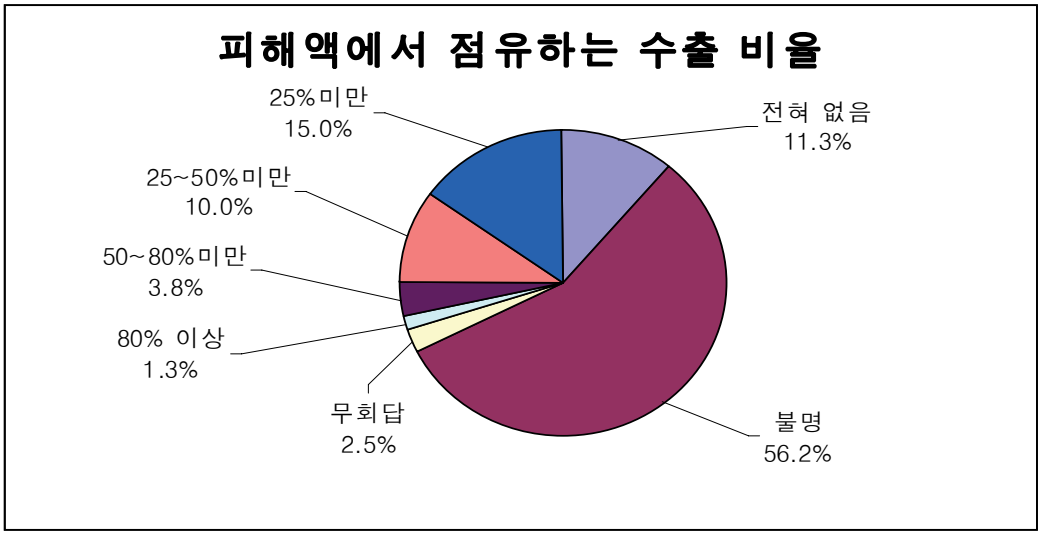

문14. 모조품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수단(금회 조사부터 신설)

모조품 대책으로 강구하고있는 수단으로써 「법률사무소, 조사 회사 등에 의한 실태 조사」가 67.5%, 다음으로 「행정에 의한 단속」이 57.5%, 「모조품 제조회사에 경고」는 3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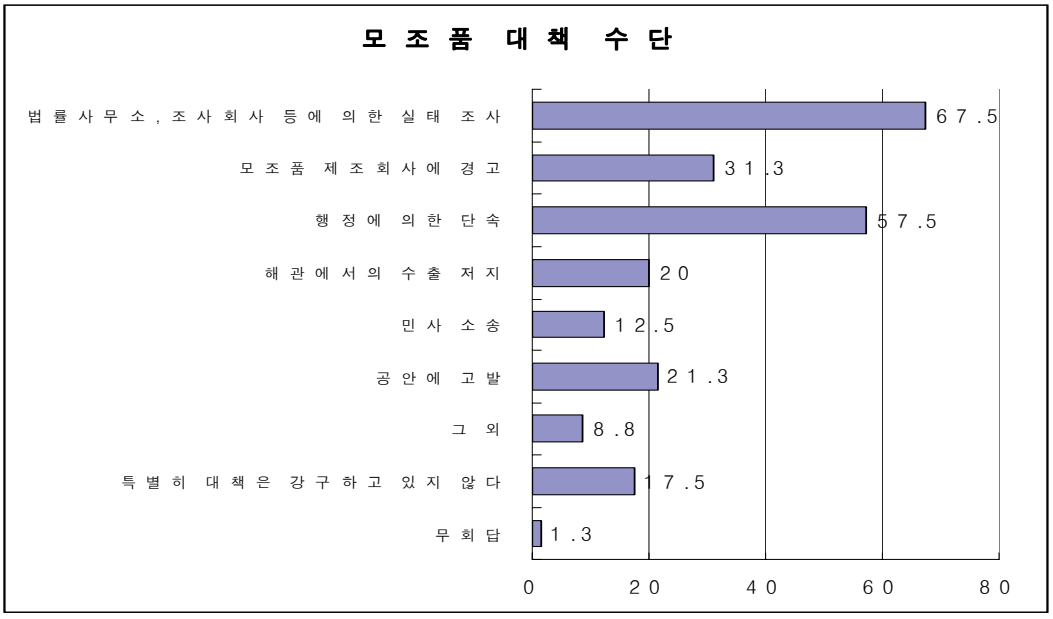

문15. 해관총서에의 지식재산권 등록

수출 방지를 진행하기 위한 해관총서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31.3%(전회 비 5.1퍼센트 증가)이며 증가 경향이다. 한편, 「등록하지 않았고 예정도 없다」는 기업이 37.5%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보다 6.2퍼센트 높아 금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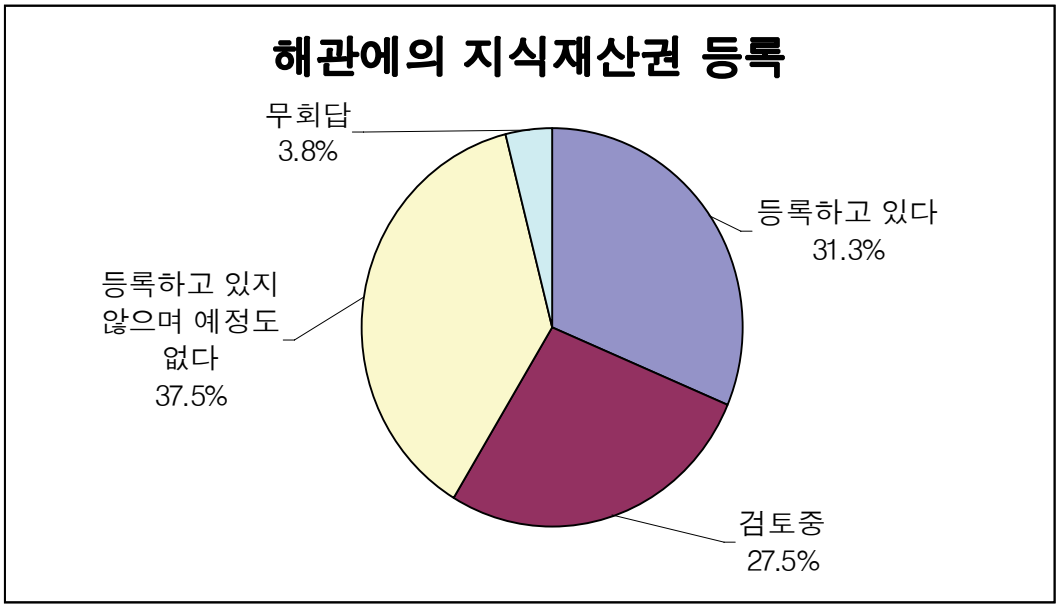

문16. 해관총서에 등록한 지식재산권

해관총서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88.0% (전회 비 0.1 퍼센트 감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디자인권 36.0%(동 1.7퍼센트 증가), 특허권 16.0% (동 6.5퍼센트 증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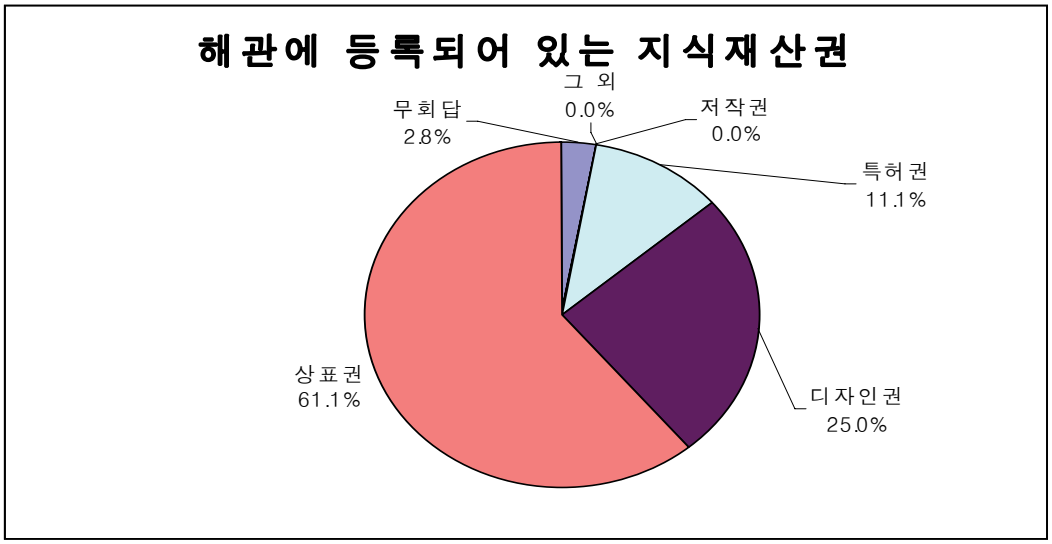

문17.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관에 의한 적발건수

해관에 의한 적발, 수출 저지 건수는, 「1~4건」이 12.0%(전회 비 14.2퍼센트 감소), 「5~9건」이 20.0%(동 12.9 퍼센트 증가), 또한 「10건 이상」 적발을 경험한 기업이 16.0%에 이르러 48.0%의 기업이 수로에서의 저지를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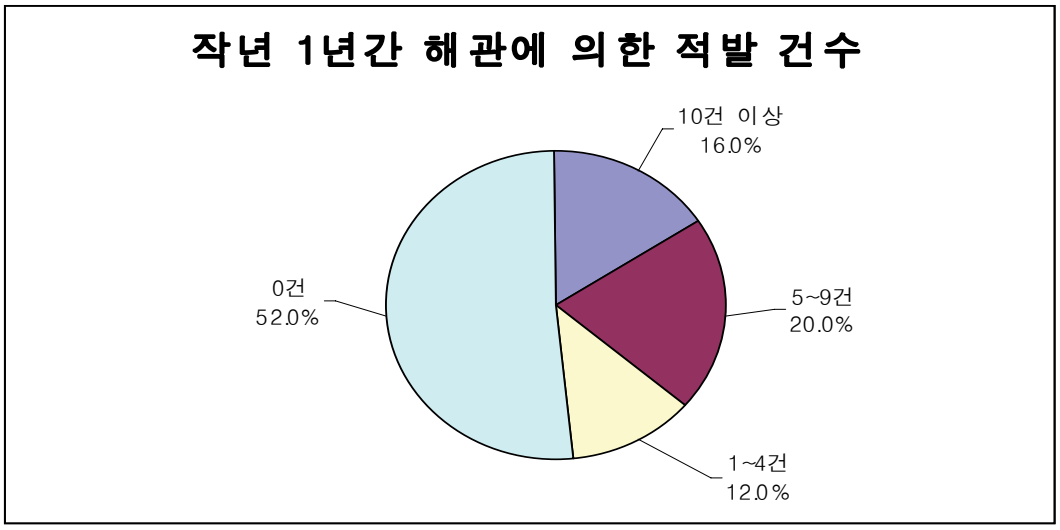

문18. 해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기업이 23.1%, (전회 비 5.1퍼센트 감소)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28.8%가 「등록 수속 방법을 모름, 등록제도의 존재를 몰랐음」으로, 금후 등록 방법 등에 대해 기업에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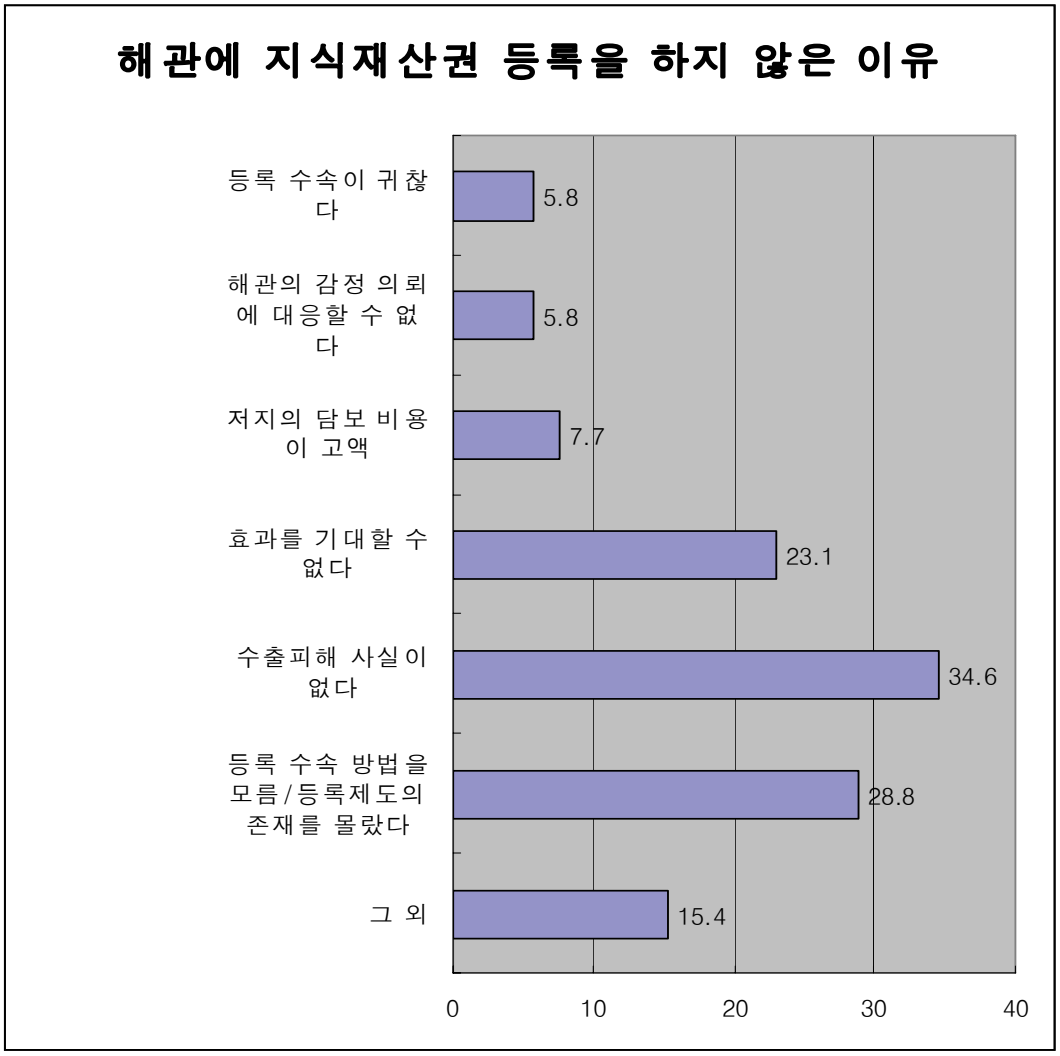

문19. 모조품 대책 예산

많은 구미 기업이 억 단위의 규모로 모조품 대책에 맞서는 것에 대하여, 1억엔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기업은 7.5%(전회 비4.1퍼센트 증가)에 머무르며, 2천만엔 미만인 기업이 36.3%(동 41.6 퍼센트 감소), 또한 「전혀 하지 않음」인 기업도 28.8%에 이르렀다. 아직도 모조품 대책에서 비용 대비 효과로 판단하는 일본계기업의 경향에 변화는 보여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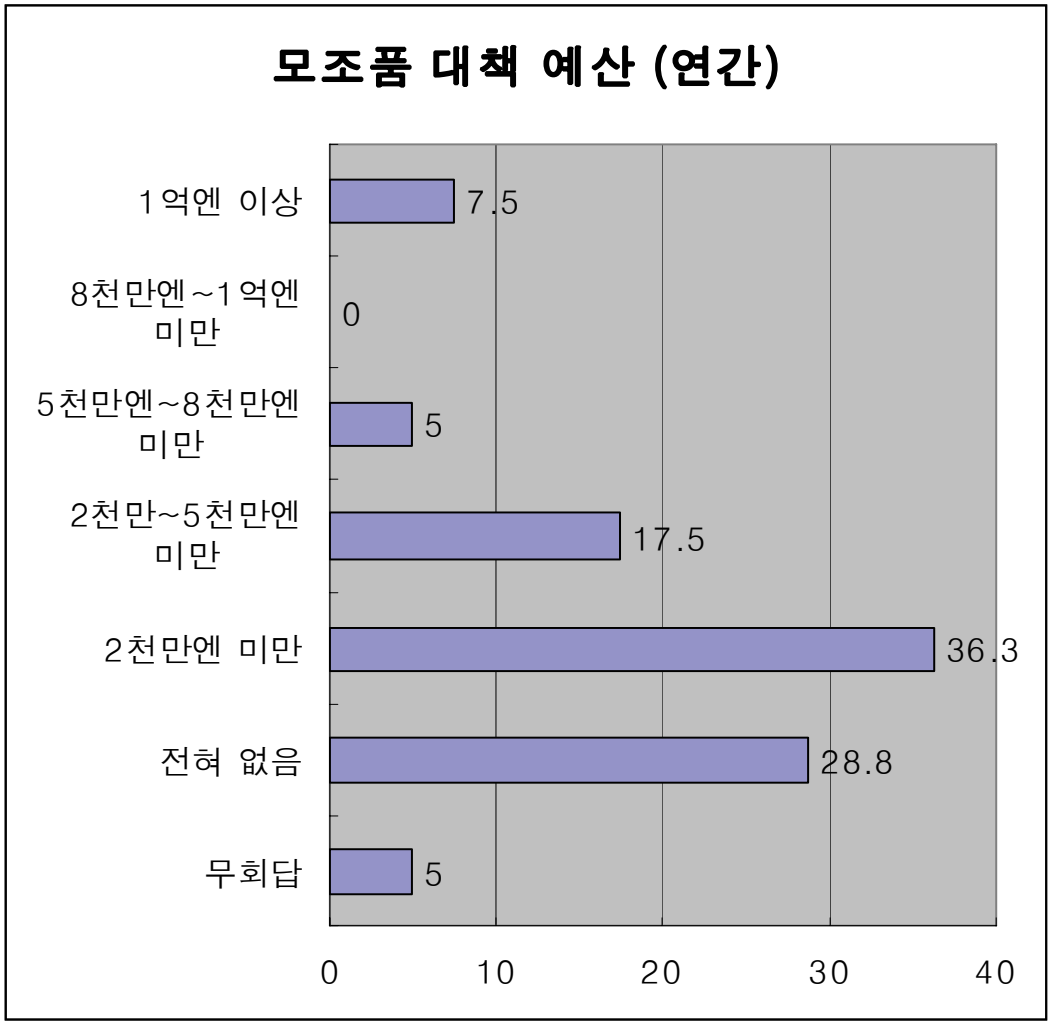

문20. 모조품 대책 담당자의 배치 (금회 조사부터 신설)

「다른 업무와의 겸임자를 배치」는 43.8%, 「전임의 담당자를 배치」라고 답한 기업은 13.8%를 점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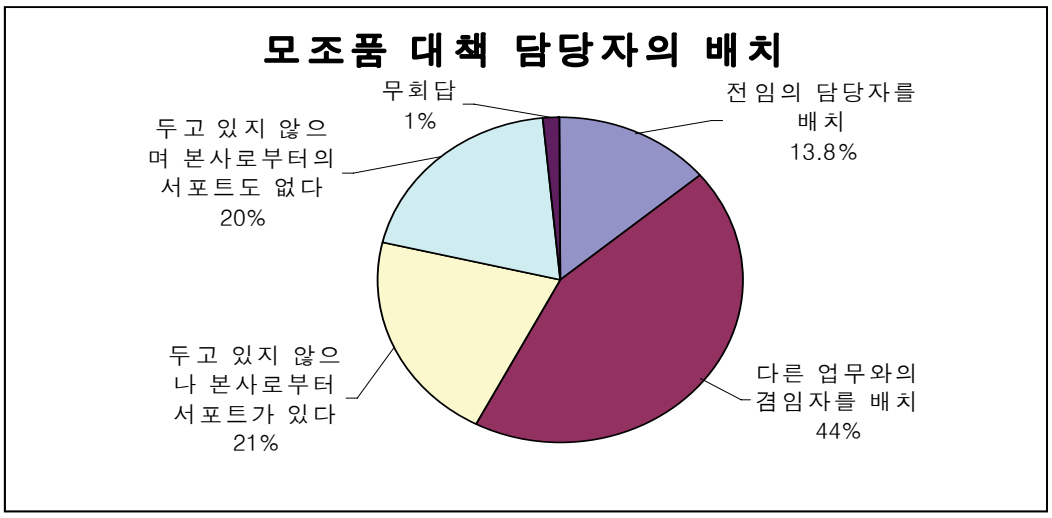

문21. 중국에서의 모조품 대책 예산의 핸들링 부문

현지에 예산 권한을 맡겨 두고 있는 기업은 32.5%(전회 비 3.7퍼센트 감소)이다. 반을 넘는 53.8%(동 1.6퍼센트 증가)가 본사 관할로 되어있는 것도 일본계기업의 대응이 늦어지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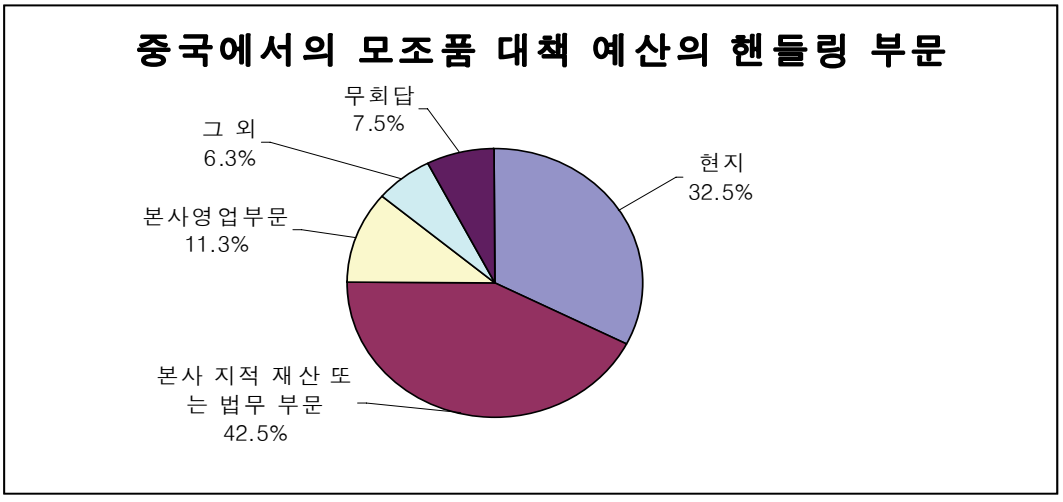

문 22. 자사 조사에 의한 연간 적발건수

작년 1년 동안 자사 조사에 기초하여 10건 이상 적발한 기업은 23.8%로 전회보다 13.1 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0건은 42.5%(동 9.2 포인트 감소)로 여전히 자발적인 적발행동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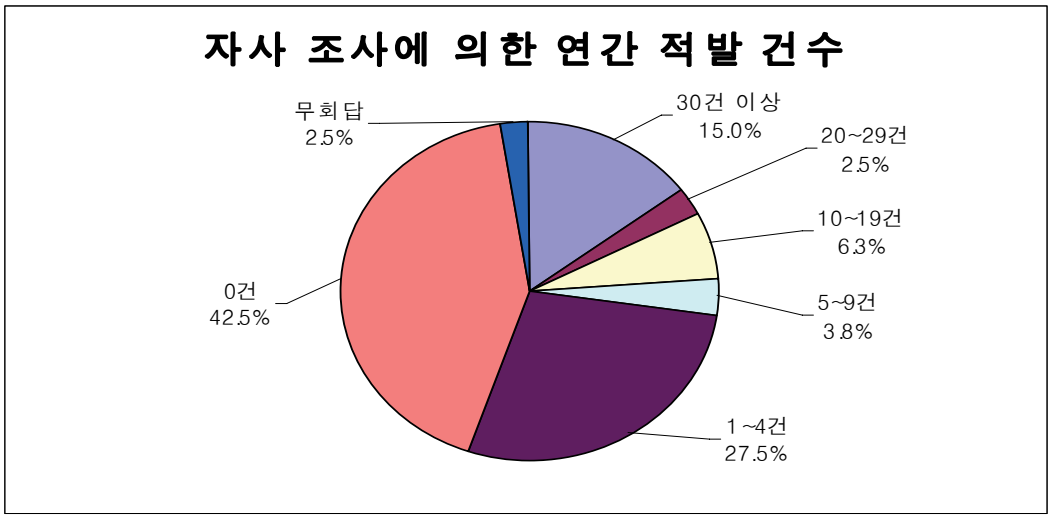

문23. 자사 조사에 의한 적발을 하지 않는 이유 (금회 조사부터 신설)

자사 조사에 의한 적발을 행하지 않는 이유로서, 「과대한 경비를 필요로 한다」가 26.5%, 「적발해도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가 17.6%를 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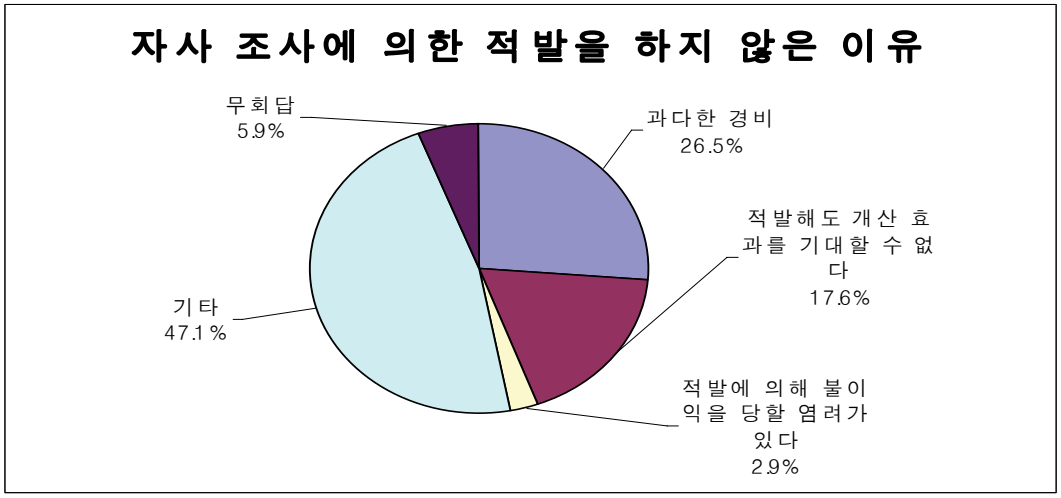

문24. 중국행정기관으로부터 연간 감정 의뢰건수

작년 1년 동안 중국 정부의 모조품 단속 담당기관으로부터의 감정 의뢰, 즉 행정기관 스스로의 정박활동이 10건이 이상이었던 기업은 12.6% (전회 비 2.5 포인트 증가)였다. 0건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대다수(61.3%, 동 1.1 포인트 감소)였지만, 30건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있다(5.0%, 동 1.6포인트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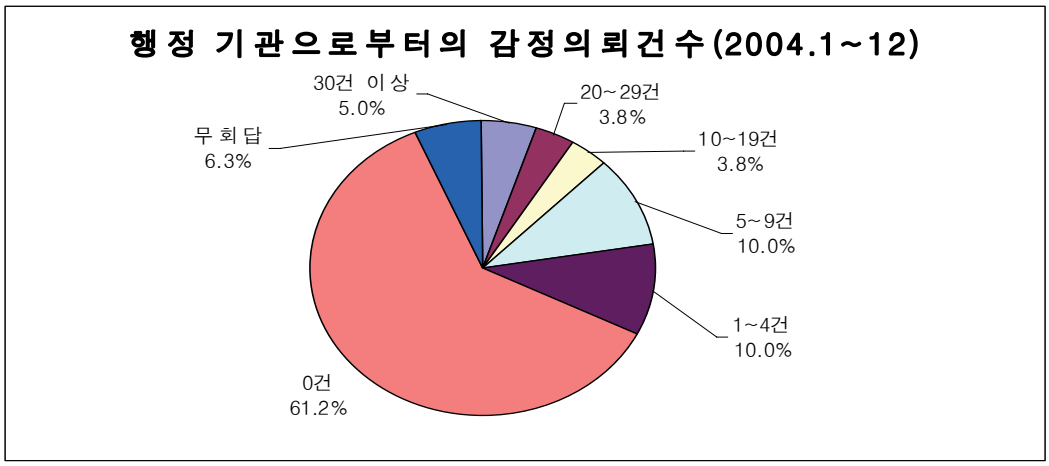

문25. 모조품 피해에 관하 연간 형사사건수 (금회부터 신설)

70%의 기업은 형사사건수가 0건이라고 대답하여 여전히 형사사건에 이른 사건은 적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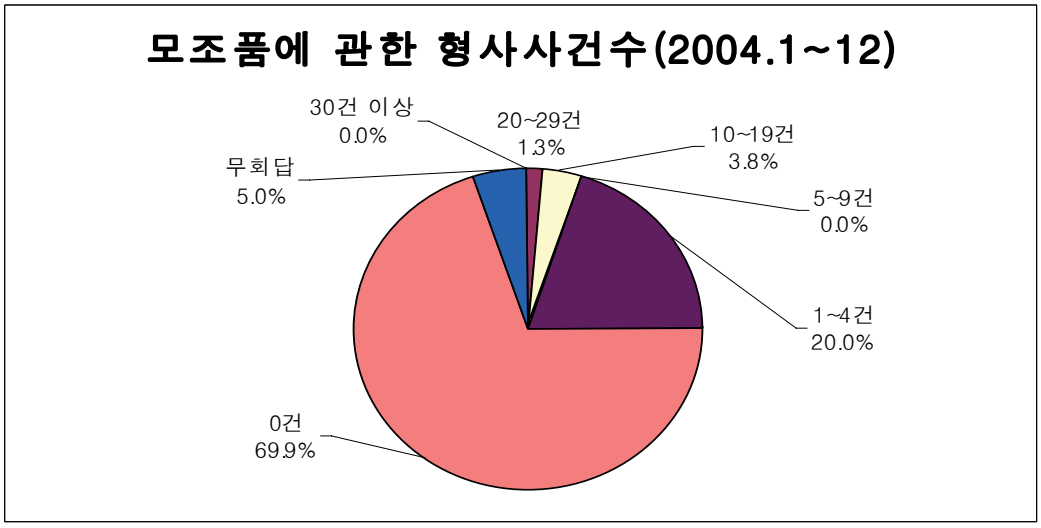

문26. 모조품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 경험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7.5%(전회 대비 0.1 포인트 증가), 검토 중은 46.3%(동6.0포인트 증가)를 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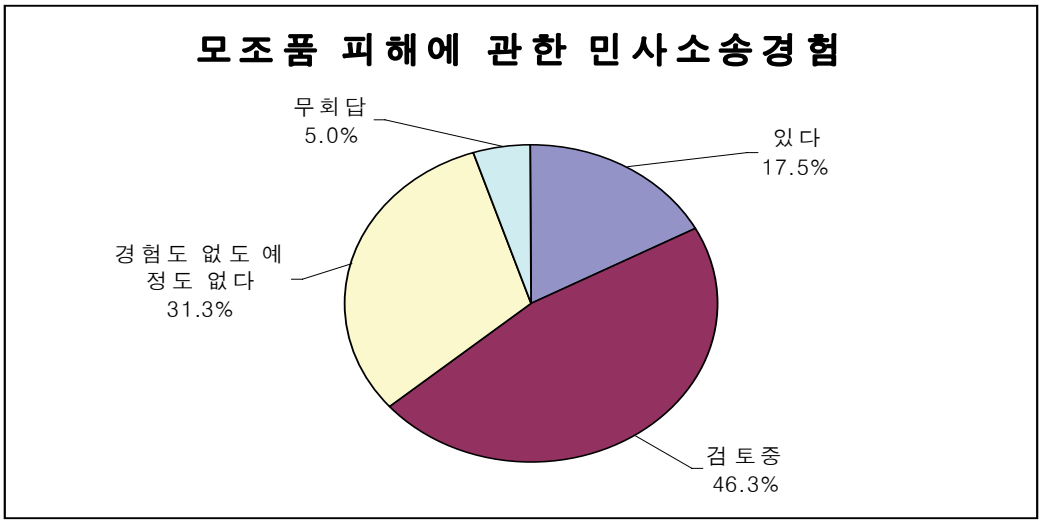

문27. 민사소송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금회 조사부터 신설)

첫째 이유는 44.0%를 점한 「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라는 점에서 이하 「해결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 「과다한 비용」이 각각 16.0%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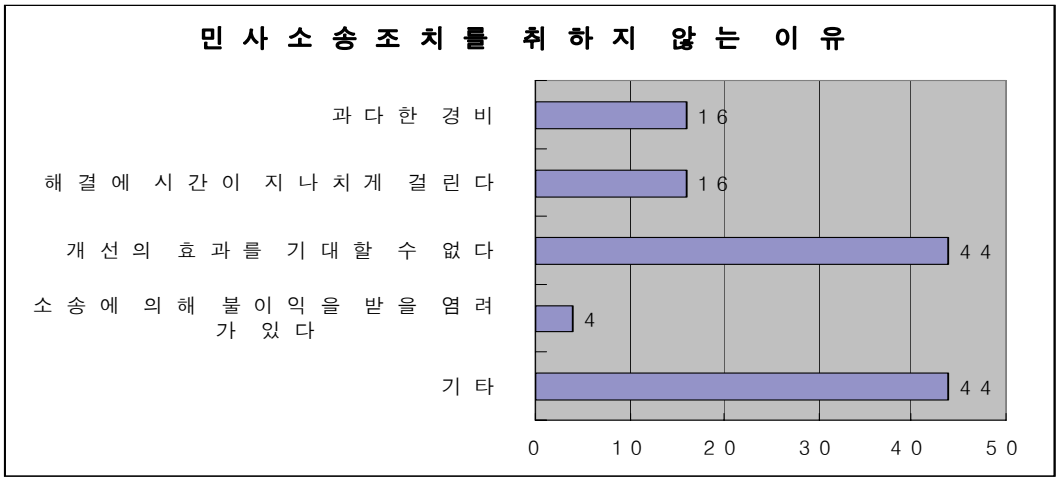

문28. 본사의 모조품 문제에 대한 인식도

「최고경영자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강한 인식이 있다」고 한 기업은 35.0%(전회 대비 1.2 포인트 감소). 「정보를 올리지만 대응해 주지 않는다(6.3%, 동 1.1 포인트 감소)」, 「현지에서 대응하여 고고 있지 않다」(5.0%, 동 7.1 포인트 감소)고 한 기업은 모두 11.3%(동8.2포인트 감소)로 전회 조사보다 개선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여전히 본 문제에 관한 일본계 기업 경영진의 인식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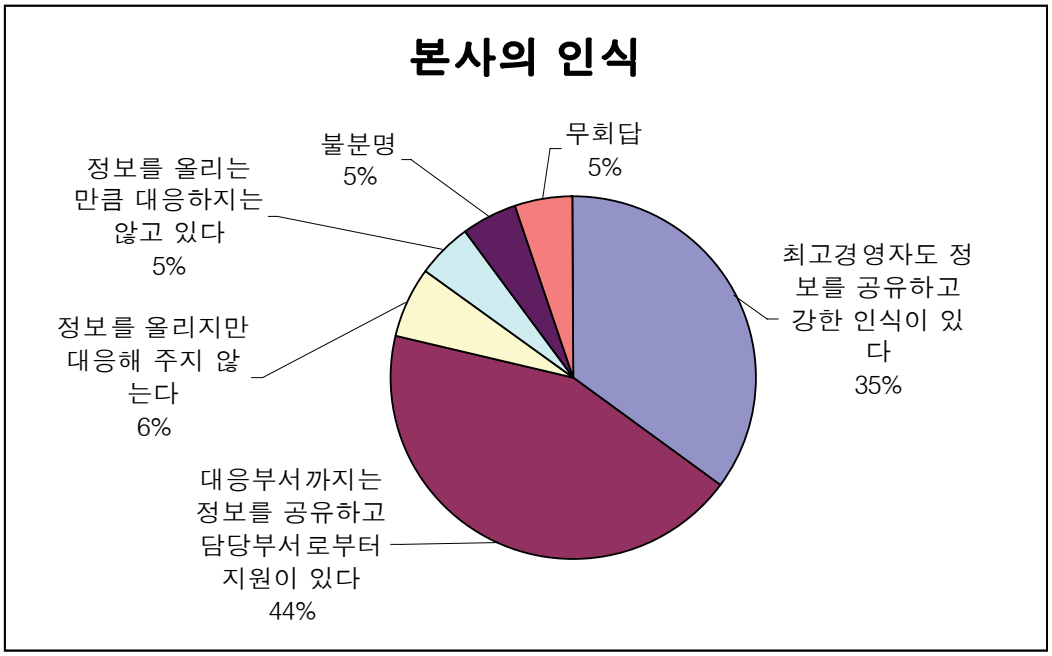

문29.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의 출원경향

지식재산권 침해에의 대응책으로서 가장 필요한 권리확보에 관해서는 45.0%(전회 대비 9.4 포인트 증가)의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작년과 같다」는 31.3%(동 6.3 포인트 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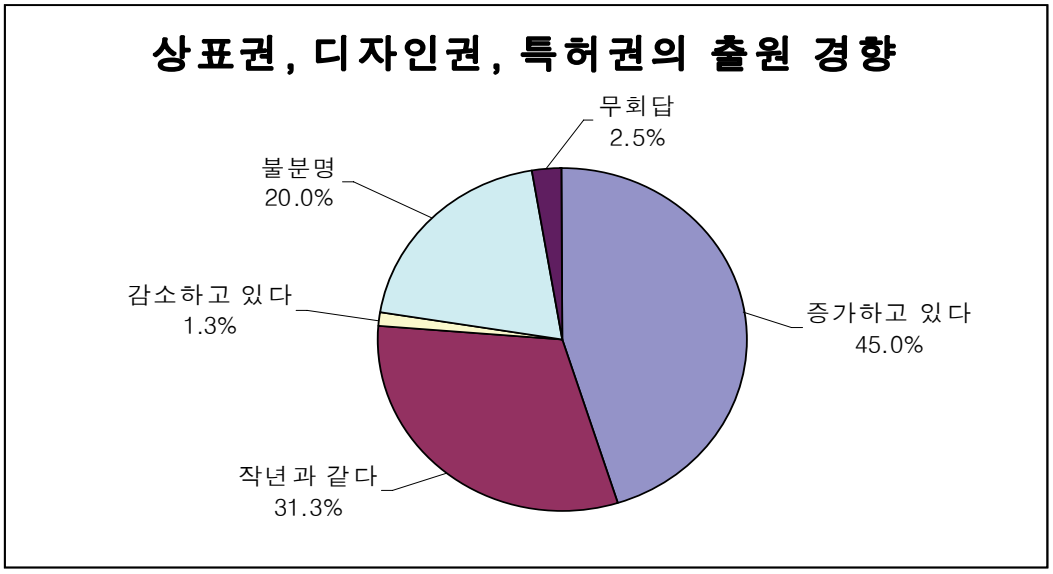

문30. 장래의 현지에서의 사내 체제

장래의 현지 체제에 대해서는 「체제 강화의 방향」기업이 58.8%(전회 대비 16.5 포인트 증가)인 것에 비해, 「 현상 대로 대응하는 방향 」이라고 한 기업은 36.3%(동 13.4 포인트 감소)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지 사내 체재의 강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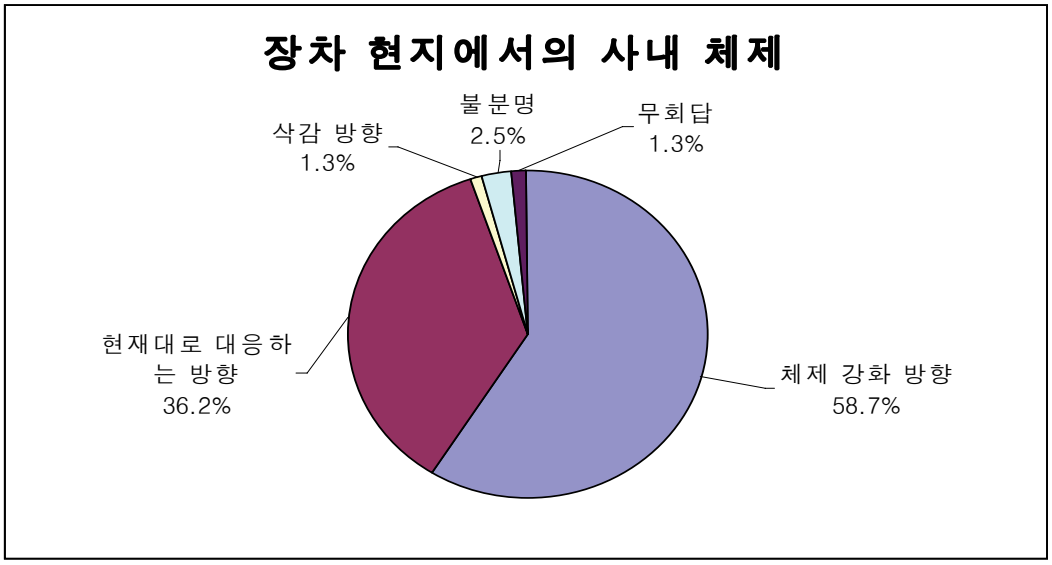

문31. 구미계 기업과 자사의 모조품 대책 비교

구미계 기업과 자사의 비교판단에 대해서도 「자사의 대책 쪽이 앞서 있다」고 한 기업은 단지 2.5%(전회 대비 0.9 포인트 감소)이고, 28.8%(동 1.8 포인트 감소)의 기업은 「구미 기업의 쪽이 앞서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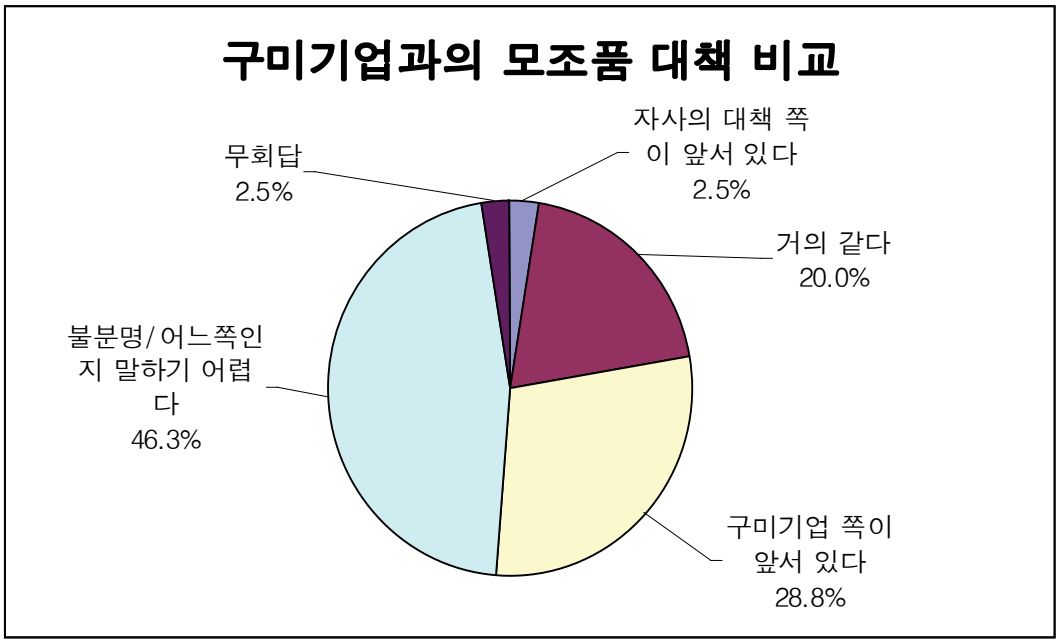

문32. 구미계 단체와 일본계 단체의 활동 비교

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일본 단체의 활동 쪽이 활발하다」고 한 기업은 단지 5.0%(전회 대비 2.3포인트 증가)이고, 27.5%(동 9.4 포인트 감소)의 기업이 「구미의 쪽이 활발하고 일본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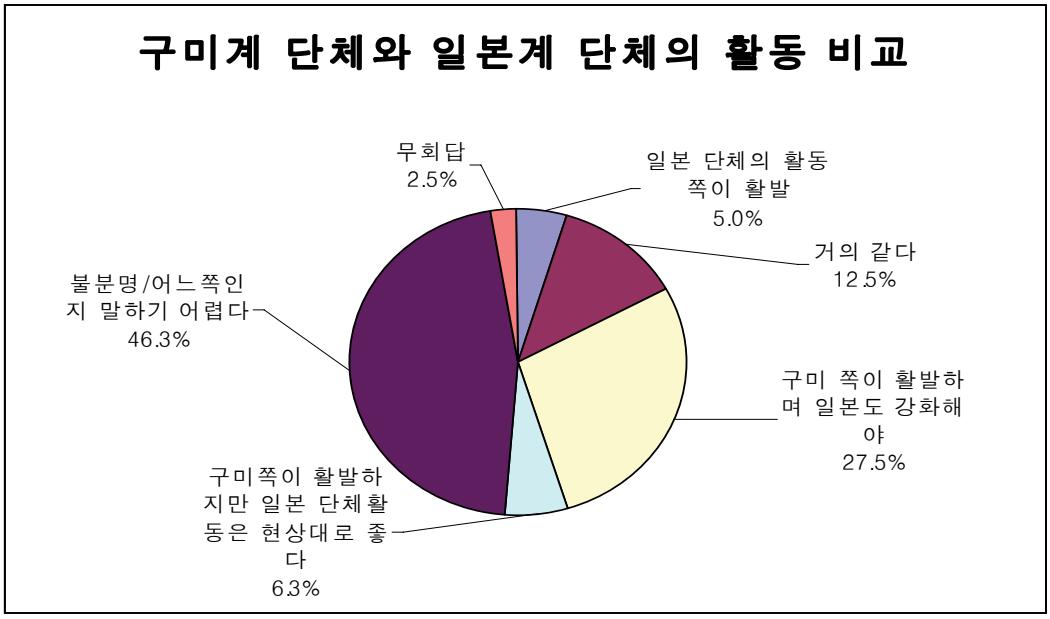

문33. 타사와 연계한 조직적 활동

「전 제품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과 「일부 제품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8.8%(전회 대비 4.6 포인트 증가), 「장래의 일로 검토 중」은 25.0%(동 8.6 포인트 감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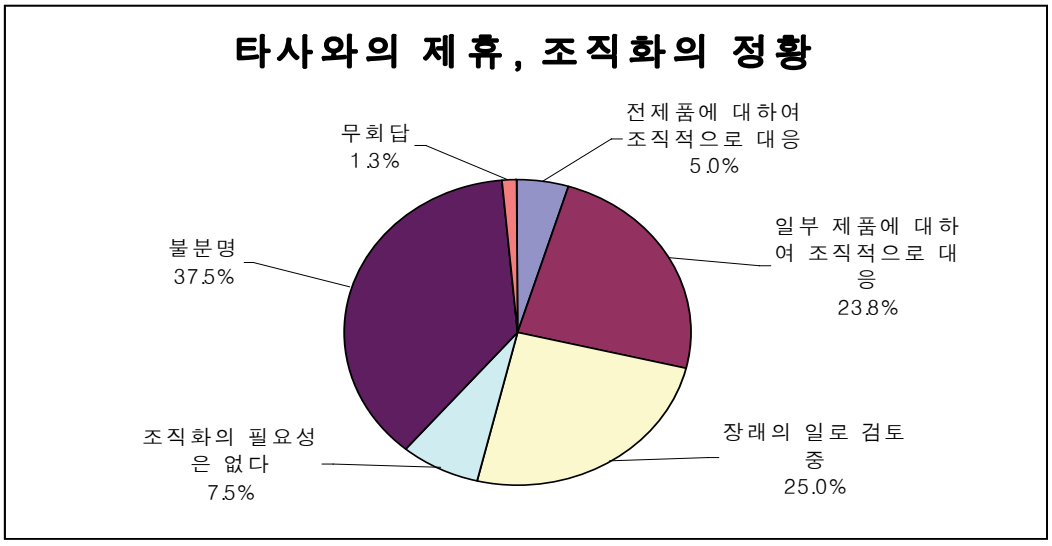

문34. 모조품 대책의 장해

모조품 대책의 장해로서는, 「과다한 비용」이 48.3%(동 5.2 포인트 증가), 「해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가 46.4%, 「여러 번 적발해도 효과가 없다」가 44.4%(동 5.4 포인트 증가), 「중국 법제도상에 문제가 많다」가 33.1%(동 5.2 포인트 감소), 「지방보호주의랑 지방정부 단속담당자에 문제가 있다」가 29.8%(동 16.6 포인트 감소)라고 지적하는 기업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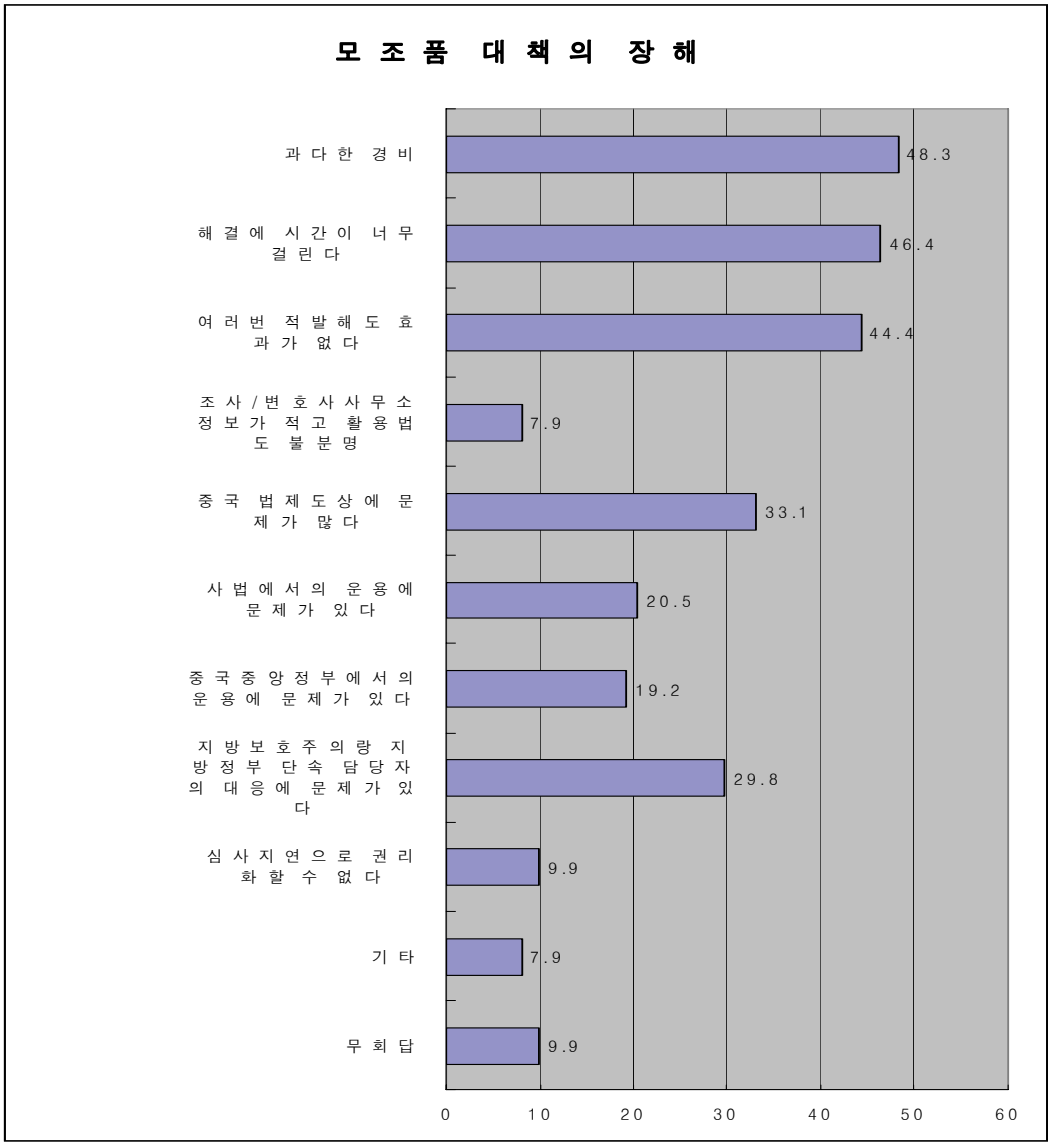

문35. 중국 중앙정부의 모조품 단속에 대한 평가

중국 중앙정부의 대처를 「평가할 만하다」고 한 기업은 2.6%(전회 대비 0.2 포인트 증가)이고,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다」21.2%(동 5.4 포인트 증가)를 합하여도, 평가할 만하다고 한 기업은 23.8%(동 5.6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편, 「불만」 35.1%(동 4.1 포인트 감소), 「약간 불만」21.2%(동 0.9 포인트 증가)를 합하면 불만은 56.3%(동 3.2 포인트 감소).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 불만 모두 전회에 비해 약간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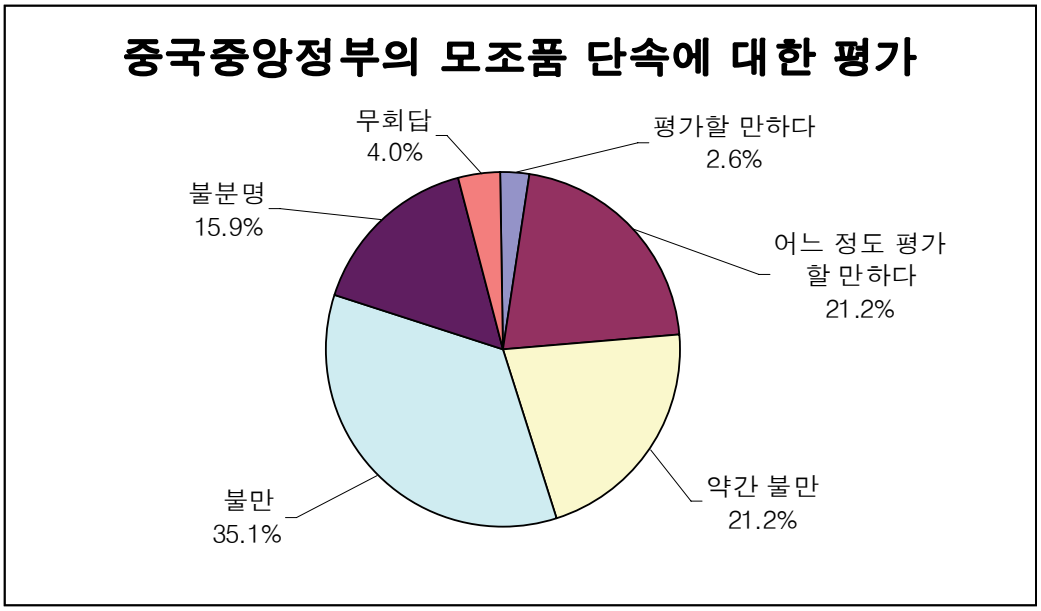

문36. 중국 지방 정부의 모조품 단속에 대한 평가

실제 단속을 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평가할만하다」고 한 기업은 0.7%(전회 대비 0.5 포인트 감소)이고,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다」15.2%(동 4.9 포인트 증가)를 합하여도 15.9%(동 5.6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불만」 35.8%(동 10.9 포인트 감소), 「약간 불만」25.2%(동 6.3 포인트 감소)를 합하면 불만은 61.0%(동 4.6 포인트 감소)여서,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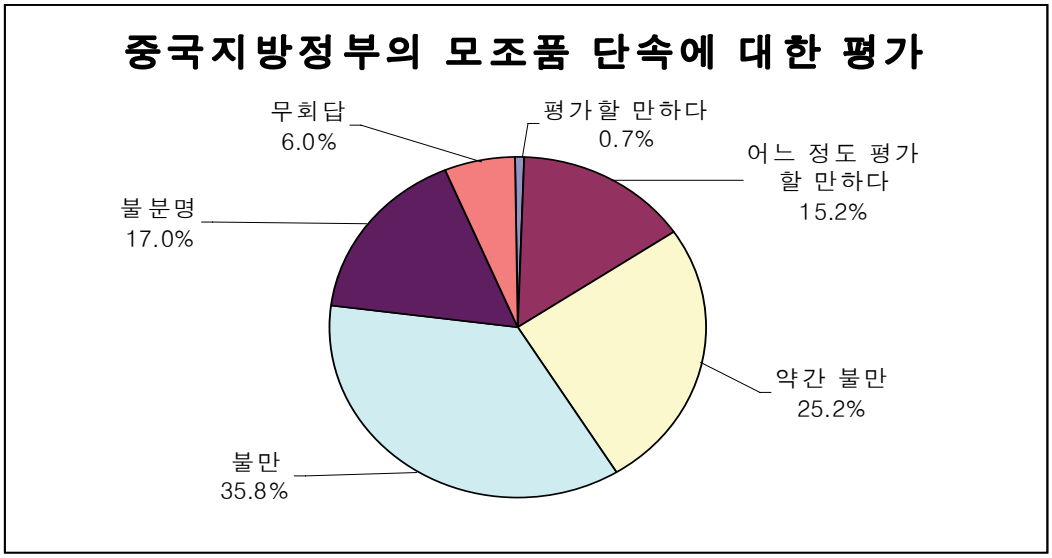

문37. 모조품 단속 활동에서 중국 지방정부에의 평가(지역별) (금회 조사부터 신설)

평가할 만한 지역으로 베이징시(24.5%)와 상하이시(21.2%)가, 불만인 지역으로는 광둥성(28.5%)와 저장성(13.9%)가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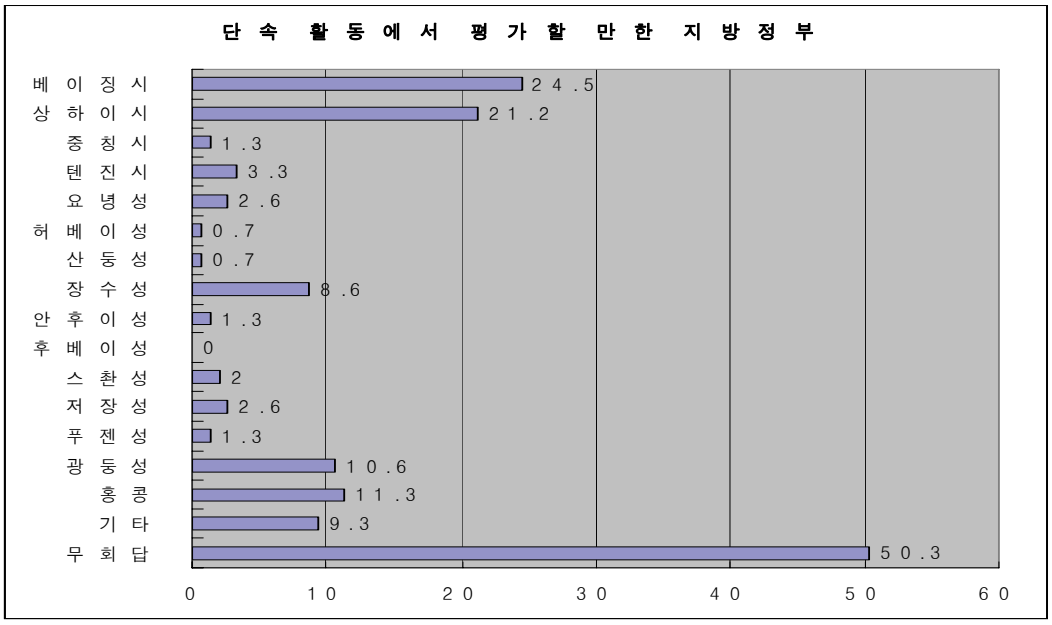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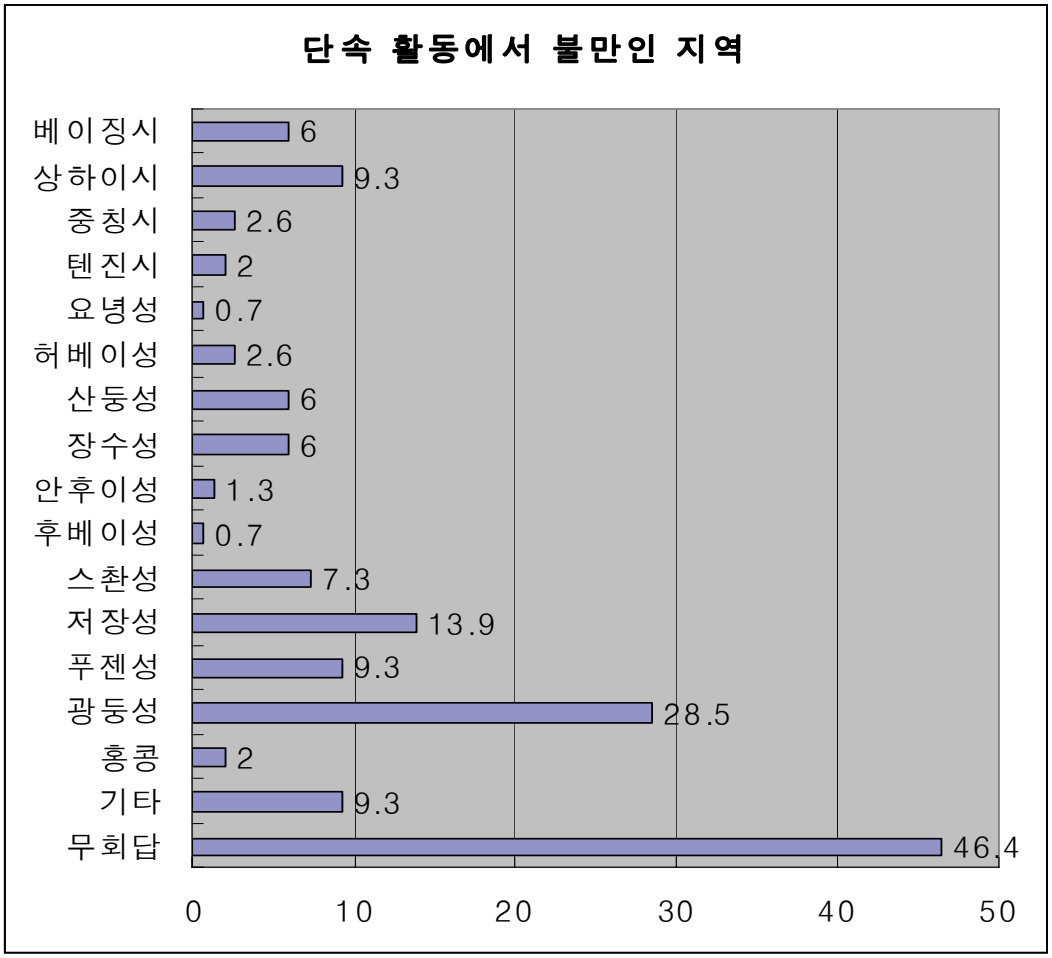

문38. 중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평가할 만하다」3.3%(전회 대비 0.7 포인트 증가)이고,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다」12.6%(동 3.2 포인트 감소)를 합하여, 평가할 만하다고 한 기업은 15.9%(동 2.5 포인트 감소)였다. 반면 「불만」 34.4%(동 2.6 포인트 증가), 「약간 불만」27.8%(동 4.6 포인트 증가)로서 일본 정부의 대처에 관해서는 전회에 비하여 평가는 횡보하는 경향이며,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반을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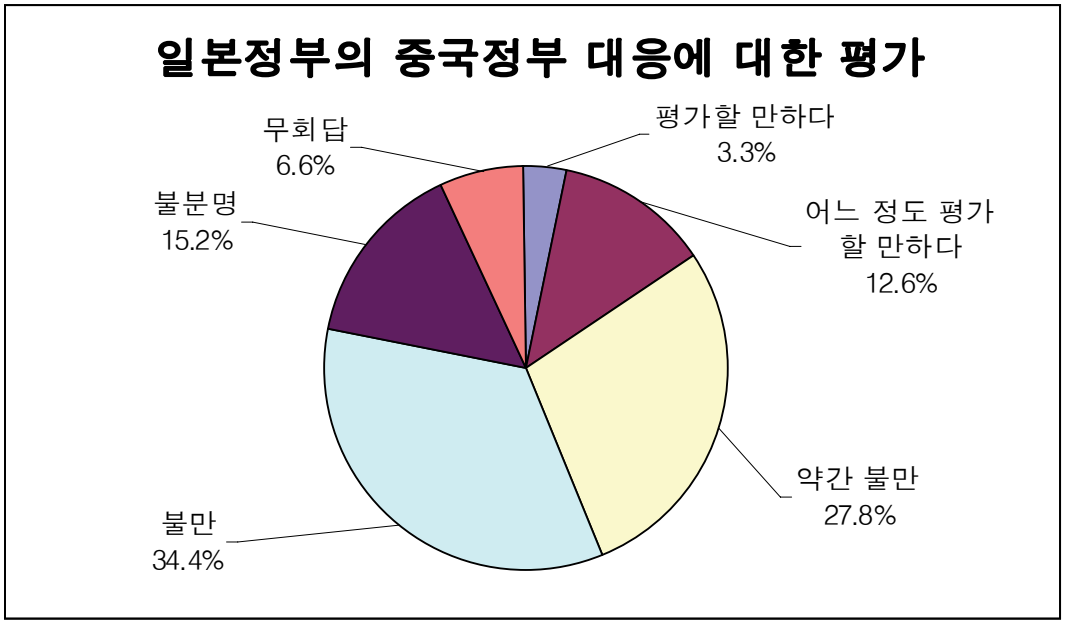
일본정부의 중국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평가할 만하다
3.3%
어느 정도 평가
할 만하다
12.6%
약간 불만
27.8%
불만
34.4%
불분명
15.2%
무회답
6.6%